

글로벌 AEO 총서

Global AEO Compendium

미국 / 캐나다 / 싱가포르 / 일본 / 뉴질랜드 / 중국 / 홍콩 / 멕시코
터키 / 이스라엘 / 도미니카공화국 / 인도 / 대만 / 태국 / 호주 / UAE
말레이시아 / 페루 / 카자흐스탄 / 우루과이 / 몽골 / 인도네시아



통관정보 / AEO제도 / MRA 활용방법





MRA를 체결한 22개국의 국가별 수출입 통관 절차 및 AEO 제도 정보

AEO 제도는 국제물류 안전과 무역 원활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탄생한 민관협력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AEO 제도는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인 MRA를 통해서 관세당국 간 신속한 통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발효된 WTO 무역원활화 협정에서 회원국들에게 AEO 도입을 의무화하면서 AEO는 관세행정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87개국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보다 많은 국가로 제도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AEO 제도를 도입하였고, AEO 기업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을 비롯한 22개국과 AEO MRA를 체결하여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이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EO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고 무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노력의 일환으로 AEO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MRA를 체결한 22개국에 대해서 국가별로 수출입 통관 절차 및 AEO 제도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를 담은『글로벌 AEO 총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우리 수출입 기업의 AEO MRA 활용에 있어 좋은 안내서 역할을 하여 우리 AEO 기업과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0. 5.

관세청장 노 석 환

목차

Contents

Part I

AEO 제도 개요

1. AEO 제도	12
2. AEO MRA	16

Part II

MRA 체결국 정보 (통관절차/AEO제도/MRA정보)

북아메리카 (North America)

1. 미국
(USA)



1. 국가 개요	25
2. 통관절차	27
3. AEO 제도	32
4. MRA활용 방법	41

2. 캐나다
(Canada)



1. 국가 개요	47
2. 통관절차	49
3. AEO 제도	64
4. MRA활용 방법	73

아시아 (Asia)

1. 싱가포르
(Singapore)



1. 국가 개요	77
2. 통관절차	79
3. AEO 제도	81
4. MRA활용 방법	86

2. 일본 (Japan)



1. 국가 개요	91
2. 통관절차	93
3. AEO 제도	107
4. MRA활용 방법	115

3. 중국 (China)



1. 국가 개요	119
2. 통관절차	121
3. AEO 제도	128
4. MRA활용 방법	138

4. 홍콩 (Hongkong)



1. 국가 개요	143
2. 통관절차	145
3. AEO 제도	148
4. MRA활용 방법	153

5. 인도 (India)



1. 국가 개요	157
2. 통관절차	159
3. AEO 제도	170
4. MRA활용 방법	180

6. 대만 (Taiwan)



1. 국가 개요	185
2. 통관절차	187
3. AEO 제도	192
4. MRA활용 방법	198

목차

7. 태국 (Thailand)



1. 국가 개요	203
2. 통관절차	205
3. AEO 제도	209
4. MRA활용 방법	215

8. 아랍에미리트 (UAE)



1. 국가 개요	219
2. 통관절차	221
3. AEO 제도	225
4. MRA활용 방법	230

9. 말레이시아 (Malaysia)



1. 국가 개요	233
2. 통관절차	235
3. AEO 제도	245
4. MRA활용 방법	253

10. 카자흐스탄 (Kazakhstan)



1. 국가 개요	257
2. 통관제도	259
3. AEO 제도	261

11. 몽골 (Mongolia)



1. 국가 개요	265
2. 통관제도	267
3. AEO 제도	270

12. 인도네시아 (Indonesia)



1. 국가 개요	275
2. 통관제도	277
3. AEO 제도	281

오세아니아 (Oceania)

1. 뉴질랜드 (New Zealand)



1. 국가 개요	288
2. 통관절차	289
3. AEO 제도	295
4. MRA활용 방법	300

2. 호주 (Australia)



1. 국가 개요	303
2. 통관절차	305
3. AEO 제도	318
4. MRA활용 방법	330

유럽 (Europe)

1. 터키 (Turkey)



1. 국가 개요	335
2. 통관절차	337
3. AEO 제도	345
4. MRA활용 방법	354

목차

2. 이스라엘
(Israel)



1. 국가 개요	357
2. 통관절차	359
3. AEO 제도	363
4. MRA활용 방법	367

중·남미 (Middle & South America) >>

1. 멕시코
(Mexico)



1. 국가 개요	371
2. 통관절차	373
3. AEO 제도	377
4. MRA활용 방법	384

2. 도미니카공화국
(Dominican Republic)



1. 국가 개요	387
2. 통관절차	389
3. AEO 제도	392
4. MRA활용 방법	394

3. 페루
(Peru)



1. 국가 개요	397
2. 통관절차	399
3. AEO 제도	403
4. MRA활용 방법	407

4. 우루과이
(Uruguay)



1. 국가 개요	411
2. 통관절차	413
3. AEO 제도	415
4. MRA활용 방법	417

Contents

부록

부록 현지언어 MRA 혜택적용 안내

USA	421
Canada	424
Singapore	425
Japan	429
China	433
Hong Kong	437
India	439
Taiwan	443
Thailand	447
United Arab Emirates	451
Malaysia	453
New Zealand	457
Australia	459
Turkey	461
Israel	463
Mexico	465
Dominican Republic	467
Peru	469
Uruguay	471

통관정보 / AEO제도 / MRA 활용방법

미국 / 캐나다 / 싱가포르 / 일본 / 뉴질랜드 / 중국 / 홍콩
멕시코 / 터키 / 이스라엘 / 도미니카공화국 / 인도 / 대만 / 태국 / 호주
UAE / 말레이시아 / 페루 / 카자흐스탄 / 우루과이 / 몽골 / 인도네시아



Part1

AEO 제도 개요

1. AEO 제도
2. AEO MRA

Part I

1. AEO 제도의 이해

(1) AEO 제도의 개념

세계 무역환경이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체제에서 WTO(세계무역기구 : 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로 전환되면서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점진적으로 국제무역의 장벽이 완화되고 있다. 동시에 전 세계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무역안전을 저해하는 테러, 밀수 등 불법무역도 함께 증가하는 등 국제무역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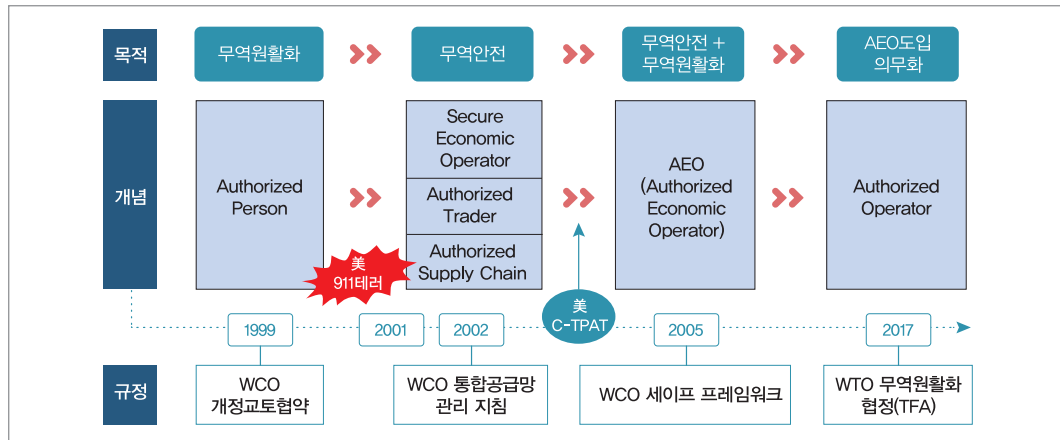
이렇게 전 세계의 무역량 증가로 신속한 통관절차의 이행이 요구되고 있으나, 테러, 밀수 등으로부터 화물 보안 및 안전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들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들을 동시에 조화시키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국제무역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급망 보안과 안전이 중요하지만 국제무역 수요 전체에 대하여 검사 등의 정밀 통관수속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급망의 안전은 단 한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 파급효과는 공급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WTO는 제1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이슈를 논의함에 따라 1996년부터 WTO 회원국들은 무역원활화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2001년 9월 미국에서 911 테러사건이 발생한 후 세계 무역환경은 국경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물류 전반의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WCO(세계관세기구 : 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국가간 무역 및 물품이동에 있어 테러방지 등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면서 교역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에 대한 수년간의 논의 끝에 "SAFE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라는 표준규범을 만들어 2005년6월 WCO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AEO는 이러한 국제규범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관협력제도를 말한다.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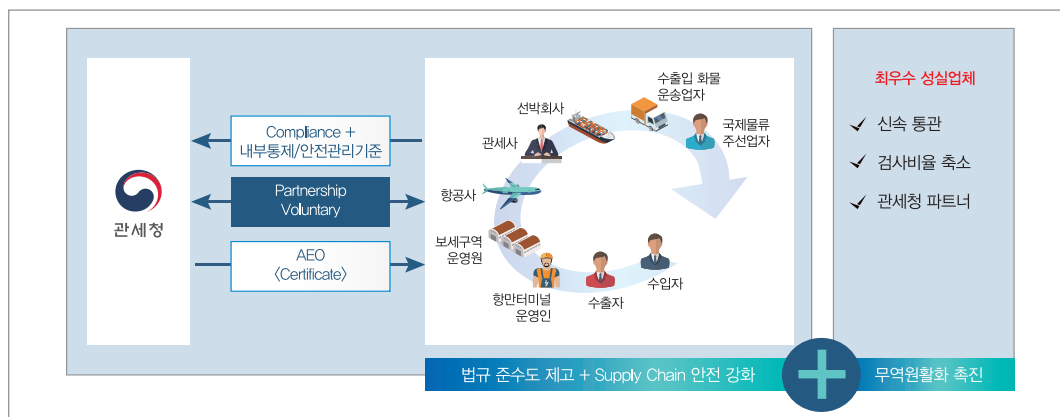
2017년 2월 WTO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FA)¹⁾’이 발효됨으로써 WTO 회원국은 수출입 통관 관련하여 AEO제도 도입에 대한 추가적인 무역 원활화 조치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게 됐다.

〈그림 1〉 AEO의 등장 배경



AEO공인기업은 무역 공급망(Supply Chain)을 구성하는 기업들 가운데 관세법 등 법규준수도(compliance)가 높고 물품취급, 출입통제, 시설보안, 거래업체관리 등에서 안전관리(secure and security) 수준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관세 당국의 심사를 통해 공인받은 무역업체이다. AEO는 기업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무역공급망의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AEO공인기업에는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비AEO기업에게는 수출입검사 강화 등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AEO제도의 핵심이다.

〈그림 2〉 AEO 제도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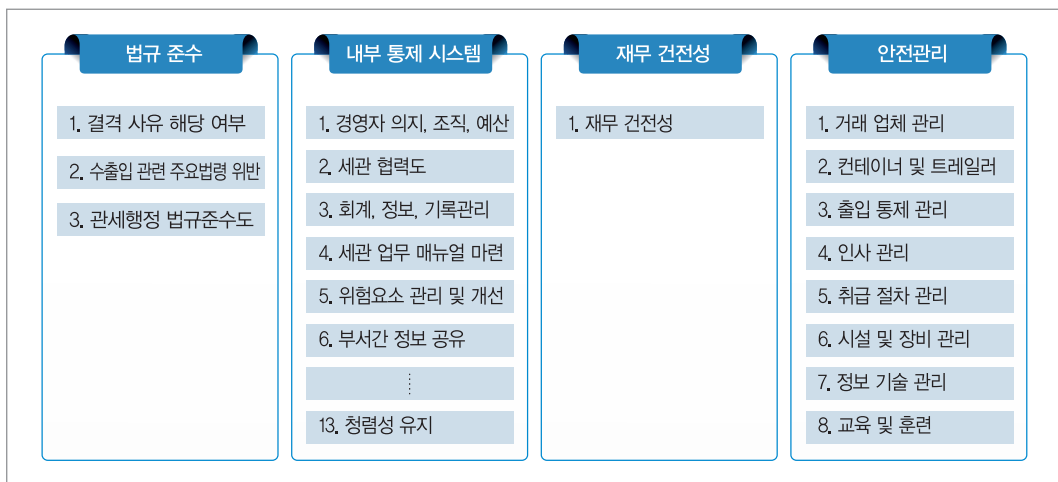
1)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협상 개시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으로 통관의 신속화와 무역 비용 감소를 통한 국가 간 교역 확대를 목표로 한다.

(2) 우리나라 AEO 공인기준

글로벌 공급망에서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등 무역과 관련된 수출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화물관리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선박업자, 항공사 등이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AEO 업체로 공인되면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AEO 공인을 받기 위해서 첫째,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 둘째, 관세 등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세금체납을 하지 않는 등 재무 건전성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수출입물품의 안전한 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거래업체, 운송수단 및 직원교육체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WCO에서 정한 수출입 안전관리에 관한 표준 등을 반영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AEO 고시에 따른 공인기준 체계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부문별로 상이하나 크게 <그림 3>과 같이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분야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그림 3> 우리나라 AEO 공인기준 체계



첫째, 법규준수는 기업의 관세행정 법규준수이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관세청장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이 일정한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는 신청인 및 신청기업의 법규위반 내역, 관세청에서 측정하는 법규준수도 점수(80점 이상)가 포함된다.

둘째, 내부통제시스템은 AEO 공인 및 유지에 필요한 내부 환경과 통제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기업의 사업모델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재무건전성은 관세행정 법규준수도와 공급망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기업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고, 법규준수 이행이 가능한 정도의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안전관리는 <표 1>과 같이 거래업체 관리, 운송수단 등 관리, 출입통제 관리, 인사관리, 취급절차 관리, 시설과 장비 관리, 정보기술 관리, 교육과 훈련 등 모두 8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표 1> 수입업체의 안전관리 기준

기준요소	주요내용
거래업체 관리	- 수입업체는 수입 공급망의 종착점으로 거래업체인 수출국 물품공급자(제조업체, 물품 공급업체)의 물품 적재 이후 가능한 수입 공급망 당사자 관리 필요 - 수입물품의 보관·운송·취급, 정보시스템 운영 및 출입통제 경비 등 중요 활동 위탁시 그 업체도 거래업체로서 관리 - 수입업체는 국제무역 공급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업체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기준 충족에 대한 약속을 받고 이를 위해 거래업체와 항상 협력
운송수단 등 관리	수입업체는 운송수단이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으로부터 침입받지 않도록 운송수단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절차 마련하고, 거래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방안 마련
출입통제 관리	- 수입업체는 권한이 없는 자의 시설진입을 예방하고, 직원 및 방문자에 대한 통제 유지 - 수입업체는 진입 지점에서 직원, 방문자들에 대하여 명확히 신분확인할 수 있는 수단 구비
인사관리	- 수입업체는 채용 예정 직원을 심사,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근무 중인 직원들 주기적 점검 - 이는 법규위반 가능성이 높은 직원의 수출입물품 취급 관련 중요 보직 근무를 미연에 예방
취급절차 관리	- 수입업체는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 관련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비인가된 물품과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함 - 수출업체는 관세청에 관세행정 관련 정보를 시기적절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시설과 장비 관리	- 수입업체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외부에 무단접근을 예방하기 위하여 물리적 장벽 및 차단물 설치 - 출입구 및 시설(사무실 포함) 내·외부에 감시카메라, 적절한 조명, 경보장치, 잠금장치, 인력배치 등을 통해 안전관리 수준 유지
정보기술 관리	수입업체는 운영 또는 사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과 회사정보의 무단조작과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 및 자료의 안전성 유지
교육과 훈련	- 수입업체는 비인가자의 물품보관(취급)시설 및 회사정보에 무단침입(접근)을 사전예방 - 사고 발생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 - 수입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관 적법성과 위험상황 대처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자료: 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1)", 2017, pp. 121-123. 재정리

Part I

2. AEO MRA

(1) AEO MRA의 개념

MRA(상호인정약정)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 당국간의 약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체결된 AEO 상호인정약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공인을 받은 AEO 수출업체가 미국에서 수입통관을 할 때 AEO 기업으로 인정되어 신속통관의 혜택을 받게 된다.

(2) AEO MRA 효과

WCO는 무역원활화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간 AEO MRA 체결을 권고하고 있다. AEO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자국의 AEO 공인업체가 교역상대국의 세관 통관시 검사율 축소 등 AEO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국가 간 MRA를 체결하고 있다. 이는 국가 간 WCO SAFE Framework를 제도적 기반으로 수출입 안전과 원활화를 추구한다. WCO에 따르면 <그림 4>와 같이 국가 간 무역거래가 AEO MRA를 통해 검사율 축소 및 공급망의 리드타임 단축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모두 AEO 공인을 받았을 경우 최소검사율을 기록하고, 수출업자만 AEO 공인시 검사율 감소의 효과가 나타난다.

AEO MRA는 국가 간 AEO 혜택을 공유하는 것과 동시에 자국 기업의 정보가 상대국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수출기업이 AEO MR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수입국에서 AEO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국의 AEO 공인을 획득해야 한다. 이는 수출기업의 중요한 기업정보가 상대국 세관에 제공되어야 함에 따라 기업의 시설현황, 영업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상대국가에서 AEO공인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AEO MRA 체결을 통해 체결국 간 거래에서 AEO기업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 제출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최근 FTA가 확대되면서 관세장벽이 낮아지고 있지만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각 국가의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이 강화되고 있다. 공급망의 통관지연으로 리드타임이 길어지거나 상대국의 법규 및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국가별 상이한 관세행정 등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AEO제도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신뢰성을 갖춘 기업으로서 국제무역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무역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림 4〉 AEO MRA 혜택 개념도



(3) AEO MRA 혜택

AEO MRA가 체결되고 발효되면 양 국가의 AEO 기업이 수출하는 화물에 대하여 수입검사를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AEO화물 우선통관, 비상시 우선조치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상대국의 세관에 연락관이 지정되어 통관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통관혜택 적용으로 인해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면 물류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무역거래의 예측가능성 확보 효과도 발생한다

〈표 2〉 AEO MRA 혜택

구 분	주요내용
수입검사율 축소	AEO 화물에 대해 상대국 세관의 수입검사 감축
우선통관 및 검사	상대국 세관에서 실제 검사시 일반화물 보다 우선 검사(심사) 조치
서류심사 간소화	상대국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생략 또는 서류심사 비율 감소
비상시 우선조치	천재지변, 국경폐쇄 등 비상시 AEO화물 우선조치·통관
세관연락관 상설	체결국내 세관연락관 상설·활용으로 통관애로 등 해소

(4) AEO MRA 이행절차

AEO MRA 이행절차는 각 국가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WCO에서 권장하고 있는 단계적 접근(phased approach)방법을 따르고 있다. 단계적 접근 방법은 ① 양국 간 AEO 공인기준 비교, ② 현지방문 합동심사, ③ 혜택 및 공인업체 정보공유 등 운영절차 협의, ④ 양국 관세청장간 서명, ⑤ 시범운영, ⑥ 전면이행 단계로 구분한다.

〈그림 5〉 AEO MRA 이행절차





통관정보 / AEO제도 / MRA 활용방법

미국 / 캐나다 / 싱가포르 / 일본 / 뉴질랜드 / 중국 / 홍콩
멕시코 / 터키 / 이스라엘 / 도미니카공화국 / 인도 / 대만 / 태국 / 호주
UAE / 말레이시아 / 페루 / 카자흐스탄 / 우루과이 / 몽골 / 인도네시아



Part2

MRA 체결국 정보 (통관절차 / AEO제도 / MRA정보)

북아메리카 (North America)

1. 미국 (USA)
2. 캐나다 (Canada)

아시아 (Asia)

1. 싱가포르 (Singapore)
2. 일본 (Japan)
3. 중국 (China)
4. 홍콩 (Hongkong)
5. 인도 (India)
6. 대만 (Taiwan)
7. 태국 (Thailand)
8. 아랍에미리트 (UAE)
9. 말레이시아 (Malaysia)
10. 카자흐스탄 (Kazakhstan)
11. 몽골 (Mongolia)
12. 인도네시아 (Indonesia)

오세아니아 (Oceania)

1. 뉴질랜드 (New Zealand)
2. 호주 (Australia)

유럽 (Europe)

1. 터키 (Turkey)
2. 이스라엘 (Israel)

중·남미 (Middle&South America)

1. 멕시코 (Mexico)
2. 도미니카공화국 (Dominican Republic)
3. 페루 (Peru)
4. 우루과이 (Uruguay)

통관정보 / AEO제도 / MRA 활용방법

미국 / 캐나다 / 싱가포르 / 일본 / 뉴질랜드 / 중국 / 홍콩
멕시코 / 터키 / 이스라엘 / 도미니카공화국 / 인도 / 대만 / 태국 / 호주
UAE / 말레이시아 / 페루 / 카자흐스탄 / 우루과이 / 몽골 /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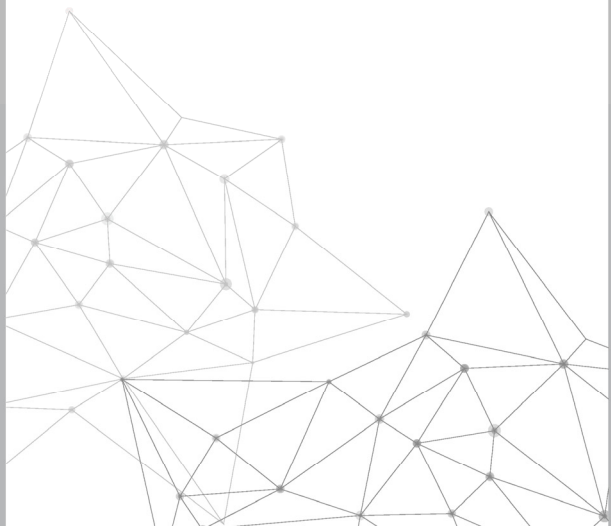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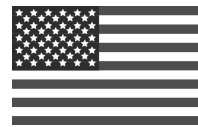


부록

현지언어 MRA 혜택적용 안내

북아메리카(North America)

미 국
(USA)



1

국가 개요

일반 사항	국 명	미합중국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면 적	937만 2,610 km ² (대한민국의 95배)
	수 도	워싱턴 D.C.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인 구	3억 2,819만 5,137명(2018년 7월 23일 기준 추정치) (U.S. Census Bureau, www.census.gov/popclock)
	주 요 도 시	뉴욕(862만), 로스앤젤레스(400만), 시카고(272만) (U.S. Census Bureau, 2017년 7월 기준 기준 추정치, 2018년 7월 기준 최신자료)
	민 족	백인(76.6), 흑인(13.4%), 아메리카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1.3%), 아시아인(5.8%) 등
	언 어	영어
정치	건 국 일	1776년 7월 4일 (13개 주 독립선언일)
	정 치 체 계	대통령중심제(연방공화제)
	국 가 원 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16년 11월 8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경제	화 폐 단 위	미 달러(US\$)
	1인당 GDP	5만 1,337달러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17년 기준)
	교 역 량 (2018년 기준)	수출: 1,665,303 US\$ Mil 수입: 2,611,432 US\$ Mil
	주요 교역품	기계류, 전기전자기기, 유류 및 석유화학, 항공 및 우주, 자동차 및 부품 등

자료원: U.S. Census Bureau (미국통계청), WITS(wits.worldbank.org)

한 / 미 관계	
교역 규모	대미수출(2019년): 73,343,898 US\$ Thousands 대미수입(2019년): 61,878,564 US\$ Thousands 무역수지(2019년): 11,465,334 US\$ Thousands
교역 품	• 대미 주요 수출품목 :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및 부품, 전기기기와 부품, 광물성연료, 철강제품 등 • 대미 주요 수입품목 : 기계류 및 부품, 전기기기와 부품, 광물성 연료, 렌즈 및 디스플레이류, 자동차 및 부품 등
투자 교류	• 우리나라의 대미 직접투자액 → 137억 4,885만 달러(2017년, 한국수출입은행) •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액(Financial Outflow) → 16억 9,300만 달러(2017년, 미국 상무부)
교민	약 249만 2,252명(2017년)

자료원 :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Data(미 노동통계청)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미 재무부)
 U.S. Census Bureau(미 통계청), World Trade Atlas

2

통관절차

(1) 수출 통관 절차

가. 수출정보 제출

미국의 수출신고는 수출화물의 신고자가 통관서류를 USPPI(United States Principal Party in Interest) 또는 CBP 승인된 자동수출 신고시스템(Automatic Export System : AES)을 이용하여 세관장에 신고한다. AES를 통해 수출 신고 수리를 증명하는 확인번호(ITN)가 생성되며, 이 번호가 생성되어야 수출할 수 있다.

미국의 국경(항만, 공항 등)을 경유하는 2,500달러 이상의 모든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대상이 된다. 수출 전 신고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사전 신고를 한 경우 수출 후 신고가 가능하다.

〈표 3〉 미국 수출신고 기한

항공화물	항공기 출발 2시간 전
해상화물	국경 도착 1시간 전 (우편 및 기타 운송수단은 수출2시간 전)
트럭화물	적재 24시간 전

출처 : CBP웹사이트

수출자에게는 수출 시 물류안전성 유지를 위한 몇 가지 기본 의무사항이 있다. 통관서류 제출 프로그램인 USPPI 또는 AES를 통해 수출화물 정보를 제출하였는지 증빙(ITN)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화물정보 사전보고 의무 면제 대상자의 경우 운송인에게 제외증명서(Exemption Statement)를 제공하여 수출화물 적하목록, Waybill 등 수출서류에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AES를 통해 제출된 신고 정보는 CBP(관세국경 보호청)에 공유된다.

나. 서류·화물 심사

AES 시스템을 통해 부여받은 ITN외에 수출 통관 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없다. CBP는 위험도가 높은 화물을 선별하여 검사하기 때문에 운송인은 CBP가 화물검사를 위하여 통보한 화물을 CBP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 고위험 수출화물로 분류된 화물이 국경을 통과한 경우 국제 운송인본드(International Carrier Bond) 조건에 의거 회송을 요구하고 있다.

수출자는 화물 출항 전 화물정보(Commodity Data) 및 전자수출정보(EEI)를 제출해야 한다. 화물 정보는 필수정보, 선택정보, 조건부 정보로 구성된다.

〈표 4〉 미국 수출시 EEI 제출정보

구분	제출 항목
필수 정보	수출재(인적사항 등), 수출일, 최종양수인(수입자), 원산지, 최종 목적지, 운송방법, 운송인명, 운송인식별, 수출항, 특수관계자(해당 시), 내/외국 표시(내국산or외국산), 물품분류번호, 물품명세, 측정기본단위, 기본량, 적하물 무게, 가격, 수출정보코드, 적하물 참조번호, 라인번호, 위험물 표시, 담보번호, 허가번호, 허가 면제번호, Routed Export, Shipment Fill Action Request Indicator, Line Item Filing Action Request Indicator, 신고옵션 번호
조건부 정보	국무부 요건, 운송참조번호, 수입번호, 자동차등록증 주정부 코드, 자동차 등록번호, Vehicle ID Qualifier, 자동차확인번호/제품번호, 보조량, 수출허가번호, 수출규제분류번호, 하역항, FTZ Identifier, 중간양수인, 대리인
선택 정보	봉인번호, 설비번호

출처 : CBP웹사이트

(2) 수입 통관 절차

가. 수입 통관

미국은 통관항(Ports of Entry)에서 수입화물의 신고자가 통관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세관이 당해 물품의 인도를 허가하고, 수입자가 관세납부 후에 법적인 수입통관이 인정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수입화물의 반출허가 신청은 통관대상 물품이 도착한 후 신청할 수도 있고, 통관대상 물품을 적재하고 있는 선박 및 항공기가 도착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반면에 지정된 기간 내 반출신청을 하지 않고 세관의 별도 하역장소에 장치할 경우 별도의 허용기간에 대한 지시가 없으면 위험 및 경비는 수입물품의 소유자 또는 수하인이 부담하고 지정된 창고

에 운송되어 보관한다. 수입업자가 세관에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추정된 관세를 납부한 후 통관이 허용되고, 세관은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의 정확성을 결정한다.

〈그림 5〉 미국의 수입통관절차



미국의 수입통관절차에 따른 특징은 관세납부시점에 따라 일반수입통관(수입통관단계, 사후심사단계), 보세통관, 임시통관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수입통관의 수입통관단계는 화물반입신고(Entry)와 납세신고(Entry Summary)로 구분되고, 사후심사단계는 사후세액심사(Post Entry Review)와 정산(Liquidation)으로 구분된다. 또한 미국의 세관이 사용하는 수입신고시스템은 ABI³⁾, ACE⁴⁾ 등 두 가지 모두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서류는 화물반입신고서 제출과 함께 화물을 반출하고 10일 이내에 관세 및 납세신고서를 분리하여 제출한다. 반면 수입과 납세신고를 동시에 하는 결합제출은 화물반입신고서와 납세신고서를 제출한 뒤 세관검토를 거쳐 관세를 납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검사 과정을 거쳐 반출한다.

3) Automated Brokers Interface: 관세사가 화주를 대신하여 수입신고할 때 사용하는 관세사 전용 수입신고 프로그램 (EDI와 유사)

4) 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미 세관의 인터넷망을 통해 화주가 직접 수입신고를 수행하는 시스템 (UNI-PASS와 유사)

나. 물품 도착 전

미국에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선사 및 항공사 등 운송업자는 24 Hour Rule에 근거하여 AMS⁵⁾로 화물, 송하인 및 수하인, 운송수단 등의 정보를 포함한 적하목록을 CBP에 미리 제출해야 한다. 이는 미국이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사전에 적하목록을 검토하여 우범화물에 대한 위협을 관리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운송인이 사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미국 통관항에 양하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최초 위반시 벌금 5,000달러, 이후 1만 달러가 부과된다.

수입자의 24 Hour Rule과 더불어 수출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Manufacturer or supplier), 판매자 또는 소유자(Seller or Owner) 등 ISF 10개 항목⁶⁾, 운송업자는 화물적재 계획서(Vessel Stow Plan), 컨테이너 상태메시지(Container Status Message) 등 2가지 정보를 출항 24시간 전에 AMS를 통해 미국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10+2 Rule을 시행하고 있다. 수출자 ISF 10개 항목의 신고의무 위반은 1건당 5,000달러(신고 1건당 최대 1만 달러)를 부과한다. 운송업체 2항목은 화물적재계획서 위반 5만 달러, 컨테이너 상태메시지 위반 1건당 5,000달러(최대 선박도착편당 10만 달러)를 부과한다.

다. 물품 신고

수입자는 수입화물이 미국의 통관항에 도착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물품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입화물은 세관창고로 이동하여 세관장 명령하에 매각 또는 폐기된다. 신고유형은 일반신고 및 간이신고로 구분된다.

일반신고는 관세 담보요건을 갖춘 상업용 물품이 대상이고 송장금액이 2,500달러 이상이거나 수입허가 규제품목, 국가의 세입보호 대상 품목, 세관 행정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모든 수입화물이다. 간이신고는 소비목적으로 반입되는 개인용 및 상업용 선적, 우편물, 송장금액이 2,500달러 미만인 수입화물이다.

5) Automated Manifest System: 사전에 전자문서를 통해 미국 입항 화물을 CBP에 신고하는 것

6) Importer Security Filing: 제조업자 또는 공급자(Manufacturer or Supplier), 판매자(Seller), 구매자(Buyer), 수취인(Ship-to Party), 컨테이너 적입장소(Container stuffing location), 혼재업자(Consolidator or Stuffer), 수입자 번호 및 FTZ 신청인 식별 번호(Importer of record number / foreign trade zone applicant identification number), 수하인 번호(Consignee number), 원산지(Country of Origin), HS 코드

라. 물품 검사 및 반출

신고된 화물은 반출이 허가되기 전 미 세관의 ATS(Automated Targeting System)의 사전정보 분석 결과에 따라 검사 없이 즉시 반출되거나 검사 대상 물품으로 선별되어 검사를 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통관보류 되거나 반송될 수 있다.

신고 기재내용을 근거로 수입물품의 위법성 가능 여부에 따라 고위험 및 저위험 물품으로 선별한다. 고위험 물품의 경우 집중 현물검사를 실시하며, 저위험 물품은 일반검사 대상으로 서류검사에 그친다. 현물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관계법령에 따른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수량부족 여부, 선적검사 등 법규위반 여부를 검사한다. 세관당국은 검사할 물품 및 수량을 지정한다. 검사 후에는 세관직원이 신고서에 서명함으로써 반출이 허가되고 반출허가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담보금액은 관세 및 제 수수료의 예상 납부금액을 과거 담보조건의 준수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결정하고 동의한다.

3

AEO 제도

(1)

제도의 도입

가. 도입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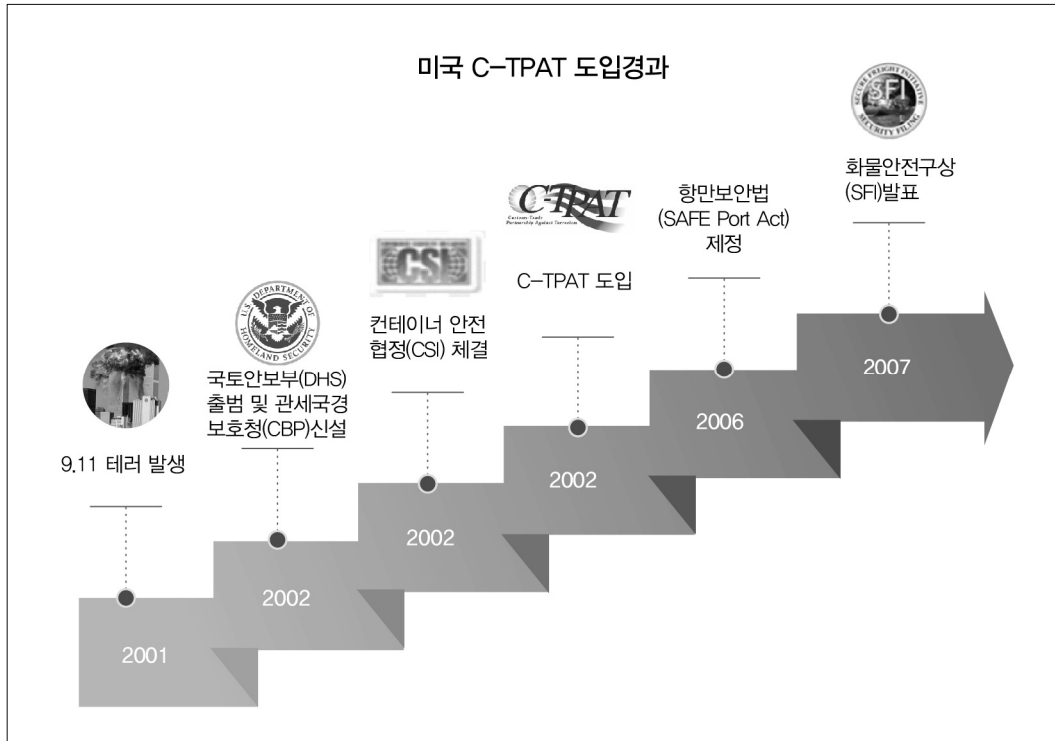
급격히 증가하는 무역규모와 날로 복잡해지는 공급망 등 국제무역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신속통관을 도모하던 미국 관세당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2001년 9.11 테러를 기점으로 국경 및 운송보안의 확보를 미국의 핵심 과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물류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2년 4월 미국의 대테러 민·관 협력 프로그램인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이하 C-TPAT) 제도를 도입 및 시행하게 되었다. C-TPAT은 세관과 무역업체가 국제무역 공급망의 보안 강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C-TPAT 인증을 받은 업체에 세관의 신속통관 혜택을 제공하고 미인증 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관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C-TPAT은 도입 이후 2006년 10월에 SAFE Port Act를 제정하여 동 제도를 반영함으로써 비로소 법적기반을 마련하였다.

C-TPAT은 2018년도 물류공급망 안전 확보를 위해 전 세계에 걸쳐 현장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대다수 결과가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최근 통상세관운영자문위원회(COAC)⁷⁾와 협력하여 C-TPAT 운영상 중복된 절차를 합리화하고, 30여개 이상의 혜택을 명확화 하였다. 또한 상호인정약정(MRA)을 통해 해외현장심사를 대신함으로써 예산절감 노력하였고, 변화하는 관세환경에 따른 새로운 물류공급망 위협에 대비하여 3가지 분야(사이버보안, 농산물 안전, 안전에 대한 비전 및 책임성)에 대한 공인기준을 마련하였다.

7) Commercial Customs Operation Advisory Committee: 관세행정 운영과 관련한 민간의 자문을 위한 기구로써 한국 관세청의 '관세발전심의위원회'와 유사

〈그림 6〉 미국의 C-TPAT 프로그램 도입경과



나. 운영 현황

미국의 C-TPAT 인증을 위한 기업의 공인기준은 공급망 당사자별로 최소보안기준이 구분되어 있다. 각 공인기준은 정책/규정/매뉴얼 등 절차에 따른 실행을 전제로 하는데, 〈그림 7〉과 같이 크게 거래업체 관리,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보안, 출입통제 관리, 인사 관리, 취급절차, 시설과 장비 관리, 정보기술 보안, 보안 교육, 위험평가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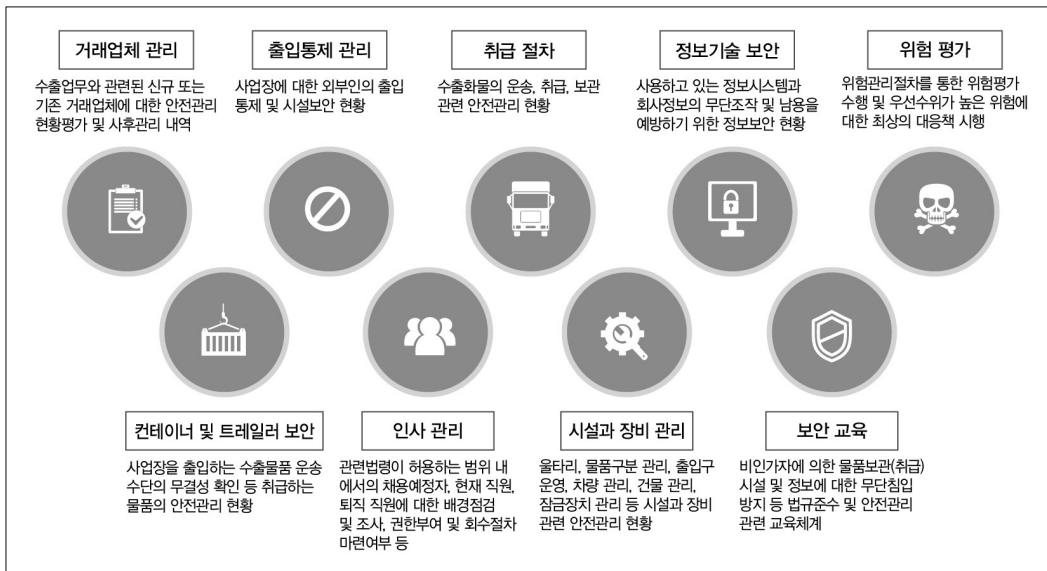
공인기준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거래업체관리 기준은 운송업체, 제조업체, 원자재 및 조립품 공급업체, 서비스 공급업체 등 거래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체결을 하기 전에 거래업체 평가를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보안 기준은 컨테이너, 트럭, 트레일러 등 운송수단에 대한 관리이다. 운송수단은 비인가자의 침입과 테러물품의 은닉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수출용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에 ISO 17712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이 강화된 봉인(High Secret seal)이 요구된다.

셋째, 출입통제 관리 기준은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임직원, 방문자 등 접근통제 관리이다. 모든 통제구역에 대하여 임직원, 방문자, 거래업체에 대한 식별체계 및 통제구역에 시건된 접근통제장치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넷째, 인사관리 기준은 채용예정자 및 임직원에 대한 관세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관리이다.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채용예정자 및 임직원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며 위반사항 발생 시 해당직원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그림 7〉 미국의 C-TPAT 최소보안기준



다섯째, 취급절차 관리 기준은 물품의 통관에 사용되는 정보 및 문서를 정확하게 하고, 교환이나 손실 및 오류정보의 개입으로부터 보호되는 절차마련이다. 수출입 서류의 수취, 신고, 운송, 보관 등 각 단계별 프로세스에 대한 무결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업무 절차 마련 및 이상상황, 불법사항·혐의사항 식별 시 보고절차가 요구된다.

여섯째, 시설과 장비 기준은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외부에 대한 무단접근 예방관련 울타리 등 물리적 장벽 및 차단물 설치, 출입구 및 시설에 감시카메라 설치, 적절한 조명, 경보 장치, 잠금장치, 인력배치 등을 통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일곱째, 정보기술 보안 기준은 정보의 오남용, 부적절한 교환, 정보자산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안 절차 및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여덟째, 보안 교육 기준은 관세법, 수출입신고 관련 취급절차, 비인가자 침입 등 이상상황

이 발생할 경우 이를 처리하고 보고하는 절차 교육, 물품을 취급하는 직원과 우편물을 취급하는 직원에 대한 추가 교육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위험평가 기준은 신청업체의 수출입 업무 프로세스상 발생된, 발생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을 식별, 해결하기 위한 위험평가 계획, 식별, 분석, 평가, 관리대책 수립 및 실행 관련 위험 관리 절차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위험평가를 통해 결정된 우선순위가 높은 위험에 대해 비용, 시간, 가용자원과 대응책의 적절성·효율성·효과성을 고려한 최상의 대응책 시행이 요구된다.

이러한 C-TPAT 공인기준에 대해 CBP는 2002년 출범 이후 17년간 총 32,000여회의 공인심사(validation and revalidation)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 초에 시작되어 약 3년에 걸쳐 개정작업을 착수하였다. 공인기준 개정사항은 기존 9개 분야에서 안전관리 비전 및 책임, 사이버 보안, 병충해 검역 관리 등 3개 신규분야를 포함하여 12개 분야로 확대하였다.

먼저, 안전관리 비전 및 책임 분야는 C-TPAT 기업의 효과적인 공급망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안전제도가 전사적 차원에서 기업문화의 주요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하며 기업의 핵심업무 절차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 개발 및 유지에 있어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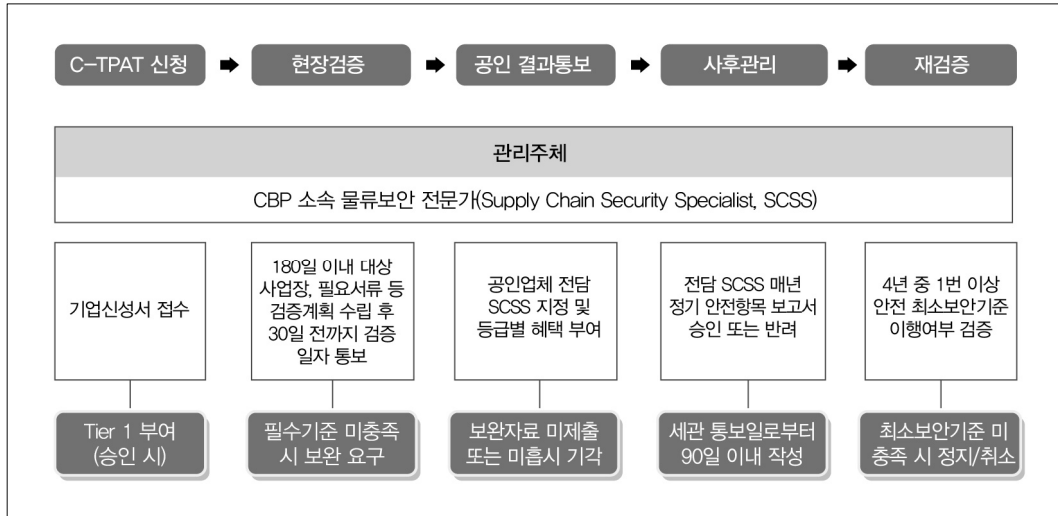
둘째, 사이버 보안 분야는 2001년 C-TPAT 제도가 생겨난 이래로 기술의 급진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오늘날 선도기업들은 기업의 정보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있고, 디지털 세계에서 지적재산권, 소비자 정보, 금융데이터, 직원기록 등 중요한 회사자산을 보호하는 데 사이버안보가 필수적이며, 사이버보안을 통해 협력업체, 소비자, 투자자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유리해졌다. 이에 C-TPAT 기업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더 힘쓰고, 사이버 공격의 사전감지 및 데이터 손실의 예방을 더 잘 할 수 있다.

셋째, 병충해 검역 관리 분야는 미국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의 산업이자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농업분야이다. 국내로 들어오는 흙, 비료, 씨앗, 동식물 원료에는 급속히 퍼지는 유해한 병해충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래 동식물 유입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모든 운송수단과 화물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면 통관보류 및 지연, 물품의 반송 또는 처리가 줄어들 수 있다.

(2) 공인 절차

C-TPAT 공인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 미국의 C-TPAT 공인절차



가. 공인 신청

기업이 CTPAT 공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C-TPAT 사이트(<http://ctpat.cbp.dhs.gov>)를 통해 온라인 회원가입 후 “동의서”, “일반사항” 및 신청 부문의 최소보안기준에 따라 작성된 기업의 “Supply Chain Security Profile”을 제출한다. “일반사항”의 경우 회사 정보, 사업장 주소, 연락처 등 조직 관련 정보로 구성된다. CBP 소속 물류보안 전문가는 가입신청서의 부합 판단 후 승인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된 업체의 경우 Tier 1 등급을 부여받는다.

나. 현장 검증

물류보안 전문가는 신청업체에 Tier 1 등급이 부여되는 일로부터 1년 이내 “Supply Chain Security Profile”을 토대로 현장 검증을 수행한다. 신청업체와 물류보안 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180일 이내에 대상 사업장, 필요 서류 등 검증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검증일 30일 전에 검증일자를 통보한다. 현장 검증은 업체의 사업장, 해외 공장, 선적지 등을 포함하여 물류이동

전 과정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현장검증기간은 점검 사업장 개수,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10 근무일(10 working days)을 초과하지 않으며 한 개 사업장에 대해 1일 심사를 전제로 한다. 현장검증은 신청부문의 최소보안기준에 대한 문서화 및 이행현황에 대해 이루어지며 점수 산정은 <그림 9>와 같이 필수(Must) 기준과, 권고(Should) 기준으로 나뉜다.

“필수”기준 미충족 시 해당항목에 대한 보완이 현장검증 기간에 간단히 통보된다. 물류보안 전문가는 현장검증 종료 후 보안사항/권고사항/우수사례 중심의 “보고서(Validation report)”를 작성하고 업체에 통보한다.

<그림 9> 미국의 C-TPAT 현장검증 점수 산정 기준



다. 공인 결과보고(통과/기각)

C-TPAT 현장검증 결과 통과업체에 대해 공인 및 해당 업체를 담당하는 물류보안 전문가 지정 및 등급별 혜택이 부여된다. 보안이행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된 보안자료가 미흡할 경우 기각 처리된다.

라. 사후관리[정기 안전항목 보고서(Annual Review of Security Profile)]

C-TPAT 인증업체는 매년 C-TPAT 포털에 등록했던 기업 정보 및 최소보안기준 이행사항을 매년 업데이트하고 정기 안전항목 보고서(Annual Review of Security Profile)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정기 안전항목 보고서의 세부 작성항목은 <표 5>와 같이 구성된다.

C-TPAT 인증업체는 세관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물류보안 전문가는 업데이트된 정기 안전항목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반려할 책임을 지닌다.

특히 회사 이름, 사용 중 수입자 기록 번호(IOR), 세관 수입자 채권번호 및 표준 운송업자 코드(SCAC) 변경 발생 시 즉시 물류보안 전문가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만약 정기 안전항목 보고서 업데이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업체의 C-TPAT 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표 5〉 정기 안전항목 보고서 작성 항목

- 회사이름 / 이메일 주소
- 회사 주소 / 회사 내 담당자
- 회사 전화 / 종업원 수
- 사용 중인 수입자 기록(Importer of Record, IOR) 번호
- 세관 수입자 채권 번호(Importer bond)
- 표준 운송업자 코드(Standard Carrier Alpha Code, SCAC) – 필요시
- 제조자 식별 번호(Manufacturer Identification Number, MID)
- 제공한 최소보안기준 이행 항목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 내용 및 일자
- 해외 거래업체가 회신한 안전관리 기준 이행 보고서(Partner Response Box)
 - C-TPAT 인증의 거래업체 평가 또는 C-TPAT 해외거래업체 심사에 의해 확인된 보완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 거래업체 선정, 평가, 사후관리 등 거래업체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
 - 내부통제활동평가(self audits) 또는 기업 보안 절차 과정에 대한 현황설명
 - 가입된 모든 상호인증프로그램(Mutual Recognition Programs)

마. 재검증(Revalidation)

재검증은 C-TPAT 최초 검증 이후의 단계로서, C-TPAT 기업이 최소보안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C-TPAT 인증업체 중 Tier 2, Tier 3 등급은 주기적으로 법규준수 및 최소보안기준에 대한 이행사항에 대한 물류보안 전문가에게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물류보안 전문가는 인증심사 내용 및 변동사항에 기반하여 4년 중 한번 이상(not less frequently than once) 재검증을 수행하며 주요 항목은 위험 기반 최소보안기준의 이행이다. 재검증의 경우 상품 생산지 및 선적지의 보안을 위해 해외 거래업체에 대한 현장검증이 수행될 수도 있다. 해외 거래업체 현장검증

기간은 4 영업일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 범위, 방법은 최초 C-TPAT과 동일하다.

검증결과 최소보안기준 미충족, 법규준수 위반내역 발생 시 공인이 특정 기간 동안 정지된다. 공인 정지기간 동안 요구사항에 대해 주어진 기간 동안 미충족 시 공인 취소가 된다. 검증 과정에서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업체에 대해 재신청 관련 유예기간은 없다.

바. 기타 특이사항

C-TPAT 인증현황은 <https://ctpat.cbp.dhs.gov/trade-web/index>에 접속 후 C-TPAT 인증기업만이 로그인을 통하여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3) 주요 혜택

미국의 C-TPAT 인증은 신청업체의 최소보안기준(Minimum Security Criteria)의 관리 수준 및 현장검증 통과 여부에 따라 3단계(Tier 1, Tier 2, Tier 3)로 구분하고 있으며, Tier 3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Tier 1의 경우 업체가 C-TPAT Portal을 통해 “동의서” 및 신청 부문의 최소보안기준에 따라 작성된 기업의 “Supply Chain Security Profile” 제출을 통한 세관당국의 부합 판단 후 등급부여가 이루어진다. Tier 2의 경우 현장검증 결과 적합한 업체에 대해 등급부여가 이루어지며 이때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는 컨테이너 및 장비, 화물에 대한 추가정보 제공, 우수사례를 다수 보유한 업체인 경우 Tier 3 등급이 부여된다. 이러한 C-TPAT의 전체 등급별 주요 혜택을 정리해보면 <표 6>와 같다.

주요혜택으로는 화물검사 선별비율 감소, 화물검사 선별 시 검사 우선순위 부여, 물류보안 전담직원(Supply Chain Security Specialist, SCSS), C-TPAT 포털(Status Verification Interface, SVI)을 통한 인증기업 간 고급정보 공유 등이 있다. C-TPAT 인증업체의 경우 자동선별시스템(Automated Targeting System, ATS) 점수가 낮아짐에 따라 세관당국(CBP)에 의한 화물검사가 감소하며 정밀 재검사 비율이 줄어든다. 또한, Fast(Free and Secure Trade) Lane을 통한 신속한 수입화물의 처리가 가능하다.

〈표 6〉 미국의 C-TPAT 등급별 주요 혜택

혜택	Tier 1	Tier 2	Tier 3
CBP 검사횟수 축소 (수입업체의 경우, Non-C-TPAT에 비해 5~8배 가량 낮은 검사율)	○	○	○
벌금 등 각종 패널티 경감(수입업체의 질의서에 응답한 사항 포함)	○	○	○
C-TPAT 연례회의 참가자격 부여	○	○	○
리드타임 감소	○	○	○
기업별 공급망보안전문가(SCSS) 배정	○	○	○
육로 운송 시 FAST Lane 이용 가능 (해당 거래와 관련된 모든 기업체가 C-TPAT 인증기업인 경우에 한정)	○	○	○
C-TPAT 웹 기반 포털 시스템 및 관련 자료실 이용 가능	○	○	○
식약청 안전공급망 프로그램 등 타 정부 시범사업에의 참여 가능	○	○	○
자동선별 시스템(ATS) 위험점수 감소 (Tier 1: Up to 20%, Tier 2: Tier 1의 2배, Tier 3: Tier 2보다 확연한 감소)	○	○	○
Importer Self-Assessment Program(ISA) 참여 자격요건 부여	○	○	○
C-TPAT 인증기업 간 안전한 소통 지원	○	○	○
교육과정 및 보안문제 해결 지원	○	○	○
CBP 관할 CEE 산업 부서로부터의 지원 대상 우선순위 선정 고려		○	○
(검사 선별 시)물품 우선검사 조치		○	○
무작위 샘플 조사(Stratified Exams)로부터의 면제 가능(단, ISA 참여 시 인정)		○	○
AEO MRA에 따른 혜택 제공		○	○
천재지변 또는 테러 사태 수습 후 사업재개 우선순위 부여			○
전용 검사대(Green Lane) 이용 가능			○

Tier 2의 경우 Tier 1의 혜택과 함께 화물 검사 비율이 보다 감소되는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무작위 샘플조사(Stratified Exams⁸⁾)로부터 면제가 가능하다. Tier 2 인증업체부터 AEO MRA에 따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Tier 3의 경우 Tier 1, Tier 2보다 화물 검사 비율이 감소되며 검사 시 우선배정을 통한 전용검사대(Green Lane) 이용으로 신속 검사가 가능하다.

8) Stratified Exams : CBP가 무역규정 및 세입징수구역 내 위험 측정을 위해 NAFTA 시행령 및 관세법에 근거하여 무작위 표본 추출 후 무역 규정 준수 현황을 점검하는 조치

4

MRA활용 방법

① 미국의 AEO제도 명칭

- C-TPAT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민관 대테러 파트너십)

② <한국 AEO 수출기업> 은 자사 사업장별 제조자식별번호(MID)를 확인

- MID(Manufacturer ID)란?: 수입제품의 제조자를 확인하기 위해 업체의 이름과 주소로 구성된 제조업체 식별코드입니다.
- 발급주체 : 미국의 수입업체나 관세사가 발급합니다.
- MID 확인방법 : 한국의 AEO 수출자는 미국의 수입자, 관세사를 통해 자사 사업장의 MID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한국 AEO 수출기업> 은 MID 확인 후 이 번호를 한국 관세청에 통보

④ <한국 관세청> 은 한국 AEO 수출기업의 AEO공인번호와 MID가 포함된 기업리스트를 미국 관세청에 송부

⑤ <미국 관세청> 은 한국 AEO 수출기업리스트를 C-TPAT 포털에 등재한 후 한국 관세청에서 미국에 통보한 MID와 수입신고서(Entry report)상 기재한 MID가 일치한다고 ATS(Automated Targeting System)에서 인식하면 MRA 혜택을 부여

※ 미국 수입신고 시 관세청에 통보한 MID와 동일한 MID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

<한-미 AEO MRA 혜택>

수입검사율 축소	•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에 대한 수입 검사율 축소 * C-TPAT 1단계 회원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AEO화물 우선검사	• 화물검사시 우선검사를 통한 검사시간 단축
기타	• 미국 C-TPAT 업체와 거래하는 해외거래업체의 시설보안 등의 확인을 위한 미국 관세청의 현장실사 면제

참고1 제조자 식별번호(MID) 설명자료

- (발행주체) 미국의 수입업체 및 관세사가 자체적으로 발행
- (구성체계) 15자리 : CC NAM NAM 1234 CIT

국가코드	첫 번째 상호의 3개 문자	두 번째 상호의 3개 문자	번지수의 4개 숫자	소재 도시명의 3개 문자
2자리	3자리	3자리	4자리 이하	3자리

예시) Bando Sangsa Ltd 84 Grays Inn Rd London, WWC1, UK
→ GBBANSAN84LON

- (유의사항) 여러 수입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상호, 주소 표기방법 등에 대한 미국 수입자의 인식차이 등으로 인해 각 수입업체별로 다른 MID를 사용하고 있을 수 있음

예시)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Co. Ltd, 250, 2-Ka, Taepyung-ro,
Chung-Ku, Seoul, Korea

→ ① KRSAMELE2502SEO ② KRSAMELE250SEO

- (권고사항) 미국 주요거래처의 MID를 확인하여 타 거래처나 신규업체와 거래 시 해당 MID 사용을 요청하거나, MID를 거래업체별로 달리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MID를 모두 한국 관세청에 통보해야 함

참고2 미국 수입신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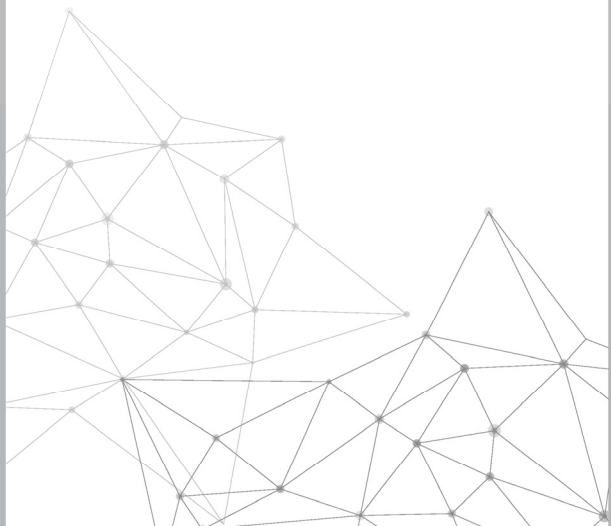
- 미국에서 AEO MRA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서 13번 항목('Manufacturer ID')에 한국 AEO 수출자가 한국과세청에 통보한 MID와 동일한 ID를 기재해야 함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Form Approved OMB No. 1651-0022 EXP. 08-31-2014	
ENTRY SUMMARY					
8. Importing Carrier		9. Mode of Transport		1. Filer Code/Entry No.	2. Entry Type
12. B/L or AWB No.		13. Manufacturer ID		4. Surety No.	5. Bond Type
16. I.T. No.		17. I.T. Date	18. Missing Docs	6. Port Code	7. Entry Date
21. Location of Goods/G.O. No.		22. Consignee No.		10. Country of Origin	11. Import Date
25. Ultimate Consignee Name and Address		26. Importer of Record Name and Address		14. Exporting Country	15. Export Date
City		State		Zip	
27.	28. Description of Merchandise			32.	33.
Line No.	29. A. HTSUS No. B. ADA/CVD No.	30. A. Grossweight B. Manifest Qty.	31. Net Quantity in HTSUS Units	A. Entered Value B. CHGS C. Relationship	34. Duty and I.R. Tax Dollars Cents
Other Fee Summary for Block 39		35. Total Entered Value		CBP USE ONLY	
		\$		A. LIQ CODE	B. Ascertained Duty
		Total Other Fees		REASON CODE	C. Ascertained Tax
36. DECLARATION OF IMPORTER OF RECORD (OWNER OR PURCHASER) OR AUTHORIZED AGENT I declare that I am the ☐ Importer of record and that the actual owner, purchaser, or consignee for CBP purposes is as shown above. OR ☐ owner or purchaser or agent thereof. I further declare that the merchandise ☐ was obtained pursuant to a purchase or agreement to purchase and that the prices set forth in the invoices are true, OR ☐ was not obtained pursuant to a purchase or agreement to purchase and the statements in the invoices as to value or price are tru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 also declare that the statements in the documents herein filed fully disclos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e true prices, values, quantities, rebates, drawbacks, fees, commissions, and royalties and are true and correct, and that all goods or services provided to the seller of the merchandise either free or at reduced cost are fully disclosed. I will immediately furnish to the appropriate CBP officer any information showing a different statement of facts.		\$		D. Ascertained Other	37. Duty
				E. Ascertained Total	38. Tax
					39. Other
41. DECLARANT NAME		TITLE		DATE	
42. Broker/Filer Information (Name, address, phone number)		43. Broker/Importer File No.			
Paperwork Reduction Act Notice CBP Form 7501 (06/09)					

북아메리카(North America)

캐 나 다

(Canada)



1

국가 개요

일반 사항	국 명	캐나다(Canada)
	면 적	998만 4,670km ² (한반도의 46배, 남한면적의 101배)
	수 도	오타와 (Ottawa)
	인 구	3,704만 명(2018년 4월 추정치)
	주 요 도 시	토론토(635만), 몬트리올(414만), 밴쿠버(257만) 등
	민 족	영국계(28%), 프랑스계(23%), 기타 유럽국가(15%), 원주민(2%), 기타 아시안 · 흑인 · 아랍계(6%) 등
	언 어	공용어(영어 59% 및 불어 23%), 기타(18%)
정치	건 국 일	1867년 7월 1일 (영국으로부터 독립)
	정 치 체 계	총리제(연방제)
	국 가 원 수	국가원수: 영국여왕 Elizabeth II(1952년 2월 6일 즉위) 총독: Julie Payette(총리의 추천 / 2017년 10월 2일 취임) 총리: Justin Trudeau(실권자 / 2015년 11월 4일 취임)
경제	화 폐 단 위	캐나다 달러(CA\$)
	1인당 GDP	4만 5,070(2017년)
	교 역 량 (2018년 기준)	수출: 450,278 US\$ Mil 수입: 459,866 US\$ Mil
	주요 교역품	원유, 자동차 및 부품, 금, 천연가스, 항공기, 원목, 의약품, 밀 등

자료원: 캐나다 연방정부, 캐나다 통계청, WITS(wits.worldbank.org)

한 / 캐나다 관계	
교역 규모	대 캐나다 수출(2019년) : 5,567,589 US\$ Thousands 대 캐나다 수입(2019년) : 5,758,663 US\$ Thousands 무역수지(2019년): 11,465,334 US\$ Thousands
교역 품	• 대 캐나다 주요 수출품목 : 승용차, 자동차부품, 휴대전화, 반도체, 타이어, 건설중장비, 가전제품 등 • 대 캐나다 주요 수입품목 : 유연탄, 동광, 알루미늄괴, 철광석, 목재펄프, 원목, 의약품, 유채유 등
투자 교류	• 우리나라의 대 캐나다 투자액 → 100건, US\$ 6억 3,207만 달러 (2017년) • 캐나다의 대한 투자액(Financial Outflow) → C\$ 19억 9,700만 달러 (2017년)
교민	약 22만 942명(2018년 6월 기준)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수출입은행, 대한민국 외교부

2

통관절차

(1)

수출통관절차

캐나다는 수출신고(export reporting)를 통해 위해물품과 규제대상 품목의 통제 및 캐나다 수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과 캐나다를 통과하는 물품의 이동을 관리한다. 수출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수출 신고자, 필요서류 및 수출신고 대상물품과 신고시점, 수출신고 방식과 물품검사, 수출품의 역류 등을 다루고 있다.

가. 수출신고

캐나다 수출품의 신고에 대한 사안은 관세법 Section 95~97.2 및 수출품 신고규정 (Reporting of Exported Goods Regulations)에 규정되어 있다. 관세법 Section 95 및 수출품 신고규정의 Section2에 따르면 수출신고는 수출자, 운송인, 통관 중개인이나 화물 포워더 등과 같은 통관서비스 제공자(customs service providers)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출자는 캐나다 거주인 여부에 상관없이 상업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자등록번호(BN)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의미한다. 다만 캐나다 수출입허가법에 따르면 허가(permit) 신청은 캐나다 거주인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운송인이 수출자를 대신하여 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데, 수출신고를 위해서는 유효한(valid) 운송인등록번호(carrier code)가 필요하다. 운송인 등록번호의 첫 4자리는 특정 운송업체임을 알려주는 고유번호이며, 화물통제서류(CCD)의 첫 4자리가 된다. 수출서류를 미리 전자송부하지 않는 경우 지정된 세관(designated export reporting offices)에 수출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운송인 가운데 수출품 신고규정의 Section13에 따라 CBSA와 MOU를 체결할 경우 수출신고가 면제된다. 이를 위해 수출자는 해당 품목이 이미 CBSA에 신고된 품목임을 입증하는 수출신고증명번호(proof of report)를 운송인에게 제공해주어야 한다. 수출신고증명번호는 수출신고 방식에 따른 양식은 <표 7>과 같다.

〈표 7〉 수출신고증명번호(proof of Report) 양식

종류	내용
캐나다 자동수출신고 (CAED: Canadian Automated Export Declaration)	수출신고증명번호는 23자리로 ① 5자리의 허가번호(licence number) ② 6자리의 authorization ID ③ 연·월의 6자리 및 5자리의 거래번호로 구성된 Form ID로 구성
G7 EDI 시스템	수출신고증명번호는 17자리로 ① authorization ID ② Form ID로 구성
수출신고서 양식 B13A	연/월/일/시간 및 항구코드, 6자리 reference 번호 등으로 구성된 'CBSA의 도장날인'이 수출신고증명번호를 대신할 수 있음
요약신고서 (summary reporting)	수출신고증명번호는 수출자의 고유 식별번호인 요약신고 ID 번호(summary reporting ID number)
통과화물	수출신고증명번호는 CCD 번호로 대신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주요국의 통관제도-캐나다편-

한편 수출품 신고규정의 Section 15에 따르면, ▲짐을 싣지 않은 캐나다 군사수송기, ▲캐나다 국방부에서 수출하는 품목, ▲ 혈액, 장기 등의 응급상황에 따라 수출되는 품목 등에 한해 통관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수출자의 구두신고를 허용한다. 즉, 수출서류 및 허가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1) 필요서류 및 수출신고 대상 품목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 및 수출신고가 필요한 품목은 해당 수출품의 도착지 및 품목의 특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과 캐나다 정부 간 양해각서(MOU)에 따라 미국(푸에르토리코 및 버진아일랜드 포함)으로 수출되는 일반 수출품은 수출신고에서 면제된다. 그렇지만 수출입 관리대상 품목(controlled goods)의 경우 해당 품목의 가치에 상관없이 수출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일부 연목(softwood lumber)의 경우 세관에 수출허가증(permits)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렇듯 미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수출신고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수출품 신고규정의 Section 8에 근거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합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경우 세관직원이 서면으로 수출신고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로 수출되는 <표 8>의 품목은 반드시 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표 8> 미국외 국가의 수출신고 품목

- (a) 수출품의 가치가 2천 캐나다달러 이상인 경우
- (b) 수출 통제 품목
- (c) 캐나다를 출발하여 미국을 통과하여 제3국으로 운송되는 품목
- (d) 보세창고(bonded warehouse)에서 수출되는 품목, 수출되기 이전에 B3 양식하에 수입된 품목(주류나 담배 제외)으로 해외 판매가 결정되었으나 즉시 수출이 어려워 보세창고에 보관된 품목을 의미
- (e) 수리 및 추가 제조과정이 이루어진 경우
 - 임시로 수입된 품목에 대한 수리 및 추가 제조과정의 가치가 2천 캐나다달러 이상인 경우로, 여기서 '수리'는 해당 품목의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며, '추가 제조과정'은 해당 품목이 전혀 새로운 상품으로 제조되는 것을 의미함
- (f) 특정한 비상업용 물품(2천 캐나다달러 이상)
 - 선물이나 원조 형태의 음식/의류 등의 기부
- (g) 기타 제품
 - 건축업자의 기계 및 설비기구(계약이 끝나고 1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이후 캐나다로 재이송되는 품목), 샘플 및 리스품목 등

자료: 한국조세제정연구원(2013) 주요국의 통관제도-캐나다편-

통상 수출품의 가치가 2천 캐나다달러 이하일 경우 수출신고가 면제되며, <표 9>의 경우도 수출신고가 면제된다.

<표 9> 미국외 국가의 수출신고 면제 품목

- (a) 캐나다를 통과하여 제3국으로 이동되는 외국물품
- (b) 캐나다에서 제조되었으나 다른 국가로 이동되어 여타 국가로 선적될 경우
- (c) 임시로 이동(temporary entry basis)된 품목
- (d) 보세창고(bonded warehouse)에서 수출되는 품목으로, 캐나다로 반입되지 않고 보세창고에 보관된 수입품을 의미
- (e) Sufferance warehouse에서 수출되는 품목으로, 캐나다 밖에서 제조된 품목으로 세관에서 반출되기 이전에 보세창고에서 수출되는 품목
- (f) 기타
 - 건설업자의 기계 및 설비기구, 리스품목, 2천 캐나다달러 이하 가치의 수리품목 등

자료: 한국조세제정연구원(2013) 주요국의 통관제도-캐나다편-

〈표 10〉 캐나다내 수출신고 시 필요서류 및 신고대상 품목

분류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푸에르토리코 및 버진아일랜드 포함)	미국외 여타 국가
통제품목 (수출금지 및 규제품목 등)	- 수출허가서, 증명서 및 면허 - 필요한 경우 관련 정부 부처의 서류 - 수출신고 필요 없음	- 수출허가서, 증명서 및 면허 - 필요한 경우 관련 정부 부처의 서류 - 수출신고서^{주1)}
일반 품목	- 수출신고 필요 없음	- 수출신고서^{주1)} (해당 물품 가치가 2,000C\$ 이상인 경우)

주1) EDI 방식 및 인터넷으로 수출통관을 진행할 경우 수출신고서 대신 CAED 및 G7 EDI 신고서 사본 제출이 요구됨

자료: 한국조세제정연구원(2013) 주요국의 통관제도-캐나다편-

2) 수출신고 시기

수출자는 지정된 세관(export reporting office)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물품이 수출되는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출신고 시점에 달리 적용된다. 한편 산 동물, 벌크화물, 시간에 민감한 품목 등은 수출 바로 이전에 수출신고를 하면 된다.

〈표 11〉 수출 방식에 따른 수출신고 시점

-
- (a) 우편으로 수출되는 품목은 우체국에 배달되기 최소 2시간 전에 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 (b) 해상으로 수출되는 품목은 물품이 선적되기 최소 48시간 이전에 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 (c) 항공으로 수출되는 품목은 물품이 선적되기 최소 2시간 전에 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 (d) 철도로 수출되는 품목은 물품이 선적된 열차가 조립되기 최소 2시간 전에 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 (e) 여타 다른 방식으로 수출되는 품목은 수출 바로 이전에 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

자료: 한국조세제정연구원(2013) 주요국의 통관제도-캐나다편-

3) 수출신고 방식

캐나다의 수출신고 방식은 인터넷을 통한 수출통관 방식 및 EDI 방식이 있으며, 수출신고서 양식인 Form B13A를 제출하거나 요약신고서(summary report)로 대체하는 방식이 있다.

〈표 12〉 캐나다 수출신고 방식

분류		내용
수출 신고 방식	CAED	- 사전 인증 수출자(중개인)가 개별 사업소에서 전산으로 캐나다 정부에 수출신고 - 단, 통제품목은 CAED 신고서의 사본 및 수출허가서 등을 CBSA에 제출
	G7 EDI	- G7 국가의 관세청 개발 프로그램, 캐나다 수출자의 수출신고 전자송부 가능 - G7 EDI 수출신고 이용은 캐나다 통계청에 신청서(Form BSF158) 제출 - 캐나다 통계청은 사전 스크리닝 작업을 거쳐, 승인된 ID, 허가번호를 CBSA에 발행하고 세관은 해당 수출자 등록 - G7 EDI 수출신고 프로그램 참여시 수출신고서(Form B13A) 제출 면제, G7 국가에서는 해당 수출자의 자료가 수입자 및 중개인에 의해 수입국에서 재사용 가능
수출 신고서 양식	Form B13A	- 인터넷 및 EDI 방식 미사용 수출자는 Form B13A를 이용하여 수출신고 - 최신 버전을 사용하지 않으면 통관서류 작성오류벌금제도(AMP) 적용 - 수출자는 반드시 도장 날인 (연/월/일 및 시간 포함, 항구번호 및 6자리 참고번호 날인하여 수출신고증명번호(proof of report)로 이용) - Form B13A 3부 준비(세관 및 운송인에게 송부, 수출자 보관)
	Summary report	- 사전 승인 수출자가 물품 수출 이후, 월별 요약신고서 제출 허용 - 기본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품목을 대상으로 적용 - 벌크제품으로 동일제품이면서 수출자가 세관으로부터 해당 물품이 요약신고서 프로그램에 적합한 신청자격을 갖추었음을 알리는 서면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 월별 요약신고서 제출 허용

자료: 한국조세제정연구원(2013) 주요국의 통관제도-캐나다편-

나. 물품검사

관세법 Subsection 99(1)(c)에 수출품 검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의거 캐나다 세관은 선별적으로 수출품 검사를 한다. 세관에 따라 수출신고와 물품검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항구나 보세창고(sufferance warehouse)에서 물품이 검사되도록 조치하기도 한다.

세관은 물품이 CBSA에 신고된 이후 캐나다에서 떠나는 시점까지 언제든지 물품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세관직원은 수출신고서 및 제출 서류를 검토하면서 물품검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며, 만약 물품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해당 품목의 수출자나 운송인에게 보세창고로 물품을 운송할 것을 요구한다.

다. 수출품의 억류

캐나다 세관은 수출품 통관시

(a) 통제대상인 수출품에 대해

-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 수출허가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수출자 및 수출허가서에 제시된 정보상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 수출허가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등

(b)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관세법의 Section 101에 따라 세관직원이 해당 수출품이 법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소명될 때까지 억류(detention)가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기타 관련 기관이 서면 확인서 및 수출자의 추가 정보 제공, 유효한 수출허가서, 수출자 및 수출허가서에 제시된 정보상에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채무 이행 및 세관직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면 수출품에 대한 억류가 해지된다.

(2) 수입통관절차

캐나다 관세청에서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는 않는다. 이는 수입제품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예전부터 주기적으로 수입되는 제품, 안전성과 국민 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없는 제품 혹은 과거 수입규정 위반 사례가 없었던 수출입업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물품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초기 수출되는 제품이나 농수산물, 식료품, 의약품, 의료기기, 수출입 허가법, 수입규제 조치법 등에 적용되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불규칙 선택 검사(Random Sampling)를 통해 수입 서류와 제품의 부합 여부, 제품 안전성, 위생상태 등을 확인해 수입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만약 서류상의 오류나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나 서류상의 오류 발생 시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수입통관에서는 캐나다내 수입자의 사업자등록, 수입신고(reporting) 및 관련 서류, 물품의 반출(release of goods), 검사(examinations) 및 물품보관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물품의 반출과 관련하여 캐나다의 최소서류통관제도와 신속한 물품 반출을 위해 제공되는 전자통관제도, 약식통관(line releases)제도 등을 다루고 있다.

가. 수입자의 사업자등록

캐나다는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한데, 이는 Business Registration Online(BRO)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통관서류 제출과 관세 및 제세 납부 등 세관과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요구되며, 15자리의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umber: BN)를 받아야 한다. 한편 통관중개인(licensed customs brokers)이 수입통관 절차를 대신해주기도 하는데, 이를 이용할 경우 중개인에게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써주어야 한다.

나. 수입신고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상업용 제품은 캐나다 관세법(Customs Act) Section 12에 따라 캐나다 세관(CBSA)에 보고되어야 한다. 화물에 대한 도착 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화물 이동에 대한 세관의 통제를 가능케 하며, 관세 및 제세 부과와 국가안전 보장 등을 위해 필요로 한다.

수입화물이 캐나다로 운송되는 방식은 항공(air)과 선박(marine) 외에도 고속도로(highway)와 철로(rail)가 이용되는데, 운송방식에 따라 수입신고 방식이 달리 적용된다. 우선 항공이나 선박이 이용될 경우 외국공항이나 항구에서 물품을 적재하거나 24시간 전에 관련 데이터를 CBSA에 전자송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가 도입한 Advance Commercial Information(ACI)프로그램의 필수요구 사항이다.

항공화물(Air Cargo)은 화물이 처음으로 도착할 곳에 실제로 도착하기 4시간 전에 화물운송장(waybill)에 관련 정보를 송부해야 한다. 선박화물(Marine Cargo)의 경우 물품의 선적지 및 화물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먼저 미국이나 푸에토리코에서 적재된 경우 화물 유형에 상관없이 캐나다 항구에 도착하기 24시간 전에 관련 정보가 전자송부되어야 한다. 이동 시간이 24시간이 안 될 경우 선박이 미국에서 출발한 시점에 전자송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과 푸에르토리코를 제외한 외국에서 물품이 적재되는 경우 화물 유형에 따라 관련 정보 송부 시점이 다르게 적용된다. 벌크(bulk)나 면세대상의 혼재화물(exempted break bulk)의 경우 캐나다 항구에 도착하기 24시간 전에 관련 정보를 송부하면 되지만, 면세대상이 아닌 혼재화물(non-exempted break bulk)은 외국 항구에서 물품을 적재하기 24시간 전에 관련 정보를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속도로(highway mode)를 이용하는 경우 바코드 방식의 화물통제서류(Cargo Control Document, CCD)로 수입신고를 하거나, 철로(rail mode)를 이용하는 경우 캐나다로 도

착하기 이전에 전자통관(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물품을 소지한 사람이 실제로 캐나다에 도착한 경우 구두신고(orally reporting)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은

- a) 화물통제서류(CCD)
 - b)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c) 캐나다 세관 물품분류양식(Canada Customs Coding Form, Form B3)
 - d) 기타(원산지증명서, 수입품목별 관련기관 서류, 식물검역증명서 등)
- 의 서류가 CBSA에 제출되어야 한다.

1) 화물통제서류

화물통제서류(CCD)는 운송인이 CBSA에 화물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CCD는 Form A8A(B)이다. 이 서류는 반드시 바코드 방식의 화물통제번호(Cargo Control Number, CCN)가 있어야 하는데, 바코드의 첫 네 글자는 운송인의 고유번호이다.

CCD는 수입물품의 최초 도착기록이며, 이 서류는 보세지역에서 내륙의 CBSA 사무소, 보세창고 등으로 이동될 때에도 이용된다. 운송인은 해당 선적품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CCD의 복사본을 화주에게도 전달해야 한다. CBSA에 제출되기 전에 발생한 모든 변경사항은 원본 CCD의 모든 복사본에 반영되어야 하며, 전산방식으로 제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서류가 CBSA에 이미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long room copy나 CBSA delivery authority copy가 중개업자 혹은 화물 인수자(consignee)에게 제출되지 않았다면 서류의 수정이 가능하다. CCD가 재작성될 경우 재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이전의 원본 서류와 동일한 화물통제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며, 제품의 설명을 기재하는 부분에 원본이 재작성된 이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재작성된 서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물 인수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서류 뒷면에 소인일 찍어서(date stamped) 운송업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때 원본은 CBSA에 의해서 파기되며, 재작성된 서류의 복사본을 CBSA가 보관한다.

화물통제서류는

- 도착전 검토시스템(PARS)을 통해 약식 통관이 허용된 수입품,

- 물품이 도착한 세관사무소에 통관물품 분류양식 B3(type C)을 제출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한 수입자에 의해 운송된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2)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캐나다 세관은 캐나다로 들어오는 모든 상업용 제품(선적)에 대해

- (a) <표 13>에 대한 모든 정보기가 기재된 상업용 송장
- (b) 상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이미 지불된 가격, 지불예정인 가격, 상품의 수량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정확한 명세서와 <표 13>에 기재되어야 할 나머지 정보가 표기된 캐나다 세관 송장(Canada Customs Invoice, CII) 양식 중 한 가지의 서류제출(영어 또는 불어)을 요구한다.

<표 13> 캐나다 송장에 표기되어야 할 정보

-
- ① Vendor(Name and Address): 수출업체의 이름, 주소 기재
 - ② Date of Direct Shipment to Canada: 수출상품이 캐나다로 직접 선적되는 일자 기재
 - ③ Other References: 상업송장의 번호, 구매자의 주문번호 등 기재
 - ④ Consignee: 캐나다에 있는 수하인 및 수하법인의 주소, 이름 기재
 - ⑤ Purchaser's Name and Address: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기재
 - ⑥ Country of Transshipment: 캐나다로의 수출상품이 경유지에서 환적된 국가 기재
 - ⑦ Country of Origin of Goods: 송장상품의 원산지는 통관관세, 수량제한, 무역과 관련한 기타 조치 등의 적용에 대한 규정 기준에 따라 상품이 재배, 생산 또는 제조된 국가를 말함
 - ⑧ Transportation: Give Mode and Place of Direct Shipment to Canada: 운송방법 및 캐나다 직송 선적지 기재
 - ⑨ Conditions of Sale and Terms of Payment: 매도인과 구매자 간 합의된 판매조건 및 지불조건 기재
 - ⑩ Currency of Settlement: 매도인의 요구에 따른 결제통화 기재
 - ⑪ Number of Packages: 포장 수량 기재
 - ⑫ Specification of Commodities
 - Kind of Package: 포장의 종류(Cases, Cartons) 표시
 - Marks and Numbers: 상표(descriptive marks)와 포장상품에 기입된 번호 기재
 - General Description and Characteristics: 일반적 상품명세 기재
 - ⑬ Quantity: 수량은 적합한 측정단위로 기재
 - ⑭ Unit Price: 상품당 가격 기재
 - ⑮ Total: 결제통화로 지불된 또는 지불예정인 가격 기재
 - ⑯ Total Weight: 순(net) 중량 및 총중량 기재
 - ⑰ Invoice Total: 송장에 나타난 상품의 전체 가격 기재
 - ⑱ Self-Explanatory
 - ⑲ Exporter's Name and Address: 수출자의 주소와 이름 기재
 - ⑳ Originator: 매도업체 주소와 성명 기재
 - ㉑ CBSA Ruling: 선적에 적절한 CBSA ruling의 일자과 번호 기재
 - ㉒~㉕ 해외수송을 위해 부가적인 포장이 요구되는 경우 수출 포장 금액 기재
-

자료: 한국조세제정연구원(2013) 주요국의 통관제도-캐나다편-

다만 선적금액이 2,500 캐나다달러를 초과하지 않거나 캐나다산 반송품 가액의 인상분이 2,500 캐나다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의 통관은 상업용 송장이나 상품금액을 기재한 기타 서류를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캐나다 세관 물품분류양식(Canada Customs Coding Form)

캐나다 세관 물품분류양식 Form B3은 「Accounting for Imported Goods and Payment of Duties Regulations」의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캐나다에 물품이 최종 반입되는 경우, 물품의 가치에 상관없이 작성되어야 한다. Form B3에는 수입업자의 이름 및 주소, 원산지 등의 기본적인 기재란을 포함하여 거래번호, 관세조치 및 무역협정 여부, 관세품목 분류, 과세대상 물품가치 적정한 관세율 및 세율, SIMA 코드, 소비세율, 상품용역세율(GST), SIMA 평가, 보세창고번호, 화물통제번호, 납부해야 할 관세의 계산액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거래번호는 Form B3의 모든 유형(type)에 적용되는 것으로 상품이 반출되는 시기에 CBSA에 의해 부여된 14자리 번호이다. 이 숫자는 반드시 바코드 양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적용가능한 모든 허가, 인증서 및 면허에 입력하거나 명확하게 주석을 해야 한다. 거래번호는 7년 3개월 동안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만약 거래가 조정된다면 7년 3개월의 기간은 최종 거래조정을 결정한 날짜부터 다시 시작된다.

Form B3의 유형은 AB, AD, C, D, F, H, M, V 등 8개가 있다. 이 중 Form B3 C type은 최종결산(final accounting) 양식으로 △ 관세 및 제세의 납부 이전에 상품을 반출하거나, △ 관세 및 제세의 납부 이후에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사용된다.

다. 물품의 반출(통관)

캐나다의 일반적인 통관절차는 관세 납부와 통관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화물통제서류(Cargo control Document), 송장(Invoice), 캐나다 세관 물품분류양식(Canada Customs Coding Form), 수입허가서 또는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ion), 원산지 증명서 등 수입관련 공통제출 서류가 필요하다. 특별한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일반서류통관제도(Release on Full Documentation, RFD)라 하는데, 이 외에도 최소의 서류로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관세 납부 이전에 물품을 통관하는 최소서류통관제도(Release on Minimum Documentation, RMD)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자통관(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시스템 및 물품의 신속한 반출을 위한 약식통관(line release)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최소서류통관제도(Release on Minimum Documentation)

최소서류통관제도(RMD)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시점까지 통관 관련 위반사항이 없었고, 향후에도 문제될 만한 부분이 없는 업체 ② 통관 물품에 대해 별도의 검사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③ 전년도 월평균 관세 납부액에 해당하는 수준의 보증금을 사전에 예치(다만, 보증금의 최소 금액은 250 캐나다달러이고 최대 금액은 1천만 캐나다달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RMD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인 화물통제서류(CCD), 상업용 송장 또는 다른 허용문서, 원산지증명서·허가서·면허 등이 필요하다. 상업용 송장 또는 다른 허용문서의 경우 두 가지 문서 모두 수출자, 수탁인,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수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BN), 제품의 단위 및 수량, 제품의 금액 및 결제통화, 제품의 상세 설명, HS 10단위 코드, 제품의 원산지, 송장의 페이지 수, 바코드로 표시된 거래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전자통관시스템

캐나다의 전자통관시스템은 <표 14>와 같다.

<표 14> 캐나다의 전자통관시스템

시스템 명	내용
Releases Notification System	통관 결정사항을 시스템 참여자에게 적기에 효과적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구축. 물품이 반출되거나, 도착전 검토시스템(Pre-arrival Review System, PARS)에 의한 승인시 EDI 방식으로 RNS 메시지를 수입업자, 통관중개인, 창고운영자, 운송업자에게 송부
Customs Automated Data Exchange System(CADEX)	수입업자와 중개업자가 이미 반출한 제품에 대해서 CBSA에 각종 통관양식을 전자통신 형태로 송부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
Customs Declaration (CUSDEC)	CADEX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나 국제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여 관련 정보가 CBSA에 제출
Accelerated Commercial Release Operations Support System(ACROSS)	수입업자와 통관중개인이 반출 및 송장과 관련한 정보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통관시스템 세관의 조사관은 반출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반출관련 권고사항(도착 이전) 혹은 반출결정문(도착 이후)을 작성하고, EDI를 통해 해당 수입자나 중개업자에게 다시 절차와 관련한 공지 혹은 반출 결정을 전달한다. 캐나다의 식품검역국(CFIA)이나 천연자원부, 교통부 등 정부 부처의 통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확대 적용되고 있고 CFIA 관련 사항이 EDI를 통해 제출되면 CFIA에 전송하여 통관 관련 권고 및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료: 한국조세제정연구원(2013) 주요국의 통관제도-캐나다편-

3) 약식통관제도

캐나다의 약식통관제도는 <표 15>와 같다.

<표 15> 캐나다의 약식통관제도

제도명	내용
도착전 검토시스템 (Pre-arrival Review System, PARS)	수입업자나 통관중개인이 물품이 캐나다에 도착하기 이전에 사전검토 및 절차 진행을 위해 RMD 관련 정보를 CBSA에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물품이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통관 절차 혹은 검사 절차를 위해 다른 곳으로 보내는 과정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줌 캐나다 식품검역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에 의해 통제되는 제품을 포함하여 허가, 면허, 및 인증을 필요로 하는 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음
관세 자율사정프로그램 (Customs Self-Assessment program, CSA)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산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CBSA에서 사전에 승인된 수입자에게 간소화된 수이 통관 절차를 적용하는 제도 국경통관, 무역정보제출, 조정, 납세액 통지 및 납부 등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
외통부/세관의 자동허가제도 (Foreign Affairs/Customs Automated Permit System, EXCAPS)	수출입허가법에 의해 관리되는 품목의 통관을 위해서는 수입자나 중개인이 반드시 외교통상부로부터 수입허가(import permit)를 받아야 한다. 수입자 혹은 중개인이 통관 정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외교통상부가 허가 정보를 ACROSS를 통해 전자송부하게 되면, 세관에서는 양측의 정보가 상호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품목을 통관시키는 제도 수입자는 세관에 수입허가서를 제출하는 과정 생략
세관 · 식품검사국의 연계 (Customs ·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Interface)	검사를 요하는 식품의 통관은 지정된 장소의 검역소에서 전자통관이 진행될 수 있다.
현금지급 시 통관제도 (Commercial Cash Entry Processing System, CCEPS)	상업용 수입품의 자가통관(self-serve automated system) 제도로 개인이나 소량의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수입자가 세관 창구에 비치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입품에 대한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동 제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 관세 및 통관 비용을 계산하고 Form B3 사본을 받아 물품을 통관 및 인수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주요국의 통관제도-캐나다편-

라. 물품검사

캐나다 세관은 수입제품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수입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관세법 Section 99에 근거하여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대상 화물을 선정하거나 합리적인 수준의 샘플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다만, 검사의 빈도수는 수입업자 및 해당 화물과 관련한 다른 개인 혹은 기관의 과거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과거 기록, 수입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상업화물에 대한 검사는 일반적으로 입항지에서 이루어지고, 위험수준에 따라 검사기간이나 강도가 달라진다. 검사 과정에서 빠르고 안전한 밀수품 및 위험화물의 확인을 위해 16가지 이상의 기술이 활용되며, 주요 검사 시스템으로는 X-ray 판독, gamma-ray 판독, 방사선 측정, 차량형 탐지 시스템(방사선 측정의 일종), 휴대용 전자 방사선량계, 소형·휴대용 이온 이동형 분석기(Ionscan, Sabre 2000, Sabre4000), 밀수탐지 장치를 갖춘 트럭 등을 들 수 있다.

운송방식별 구체적인 검사 방식은 먼저, 항공화물의 밀수품 검사는 정차 중 비행기를 직접 검사한다. 또한 창고로 보내진 항공화물은 시각 탐지를 위해서 개봉될 수 있으며, 마약의 존재 유무 확인을 위해 이동식 마약탐지 키트를 사용하거나 세관의 탐지견 팀이 밀수품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운 컨테이너 화물은 방사선 측정시스템을 통해 검사된다. 고속도로로 운송화물은 2차 심사가 필요한 트럭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항구에서 VACIS 트럭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장비를 이용하여 길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밀수품 검사 혹은 적하목록과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트럭 내부 물품의 전량을 하적하여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철도운송화물은 고위험화물에 해당될 경우, 전량 검사를 위해 별도로시설로 보내줄 수 있다. 밀수품 검사를 위해서 화물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하적할 수도 있으며, 밀수품 검사는 대체로 해운화물과 유사하다.

마. 물품 보관 및 처분

1) 보세창고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은 캐나다로 수입되었으나 반출되지 않은 상태로, 관세, 반덤핑, 상계관세 및 상품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와 같은 내국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되기 전까지만 관세 납부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캐나다 보세창고는 ‘Sufferance warehouse’와 ‘Bonded warehouse’로 나뉜다. 모든 세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소유 및 운영되는 시설이나 Sufferance warehouse는 최대 40일까지의 단기보관 및 수입품 검사 목적으로 이용된다. 반면 Bonded warehouse는 위탁수입 시 재고 보관 시 또는 수출용으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곳으로 최대 4년까지 물

품보관이 가능하다. 품목의 종류에 따라 보관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주류 및 담배 제품의 경우 5년 동안의 보관이 허용된다.

보세창고 운영인은 세관직원이 행하는 물품검사를 위해 충분한 공간, 장비 및 인력 그리고 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보세창고 운영 및 재고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등을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기록관리시스템(Record Keeping System)을 통해 각종 기록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즉, 보세창고 내에서 보세창고로의 이동, 보세창고 내에서의 이동, 다른 보세창고로의 이동 및 다른 보세창고로부터 자사로의 이동, 조작, 포장, 개봉, 변경, 타 화물과의 결합 등을 포함한 허용 가능한 모든 활동의 기록, 보세창고에서의 모든 이동 등 모든 화물의 이동경로를 기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CBSA에 의한 통관 허가 이전에 세관이나 highway frontier examining warehouse 또는 sufferance warehouse에서의 수입물품 보관시한은 40일이며, bonded warehouse는 창고에 들어간 날짜부터 4년까지 상품을 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 특정한 경우 <표 16>과 같이 보관시한이 연장될 수 있는데, 할당된 보관시한의 만료 이전에 수입업자나 중개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관세법 Subsection 37(2)에 따라 세관이 보관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표 16> 캐나다의 전자통관시스템

물품 유형	최대 보관시한	최대 연장가능한 시한
항공기, 선박, 해양케이블, 석유시추기 공급 장치 및 관련 부품 및 장비의 예비 부품(국내 소비용이 아닌)	15년	1년
술	5년	1년
수입물품규정마킹에 따른 마킹용 또는 컨벤션, 전시회, 무역박람회 전시용 물품	90일	—
나머지 모든 물품	4년	1년

자료: 한국조세제정연구원(2013) 주요국의 통관제도-캐나다편-

2) 보세운송

캐나다는 CBSA가 제시하는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도착시점에 CBSA에 의해 통관 처리가 되지 않은 보세물품은 통관을 위해서 다른 CBSA 사무소나 특정한 보세창고로 이동되어야 한다. 즉, 선박 혹은 기차를 통해 캐나다로 들어온 화물은 고속도로 운송

업자를 통해서 화물통제서류(CCD)상에 기재된 최종 목적지로 전해지게 된다. 이 경우 목적지에 있는 highway frontier examining warehouse는 선박 혹은 기차운송의 CCD와 관련한 선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최초 VVF에 목적지의 CBSA 사무소의 명확한 지역이 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박운송물품이 목적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육로운송과 관련한 인허가 및 보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 면제대상은 <표 17>과 같다.

<표 17> 육로운송 인허가 및 보안 규정의 적용 면제 대상

- △ 거주인의 개인용도에 따른 수입품목이나 HS 9805.00.00과 HS 9808.00.00 항목에 해당하는 수입인 경우
- △ 컨벤션이나 기타 공공전시회에서 전시를 위한 목적으로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입되는 물품
- △ 수출화물을 신기 위해 옮겨지는 빈 화물컨테이너
- △ 폭발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
- △ 한 CBSA 관할영역에 있는 보세창고로부터 CCD상에 기재된 다른 CBSA 관할구역의 보세창고로 이동되는 물품
- △ 고속도로로 운송되었고, Newfoundland의 Argentina로 통관 처리되는 미국정부 재산의 품목
- △ 면세점으로 운송되는 물품 등
- △ 특정한 형태로 운송되는 양주, 와인 및 담배제품 등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주요국의 통관제도-캐나다편-

3) 물품의 처분

관세법 물품보관 규정(Storage of goods regulations) 및 단기간의 물품보관 규정(Regulations respecting the storage of goods)에 수입신고 이후 특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세관에 남겨진 물품의 처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 수입품의 경우 수입신고 후 40일,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4일 이후 세관에 남겨진 물품은 관세법 Subsection 37(1)에 규정된 highway frontier examining warehouse, bonded warehouse 등 안전장소(safe-keeping)에 보관된다. 한편 담배, 화기류나 무기류의 경우 14일, 술은 21일이 지나면 압류된다.

3

AEO 제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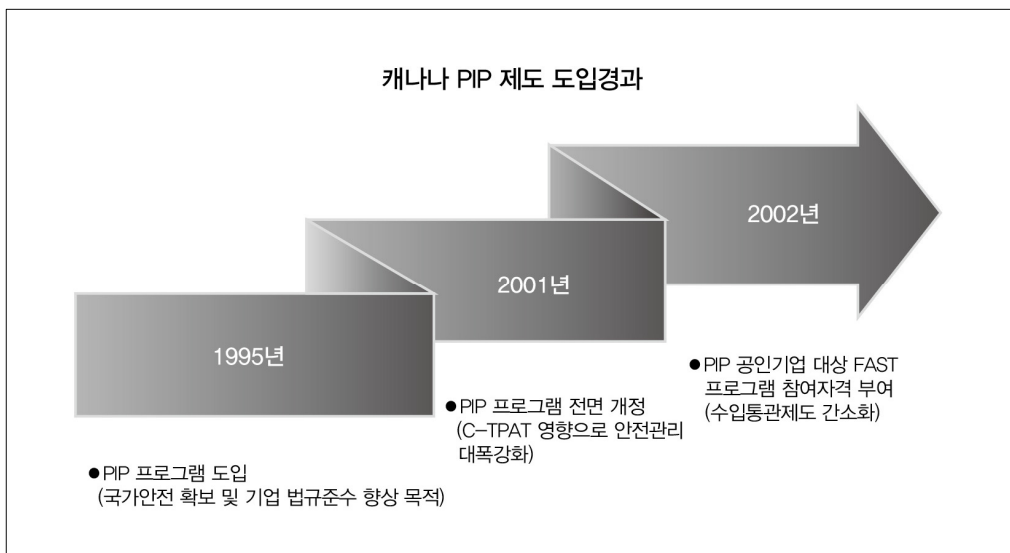
제도의 도입

가. 도입 경과

캐나다 국경서비스국(Canada Border Service Agency, CBSA)은 국가 안전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 파악을 위한 적극적 대응 차원에서 PIP(Partners in Protectio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995년 기업들의 통관관련 규정 숙지 및 법규 준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PIP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수출화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미국과의 AEO MRA 체결 등을 위해 WCO SAFE Framework를 기반으로 미국의 C-TPAT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또한, 2002년 PIP 공인기업들에게 캐나다와 미국 간 공동으로 참여한 간소화된 수입 통관제도인 FAST(Free and Secure Trade)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부여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이 PIP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했다. 캐나다의 PIP 제도의 도입경과를 정리하면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캐나다의 PIP 제도 도입경과



캐나다 PIP 제도는 관세법(Customs Act) 11조~13조, 107조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캐나다 국경서비스국(Canada Border Service Agency)에서 제도 개정, PIP 인증심사, 사후관리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PIP는 모든 수출입 관련 공급망에 적용되며 총 8개의 공인대상⁹⁾으로 이루어진다.

나. 운영 현황

캐나다의 PIP 인증을 위한 기업의 공인기준은 미국의 C-TPAT 제도와 동일하게 공급망 당사자별로 최소보안기준(Minimum Security Requirements, MSRs)이 구분되어 있다. 각 공인기준은 정책/규정/매뉴얼 등 절차에 따른 실행을 전제로 하며 <그림 11>과 같이 크게 거래업체 관리,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보안, 출입통제 관리, 인사 관리, 취급절차, 시설과 장비 관리, 정보기술 보안, 보안 교육, 위험평가로 구분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업체관리 기준은 운송업체, 제조업체, 원자재 및 조립품 공급업체, 서비스 공급업체 등 거래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체결을 하기 전에 거래업체 평가를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보안 기준은 컨테이너, 트럭, 트레일러 등 운송수단에 대한 관리이다. 운송수단은 비인가자의 침입과 테러물품의 은닉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수출용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에 ISO 17712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이 강화된 봉인(High Secret seal)이 요구된다.

셋째, 출입통제 관리 기준은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임직원, 방문자 등 접근통제 관리이다. 모든 통제구역에 대하여 임직원, 방문자, 거래업체에 대한 식별체계 및 통제구역에 시건된 접근통제장치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넷째, 인사관리 기준은 채용예정자 및 임직원에 대한 관세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관리이다.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채용예정자 및 임직원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며 위반사항 발생 시 해당직원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다섯째, 취급절차 관리 기준은 물품의 통관에 사용되는 정보 및 문서를 정확하게 하고, 교환이나 손실 및 오류정보의 개입으로부터 보호되는 절차마련이다. 수출입 서류의 수취,

9) 캐나다 공인대상 : 수입업체, 수출업체, 운송업체(철도, 해상, 항공, 내륙), 관세사, 물류업체(특송), 창고운영업체, 화물운송주선업체, 선박업체

신고, 운송, 보관 등 각 단계별 프로세스에 대한 무결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업무 절차 마련 및 이상상황, 불법사항·협의사항 식별 시 보고절차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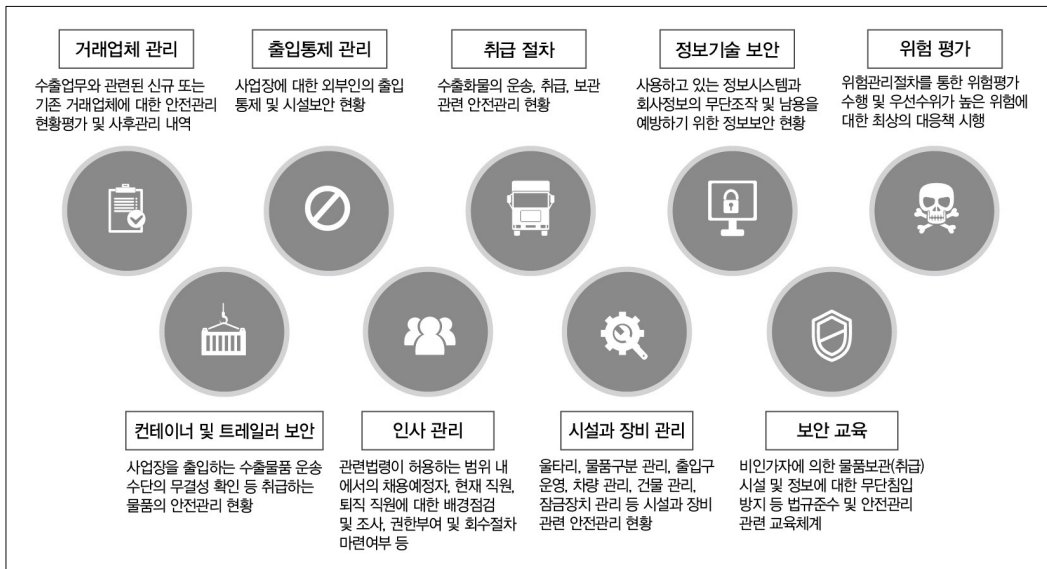
여섯째, 시설과 장비 기준은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외부에 대한 무단접근 예방관련 울타리 등 물리적 장벽 및 차단물 설치, 출입구 및 시설에 감시카메라, 적절한 조명, 정보장치, 잠금장치, 인력배치 등을 통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일곱째, 정보기술 보안 기준은 정보의 오남용, 부적절한 교환, 정보자산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안 절차 및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여덟째, 보안 교육 기준은 관세법, 수출입신고 관련 취급절차, 비인가자 침입 등 이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처리하고 보고하는 절차 교육, 물품을 취급하는 직원과 우편물을 취급하는 직원에 대한 추가 교육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위험평가 기준은 신청업체의 수출입 업무 프로세스상 발생된, 발생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을 식별, 해결하기 위한 위험평가 계획, 식별, 분석, 평가, 관리대책 수립 및 실행 관련 위험 관리 절차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위험평가를 통해 결정된 우선순위가 높은 위험에 대해 비용, 시간, 가용자원과 대응책의 적절성·효율성·효과성을 고려한 최상의 대응책 시행이 요구된다. 전반적인 PIP의 최소보안기준은 <그림 11>과 같이 정리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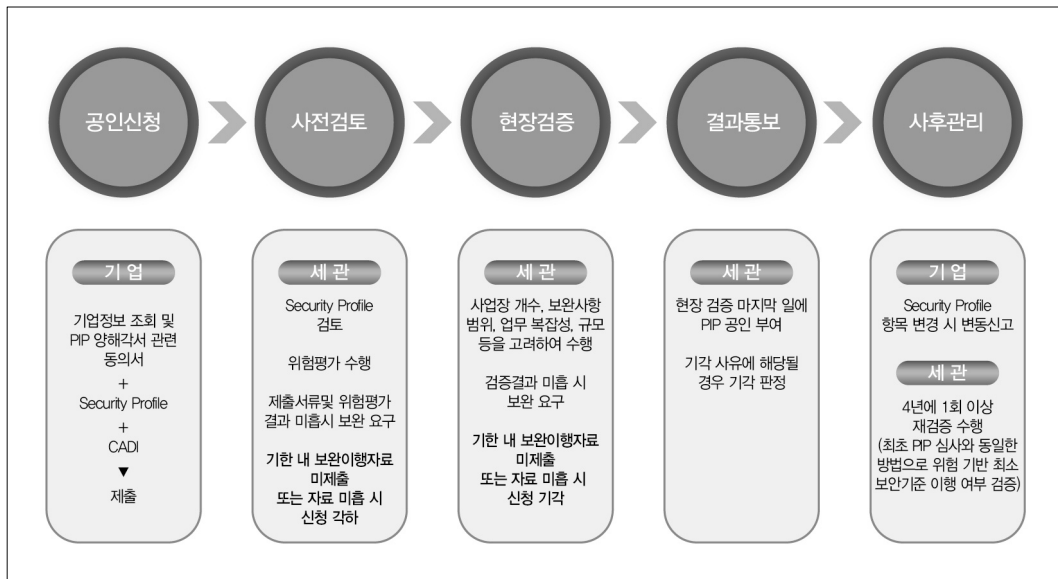
<그림 11> 캐나다의 PIP 최소보안기준



(2) 공인 절차

PIP 공인절차는 공인신청, 사전검토, 현장검증, 결과통보,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이를 도식화하여 정리하면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캐나다의 PIP 공인절차



가. 공인 신청

기업이 PIP 공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첫째, "Trusted Trader Portal(TTP)"를 통한 온라인 회원가입 후 캐나다 정부의 기업 정보 조회(Government of Canada Credential), 책임과 권한이 명시된 PIP 양해각서(PIP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다.

둘째, 신청부문 최소보안기준(MSRs)에 따른 기업 "Security Profile"을 작성하고 MRA 체결국과의 혜택 적용을 위한 "Certification and Authorization to Disclose Information(CADI)" 작성 후 제출한다.

나. 현장 검증

업체의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면 캐나다 국경서비스국 소속 심사직원이 제출된 “Security Profile”에 대해 검토하고 위험 평가를 수행한다. 제출서류 및 위험평가 결과 미흡시 시스템을 통해 보완이 요구되며 업체가 해당기간에 보완이행자료 미제출 또는 자료 미흡시 신청이 각하된다.

심사 직원은 사전 검토 결과 충족 업체에 대해 현장검증을 수행한다.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수행하는 C-TPAT 현장검증을 최근 2년 내 수검 받았다면 현장검증 생략이 가능하며 현장검증 기간은 사업장 개수, 보완사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수출입 업무의 복잡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거래업체 현장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장검증 결과 미흡사항은 시스템을 통해 보완이 요구되며 업체가 해당기간에 보완이행자료 미제출 또는 자료 미흡 시 신청이 기각된다. 보완기한은 보완 통보일로부터 90일간 주어지며, 보완이행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시 업체는 최대 180일간 보완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다. 공인 결과보고(통과/기각)

심사 직원은 현장 검증 결과 통과업체에 대해 현장 검증 마지막일에 PIP 공인을 부여한다. PIP guideline에서는 업체의 PIP 신청 관련 기각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표 18>과 같다.

<표 18> 캐나다의 PIP 공인 기각 사유

1. 허위자료 제출
2. 캐나다 국경서비스국에서 제시한 특정기간 동안 추가자료 미제출 또는 자료 미흡
3. 업무 프로세스, 거래업체, 보안 이행현황, 사업장 변경, 담당자 변경 시 변동신고 미이행
4. 자격요건 또는 최소보안기준 미충족
5. 위험평가/현장검증 결과 미흡
6. 현장검증 거부
7. 보완사항에 대한 해당기간 내 보완이행자료 미제출 또는 자료 미흡
8. 공인심사 기간 중 관세법, 형사법, 국회 입법에 명시된 사항 위반내역 발생

신청 업체가 상기 기각 사유 발생 시 기각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 PIP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관세법, 형사법, 국회 입법에 명시된 사항 위반으로 인한 기각 시 재신청이 불가하다.

라. 사후관리

1) 정기 변동보고

PIP 인증업체는 매년 포털(TTP)에 등록했던 업무 프로세스, 거래업체, 보안 이행현황, 사업자, 담당자 등 "Security Profile" 항목 변경 시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캐나다 국경서비스국은 변동 신고 내용에 대한 검토 후 필요 시 현장 검증을 수행한다.

2) 재검증(Revalidation)

재검증은 PIP 최초 검증 이후의 단계로서, PIP 기업이 최소보안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국경서비스국은 인증심사 내용 및 변동사항에 기반하여 4년 중 1회 이상(not less frequently than once) 재검증을 수행하며, 주요 항목은 위험 기반 최소보안기준의 이행이다. 이와 관련한 심사 범위, 방법은 최초 PIP 심사와 동일하다.

3) 공인 자격 정지/취소

PIP 공인업체가 공인 정지 통보를 받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인증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지기간은 최대 180일이며, 국경서비스국은 60일간 모니터링 후 해당 기업의 자격 취소 및 공인 유지를 결정한다.

PIP guideline에서는 업체의 PIP 공인 정지 및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표 19>와 같다.

〈표 19〉 캐나다의 PIP 공인 정지/취소 사유

1. 허위자료 제출
2. 캐나다 국경서비스국에서 제시한 특정기간 동안 추가자료 미제출 또는 자료 미흡
3. 업무 프로세스, 거래업체, 보안 이행현황, 사업장 변경, 담당자 변경 시 변동신고 미이행
4. "Security Profile"에 명시된 보안 관련 위반사항 발생
5. 자격요건 또는 최소보안기준 미충족
6. 주기적 위험평가/현장 재검증 결과 미흡
7. 현장검증 거부
8. 재검증 관련 "Security Profile" 현행화 미수행
9. 보완사항에 대한 해당기간 내 보완이행자료 미제출 또는 자료 미흡
10. 관세법, 형사법, 국회 입법에 명시된 사항 위반내역 발생
11. 캐나다 국경서비스국과의 미온적 협조(지속적 보완연장신청, 의도적 유선/이 메일 미회신, 요청자료 미제공, 사업장 방문 거부 등)

라. 기타 특이사항

1) 인증기업/부문 조회

PIP 인증기업은 (<http://www.cbsa-asfc.gc.ca>)에 접속 후 인증기업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2) 사후분석(Post-Incident Analysis)

캐나다 국경서비스국은 PIP 공인업체의 수출입 공급망 관련 보안사고 발생 시 사후 분석을 수행한다. 해당업체에 사후분석 수행 관련 공문이 발송되며 주요 분석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사건발생 원인 식별
- 관세 관련 규정 위반 내역에 대한 업체 의견 청취
(업체에서 작성한 보고서 검토)
- 향후 보안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대책 수립

캐나다 국경서비스국은 사후 분석 후 “결과보고서”에 향후 보안관련 이슈 및 취약사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업체에 공인 유지 또는 공인 정지를 통보한다.

(3) 주요 혜택

캐나다 국경서비스국에서는 업체가 PIP 인증 시 통관상 혜택, 보안세션 및 수출입 통관 관련 유사 제도 참여 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그림 13>과 같다.

첫째, 수출입 신고 서류 및 물품 검사 비율이 감소한다. PIP 인증기업의 경우 자동선별 시스템(Automated Targeting System, ATS) 점수가 낮아짐에 따라 세관당국(CBSA)에 의한 화물검사가 감소하며 정밀 재검사 비율이 줄어든다. 또한, “Free and Secure Trade(FAST)”¹⁰⁾ 참여를 통해 허가받은 품목 및 무역업자에 대해 보다 빠른 통관절차가 적용된다. 운송인, 선박업자, 수입자 등 동 프로그램 참여자는 위험평가를 수행하며 해당 결과에 대한 미국 국토안보부 및 캐나다 국경서비스국의 승인을 받아야 혜택이 부여된다. PIP 인증업체는 Courier Low Value Shipment Program(CLVS)¹¹⁾ 참여를 통해 저가 수입품목에 대한 신속 반출 허용의 혜택을 부여받는다.

둘째, 캐나다 국경서비스국 주최로 열리는 보안세션 참석을 통해 최근 밀수출 동향, PIP 프로그램 요구사항, 보안 개선방법 등 고급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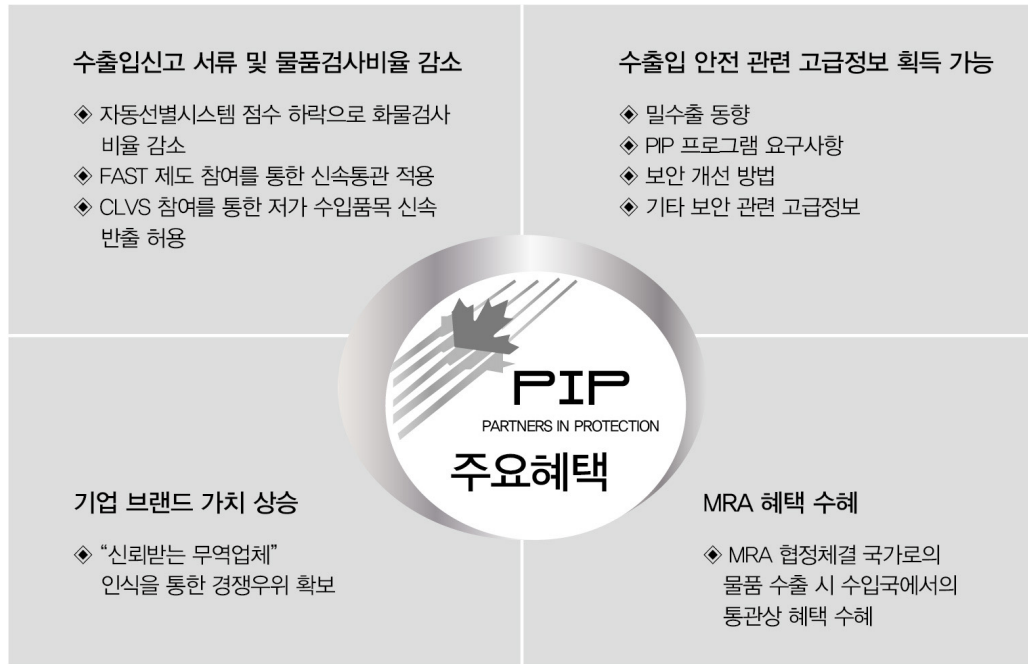
셋째, “신뢰받는 무역업체” 인식에 따른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넷째, MRA 혜택을 통해 한국 등 MRA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물품 수출 시 수입국에서의 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캐나다의 PIP 주요 혜택은 <그림 1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0) Free and Secure Trade(FAST) : 캐나다와 미국간 공동계획의 일환으로 상품 공급망의 안전 확보와 국경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전에 허가받은 품목 및 무역업자에 대해 보다 빠른 통관절차를 적용하는 제도

11) CLVS : 저가 수입품목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캐나다 달러 2500(원화 약 220만원) 이하의 품목에 대해 신속 반출 허용

〈그림 13〉 캐나다의 PIP 주요 혜택



4

MRA활용 방법

① 캐나다의 AEO제도 명칭

– PIP (Partners In Protection Program, 거래업체 보호제도)

② <한국 관세청> 은 한국 AEO 수출기업 공인정보 송부 (한국 관세청 → 캐나다 관세청)

③ <캐나다 수입자>은 화물신고시 Shipper란에 한국 AEO업체명 입력

④ <캐나다 관세청>은 AEO업체명을 인식하여 AEO 관련 우량기준(검사 혜택율)을 시스템에 반영

– AEO 통합관리시스템의 해외거래처부호 및 납세의무자 D/B와 연계하여 검사 혜택율 부여

< 한-캐나다 AEO MRA 혜택 >

구분	내용	비고
수입검사율 축소	○ 캐나다 PIP*업체와 동등한 점수의 위험스코어(Risk Score) 감축을 통한 화물검사 축소 * 캐나다 PIP와 Non-PIP 업체간의 검사 비율은 1:3.5임	시스템 반영

※ Random 선별은 제외

※ PIP (Partners in Protection) 업체에 대한 혜택

– FAST* 레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정 (캐나다와 미국 국경간)

* FAST (Free and Secure Trade) 혜택은 국경에서 지정검사통로 이용 가능

– 위험지수 감축 (검사율 축소)

– 세관이슈 확인을 위한 CBSA* 전문 정보 접근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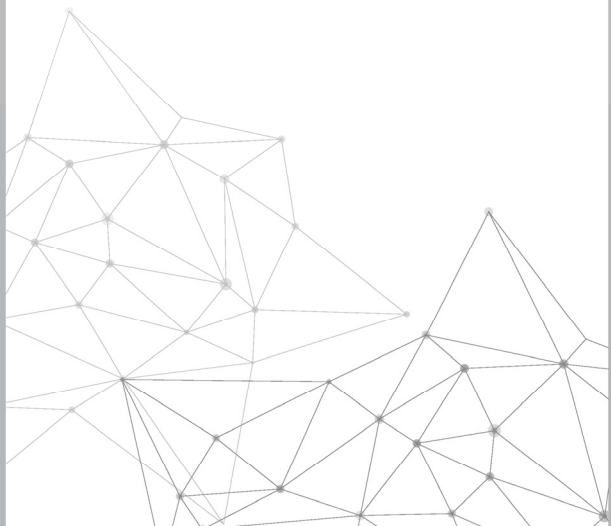
* 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 캐나다 국경서비스청)

– 안전강화 및 위험요소 축소를 통한 기업의 시장성 향상

아시아(ASIA)

싱가포르

(Singapore)



1

국가 개요

일반 사항	국 명	싱가포르(Singapore)
	면 적	약 719.9km ² (서울시의 1.2배)
	수 도	싱가포르(도시국가)
	인 구	561만 2,253명
	주 요 도 시	싱가포르(도시국가)
	민 족	중국계(74.3%), 말레이계(13.4%), 인도계(9.1%), 기타(3.2%)
	언 어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4개 공용어
정치	건 국 일	1965년 8월 9일(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분리, 독립)
	정 치 체 계	대통령제 (다만, 실제 총리제로 운영됨)
	국 가 원 수	대통령: Halimah Yacob / 취임일: 2017년 9월(임기 6년) 총리: Lee Hsien Loong / 취임일: 2004년 8월(임기 5년) - 2006년, 2011년, 2015년 총선에서 집권당 승리로 장기집권체제 중
경제	화 폐 단 위	싱가포르 달러(SGD)
	1인당 GDP	57,722달러(2017년)
	교 역 량 (2018년 기준)	수출: 411,743 US\$ Mil 수입: 370,504 US\$ Mil
	주요 교역품	집적회로, 원유 및 연료유, 반도체 메모리 등

자료원: 싱가포르 통계청 (2018.08. 기준), WITS(wits.worldbank.org)

한 / 싱가포르 관계	
교역 규모	대 싱가포르 수출(2019년) : 12,768,034 US\$ Thousands 대 싱가포르 수입(2019년) : 6,660,476 US\$ Thousands 무역수지(2019년): 6,107,558 US\$ Thousands
교역 품	• 대 싱가포르 주요 수출품목 : 경유, 집적회로반도체, 선박, 휘발유 윤활유, 기타 석유화학 제품 등 • 대 싱가포르 주요 수입품목 : 집적회로반도체, 증류, 석유화학중간원료, 반도체 제조장비, 컴퓨터 등
투자 교류	• 우리나라의 대 싱가포르 투자액 → 70억 1,260만 싱가포르달러 (2016년) • 싱가포르의 대한 투자액(Financial Outflow) → 10억 2,187만 달러 (2017년)
교민	약 2만 5,000명

자료원: 싱가포르 통계청, 무역협회, 싱가포르 통계청(2018년 07. 기준), 관세청(2019년 기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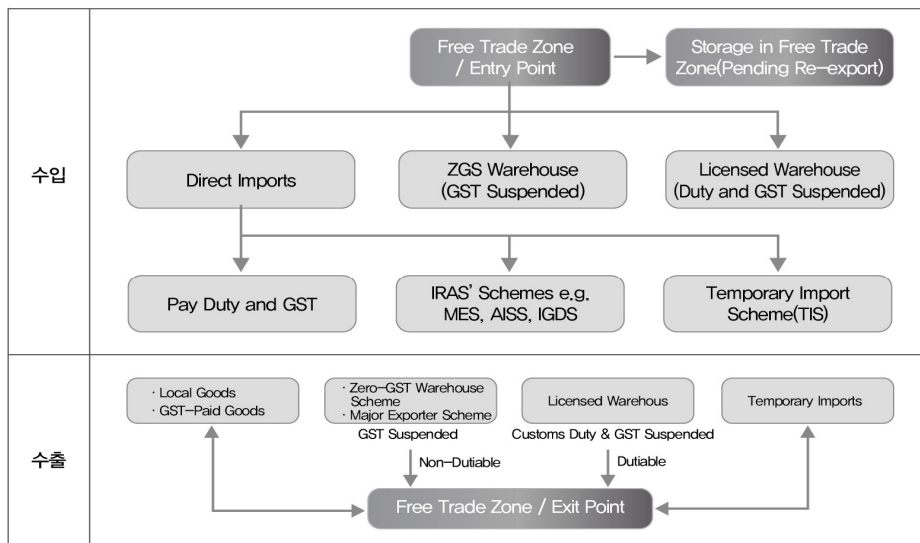
통관절차

(1) 싱가포르의 일반통관절차

상품의 통관은 수화인 또는 수화인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반입 화물은 싱가포르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세관에 통관 신청을 해야 한다. 반출 물품은 싱가포르를 출발하기 48시간 이전까지 통관 신청을 해야 한다. 항구 및 공항의 자유무역지대에 장치되는 물품 중 환적용 화물에 대해서는 반입 시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신고하면 된다.

싱가포르로 상품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자는 지역소비자를 위해 수입되는 과세대상 제품에 재화소비세(GST)와 관세를 지급해야 한다. 상품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련 당국으로부터 수입 허가 및 승인(물품이 관리 대상인 경우)을 받아야 한다. 상품의 수입은 7단계의 관련 수입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먼저, 고유법인번호(UEN)를 등록하고 세관 계정을 활성화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 수출입 활동에 참여하거나 수출입 및 환적 허가 또는 증명서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UEN을 얻기 위해 회계 및 기업 규제 당국(ACRA) 또는 관련 UEN 발급 기관에 등록하고 세관계정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림 14〉 싱가포르의 통관절차 흐름도



자료: Singapore Customs 홈페이지

둘째,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품목을 체크해야 한다. 수입물품이 싱가포르의 관할 기관(CA)의 규제 대상 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상품 설명서, HS 코드, 또는 CA 제품코드를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고, 해당 품목이 통제 대상인 경우 해당 CA명이 HS 코드 옆에 표시되고, 각 CA에 대한 라이선스 요구사항을 직접 확인한다.

셋째, Inter-Bank GIRO(IBG)를 신청한다. 수입 신고인은 싱가포르 세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관세, 세금, 수수료, 벌금 및 기타 비용을 은행계좌에서 싱가포르 세관에 직접 지급하기 위해 IBG를 유지해야 한다. IBG 신청 후 승인되면 수입신고 대리인이 IBG를 사용하여 수입자의 세관허가에 대한 관세 및 재화소비세 지급을 승인할 수 있다.

넷째, 담보를 제공한다. 수입자는 과세 대상 물품과 관련된 거래, 승인된 물품의 일시적인 수입, 허가받은 창고 및 소비세 공장과 같은 허가된 시설의 운영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된 담보는 은행보증, 금융회사 보증, 보험채권 등의 양식이어야 한다.

다섯째, 세관 수입 승인을 신청한다. 수입자는 신고 대리인을 임명하여 수입신고 하거나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고 에이전트로 등록하고 TradeNet 사용자 ID를 신청해야 한다. 모든 수입신고서는 승인된 소프트웨어 벤더인 TradeNet front-end 소프트웨어나 Government Front-End module로 TradeNet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여섯째, 화물통관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는 상업송장(CI), 포장명세서(PL), 선하증권(BL) 혹은 항공화물 운송장(AWB) 그리고 기타 품목별 필요서류이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수입신고시에 컨테이너 번호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된 수입신고서는 유효 기간과 함께 발행되기 때문에 물품 통관을 위해 제시된 수입신고서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세관은 선박/항공기명, 원산지, 포장수 및 포장 단위당 수량, 운송 및 보험 비용 등과 같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역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승인일로부터 5년간 제품 구매, 수입, 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는 물리적인 하드카피 또는 전자문서로 저장할 수 있다. 수입자는 싱가포르 세관의 요청시 보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싱가포르 세관에 물품을 신고해야 한다. 수출 물품은 관세법, 수출입 규제법, 전략상품 관리법 및 관련 관청(CA)의 기타 법령에 따라 규제되지만 재화소비세 및 관세는 수출물품에 부과되지 않는다. 수출 상품이 통제 대상인 경우에는 고유법인번호(UEN)를 등록하고 세관 계정을 활성화, 수입 제한 또는 관리하는 품목 체크, 수출신고, 화물통관을 위한 서류준비, 무역 서류 보관 등 5개 단계를 거친다.

3

AEO 제도

(1)

제도의 도입

가. 도입경과

싱가포르 세관은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인증 프로그램인 STP(Secure Trade Partnership)을 2007년 5월 25일에 도입하였다. STP는 2005년 6월에 WCO에서 채택한 SAFE Framework of Standards와 동일한 기준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세계 무역이 가능하도록 한다. STP는 1. 안전한 무역의 허브로서 싱가포르, 2. 싱가포르 기업의 경쟁우위 원천을 획득하는데 도움, 3. 제품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 강화, 4. 전체 공급망 접근 방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 주요 목적이다. STP 가이드라인과 기준은 공급망 기업들이 STP의 운영 및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충족해야하는 공인 기준을 설명하고, 이를 충족하는 기업은 싱가포르 세관에서 STP 업체로 인증한다.

나. 운영 현황

STP의 운영은 먼저, 기업이 STP 인증을 통해 적절한 보안 기준을 채택하고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안전한 공급망을 유지하는데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에 STP 인증을 신청한 기업은 내부통제(internal policies), 내부 프로세스 및 절차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STP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self-assess)를 수행한다.

싱가포르 세관은 기업이 STP 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인증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STP 인증 기준에 따라 기업이 보안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기업 운영에 대한 위험평가를 수행하여 STP 프로그램의 1. 보안 및 접근 통제(premines security and access controls), 2. 인사관리(personnel security), 3. 거래업체관리(business partner security), 4. 화물관리(cargo security), 5. 운송관리(conveyance security), 6. 정보 및 IT관리(inform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7. 사고관리 및 조사(incident management and investigations), 8. 위험관리 및 완화(crisis management and incident recovery) 등 8개 기준의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STP 인증은 유효성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 동안 유효하고, 인증 업체는 싱가포르 세관에서 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싱가포르 세관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주기적인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규모, 위험 등은 공급망 또는 산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STP 공인기준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보안 조치의 유연성과 사용자 정의를 인정한다. 즉, 기업 내부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거나 다른 보안프로그램에 따라 조치를 취한 상태를 인정한다. 이는 기업이 기존 보안 시스템이나 조치를 대체하는 것이 STP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의 보안강화를 위해 기업의 모범사례와 파트너십 구축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은 다소 상이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TP를 직접 대체하지 않고, STP 공인이 요구하는 기준과 기업이 이미 구축한 보안기준이 유사한 경우 이를 고려한다.

(2) 공인 절차

가. 공인신청

STP공인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NO	주요 내용
1	STP신청서 (www.customs.gov.sg 에서 다운로드)
2	회사소개서
3	Trade First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4	Trade First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증빙 내역
5	취급 물품 및 문서, 업무프로세스 맵, 회사 배치도, 출입통제 등
6	회사의 보안인증서 사본(기타 자격내역)

첫째, STP신청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서는 싱가포르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표준 업무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STP기준과 상이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신청서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신청서는 싱가포르 세관에 아래와 같이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하며, 접수비는 별도 발생하지 않으며, 신청 절차의 기간은 업체별 제출서류의 완전성, 비즈니스의 복잡성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며, 세관 직원이 일정을 제공하고 있다.

신청방법	이메일 : customs_schemes@customs.gov.sg 팩스 : 6337 9956 우편 : 세관, 55 Newton Road, # 07-01, Revenue House, Singapore 307987
------	---

둘째, 회사소개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업체의 연혁, 공급망 Supply Chain 상 협력 업체에 아웃소싱하는 업무,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 회사의 조직도 및 직원 수, 회사의 보안 인증 내역, 기타 STP 공인 및 수출입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회사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요약 시 수출입(보안) 정책 및 목표, 직원에게 안전관련 정보의 전달 여부, 기업의 안전관리 조치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위험평가 요약의 경우 평가절차(순서도 포함), 위험과 원인, 수행 인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나. 현장검증

STP 검증은 싱가포르 세관이 업체를 방문하여 신청서에 명시된 정보에 준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세관은 유효성 검증을 위해 회사의 문서 및 정보를 취급 및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8가지 안전 요소에 대한 정보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 보안 및 출입통제, 인사관리, 거래업체(비즈니스 파트너 보안), 화물 보안, 운송, 정보기술(IT), 사고 관리 및 조사, 위기관리 및 복구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다. 공인 결과보고(통과/기각)

STP 유효성 검증 결과에 따라 적합한 기업으로 인정이 되면 STP 또는 STP PLUS 회사 중 하나로 인증된다. 유효성 검증 시 회사의 안전관리 조치 등에 심각한 오류 또는 위험성이 있다면, 싱가포르 세관은 STP신청을 기각하거나 또는 리스크 부분을 보완하여 STP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 STP 유효성 검증 결과 안내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제출서류검증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세관 심사원이 일정을 안내한다.

라. 사후관리

STP 인증을 받은 기업은 신청시 신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책임과 역할이 부여된다. 기업은 STP인증 후 기업의 중대 보안(안전)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때 또는 회사의 정보(주소, 사업장변경 등) 변경이 된 경우 세관에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STP지침 및 기준의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때에 반드시 세관에 세부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인증기간 동안 싱가포르 세관은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한다. 방문 전 기업에 현장방문 스케줄을 통지하고 사후관리 여부를 검증한다. 사후관리 검증 시 인증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회사의 인증상태 및 관련 혜택이 중지된다. 회사가 미준수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STP 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 다음의 경우는 인증 및 혜택부여가 취소된다.

1	STP인증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싱가포르 세관 법률, 규정 등을 미준수한 경우
3	심각한 공급망 보안(안전)리스크를 갖고 있는 경우

STP 취소가 된 경우 1년 이내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물론, 이 경우 자발적인 형태는 아니나 STP 탈퇴가 되는 것으로 싱가포르 세관에 탈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주요 혜택

STP는 싱가포르 세관이 수출자에서 수입자까지 공급망에 활동하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기업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검토할 때 싱가포르 세관 및 기타 관련 정부 기관의 법규준수 이력, 기업의 보안 조치 및 표준, 해당 지역 및 외국 정부기관의 정보 등을 고려한다. STP 인증 업체는 싱가포르 세관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되어 싱가포르 세관과 협력하여 글로벌 공급망 보안을 강화한다. 이로써 STP 인증 기업은 공급망의 상품 가시성 증가, 공급망 관리의 효율성 증가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STP 인증 업체는 싱

가포르 세관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되어 화물 검사율 축소, 위험감소로 인한 기업 브랜드 이미지 개선, MRA를 통한 상대국의 신속통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기업전문상담관이 지정된다. 이는 기업이 모든 세관 관련 문제나 문의를 위한 단일 연락 창구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 위험이 낮은 기업으로 인정을 받는다. 수입자는 SC 및 ICA에 의한 세관 개입 가능성이 축소된다. 수출자는 국내 및 MRA 체결국의 관세 개입 가능성이 감소하고, 규제 항공화물 요원 체제(Air Cargo Agent Regime, RCAR)의 위탁자로 인정된다. 셋째, 기업 브랜딩 및 경쟁력이 향상된다. 이는 기존 고객에 대한 고객만족 및 확신, 신규고객 확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게 중요하다. 넷째, 무역 중단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 무역이 재개 될 때 인증된 기업의 화물이 타 화물보다 먼저 청산된다.

4

MRA활용 방법

① 싱가포르의 AEO제도 명칭

– STP (Secure Trade Partnership)

② <한국 관세청>은 한국 AEO 수출기업 공인정보 송부

(한국 관세청 → 싱가포르 관세청)

③ <한국 AEO 수출기업>은 자사의 AEO 공인번호(KRAEO*****, 12자리)를 싱가포르 수입자에게 통보해야 함.

※ 인보이스나 포장명세서에 AEO 공인번호 표기 권고

④ <싱가포르 수입자>는 통관시스템인 'TradeNet'을 통해 'CA Licence'란에 통보받은 한국 AEO 수출기업의 AEO 공인번호를 다음 순서에 따라 입력해야 함

※ 싱가포르에서는 신고대행업체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 수입업체에 반드시 동 공인번호를 입력하도록 요청 필요

신고항목 (Declaration Field)	신고해야 할 정보 (Information to be declared)
Customs Procedure Code (CPC)	AEO
Processing Code1(PC 1)	KR
Processing Code2(PC 2)	1234567 (한국 AEO ID)

⑤ <싱가포르 관세청>은 한국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한국 AEO 수출기업 공인정보와 대조하여 혜택 부여

<TRADENET 신고 화면>

The screenshot displays the 'Header' tab of the TRADENET declaration interface. It includes fields for Declaration Type (set to 'IPT-GST - GST (including duty exemption)'), In Transport Mode, Cargo Packing Type (set to 'OTHER NON-CONTAINERIZED'), BG Indicator, Supply Indicator, Previous Permit No., and three Additional Recipient fields. A Remarks section with a text area is also present. Below these, there are sections for 'Number Of Customs Procedure Codes To Add' and 'Number Of Processing Codes To Add'. The 'Customs Procedure Code 1' section shows 'AEO' selected in the 'Additional Procedure Code Reference' dropdown. The 'Processing Code 1' field contains 'KR', and the 'Processing Code 2' field contains '3XXXXXX'. Red boxes highlight the 'AEO' dropdown, the 'KR' field, and the '3XXXXXX' field.

- 화물통관허가(CCP)시 수입신고인은 Customs Procedure Code(CPC)에서 'AEO' 선택, Processing Code1에서 'KR'선택, Processing Code2 에서 AEO공인번호 입력 (KRAEO제외하고 7자리 숫자 입력)

〈 화물통관허가(CCP) 〉

CARGO CLEARANCE PERMIT		PG : 1 OF 2
MESSAGE TYPE : IN-PAYMENT PERMIT		
DECLARATION TYPE : GST (INCLUDING DUTY EXEMPTION)		
IMPORTER:	VALIDITY PERIOD :	03/11/2016 - 04/11/2016
ACME		
20110901FF	TOTAL GROSS WT/UNIT :	1.000/TNE
EXPORTER:	TOTAL OUTER PACK/UNIT:	1/LOT
	TOT EXCISE DUT PAYABLE : S\$	0.00
	TOT CUSTOMS DUT PAYABLE: S\$	0.00
	TOT OTHER TAX PAYABLE : S\$	0.00
HANDLING AGENT:	TOTAL GST AMT :	S\$ 10010.00
	TOTAL AMOUNT PAYABLE : S\$	10010.00
	CARGO PACKING TYPE: CONTAINERIZED	
	IN TRANSPORT IDENTIFIER:	
PORT OF LOADING/NEXT PORT OF CALL:	CONVEYANCE REFERENCE NO:	342342
BUSAN	OEL/MAMB NO:	526
PORT OF DISCHARGE/FINAL PORT OF CALL	ARRIVAL DATE :	03/11/2016
	OU TRANSPORT IDENTIFIER :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SINGAPORE		
INWARD CARRIER AGENT:	CONVEYANCE REFERENCE NO:	
	OEL/MAMB/UCR NO:	
OUTWARD CARRIER AGENT:	DEPARTURE DATE :	
	CERTIFICATE NO:	
PLACE OF RELEASE:	PLACE OF RECEIPT:	
	OTHERS	
LICENCE NO:	CUSTOMS PROCEDURE CODE (CPC):	AEO
Copyright © 2016 Singapore Customs		

- 화물통관허가(CCP)가 승인되면
AEO 공인번호가 붉은색으로 나타남

〈 한-싱가포르 AEO MRA 혜택 〉

수입검사율 축소	○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에 대한 수입 검사율 축소
수입서류 심사 간소화	○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에 대한 수입신고시 서류심사 비율 축소
AEO화물 우선통관	○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에 대해 물품검사 또는 서류심사 시 우선 처리
국제무역 장애 시 신속통관	○ 국제무역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에 대해 신속한 통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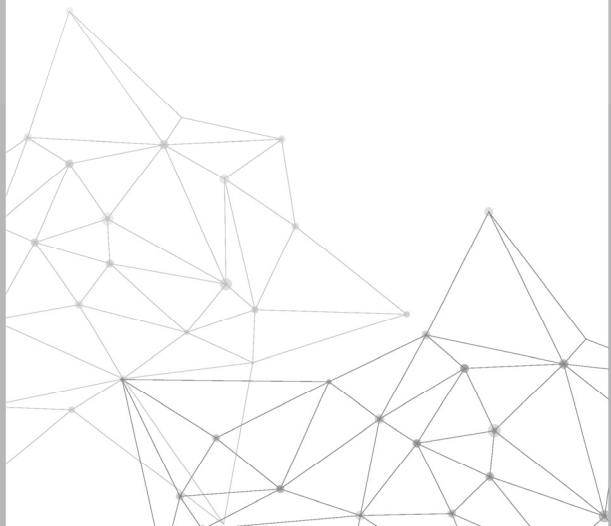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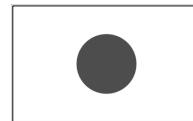
〈싱가포르〉 AEO 공인기업인지 여부 확인

- <http://www.customs.gov.sg/leftNav/trad/sup/Our+Trusted+Partners.htm>

아시아(ASIA)

일 본

(Japan)



1

국가 개요

일반 사항	국 명	일본(日本)/JAPAN
	면 적	37만 7,950km ² (한반도 면적의 1.7배)
	수 도	도쿄(東京)/TOKYO
	인 구	1억 2,669만 명 [총무성 통계국 2017년 12월 1일(확정치), 2018년 5월 10일 발표]
	주 요 도 시	도쿄도(1,372만 명), 카나가와현(915만 명), 오사카부(882만 명), 아이치현(752만 명) 등
	민 족	대화족(大和族: 야마토족) 99% 이상, 기타 재일교포, 아이누족 등 1% 미만
	언 어	일본어
정치	건 국 일	2월 11일
	정 치 체 계	총리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2012년 12월 26일 취임)
	국 가 원 수	천황(明仁: 아키히토)
경제	화 폐 단 위	일본 엔(¥)
	1인당 GDP	3만 8,439달러(2017년 명목 기준, IMF)
	교 역 량 (2018년 기준)	수출: 738,201 US\$ Mil
		수입: 748,218 US\$ Mil
	주요 교역품	석유제품, 액정제품, 반도체,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등

자료원: 일본 내각부 및 총무성, 지방정부 발표자료, 일본국세도회

자료원: 일본 내각부 및 정부 발표자료, 재무성, 일본은행, WTA, IMF, 일본국세도회, 일본경제신문사,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산업통상자원부(2018년 7월), WTS(wits.worldbank.org)

한 / 일본 관계	
교역 규모	대 일본 수출(2019년) : 28,420,213 US\$ Thousands 대 일본 수입(2019년) : 47,580,853 US\$ Thousands 무역수지(2019년): -19,160,640 US\$ Thousands
교역 품	• 대 일본 주요 수출품목 : 석유제품, 액정제품, 반도체,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등 • 대 일본 주요 수입품목 : 반도체, 반도체 제조 장비, 철강판, 기초 유분 등 부품 소재 중심
투자 교류	• 우리나라의 대 일본 투자액 → 562건, 7억 4,760만 달러 (2017년) • 일본의 대한 투자액(Financial Outflow) → 328건, 18억 4,000만 달러 (2017년)
교민	45만 663명(재류외국인통계, 2017년 12월 기준) * 일본 내 외국인 거주자 전년비 소폭 감소, 순위는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

자료원: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산업통상자원부(2018년 7월), 관세청(2019년 기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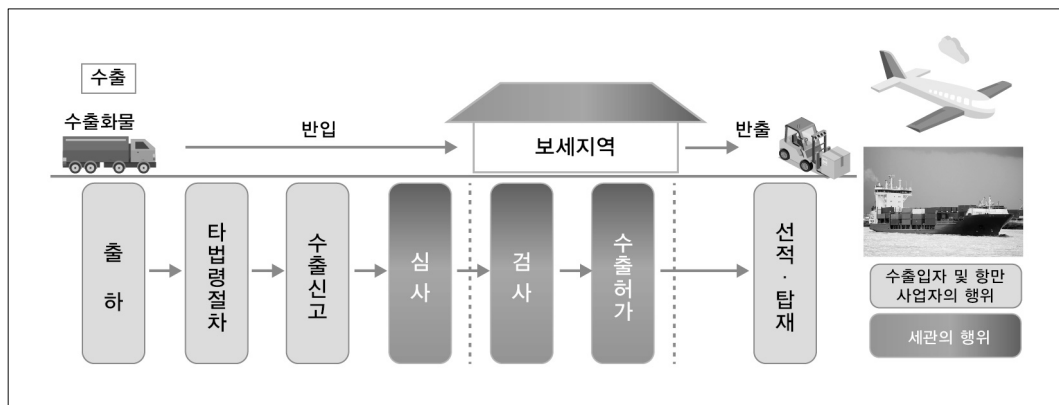
통관절차

(1) 수출통관절차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일본 관세법 제2조 제1항).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기 위한 수출신고, 물품검사, 수출허가의 일련의 행위를 수출통관절차라고 한다.

화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수출신고하고 화물에 대해 필요한 검사를 거쳐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신고는 수출하려는 화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기 전에라도 할 수 있지만 수출허가는 원칙적으로 수출하려는 화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에 이루어진다. 수출신고는 수출자가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화물을 반입하는 보세구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한다.

〈그림 15〉 일본의 수출 절차



자료: 일본 관세국(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102-2_jr.htm)

가. 수출신고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수량 및 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일본 관세법 제67조). 이때 수출신고자는 화물 수출자이지만 통관업법 규정에 의하면 통관업자는 업으로서 수출통관절차를 대리 또는 대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통관업자의 이름으로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통관업자가 대리하는 경우도 수출신고자는 화물의 수출자이다.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신고는 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수출신고서에는 물품의 기호, 번호, 품명, 수량 및 가격, 물품의 목적지 및 수하인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 또는 명칭, 물품을 적재할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또는 등록기호, 물품의 장치장소, 기타 참고할 만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때는 송장 또는 송장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포장명세서, 수출 관계 타 법령의 허가·승인증 등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관세정률법 등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경감, 면제 또는 환급과 관련해 수출신고서 특정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당해 서류,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내국소비세의 수출면세를 받는 화물의 수출 사실 증명 신청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서류심사 및 화물검사

NACCS¹²⁾를 통한 수출신고 역시 수입신고와 마찬가지로 간이심사, 서류심사, 화물검사 3가지로 구분되어 통보된다. 전산상의 정보를 통해 수출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간이심사는 원칙적으로 서류의 제출이 불필요하다. 서류심사를 위해서는 세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수출허가를 위한 화물검사는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화물의 성질 또는 수량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검사를 능률적으로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장소의 검사를 허가한다.

다. 보세구역 반입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원칙에도 불구하고 2011년 관세법 개정 이후 모든 수출화물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수출허가를 위해서는 보세구역 반입이 필요하다. 수출통관의 신속성 등을 위하여 특정수출신고제도 등을 마련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 항공 운송과 해상 운송에 따른 수출입 통관 기타 세관 수속 및 관련 민간업무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센터 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음

특정수출신고제도는 보안관리 및 법규준수체제가 정비된 AEO 공인기업으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수출자에 대하여 보세구역 등에 화물을 반입하지 않고 수출허가를 받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AEO 공인기업이 되면 수출화물이 어디에 있는지 수출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여 수출화물의 신속하고 원활한 선적이 가능해져 소요시간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을 도모할 수 있다.

특정위탁수출신고제도는 인정통관업자에 의한 통관수속, 특정보세운송업자에 의한 화물운송에 의한 화물의 경우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인정통관업자와 특정보세운송업자가 취급하는 화물은 적정한 화물관리 등의 확보가 가능하므로 특정위탁수출신고제도는 이들이 취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인정통관업자는 수출자로부터 통관수속을 의뢰받는 경우 해당 의뢰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화물확인 등을 하고 포괄 또는 개별 신고할 수 있다. 수출자가 계속적으로 특정위탁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특정위탁수출포괄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한다. 포괄신고를 하는 경우 인정통관업자는 적어도 반년에 1회 화물장치장소에서 화물관리체제가 확보되어 있는지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장조사 결과 화물의 관리가 적정하다고 확인된 경우 송장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NACCS를 이용하여 특정수출포괄신고하고, 적정하지 않은 경우 신고시마다 신고화물을 확인한 후 신고한다. 포괄신고를 하는 자 이외의 자가 통관수속을 의뢰한 경우 인정통관업자는 그 신고 관련 화물의 특정보세운송업자와 신고에 관한 화물과 송장 등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NACCS를 이용하여 신고한다. 이 경우 수출신고시마다 NACCS에 특정보세운송업자의 코드,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보세구역 코드 등을 입력해야 한다.

특정보세운송업자가 수출자로부터 특정위탁수출신고 관련 화물의 운송을 위탁받은 경우 인정통관업자로부터 수취한 화물관련 정보와 운송할 화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화물의 기호, 번호, 수량, 신고시기 등 당해 화물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운송할 화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 관련 세관에 통보해야 한다. 특정보세운송업자는 운송할 화물의 세관검사, 운송 중 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해 인정통관업자와 연락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라. 수출허가

수출허가는 수출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필요한 검사를 거쳐 수출신고서와 현품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타 법령상 규제를 충족하며 수출금지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화물에 대해 부여된다.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은 외국화물이 되고 외국으로 운송할 상태가 된다.

마. 서류보관 및 사후관리

물품의 수출을 업으로 하는 자는 수출화물에 대한 품명, 수량 및 가격 등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해당 장부 및 관계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서류의 의무보관 기간은 수출허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고, 일본 관세법 제68조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시 제출 서류는 제외된다.

〈표 20〉 수출서류 보관 의무

종류	기재사항	보존기간
장부 비치	품명 수량, 가격, 수입자 성명(명칭), 수출허가 연월일, 수출허가번호를 기재 (필요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기존 장부, 송장 등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 기입한 것으로도 가능)	수출허가일의 다음날부터 5년
관련 서류	수출허가 화물의 계약서 및 수출허가 화물 거래에 관하여 작성하거나 수취한 서류	수출허가일의 다음날부터 5년
전자적 기록	전자거래(EDI거래, 인터넷거래 등에 의한 거래, 이메일 등을 통해 거래정보를 수수하는 거래)를 한 경우 당해 전자거래의 거래정보(거래에 관하여 수취하거나 송부하는 주문서 등에 보통 기재되는 사항)	수출허가일의 다음날부터 5년

자료: 일본 관세국(<http://www.customs.go.jp/shiryo/chobo.htm>)

사후조사는 수출자의 상업소 등을 세관 직원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관련 장부 및 서류 등을 확인하는 조사이다. 수출화물의 통관절차가 관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절한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신고를 하도록 지도하고 기업의 적정한 수출관리체제 및 통관처리체제 구축을 촉진하여 적정하고 신속한 수출 통관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세관직원은 수출화물에 대한 계약서, 송품장, 기타 무역 관련 서류와 회계장부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수출신고의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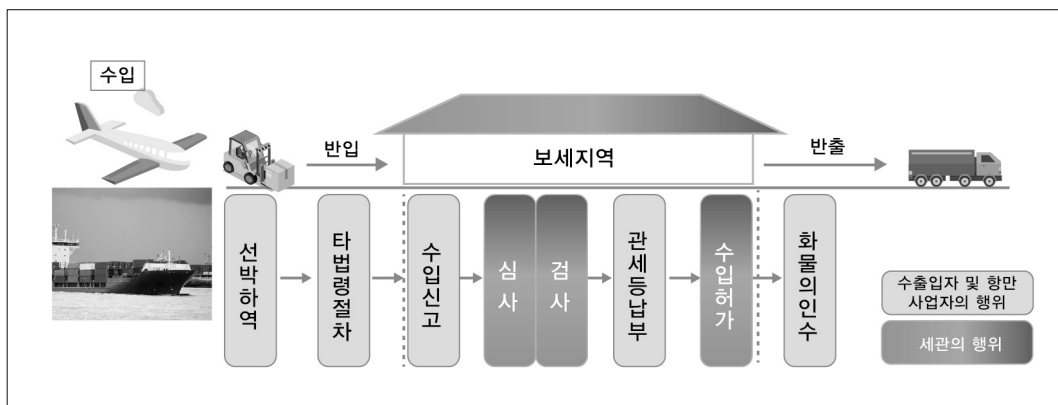
(2) 수입 통관절차

일본 관세법에 수입은 〈제2조 제1항〉에서 외국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포함하여 외국으로부터 일본에 도착된 물품 또는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을 일본에(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을 거쳐 일본에) 반입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외국물품을 일본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물품검사, 관세 납부 또는 징수,

수입허가의 일련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보세구역 관할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고, 세관의 검사가 필요한 물품은 검사를 거쳐 관세,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등을 납부하여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화물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에 이루어지고 항공회사, 선박회사는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자에게 화물이 도착했다는 취지의 도착통지서(Arrival notice)를 발행한다. 수입자는 운송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입수하여 수출자가 보낸 송품장 등과 함께 화물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다. 세관은 수입신고 된 화물의 서류심사, 물품검사를 실시하고, 원칙적으로 관세 등의 세금이 납부된 사실을 확인한 후 수입을 허가한다. 수입허가를 보세구역의 담당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화물을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

〈그림 16〉 일본의 수입 절차



자료: 일본 관세국(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102-2_jr.htm)

가. 수입신고

일본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수량 및 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고납세방식이 적용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납부에 관한 신고를 원칙적으로 관세법 제 67조에 의한 수입신고와 함께 해야 한다.

수입신고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이며 수입허가를 청구하는 행위로서 수입 절차가 수입신고에 따라 개시된다. 수입신고 시점에 과세물건을 확정하고 적용법령을 확정하는 법적 효력이 부여되고 있다. 관세를 부과할 경우 기초가 되는 물품의 수량과 성질

은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시의 현황에 따른다고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를 규정하고 있다(관세법 제4조).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적용하는 법령은 수입신고일에 적용하는 법률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관세법 제5조).

1) 수입신고인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관세법 제67조).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수취인이며, 송장이 없는 경우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등에 기재된 수취인이 된다. 물품이 수입허가 전에 보세구역 등에서 전매된 것과 같은 경우 그 매수자가 수입자가 된다. 관세정률법, 잠정조치법 등에서 규정한 감면세, 관세할당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각 제도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입신고인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제한된 자의 이름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2) 수입신고 시기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그 신고에 관계되는 물품을 보세구역 등에 반입한 후에 해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에 대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특례 수입자가 NACCS를 이용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특례가 인정된다.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수입신고하는 물품은 외국무역선, 부선 등에 적재한 상태, 보세구역 반입 전 등에 수입신고할 수 있다. 외국무역선 또는 부선에 적재한 상태로 검사 및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물품이 타 화물과 혼재되지 않고, 적재상황, 물품성질, 형상 등이 선박에서 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해당 화물을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재상태에서 수입신고할 수 있다. 수입신고를 NACCS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수입신고에 관계되는 수입물품이 일본에 신속하게 반입될 필요가 있고 당해 수입물품의 성질,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단속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보세구역 반입 전에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화물 도착이 확인되는 대로 즉시 수입이 허가된다. 기타 관세조약 또는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세율의 인상, 감면조치의 폐지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 등 보세구역 반입 전 신고 처리가 가능하다.

3) 수입신고 서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신고는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수입신고서에는 물품의 기호, 번호, 품명, 수량 및 가격, 물품의 원산지 및 적출지 및 송하인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 또는 명칭, 물품을 적재하고 있던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또는 등록기호, 물품의 장치장소, 기타 참고할 만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수입신고서에는 관세의 납부에 관한 사항인 과세표준, 세액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서는 납세신고서를 겸하므로 수입(납세)신고서라고 한다.

수입신고 시에는 송장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관세편익을 위한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송장만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수입신고에 관계되는 물품의 운임명세서, 보험료명세서, 포장명세서, 가격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승인, 기타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물품, 검사완료 또는 조건의 구비를 필요로 하는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허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4) 수입신고 세관

수입신고는 화물의 장치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하고 세관의 관할 지역은 <표 21>과 같다.

<표 21> 일본세관과 관할 지역

세관명	관할지역
하코다테 세관	홋카이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아키타현
도쿄세관	아마가타현, 군마현, 시이타마현, 치바현(일부), 도쿄, 니가타현, 야마나시현
요코하마 세관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아바라키현, 토치 기현, 치바현(일부), 가나가와현
나고야 세관	나가노현, 기후현, 시즈오카현, 아이치현, 미에현
오사카 세관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시가현, 교토부, 오사카부, 나라현, 와카야마현
고베 세관	효고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도쿠시마현, 가가와현, 에히메현, 고치현
모지 세관	아마구치현, 후쿠오카현(일부), 사가현(일부), 나가사키현(일부),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나가사키 세관	후쿠오카현(일부), 사가현(일부), 나가사키현(일부), 쿠마모토현, 가고시마현
오키나와 지구 세관	오키나와



자료: 일본 관세국(<http://www.customs.go.jp/kyotsu/map/index.htm>)

5) 수입신고 시간

수입신고는 세관의 통관창구 개청시간에 맞춰 해야 한다. 개청시간은 세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각 세관의 개청시간 외에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개청시간 내에 세관창구 또는 NACCS를 통하여 그 사무의 요청신고를 해야 한다.

NACCS를 통한 수입신고는 개청시간 외 사무요청의 신고가 있고 간이심사 처리로 구분되는 물품은 개청시간 외에도 수입신고가 접수되는 때에 허가가 이루어진다. 서류심사, 물품검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 구분 통지는 개청시간 외에 실시되지만 심사 또는 검사는 개청시간 내에 행해진다.

나. 서류심사 및 화물검사

수입신고는 필요한 경우 세관의 검사를 거쳐 허가되는데 검사 여부는 간이심사, 서류심사, 화물검사의 3가지로 구분하여 결정된다(관세법 제67조). 간이심사는 NACCS에 의해 자동으로 심사가 종료되며, 서류심사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고, 화물검사는 세관원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표 22〉 수입신고 후 심사

심사 종류	심사 내용
간이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 면제 무세 또는 면세, 관세의 납부기한 연장제나 계좌이체 방식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납세) 신고 후 즉시 수입허가 단,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세관에 서류 제출
서류	세관에 통관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화물	세관원에 의한 화물검사

자료: 이상엽 외(2014), 주요국의 통관제도-일본편, p.160

서류심사는 심사시기에 따라 사전심사와 사후심사로 구분되며, 심사 방법은 보통 심사와 중점심사가 있다. 원칙적으로 사전심사가 완료되면 수입이 허가되며, 사전심사 시 수입신고의 형식요건인 품명, 수량 등, 납세신고의 형식요건인 신고가격, 품목분류, 감면세 적용 등의 타당성 여부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 등을 확인한다. 심사관 등이 각종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관 정보 종합 판정시스템, 각종 자료, 정보를 활용하여 심도 있는 중점심사를 실시한다. 사후심사는 납세에 관한 사전심사에서 발견된 의심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수입허가 후 실시하여 사전심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른 법령의 해당 여부, 품목분류,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확인 등 수입신고에 대한 적절한 심사를 위해 수입신고에 따른 물품과 신고내용의 동일성 확인이 필요한 물품은 화물검사를 실시한다. 화물검사는 현장검사, 본선검사, 부선검사, 검사장검사, 위임검사의 5종류가 있고, 전본확인, 일부지정검사, 전부검사의 3가지 방법으로 수행된다.

〈표 23〉 화물검사 종류 및 방법

구분		검사 내용 및 대상
검사 종류	현장검사	거대중량화물, 위험화물, 부패 또는 손상화물, 벌크화물, 검사 개수가 많은 화물 등 세관검사장 반입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화물에 대하여 현재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검사
	본선검사	쌀, 보리, 밀, 소금, 황화철광, 규사 등의 물품이 다른 화물과 동일선 선창내에 혼재되어 있지 않는 등 적재상황과 화물의 성질 및 형상이 본선에서 검사하는 것이 지장이 없고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는 것이 부적당한 화물은 본선에서 검사
	부선검사	양파, 동물성 및 식물성 기름, 염화마그네슘, 목재, 선철, 철강판 등의 물품이 다른 화물과 혼재되어 있지 않는 등 적재상황과 화물의 성질 및 형상이 본선에서 검사하는 것이 지장이 없고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는 것이 부적당한 화물은 부선에서 검사
	검사장검사	현장, 본선, 부선검사에 규정된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하여 세관검사장에 반입시켜 검사
	위임검사	화물의 장치장소 등을 감안하여 일부 화물에 대해서 보세담당직원에 위임하여 현품검사
검사 방법	견본확인	수량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화물에 대해서 그 일부를 견본으로 채취하여 품목 분류, 가격검정, 타 법령 확인 등을 검사
	일부지정 검사	성질 및 수량 확인이 필요한 화물 중 균질등량으로 포장되거나 포장별로 내용 및 실수량이 표시되거나 포장명세서 등이 첨부되는 등 그 일부에 대한 검사만으로 화물 전체의 성질 및 수량에 대해 인정이 가능한 경우 일부만 검사
	전부검사	포장이 되어 있지 않거나 변질, 손상된 화물, 감세, 면세, 환급의 조건의 확인이 필요한 것 등 견본확인, 일부 지정검사에 의하여 화물의 성질, 수량 등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화물 전부에 대하여 검사

자료: 강성훈 외(2016),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일본편, p.254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이나 수입 관련 절차의 종료 전이라도 수입신고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세관 심사 및 검사 필요 여부에 대해 사전통지를 받을 수 있는 예비심사제도가 있다. 예비심사를 이용하면 서류의 심사는 화물의 도착전에, 화물검사 여부의 결정은 수입신고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통관과 화물 반출을 위한 사전 준비가 가능하다. 신선화물, 거래처의 납기기한이 엄격한 화물, 판매시기 및 사업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화물, 다른 법령 절차가 필요한 화물, 화물의 종류가 많아 서류심사에 시간을 요하는 경우 등에 유용하다.

예비심사의 신청은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가능하며, 화물이 장치될 예정인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예비신고를 하면 세관에서 서류심사와 검사의 사전통지를 완료한다.

예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예정일을 기입한 수입(납세)신고서와 송장, 기타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예비신고는 수입신고 예정일의 외국 환율이 공시된 날 또는 예비신고를 하려는 화물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은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된 날 중 늦은 날에 제출하면 된다. 예비신고된 화물에 대한 서류심사와 검사의 사전 통지는 수입신고예정일 내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통지를 한 후에도 다른 법령에 따른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사전통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예비신고를 한 화물의 수입신고는 예비신고서의 신고일자 란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하여 수입신고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수입신고로 전환된 경우 세관은 해당 화물의 예비심사(서류심사 및 검사)가 완료되었으면 관세 등의 납부 후 수입을 허가한다.

다. 관세의 납부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의 세액을 납부하여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의 제공을 요건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수입허가 후에도 납부할 수 있다.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납부서와 함께 일본은행(국세를 수납하는 대리점 포함) 또는 그 관세를 수납하는 세관직원에게 납부해야 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멀티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이용한 납부, 실시간 계좌이체 방식 등 전자적 납부를 시행하고 있다.

멀티 페이먼트 네트워크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의 수납기관과 금융기관 등을 통신회선을 연결하여 공공요금 등이 납부된 때에 수납기관에 통보되는 네트워크이다. 이를 활용하여 수입신고부터 관세납부까지 일련의 절차를 통신회선을 이용할 수 있어 세관 창구 방문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실시간 계좌이체 방식은 납세자의 일반계좌에서 직접 계좌이체 하여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납부방법으로 직접방식이라고도 한다. 사전에 이용자, NACCS센터, 금융기관의 삼자 간에 계좌이체 계약을 체결한 자가 NACCS를 이용하여 수입신고를 하면 납부신고 등에 관한 절차를 직접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다.

직접방식은 자동으로 관세 등의 납부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개별 신고시마다 납부를 지시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화물의 조기 반출이 가능하다. 자동이체 계약을 맺은 경우라도 수입신고시에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수입신고할 때마다 유리한 납부수단의 선

택이 가능하다. 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현금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므로 안정성 및 편리성이 높아지고, 납부 시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일반계좌를 사용함에 따라 계좌 잔액을 증액하면 즉시 납부가 가능한 상태가 된다.

라. 수입허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세관장은 신고서 등이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수입을 허가한다. 수입이 허가되면 물품은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세관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므로 관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관장은 원칙적으로 관세가 납부된 경우만 수입을 허가한다.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물품은 외국물품으로서 국내에 도착하더라도 관세법상 규제를 받아야 하지만 형식상 수입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적법하게 인취되는 것은 수입허가를 받은 물품으로 보아 관세법을 적용한다.

수입허가된 물품으로 간주되는 것은 ① 일본 우편사업주식회사가 교부한 우편물(신고가 필요한 것 제외) 또는 민간사업자에 의한 서신의 송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서신을 송달하는 자가 교부한 서신 ② 허가기간 만료 후 보세전시장에 있는 외국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제62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징수된 것 ③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물품(제69조 2 제2항),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는 물품(제69조의 11 제2항), 몰수(제1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몰수된 것 ④ 수용 물품의 공매 또는 매각(제84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에 회부되거나 또는 수익계약에 의하여 매각되어 매수인이 매수한 것 ⑤ 영치물건 또는 압수물건의 귀속(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것 ⑥ 통고처분(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것 ⑦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어 몰수가 집행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것 또는 「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것 등이 있다.

마. 물품 반출

수입물품은 수입허가를 받으면 보세구역에서 반출이 가능하다. 이는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물품은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가 후 반출이라는 원칙에 따라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시간 장치하는 것은 수입자의 거래 시기를 놓치게 되는 등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일본에서는 허가 전 반출 승인제도, 특례수입신고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다.

1) 수입허가 전 반출승인제도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허가 전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있다. 승인을 받아 국내로 반입된 외국물품은 과세물건의 확정, 적용법령, 관세 등 납부와 수입허가 등의 규정을 제외하고 관세법상 내국물품으로 본다.

허가 전 반출은 귀중품, 위험물, 변질 손상 우려 물품 등 특별히 반출이 긴급하거나 전시회 출품 등 시간적 제약이 있는 때, 협정세율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늦어지는 때, 양륙 후 수량이 확정되는 계약에 의한 화물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수입금지물품, 타 법령 규정에 의한 허가 등 또는 검사 완료 등의 증빙 또는 확인이 되지 않은 물품, 원산지 위장 표시물품의 경우는 허가 전 반출을 승인할 수 없다. 오로지 관세의 납기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등 명백하게 허가 전 반출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신청에 관계된 물품이 유세인지 무세인지 관계없이 승인을 해도 무방하다.

허가 전 반출 승인을 받은 후 불명확했던 수량, 가격 등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자료를 세관에 제출하고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격교섭이 장기화되는 등 특별한 거래실태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3개월을 경과해도 수입허가에 이르지 못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수입허가의 촉진을 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특례수입신고제도

특례수입신고제도는 보안관리 및 법규준수체제가 정비된 AEO 공인기업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수입자에 대해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분리하여 납세신고 전에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수입물품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반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수입자의 원가 절감 등의 편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수입신고시 납세에 관한 사항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므로 신고 항목이 대폭 축소된다. 납세를 위한 심사 및 검사가 기본적으로 생략되므로 통관소요시간을 미리 알 수 있어 재고 관리 등이 용이하다.

바. 서류보관 및 사후조사

물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수입화물에 대한 품명, 수량 및 가격 등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해당 장부 및 관계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서류의 의무보관 기간은 수입허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장부는 7년, 관련 서류 등은 5년이다. 다만, 관세법 제68조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제외된다.

〈표 24〉 수입서류 보관의무

종류	기재사항	보존기간
장부 비치	품명 수량, 가격, 수출자 성명(명칭), 수입허가 연월일, 수입허가번호를 기재 (필요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기존 장부, 송장 등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 기입한 것으로도 가능)	수입허가일의 다음날부터 7년
관련 서류	수입허가 화물의 계약운임명세서, 보험료명세서, 포장명세서, 가격표, 공급자 또는 매도인이 작성한 매수인과의 거래에 관한 서류, 기타 수입허가를 받은 화물의 과세표준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허가일의 다음날부터 5년
전자적 기록	전자거래(EDI거래, 인터넷거래 등에 의한 거래, 이메일 등을 통해 거래정보를 수수하는 거래)를 한 경우 당해 전자거래의 거래정보(거래에 관하여 수취하거나 송부하는 구매주문서, 계약서, 송품장, 영수증, 견적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에 보통 포함되는 사항)	수입허가일의 다음날부터 5년

자료: 일본 관세국(<http://www.customs.go.jp/shiryo/chobo.htm>)

사후조사는 수입자의 사업소 등을 세관 직원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관련 장부 및 서류 등을 확인하는 조사이다. 수입화물의 통관 후 수입화물에 관한 세금이 적정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정신고에 대하여 시정과 동시에 수입에 대한 적절한 신고지도 를 실시하여 적정한 과세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세관직원은 수입화물에 대한 계약서, 송품장, 기타 무역 관련 서류와 회계장부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의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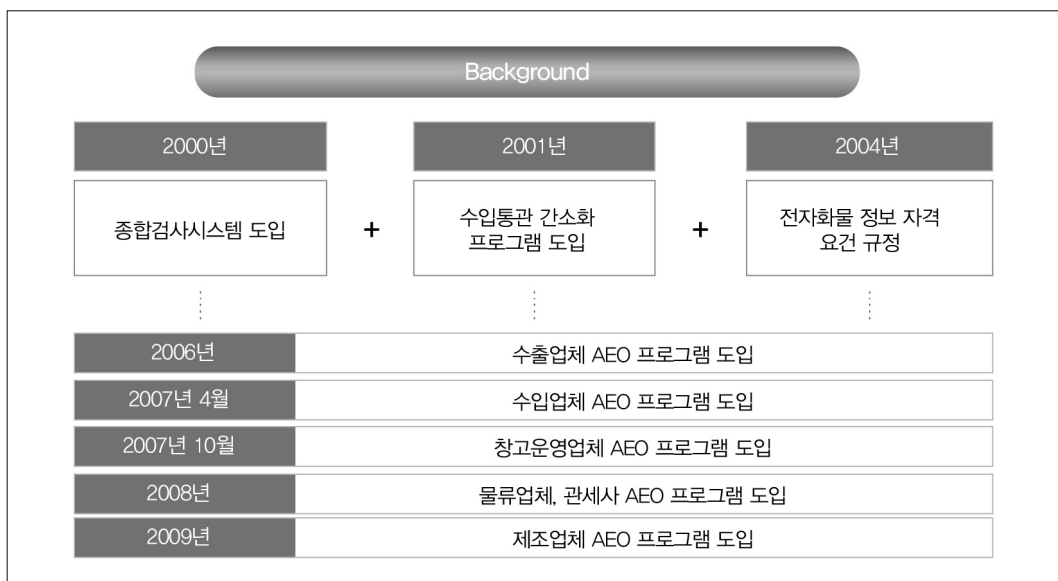
AEO 제도

(1) 제도의 도입

가. 도입 경과

일본 세관은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 세관과의 상호협정과 AEO 프로그램의 홍보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AEO 도입 배경과 경과를 도식화하여 살펴보면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 일본의 AEO 도입 배경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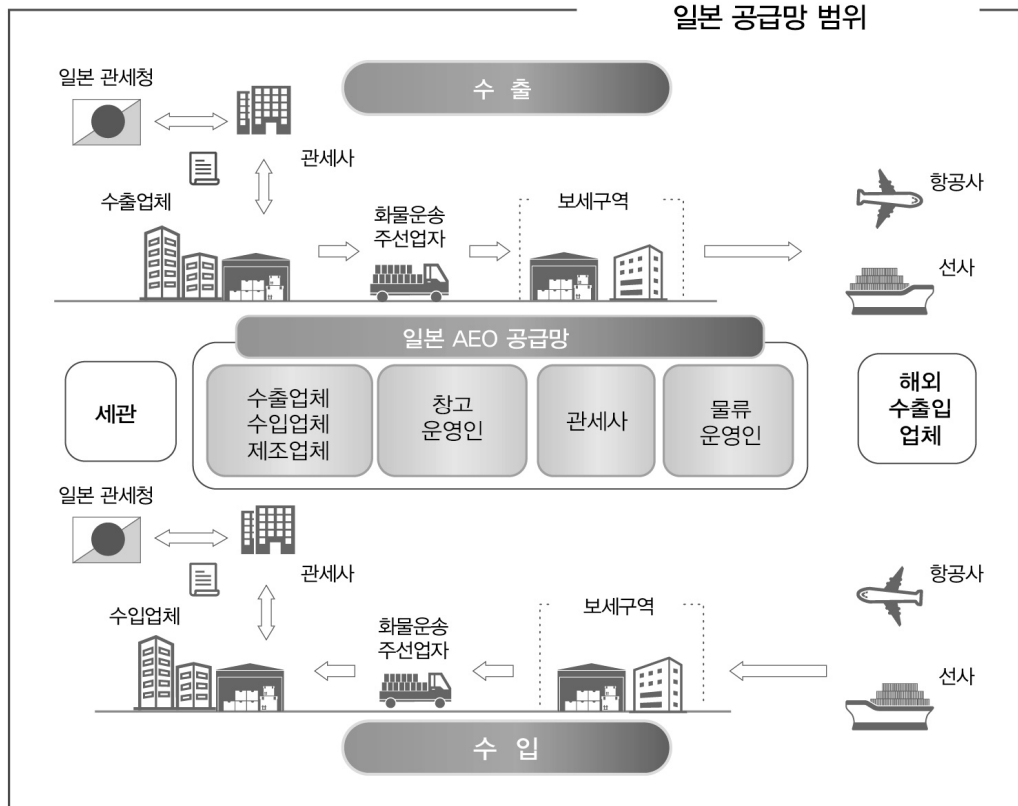


먼저, 2000년부터 종합검사시스템(Prior Comprehensive Inspection System, PCIS)을 도입하였다. 이후 2001년에 수입통관간소화 프로그램(Simplified Import Declaration Program)을 도입하고, 법규준수프로그램(compliance-based program)을 개발해왔으며,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와 국제무역의 안전에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서 WCO 가이드라인에 따른 AEO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2006년에는 수출업자를 위한 AEO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2007년 4월에 수입업체 AEO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2007년 10월에 창고운영업자, 2008년 4월에 물류업체와 관세사, 마지막으로 2009년 7월에 제조업체의 AEO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렇듯 일본은 공정무역 원활화와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관 AEO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그림 18>과 같이 국제무역 분야의 공급망 주요 구성원인 수출업자, 수입업자, 창고 운영자, 관세사, 물류업자, 제조업자 등 WCO에서 개발된 SAFE Framework를 중심으로 AEO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18> 일본의 AEO 공인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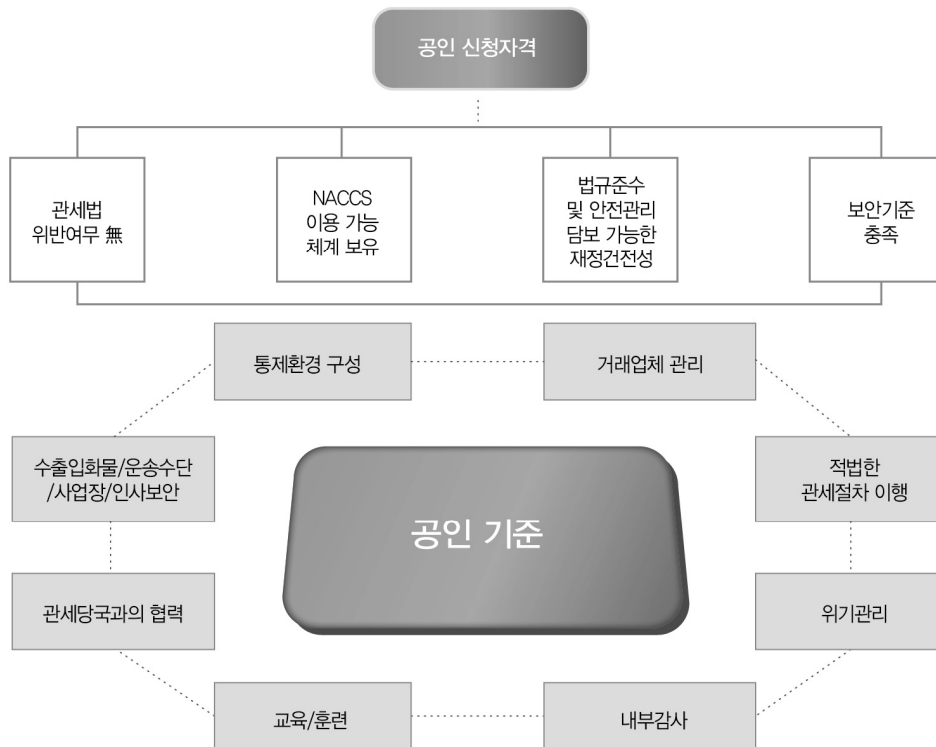


나. 운영 현황

일본의 AEO 공인기준은 법규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으로 명명하고, 1) 통제환경, 2) 거래업체관리, 3) 수출입 화물/운송수단/사업장/인사 보안, 4) 적법

한 관세절차 이행, 5) 관세당국과의 협력, 6) 위기관리, 7) 교육 및 훈련, 8) 내부감사 등 총 8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9〉 일본의 AEO 공인기준 및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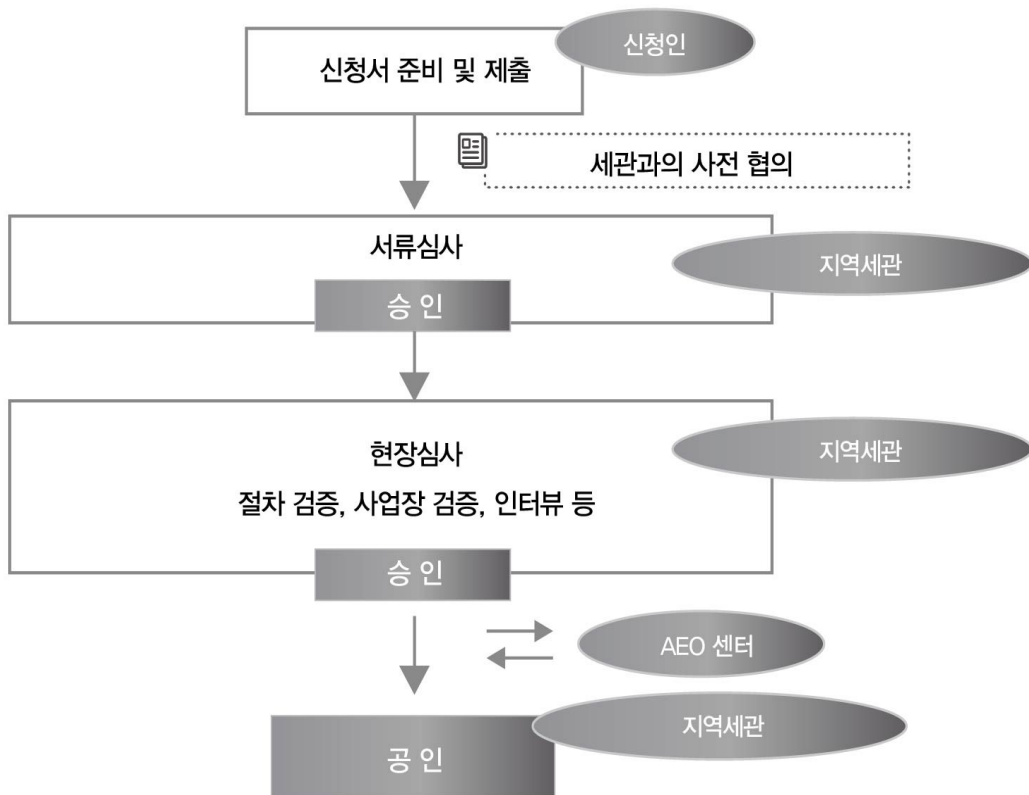
먼저, 통제환경 구성은 CP와 CP의 구성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전담부서 지정이 요구된다. 둘째, 거래 업체의 수출입 업무와 관련된 정보 및 물품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거래업체 관리(Business Partners Requirements)가 필요하다. 셋째, 수출입 화물(Cargo), 운송수단(Conveyance), 사업장(Premises), 인사(Personnel) 보안이다. 이는 업체의 안전성을 진단하기 위해 수출입 화물의 경로, 운송수단을 체크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잠금장치의 사용, 울타리 및 조명 설치, CCTV 설치, 주기적인 순찰, 직원식별이 명시된 절차서를 구비하고 그 절차에 따른 실행이 요구된다. 넷째, 화물에 대한 설명, 라벨, 품목분류, 관세율, 무역관련 법 적용 등 화물리스트를 정리하고 업데이트하여 적법한 관세 절차를 이행한다. 다섯째, 불법사항 및 혐의사항 등 이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세당국과 협력한다. 여섯째,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고 체계와 문제해결 절차를 준비하여 위기관리를 실시한다. 일곱째, 수출입 화물의 보안, 통관적법성 등 지속적 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여덟째, CP 준수의 여부를 담보할 수 있는 내부감사(Internal Audit)와 관련된 절차를 준비하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 전반적인 일본의 AEO 공인기준 및 신청자격을 정리해보면 <그림 19>와 같다.

(2) 공인 절차

일본의 AEO 제도 공인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림 20>과 같다.

<그림 20> 일본의 AEO 공인절차



일본은 한국의 예비심사 제도와 비슷하게 AEO 공인을 신청하기 전에 세관과 협의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공인신청 전 세관과의 협의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공인획득기간이 평균 1~2개월로 단축되기 때문에 다수의 기업들이 활용한다. 관할 세관은 기업들이 사전에 일반적인 공인절차와 공인 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정보가 공인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는 관할 세관의 서류검토를 자문한 담당자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수행함으로써 공인획득 기간이 단축된다.

가. 공인 신청

기업이 AEO 공인을 위해서는 공인신청서와 자체평가보고서(Self-Check Sheet), 법인등기증명서, 무역관련 증빙서류 등 기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할 세관은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서류심사(Examination of Application)를 수행한다.

나. 현장 검증

AEO 공인을 신청하여 서류심사를 마친 기업은 관할 세관이 현장심사(On-Site Inspection)를 실시한다. 현장심사는 적법한 관세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수출입 화물, 운송수단, 사업장, 인사 및 보안, 접근통제, IT 보안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다. 공인 결과보고(통과/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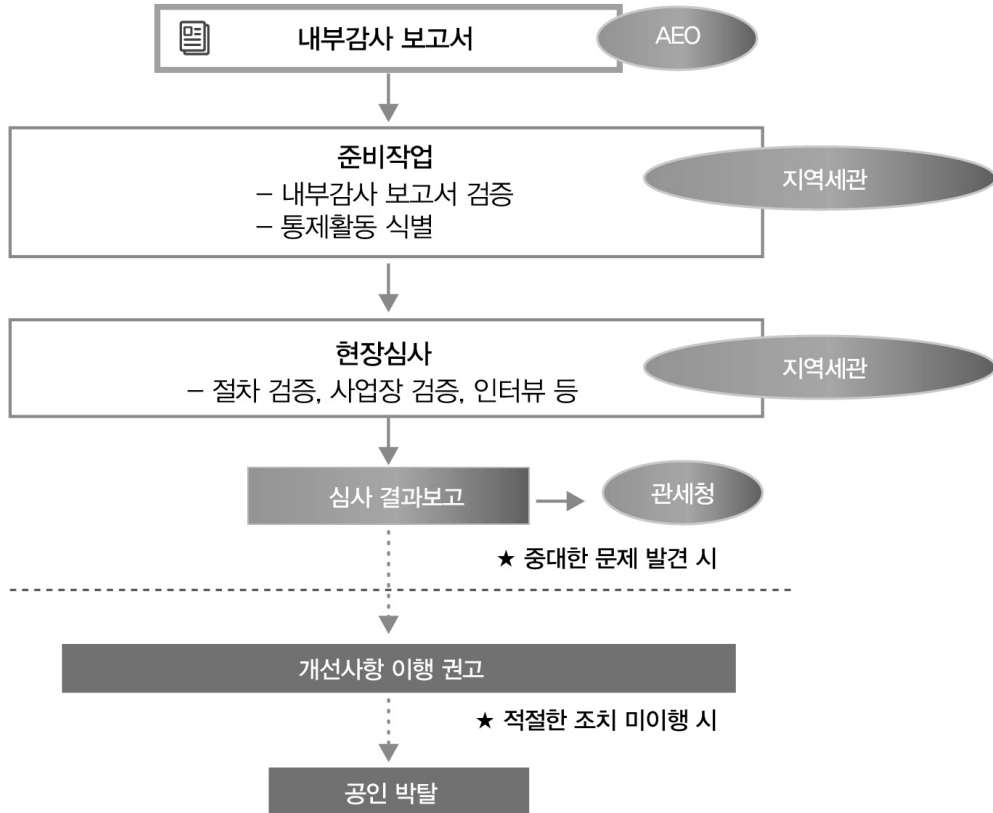
일본의 AEO 공인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수행한 결과를 중심으로 도쿄세관에 위치하고 있는 AEO 센터(도쿄 세관)에서 공인 부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기업이 모든 공인 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지역 세관장은 기업이 신청한 부문의 AEO 공인을 부여한다.

라. 사후관리

일본 AEO의 사후관리 절차는 공인절차와 마찬가지로 업체와 지역세관이 중심이 되며, <그림 21>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일본은 AEO 업체, 관할 세관(도쿄세관 포함), 관세청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AEO 업체는 연단위로 내부감사를 수행하고, 내부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할 세관은 공인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현장심사를 수행하여 현장심사 결과를 관세청에 보고한다. 관세청은 현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미충족 사항, 이슈 발

생하는 경우에 업체에게 개선대책을 요구한다. 기업이 적절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인을 취소한다.

〈그림 21〉 일본의 AEO 사후관리 절차



(3) 주요 혜택

일본 AEO 제도는 그 형태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이 나누어져 있다. 부문별 AEO 공인의 혜택에 추가적으로 법규준수와 안전 지향적인 기업으로서 평판이 향상되고, 세관 집행 절차 및 세관과의 관계 개선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 일본의 AEO 공인에 대한 부문별 주요 혜택을 살펴보면 〈그림 22〉와 같다.

먼저, 수입업체의 혜택은 수입신고 서류 및 물품 검사가 감소하고, 수입물품의 도착 전 수입신고 및 수리가 가능하다. 일괄관세 신고 및 납부하고, 관세신고 및 납부 전에 수입화물을 인수하거나 사후에 관세 납부를 허용한다. AEO를 공인받은 수출업체의 혜택은 수출신고 서류 및 물품 검사가 감소하고, 필요할 경우 수출업체의 사업장 내에서 수출신고 및 수리한다. 수출물품 검사는 세관 지정장치장까지 이동하여 이루어지는데, AEO 인증받은 기업이 원하는 경우 세관에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한다. 이때 세관 관할 보세구역(Container Yard, CY) 내에 물품보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창고료 및 보세운송 수수료가 면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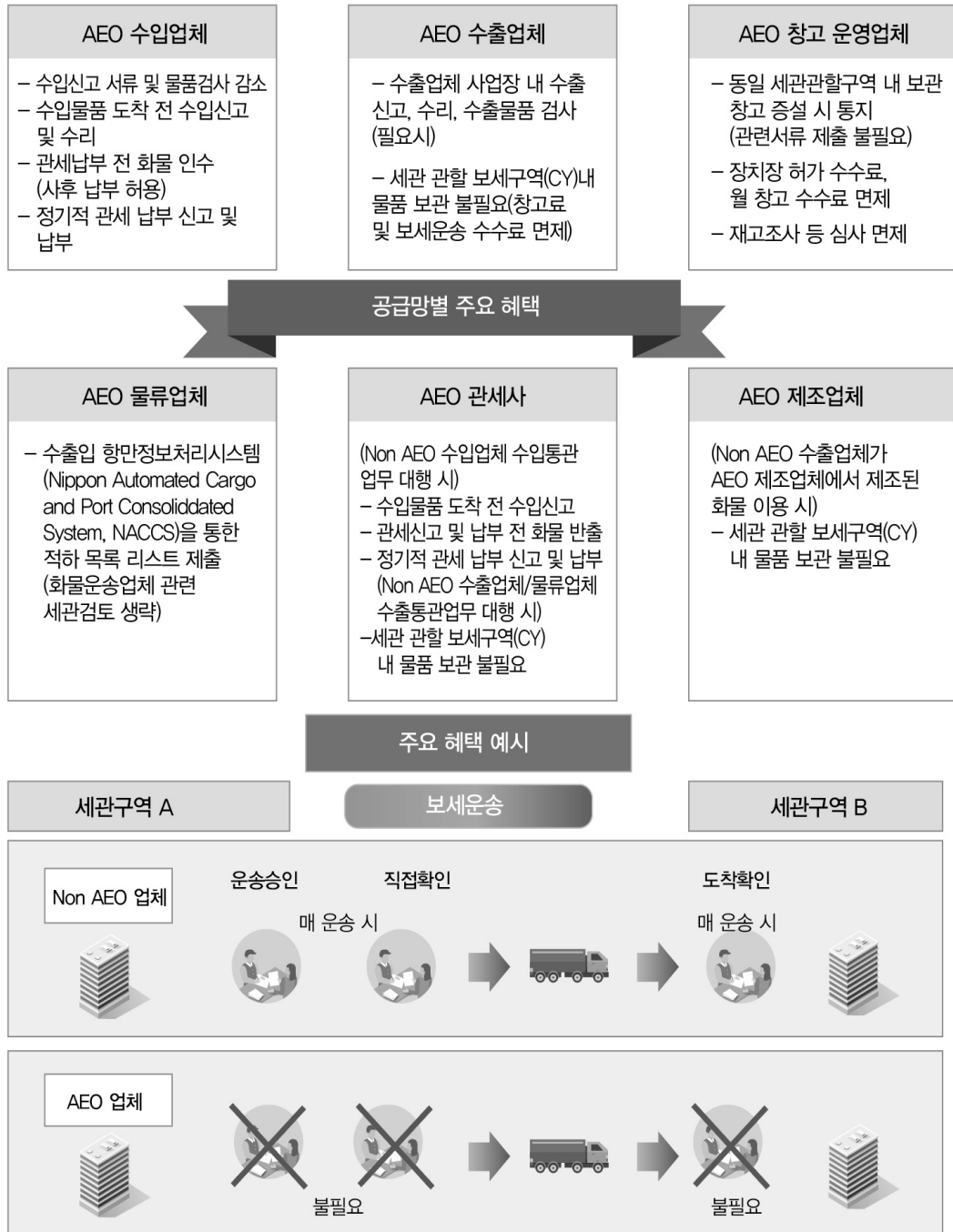
AEO 창고 운영업체의 혜택은 동일 세관관할 구역 내에서 보관창고를 증설할 경우에도 관련서류의 제출없이 세관관할 구역에 통지하는 것으로 신고를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장치장 허가에 수수료와 매월 창고 수수료가 면제되고, 재고조사 등의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AEO 물류업체는 적하목록 리스트 제출을 수출입 항만정보처리시스템(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 NACCS)을 통해 제출함으로써 화물운송 업무와 관련된 세관검토가 생략된다.

AEO 관세사의 혜택은 Non-AEO 수입업체가 수입통관 업무를 AEO 관세사를 통해 대행할 경우에 수입물품 도착 전 수입신고, 관세신고 및 납부 전 화물 반출, 일괄관세 신고 및 납부 등 AEO 수입업체가 받는 혜택을 허용한다. 또한 Non-AEO 수출업체와 AEO 물류업체가 수출통관 업무를 AEO 관세사를 통해 대행할 경우에 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물품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어 화주의 창고료 및 보세운송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는 관세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AEO 제조업체의 혜택은 Non-AEO 수출업체가 AEO 제조업체에서 제조된 화물을 수출할 때 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물품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그림 22〉 일본의 AEO 제도의 부문별 혜택



4

MRA활용 방법

- ① <한국 관세청>은 한국 AEO 수출기업 공인정보 송부 (한국 관세청 → 일본 관세청)
- ② <한국 AEO 수출기업>은 자사의 AEO공인번호를 일본 수입자에게 통보해야 함
- ③ <일본 수입자>는 통보받은 AEO 공인번호를 수입신고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하여 수입신고 서식 Shipper/Exporter란에 입력해야 함
 - 공인번호 : AEOKR1234567
 - Shipper/Exporter 기재방법 : A1234567KR00 (KR뒤에 숫자 00반드시 추가)
- ④ <일본 관세청>은 한국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한국 AEO 수출기업 공인정보와 대조하여 혜택 부여

〈 한-일 AEO MRA 혜택 〉

수입검사율 축소	•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에 대한 수입 검사율 축소
수입서류 심사 간소화	•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에 대한 수입신고 시 서류심사 비율 축소 및 제출서류 간소화
AEO화물 우선통관	•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에 대해 물품검사 또는 서류심사 시 우선 처리

<일본> AEO 공인기업인지 여부 확인

- <http://www.customs.go.jp/kyotsu/aeo/export/exporter.pdf>

참고1 일본 화물통관시스템(NACCS)의 입력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輸入申告事項登録(輸入申告)' (Import Declaration Item Registration (Import Declaration)) screen in the NACCS system. The form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with various input fields and checkboxes.

Annotations:

- Shipper/Exporter:** A red oval highlights the '仕出人' (Shipper/Exporter) field, which is part of the '輸出者' (Exporting Party) section.
- Input exporters' code for MRA (A+ 7 digits + KR + 00):** A red box highlights the 'A W B' (Exporters' Code) field, which is used for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purposes.

Form Fields and Se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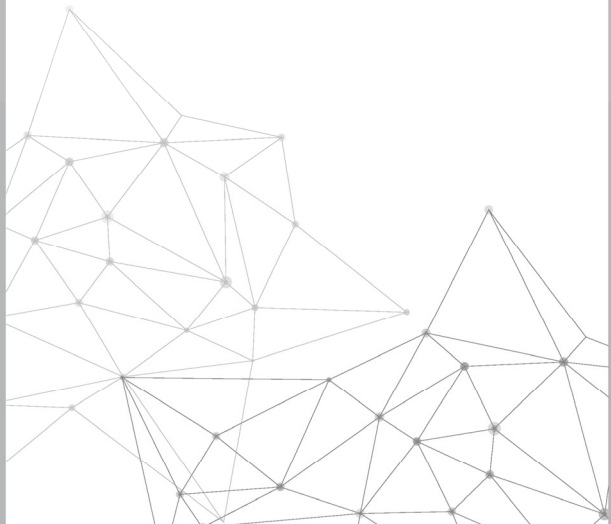
- Header:** IDA AID 輸入申告事項登録(輸入申告)
- File/Display:** ファイル(F) 表示(V)
- Navigation:** 共通部 繰返部
- General Information:**
 - 大額/少額* (Large/Small Amount)
 - 申告等種別* (Declaration Type)
 - 申告先種別 (Declaration Recipient Type)
 - 貨物識別 (Cargo Identification)
 - 申告番号 (Declaration Number)
 - 識別符号 (Identification Code)
 - 申告等予定年月日 (Declaration Date)
 - あて先官署 (Destination Office)
 - あて先部門 (Destination Department)
 - 輸入者 (Importer)
 - 住所 (Address)
- Shipping/Export Information:**
 - 蔵置場所* (Storage Location)
 - 輸入取引 (Import Transaction)
 - 仕出人 (Shipper/Exporter) - **Annotation: Shipper/Exporter**
 - 住所 (Address)
 - 申告等予定者 (Declaration Date)
 - A W B (Exporters' Code) - **Annotation: Input exporters' code for MRA (A+ 7 digits + KR + 00)**
 - MAWB (Master Air Waybill)
 - 貨物個数 (Number of Goods)
 - 貨物重量(グロス) (Gross Weight)
 - 積載機名 (Cargo Name)
 - 入港年月日 (Arrival Date)
 - 取卸港 (Port of Discharge)
 - 積出地 (Origin)
 - 貿易形態別符号 (Trade Form Code)
- Customs and Tax Information:**
 - 戻税申告 (Refund Declaration)
 - 貿易管理令 (Trade Management Order)
 - 輸入承認証 (Import License)
 - 内容点検結果 (Content Inspection Result)
 - 調査用符号 (Investigation Code)
 - 他法令 (Other Laws)
 - 共通管理番号 (Common Management Number)
 - 食品 (Food)
 - 植防 (Plant Protection)
 - 動検 (Movement Check)
 - 輸入承認証等1 (Import License etc. 1)
 - 2 (2)
 - 3 (3)
 - 4 (4)
 - 5 (5)
- Shipping and Logistics:**
 - 仕入書識別* (Purchase Order Identification)
 - 電子仕入書受付番号 (Electronic Purchase Order Receipt Number)
 - 仕入書番号 (Purchase Order Number)
 - 仕入書価格 (Purchase Order Price)
 - 運賃 (Freight)
 - 保険 (Insurance)
 - 評価 (Evaluation)
 - 包括評価番号 (Inclusive Evaluation Number)
 - 補正 (Correction)
 - B P R係数合計 (B P R Coefficient Total)
 - 搬入予定 (Loading Date)
 - 納期限延長 (Delivery Deadline Extension)
 - B P 申請事由 (B P Application Reason)
 - 納付方法 (Payment Method)
 - 口座番号 (Account Number)
 - 担保番号 (Collateral Number)
- Remarks:**
 - 記事(税関) (Remarks (Customs))
 - 記事(通関) (Remarks (Broker))
 - 記事(荷主) (Remarks (Shipper))
 - 社内整理番号 (Internal Management Number)

- 일본에서 AEO MR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화물통관시스템 shipper/Exporter란에 'A+7자리 번호+KR00'을 입력해야 함

아시아(ASIA)

중 국

(China)



1

국가 개요

일반 사항	국 명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면 적	약 960만 km ² (한반도의 약 44배)
	수 도	베이징(北京; Beijing) [총 면적 1만 6,411km ² 로 서울(605km ²)의 약 27배]
	인 구	13억 9,008만 명(2017년 기준)
	주 요 도 시	베이징(2,171만명), 충칭(3,075만명), 상하이(2,418만명) 등
	민 족	한족(92%) 및 55개 소수민족(8%)
	언 어	한어(漢語; Chinese)[*표준어: 보통화(普通話; Mandarin)]
정치	건 국 일	1949년 10월 1일
	정 치 체 계	1당 체제 (공산당)
	국 가 원 수	• 시진핑(習近平): 現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공중앙군사위원회 주석(2013년 3월 취임) •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 중공중앙정치국상무위 위원(2013년 3월 취임)
경제	화 폐 단 위	위안(元), 인민폐(RMB)라고도 함.
	1인당 GDP	59,660 위안 (약 \$ 8,836달러) / 2017년
	교 역 량 (2018년 기준)	수출: 2,494,230 US\$ Mil 수입: 2,134,983 US\$ Mil
	주요 교역품	전기전자, 집적회로, 건축자재, 의류, 방직 및 식물제품, LCD 등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정부, 중국국가통계국, 주중한국대사관 등 종합, WITS(wits.worldbank.org)

한 / 중국 관계	
교역 규모	대 중국 수출(2019년) : 136,202,533 US\$ Thousands 대 중국 수입(2019년) : 107,228,736 US\$ Thousands 무역수지(2019년): 28,973,797 US\$ Thousands
교역 품	• 대 중국 주요 수출품목 : 반도체, 평판 display, 합성수지 등 • 대 중국 주요 수입품목 : 반도체, 화학원료, PC 등
투자 교류	• 우리나라의 대 중국 투자액 → 596억 4천만 달러(2017년 기준) • 중국의 대한 투자액(Financial Outflow) → 30억 7464만 달러(2017년 기준)
교민	2,461,386명(2019년 기준)

자료원: 중국국가통계국, 중국인민은행, 중국외환관리국, 중국상무부, 국가해관총서, 관세청, 외교부

2

통관절차

(1)

수출 통관절차

수출업자는 세관 신고 전 중국 상무부(MOFCOM)에 대외무역 운영 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대외 무역 운영 업체로 등록하려면 ‘외국인 투자 기업 승인 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수출신고서는 서면 또는 전자 형식(EDI)으로 수출자(또는 탁송자, consignor) 또는 수출자가 위임한 세관 신고 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다. 수출자는 매년 개정되는 수출입물품 필수검사대장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대체로 위험한 화학 물질, 폭발 등 불꽃놀이 제품, 라이터, 장난감과 유모차, 식품 및 회토류와 같은 품목 등이 수출 검사 대상이다. 수출필수 검사대상물품의 검사는 해당 물품의 생산 공장에서 검사해야 하며, 위험한 화학 물질 및 기타 위험물의 수출 포장은 추가 검사 및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수출업체는 세관의 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 세관 검사와 관리를 받는다. 고위험 업체의 수출물품은 검사를 받으나 그 외의 물품은 신속통관 또는 간결한 검사를 진행한 후 수출된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수출의 약 1/3이 싱글윈도우(single window)로 통관되었으며 통관에 걸리는 시간은 전체 평균 약 1.1시간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수출관세는 국내환경보호와 에너지 및 자원 절약을 위해 수출입관세세칙에 따라 지정된 품목에 부과하는데 철강 및 철강제품, 대다수의 기타 금속들이 이에 해당한다. 수출관세대상리스트는 매년 개정되며 수출관세는 법정관세와 임시관세로 2종류로 구분된다. 수출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출거래가격, 운송비, 보험료 및 수출 관련 수수료를 모두 더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종가세 적용이 일반적이다. 물품을 수출한 후 수출자는 증치세(VAT)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납세한 증치세 수준보다는 낮다.

가. 수출관세

2017년 10월 기준 법정 수출관세 부과품목은 2015년부터 변함없이 102개이다. 임시

수출관세 부과품목은 179개이며 2015년 314개에 비해 135개가 감소했는데 이는 WTO 분쟁 해결 결정의 이행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되는 품목은 주석 및 정광이며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25류 토석류 및 소금, 27류 광물성연료, 31류 의약품 및 44류 목재로 수출관세율이 0%이다.

나. 수출규제

중국은 ① 인간, 동물 및 식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환경보호, 부족한 천연자원을 보호하거나 기타 효과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③ 수출 경영 조직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④ 중국의 국제 공약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⑤ 법률이나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상황에 의해 필요한 경우 물품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수출제한 또는 금지품목을 작성하고 공표하는데 수출금지품목은 고고학 인공물, 베조아르(bezoar), 사향, 검은 이끼, 특정 식물, 뼈, 상아, HS 25류의 천연 모래, 석면, 탄화수소의 할로젠화 유도체, HS 제29류의 유기화합물, 화학적으로 처리된 비료, 미가공 목재 및 일부 백금 제품 등이 있다.

수출제한의 종류는 수출 승인제(라이선스)와 수출할당제(쿼터제)가 있으며 모든 수출제한물품은 수출승인대상이다. 즉, 수출할당 대상물품은 추가적으로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할당물품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물품을 대상으로 하나 특정지역에 한해 지정되기도 한다.

2017년 기준 중국의 수출할당대상품목은 <표 25>와 같이 HS Code 8자리를 기준으로 약 100개 품목이다. 수출할당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수출신고 전 수출할당량 권한을 확보해야 하며 대만, 홍콩 및 마카오 등에 수출허가대상물품을 수출 시 중국 내 지정항구를 통해서만 수출이 가능하다.

〈표 25〉 중국의 수출할당과 승인대상물품 목록

구분	물품	관리종류	관리 주체 또는 대상
수출할당과 승인대상	– 쌀, 옥수수, 밀, 면화, 석탄	수출할당과 승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수출할당 상무부(MOFCOM) –수출승인
	– 홍콩과 마카오 등으로 수출되는 밀가루; 옥수수 가루, 쌀가루, 톱질한 목재, 살아 있는 소, 돼지, 닭 – 원유; 정유; 은; 인산염 암석	수출할당과 승인	상무부(MOFCOM) –수출할당
	– 메트 러쉬 및 매트 러쉬 제품, 활석 덩어리 분말, 마그네시아, 감초 및 감초 제품	수출할당 입찰과 승인	상무부(MOFCOM) –수출할당
수출승인 대상	– 살아 있는 소, 돼지, 닭 – 신선한 냉장 쇠고기, 돼지고기와 닭고기 – 보크사이트; 희토류; 파라핀; 텅스텐, 카보 런던, 백금(가공 무역용), 일부 금속 및 금속 제품; 몰리브덴 및 몰리브덴 제품; 자연 모래 – 석유 제품(오일, 그리스, 윤활기유 – 구연산; 페니실린 공업 소금; 비타민C; 황산, 이 나트륨 황산염 – 오토바이(모든 지형 차량 포함) 및 새시 – 안티몬, 인듐, 주석 및 이들의 생성물	수출승인	수출 계약서에 서명한 수출업자에게 승인 부여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알루미늄, 코크스, 텅스텐 제품, 탄화규소, 망간 및 형석	수출승인	수출 승인 신청 전 수출허가 선행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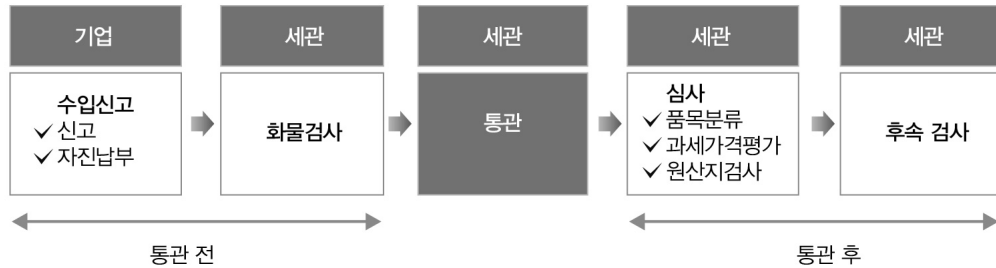
자료: WTO(2018), Trade Policy Review–China, WT/TPR/S/375.

(2) 수입 통관절차

중국은 2017년 7월부터 ‘통관일체화’ 제도가 시행되었다. 통관일체화는 기존에 지역마다 달리 행해지던 통관절차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으로 통관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지만 사후심사와 신용관리가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 해관총서는 개방형 경제체제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전국 세관 통관일체화 개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임의로 통관 혹은 신고 항구를 선택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든 통관관련 업무를 신고할 수 있다. 즉 중국 전역 어느 도시에서라도 통일된 형식과 기준이 적용된, 일관되고 편리한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림 23〉 중국의 수입통관 절차



자료: 정재현 외 2인(2018),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중국 편.

통관일체화 시행 전에는 물품을 먼저 심사한 뒤 통관시키는 선심사 후통관 방식이었지만 시행 후 수입통관 절차상 가장 큰 변화는 선통관 후심사 방식으로 물품을 먼저 통관시켜 통관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중국의 평균 수입통관 소요시간이 25.1시간(2016년)에서 15.9시간(2017년)으로 단축되었다.

또한 기존에 지역마다 달리 행해지던 통관절차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지역세관별로 규정과 절차, 비용 등이 달라 발생했던 문제가 사라지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반영돼 절차의 투명성이 향상되었다. 통관일체화 전 중국의 각 해관은 담당 지역별로 업무가 독립되어 해관별로 다른 규정과 절차, 비용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가. 통관 전

1) 신고

신청인은 직접 EDI 센터에 전산입력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자체적으로 화물접수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은 임의로 통관 혹은 신고 항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 통관 관련 업무를 신고할 수 있고 선택지역에 통관신고, 증치세 납부,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입신고접수 확인은 세관이 발송하는 신고접수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세관은 수입신고가 완료된 기업에게 신고접수증을 발송하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반송증을 발송한다.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서류, 특수서류, 예비서류로 구분된다. 기본서류는 수출입화물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Invoice(운송보험서류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함께 제출),

P/L(선적화물, 단일품종화물 또는 포장과 내용이 일치하는 화물 제외), B/L(해운 수출입의 경우), AWB(항공운송의 경우), 소포명세서(우편운송의 경우), 화물수취증(육상운송의 경우), 수출대금영수 신고확인증(수출의 경우), 세관이 발급한 수출입화물의 감면세증명 및 보세등기증명서 등의 서류이다. 특수서류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근거해 취급 품목에 따라 쿼터허가증(국가계획 부문의 쿼터 증명, 수출입허가증 등), 기타 특수서류(상품검사증, 동식물검역, 약품검사증, 기타 감독조건상의 각종 증서) 등이 요구된다. 예비서류는 필요 시 세관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무역계약서, 원산지증명, 위탁업체의 영업허가증, 위탁업체의 장부자료 및 기타 관련 서류 등이다.

2) 자진납부

통관 전 기업은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세관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통관을 신청하는 수입신고시 신고와 함께 수입 시 발생할 예상 관세 및 증치세를 선납해야 한다. 통관일체화 후에는 기업이 수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세금고지서가 발부되며, 기업의 자진신고를 통해 납부세금을 계산해 수속에 따라 납부한다.

관세징수는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및 「수출입관세조례」를 근거로 국가의 별도규정 외에 모든 수출입화물은 관세징수대상이다. 관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과정에서 관세뿐 아니라 소비세, 증치세 등 내국세를 징수한다.

해관신고서를 작성하면 사전신고 시스템 세금계산 서비스에 납부할 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시스템에 나타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예상세액은 중국 해관의 EDI 시스템상 사전입력란에 해관세금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전신고 항목을 입력하면 납부할 세금이 자동 계산되며, 세금 결과에 대한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세관에서 수출업자에게 세금고지 내용을 통보한다. 세금계산 시 금액을 잘못 기재할 경우 사후검사로 적발되거나 향후 지속적으로 적발되면 고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합산과세 담보등록을 한 경우 해관 통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담보금액에서 세금이 삭감된다. 합산과세 담보등록이란 일정 기간 내 여러 차례 수출입을 진행할 경우 매 건 따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하여 납부세금은 보증 한도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화물 통관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3) 화물검사

기업이 수입신고와 과세납부 수속을 완료하면 화물검사가 진행되며, 통관 전 화물검사는 간소한 편이다. 통관 전 화물검사는 화물의 안전여부, 합법적 수출입 여부 등 중요 리스크에 대해서만 판별한 후 대부분의 화물을 우선 통관시킨다. 화물검사 범위는 수출입 화물의 성질, 원산지, 화물의 상태, 수량, 금액 등 신고 내역과의 일치여부 등이다.

화물검사는 주로 항구 통관현장에서 처리한다. 세관의 화물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또는 화물장치장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단, 플랜트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수요물자,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컨테이너화물 같이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화물은 신고인의 신청으로 현장에 세관원을 파견하여 검사한다.

화물검사 대상은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행한다. 화물 안전진입 통제관리는 품명, 규격, 수량, 상표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항공·해상·육상운송, 홍콩·마카오 소선박에 대한 화물검사를 실시한다.

나. 통관 후

통관일체화 개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서류심사가 통관 후에 관리되면서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는 반면, 사후심사 및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통관 후 심사는 품목분류, 과세가격평가, 원산지에 대한 것으로 신고요소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통관일체화 전에는 통관 과정에 대한 전면 심사와 확정을 통해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등 과세 관련 신고 요소에 대해 세관신고서별로 심사가 확정되었다.

신고요소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은 조세징수관리센터에서 전국의 세관신고 데이터를 품목별, 산업별로 취합하여 일괄적으로 심사한다. 심사내용은 세금과 관련한 신고요소인 HS Code 분류, 가격평가, 원산지 확인 등 세수관리요소의 정확성을 심사하고 이를 통해 세수위험을 통제한다. 전국의 세관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세징수관리센터(3개)가 심사를 실시하며, HS Code 별로 조세징수관리센터가 달리 지정된다. 상하이 조세징수센터는 주로 기계전기류, 광저우 조세징수센터는 화공류, 베이징-톈진 조세징수센터는 농림, 식품, 약품, 경공업, 잡화, 방직류 및 항공기 등 품목에 대해 세금신고관련 요소의 정확성 검증과 심사를 위한 정보수집과 정보통합이 이루어진다. 또한 사후감사의 결과를 소재지 해관에서 센터로 보고해야 한다.

통관 후 심사대상은 무작위로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신용등급, 취급화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조세징수관리센터에서 심사대상을 선정하여 각 소재지 해관에 하달한다. 통관 후 심사과정에서 신고내용과 불합치하거나 자진 납세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과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해관의 고위험 등급에 추가되어 중국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3

AEO 제도

(1) 제도의 도입

가. 도입 경과

1991년 3월부터 중국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hina Customs, GACC)는 기업을 경영관리상황, 수출입신고현황, 세관법령 등 성실준수를 바탕으로 A, B, C, D 류의 4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기업분류관리제도(Measures for Enterprise Credit Management, MECM)를 시행하였다.

2001년부터는 관할 구역 내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과 가장 불성실한 기업을 분류하고 관리하는 홍·흑색제도를 도입하였다. 2004년부터는 선정된 홍색 또는 흑색 기업의 명단을 중국해관총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또한 기업을 전국 세관의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홍색 기업에게는 통관상 편의조치를 제공하고, 흑색 기업은 법규준수를 위한 엄격한 세관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였다. 2008년 4월 1일부터 4등급 기업분류 및 홍·흑색제도를 폐지하고, AA, A, B, C, D 류의 5등급 기업분류관리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림 24〉 중국의 AEO 제도 도입경과



중국은 국제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AEO 제도의 국제기준에 맞춰 조정하기 위해서 2014년 12월 1일 중국 기업의 신용 및 위해요소관리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업평가기준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기업신용관리 잠행판법(Interim Measures of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Enterprise Credit Management, IMECM)¹³⁾을 시행하였다. 이는 미국의 C-TPAT 및 기타 외국의 AEO 제도를 수렴한 새로운 평가기업을 제시하고, 기업의 자체평가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이런 중국의 AEO 제도의 도입경과를 정리하면 <그림 24>와 같다.

나. 운영 현황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기업신용관리방법」에 근거하여 모든 수출입 기업을 신용등급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중국 기업을 신용상태에 따라 <표 26>과 같이 고급 인증기업(AA류), 일반 인증기업(A류), 일반 신용기업(B류), 신용불량 기업(C류, D류)으로 분류하였다.

<표 26> 중국의 AEO 공인대상

AEO 인증기업	고급 인증기업	1. 내부통제, 재무상태, 법규준수, 무역안전, 보너스 기준 등 총 32개 항목에서 “No” 항목 없음 2. 전체 점수가 95점 이상
	일반 인증기업	
Non-AEO 기업	일반 신용기업	1. 세관에 최초로 등록된 기업 2. 인증기업 분류 조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용 불량기업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은 기업 3. 1년 동안 신용 불량기업에 적용되는 관리를 받으며, 해당 기간 동안 신용 불량 기업이 되는 위반을 하지 않은 기업
	신용 불량기업	1. 밀수 범죄나 밀수 행위를 범한 경우 2. 기간 내 세금, 과태료 등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3. 신고오류율이 동 기 전국 평균 오류율의 2배 이상인 경우 4. 세관에서 불량기업으로 인정하는 기타 경우

13)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GACC) 령 제225호

신용등급은 인증기업, 일반신용기업, 신용불량기업으로 분류되고, 인증기업은 고급인증기업과 일반인증기업으로 나누어진다.

해관에 처음으로 등록등기 또는 신고하는 기업, 인증기업이 해관인증기업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표 27>의 규정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관이 신용불량기업으로 분류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표 27>의 규정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반신용기업으로 분류한다.

<표 27> 신용불량기업

- 밀수범죄 또는 밀수행위가 있는 경우
- 비보관 기업이 1년 내에 해관관리규정을 위반한 횟수가 전연도 세관신고, 출입경신고목록, 출입경운수적하목록 등 관련 서류 제출총수의 1,000분의1을 초과하고 해관 행정처벌금액 누계가 10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 보관기업이 1년 내에 해관관리규정을 위반한 횟수가 전연도 세관신고서, 출입경신고목록, 출입경운수적하목록 등 관련 서류 제출총수의 1만분의 5를 초과하고, 해관 행정처벌금액 누계가 3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체납하거나 납부할 벌금액을 미납한 경우
- 실체조사를 통하여 세관에 등록한 주소 혹은 경영 장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및 해관 등록 연락방법으로 기업과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기업에 해당하여 해관에 의해 신용정보이상기업으로 등재되어 90일을 초과한 경우
- 해관이나 기타 기업의 명의로 부당이득을 치누하는 경우
- 해관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신용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해관관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저해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
- 형사범죄로 국가신용불량공동제재명단에 등재하는 경우
- 해관총서가 규정하는 기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연도에 등록등기 또는 신고하는 비보관/보관업체가 1년 내에 해관의 관리감독규정을 위반하여, 해관의 행정처벌금액 누계가 각각 100만 위안, 3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해관은 신용불량기업으로 분류한다.

중국의 AEO 인증을 위한 기업의 공인기준은 <그림 25>와 같이 크게 내부통제시스템(internal controls including IT systems), 재무건전성(financial conditions or status), 법규준수(compliance), 무역안전보안(trade security)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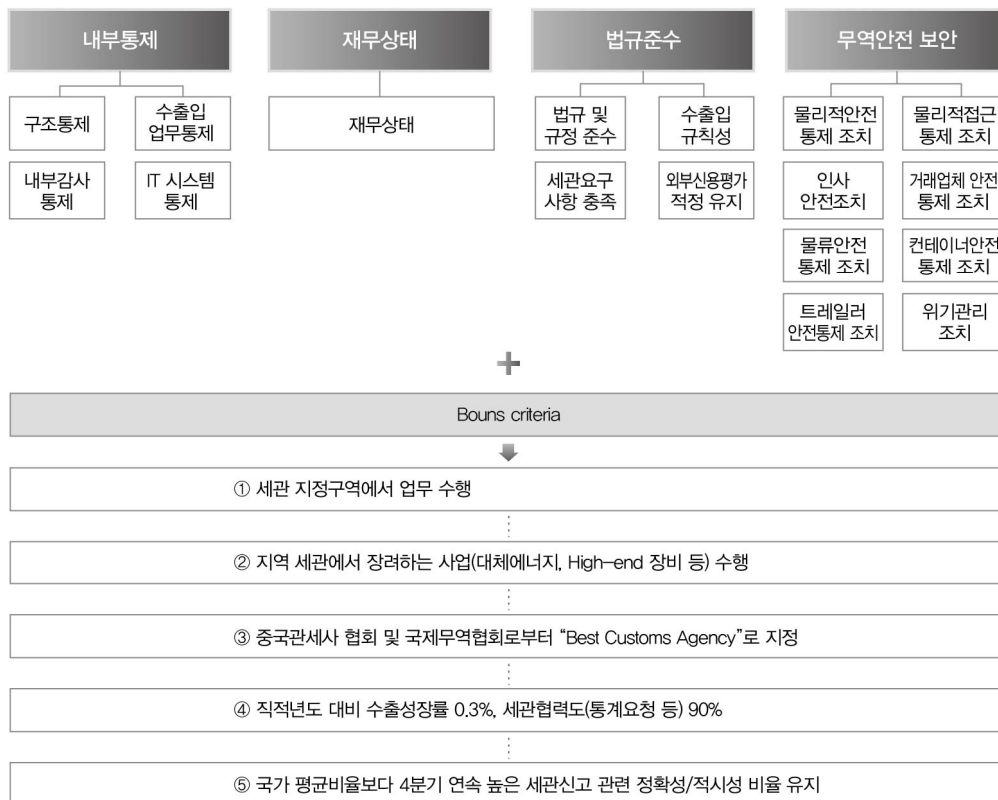
내부통제를 판단하는 요소는 내부 조직구조와 세관업무 교육에 대해 평가하는 구조통제, 수출입 서류 통제, 수출입 서류 보관, 수출입 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수출입업무통제, 내부감사 제도, 책임 추궁, 개선제도에 대해 평가하는 내부감사통제, 정보 시스템, 데이터 관리, 정보 안전에 대해 평가하는 IT 시스템 통제로 이루어져 있다.

재무상태의 판단은 회계정보, 재무건전성, 수익성, 납세능력을 평가한다. 법규준수는 임직원과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해 평가하는 법규 및 규정 준수, 등록정보, 수출입 기록, 신고 규범성에 대해 평가하는 수출입 규칙성, 해관총서의 관리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관리 요구사항 실행여부로 평가하는 세관요구사항 충족, 외부신용 불량기록의 여부를 평가하는 외부신용평가 적정 유지 기준이 있다.

무역안전 보안을 평가하는 기준은 물리적 안전통제조치, 물리적 접근통제, 인사안전조치, 거래업체안전통제조치, 물류안전통제조치, 컨테이너통제조치, 트레일러안전통제조치, 위기관리조치 등 8개 기준이 있다.

AEO 기본 인증기준 4가지 외에 부가기준(Bonus Item)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부가 기준은 ① 세관 특수감독 관리구역 내의 기업 ② 국가에서 권장 및 지원하는 기업 ③ 전국적 산업조직이 수여하는 명예칭호 획득 ④ 중국 대외무역 수출 선도지수 기업 ⑤ 세관이 전개하는 수출입신고서류 기업자체보관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기업의 경우 가산 가능하며 중복 가산은 불가능하다.

〈그림 25〉 중국의 AEO 공인기준



다. AEO 공동인센티브 프로그램

중국은 2016년 10월 AEO 공동인센티브(AEO Joint Incentive, AJI)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범 정부 계획을 도입하였다. 기존 AEO 프로그램의 공인기준을 충족하여 중국 세관 및 타 정부부처가 인정한 고급인증기업(Advanced Certified Enterprises, ACE)은 약 3,000여개가 있고, 이는 중국 수출입량의 약 33.1%를 차지하고 있다.

AEO 공동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세관, 검역소, 민간항공 및 항만 당국과 같은 국경 기관과 NDRC(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CCPIT)와 같은 비 국경기관 및 세금, 금융, 환경보호, 시장감독 및 은행 감독 담당 등 약 40개의 정부부처가 포함되어 있다.

AJI 프로그램은 49가지 프로모션 조치로 구성되며 6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범주	명칭	내용
1	그린 레인 (Green Lane)	신속 라이선싱, 등록 및 상품 출시에 대한 조치를 포함. 예를 들어, 세무 당국은 관세 신고와 같은 형식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AEO를 위한 그린 채널을 설정함
2	검사 축소 (Less Inspection)	항만에서 적은 수의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항 포함
3	우선순위처리 (Priority Treatment)	특허 출원, 상표 등록 및 소송 권리 보호와 같은 지적 재산권 보호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회사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조치 포함
4	절차 간소화 (Simplified Procedure)	참여 기관이 요구하는 문서 수를 최소로 줄이는 조치를 포함
5	주요 참조 벤치마크 (Major Reference Benchmark)	다른 AJI 기관이 조사 할 때 회사의 공인 된 AEO 상태를 고려하기 위한 조치 포함
6	파일럿 개혁 프로젝트 (Pilot Reform Project)	세관 및 기타 정부 부서에서 구현 한 파일럿 프로젝트에 AJI 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조치 포함

AEO 공동인센티브 프로그램은 2020년 시작하는 사회적 신용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으로 안전, 법규준수,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광범위한 비전의 일부로 중국의 모든 기업 또는 기타 단체를 포함한 시민 및 법인의 행동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국 국무원(China's State Council)은 사회 신용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문제를 연구

하고 AEO 공동인센티브 프로그램과 같은 공동 인증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조직하기 위해 부서 간 공동 회의 메커니즘을 확립하였다. 이 메커니즘에는 거의 모든 정부 부서가 포함되어 40여개의 정부 부서가 AEO 공동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총괄 설계하여 주요 기능과 참가자에게 제공 할 혜택을 명시하였다.

정부기관 및 공인된 평가기관이 기업 활동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사회적 신용 시스템의 핵심이다. 중국 세관은 시스템의 일부로서 국무원이 설립한 신용정보공유를 위한 국가 플랫폼인 AEO 관리시스템에 연결되어 타 정부부처와 AEO의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한다. 중국 세관은 하루 평균 3,000 AEO 실시간 데이터를 보낸다. 타 정부 부처도 플랫폼에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하여 신용정보 저장고(silo)를 제거하는 동시에 감독을 보다 지능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모든 당국은 공급망 보안 규칙이 준수되도록 역동적으로 AEO의 감독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검사 결과는 공유되고, 이는 검사의 중복을 감소시키고 관리 자원을 절약한다. 기업이 불법적이거나 부정직한 활동에 참여했거나 안전 및 법규준수 의무를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즉시 해당 정보가 중국 세관으로 전송되어 해당 기업의 AEO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다.

사회적 신용 시스템은 정부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 AEO 공동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중국의 정부부처간 존재했던 많은 관리장벽을 제거하여 통합된 접근 방식을 창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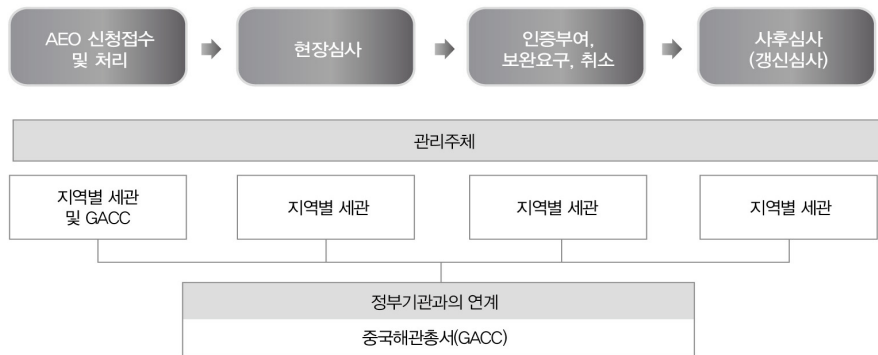
국경 당국은 더욱 조화된 통제가 가능하고, AEO 공동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신용증명서의 상호인증과 같은 다른 보안 및 법규준수 프로그램의 상호 인증에 기반하여 국경 당국 간의 상호 신뢰를 반영하고 통제 수단을 조정하여 국경 통관을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

AEO 공동인센티브 프로그램의 혜택은 거래운영 시간을 감소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수출 관세환급 시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어 약 70%가 단축되었고, 신용등급이 높아짐에 따라 은행의 신용한도에 따른 AEO 기업의 직접금융 비율은 2015년 60%에서 2017년 90%로 증가하였다.

(2) 공인 절차

중국의 AEO 제도 공인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림 26>과 같다. AEO 공인절차별 관리주체는 지역별 세관이 주로 담당하고, 중국해관총서와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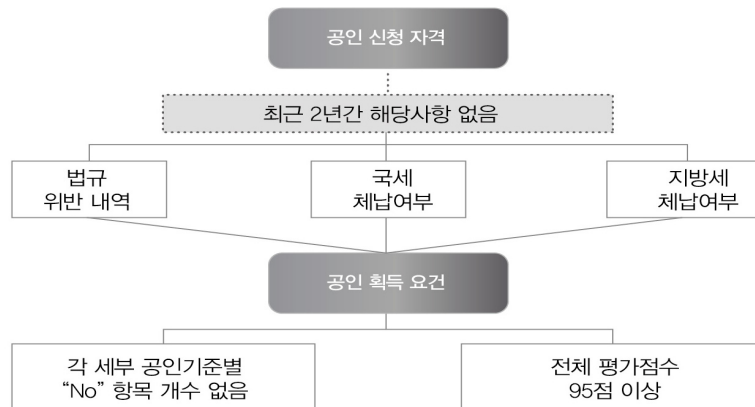
<그림 26> 중국의 AEO 공인절차 및 관리주체



가. 공인 신청

기업이 AEO 공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AEO 공인 신청 전에 자체평가(self-assessment)를 통해 인증기준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는 <그림 27>에 나타난 바와 같이 AEO 인증 자격요건은 2년간 법규 위반, 국세 체납, 지방세 체납을 하지 않아야 하고, 각 세부 공인기준별 ‘아니오’ 항목의 개수가 없이 전체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27> 중국의 AEO 공인 신청자격 및 획득 요건



나. 현장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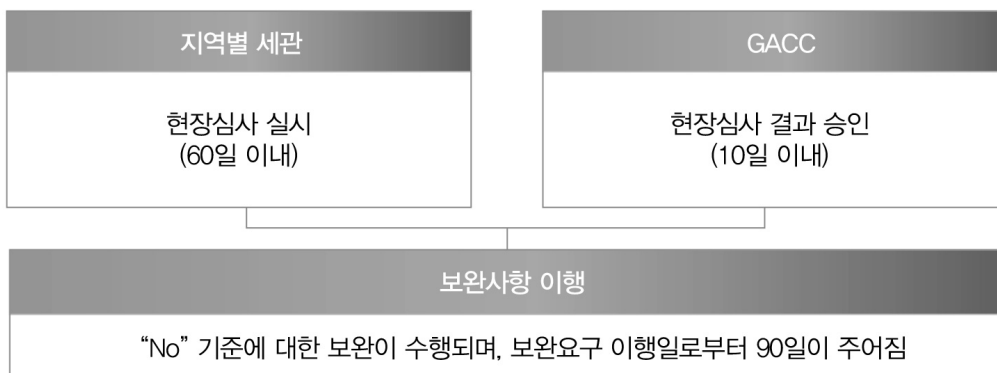
AEO 공인 신청을 마친 기업은 지역별 세관이 60일 이내에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현장심사에 대한 점수 산정은 <표 28>과 같이 필수(basic), 권고(optional), 보너스 기준(bonus criteria)으로 나뉜다. AEO 공인 통과기준은 기준 미달 항목이 없고, 인증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이다. 인증평가 최종 점수는 100+(모든 채점항목 평가점수의 합계)이고 기준 충족 항목은 0점 가산으로 채점된다. 기준 미달 항목은 2점 감점되고, 부가기준에 해당하면 최대 2점까지 가산한다.

<표 28> 중국의 AEO 현장심사 점수 산정 기준

Basic Yes, No	“0”, “-2”로 구성
Optional Yes, No	“0”, “-1”, “-2”로 구성
Bonus Criteria	Yes(2점) 또는 “미적용(N/A)”으로 구성

중국의 지역별 세관이 중국해관총서에 현장심사결과를 송부하면 중국해관총서는 현장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승인한다. 현장심사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보완이 완료되어야 하지만, AEO 인증심사에 대한 전체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8>과 같다.

<그림 28> 중국의 현장심사 시행 주체 및 기한



※ 인증심사에 대한 전체 심사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다. 공인 결과보고(통과/기각)

중국의 AEO 제도의 현장심사 결과 전체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일 경우 AEO 공인이 통과되고, 95점 미만일 경우 AEO 공인이 기각된다.

라. 사후관리

중국의 AEO 인증 기업은 사후관리 제도로서 자율공시제도(Voluntary Disclosure Program, VDP)를 별도 운영하고 있다. 고급 인증기업이 이를 활용하여 자체감사 보고서, 내부준수보고서 등을 세관에 보고할 경우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고급 인증기업은 비즈니스 공급 및 관리에 관한 평가 보고서(매년), 감사보고서(매년), 수출입과 관련된 비즈니스 서류(분기별)를 세관에 적시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급 인증기업은 매 3년마다 공인유지를 위해 갱신심사를 실시하고, 일반 인증기업은 비정기적으로 공인유지를 위한 갱신심사를 실시한다. 기업이 갱신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즉시 그 기업의 등급이 하락하거나 AEO 공인이 취소된다. 또한 1년 동안 AEO 공인의 재신청을 할 수 없다.

마. 기타 특이사항

중국의 AEO 인증 기업은 그 기업의 AEO 인증 코드번호로 <http://credit.customs.gov.cn>에 접속한 후 인증기업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3) 주요 혜택

중국은 AEO 인증 기업에게 우선통관수속, 검사율 축소, 담보인하 혹은 무담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신용등급 제도에 따라 성실 기업에게는 연대장려 혜택을 제공하고 불성실 기업은 연대징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표 29〉 중국 AEO 인증의 주요 혜택

내용	일반인증	고급인증
수출입화물의 평균검사율은 일반신용기업 평균검사율의 50% 이하	○	○
수출입화물의 통관수속 우선 처리	○	○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총액 또는 해관총서가 규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담보 금액으로 담보 가능	○	○
해관총서가 규정하는 기타 관리조치	○	○
수출입화물의 평균검사율은 일반신용기업평균검사율의 20% 이하		○
담보면제 신청 가능		○
기업에 대한 조사, 검사 빈도를 축소		○
수출화물 통관을 위한 사전신고 가능		○
기업을 위한 협조요원 배치		○
AEO 인증국가 혹은 지역 간의 통관우대조치 적용		○
국가 유관부문 간에 실행하는 신용기업 우대조치 적용		○
불가항력으로 중단된 국제무역의 경우 회복 이후 우선 통관		○
해관총서가 규정하는 기타 관리조치		○

▶ 고급인증기업에 적용되는 관리조치는 일반인증기업보다 우선함

4

MRA활용 방법

- ① 중국의 AEO제도 명칭: MECM(Measures for Enterprise Credit Management, 중국 해관의 기업신용관리방법, '18.5.1 시행)
- ② <한국 관세청>은 한국 AEO 수출기업 공인정보 송부 (한국 관세청 → 중국 관세청)
- ③ <한국 AEO 수출기업>은 자사의 AEO 공인번호(AEO ID)를 중국 수입자에게 통보해야 함
- ④ <중국 수입자>는 통보받은 AEO 공인번호를 수입신고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하여 '수입신고서 해관기재란'에 기재해야 AEO MR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공인번호 : KRAEO1234567
 - 세관신고서 비고란 기재방

< 한-중 AEO MRA 혜택 >

수입검사를 축소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에 대한 수입 검사를 축소
수입서류 심사 간소화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에 대한 수입신고서 서류심사 비율 축소
우선 통관	- AEO 공인업체 전용창구를 이용한 통관, AEO 공인업체 우선검사 등을 통해 신속통관 가능 * (현행) 일반창구 통관 → (MRA 후) AEO 전용창구
세관연락관 지정	- 통관애로 발생시 기업 자체해결 방식에서 세관연락관이 담당·해소하여 MRA의 이행을 담보 * (기존 MRA) 애로해소 창구不在 → (중국과 MRA) 신설
비상시 특별조치	천재지변, 테러 등 물류장애로 정상적 수출입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우대 조치를 지속적으로 보장

<중국> AEO 공인기업(AA등급)인지 여부 확인

-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9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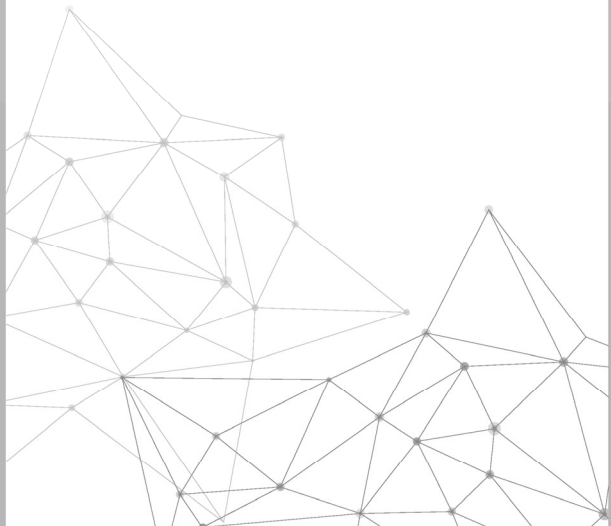
참고1 중국 수입신고서

海关进口货物报关单								付汇证明联	
预录入编号: 090001890				海关编号:					
进口口岸		备案号		进口日期		申报日期			
经营单位		运输方式 航空运输		运输工具名称 CZ3103		提运单号 999-00000881			
收货单位		贸易方式 一般贸易(0110)		征免性质 一般征税(101)		征税比例			
许可证号		起运国(地区) 中国(142)		装货港 上海(1111)		境内目的地			
批准文号		成交方式 C&F		运费 / /		保费 116/7603.9/3		杂费 / /	
合同协议号		件数 20		包装种类 盒		毛重(公斤) 6		净重(公斤) 4.4	
集装箱号		随附单据						用途	
标记唛码及备注									
项号	商品编号	商品名称、规格型号	数量及单位	原产国(地区)	单价	总价	币制	征免	
1	7118200000	紫砂茶壶 A货翡翠,尺寸: 3.88CM X 2.90CM X 3.00CM	件	中国(142)			日元 (116)	照章征税	
税费征收情况									
录入员 录入单位		兹声明以上申报无讹并承担法律责任			海关审单批注及放行日期(签章)				
报关员		报关专用章			审价				
申报地址		申报单位(签章)			统计				
邮编		电话			放行				
		填制日期			查验				

- 중국에서 AEO MRA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서 비고란에 AEO 조합번호 : AEO <KR+일련번호(7자리)>를 기재해야 함

아시아(ASIA)

홍콩
(Hongkong)



1

국가 개요

일반 사항	국 명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
	면 적	1,106km ² (서울 1.8배)
	수 도	홍콩은 특별행정구로 수도가 없음
	인 구	740만 명(2017년 말 기준)
	주 요 도 시	해당 사항 없음
	민 족	한족(95% 이상)
	언 어	중국어(공용어: 광둥어, 영어, 상용어: 보통어)
정치	건 국 일	1997년 7월 1일(홍콩특별행정구 성립일)
	정 치 체 계	행정수반 책임제(중국과는 1국 2체제의 자치정부)
	국 가 원 수	행정장관: 캐리 램 청 엇고르 (Carrie Lam Cheng Yuet-ngor), 2017년 7월 1일~2022년 6월 30일
경제	화 폐 단 위	홍콩 달러(HK\$)
	1인당 GDP	46,193 달러 (2017년)
	교 역 량 (2018년 기준)	수출: 569,106 US\$ Mil
		수입: 627,327 US\$ Mil
	주요 교역품	전기기기 및 부품, 통신/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 사무기기 및 컴퓨터 등

자료원: 홍콩무역발전국, 한국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한국무역협회, WITS(wits.worldbank.org)

한 / 홍콩 관계	
교역 규모	대 홍콩 수출(2019년) : 31,912,876 US\$ Thousands 대 홍콩 수입(2019년) : 1,779,542 US\$ Thousands 무역수지(2019년): 30,133,334 US\$ Thousands
교역 품	• 대 홍콩 주요 수출품목 : 전기전자기기, 귀금속, 기계류, 광학 의료기기, 플라스틱 등 • 대 홍콩 주요 수입품목 : 전기전자기기, 귀금속, 기계류, 광학 의료기기, 석유화학제품 등
투자 교류	• 우리나라의 대 홍콩 투자액 → 446건, 35억 948만 달러 (2017년 기준) • 홍콩의 대한 투자액(Financial Outflow) → 240건, 17억 9,160만 달러 (2017년 기준)
교민	약 1만 4,692명(2017년 말 기준)

자료원: 홍콩무역발전국, 한국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2

통관절차

(1)

수입통관절차

홍콩은 일반 수출입화물이나 환적 화물의 세관절차가 없다. 일부 품목에 한해 수입허가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통관 시 검사가 필요한 물품은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홍콩세관(HK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홍콩은 전체 품목 중 97% 이상이 비과세물품으로 거의 모든 식품에 관세가 없고, 수출입 절차가 간단하고 인프라 시설이 우수해 수출입이 용이하다. 일반적으로 수출 후 14일 이내 수출입 신고서를 제출하면 통관절차가 완료된다. 수입업체는 수입물품을 홍콩 내 판매하기 위해 수출국의 보건당국이 발급한 공식 보건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상품의 통관은 주로 적하목록(manifests)과 같은 서류검사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선택적 기준의 실질조사(physical examination)가 수행되고, 선택된 물품은 관세청 담당자에 의해 조사 목적으로 보관될 수 있다.

가. 수입신고전 준비

홍콩의 수입신고전 준비사항은 <표 30>와 같다.

<표 30> 홍콩 통관절차 - 수입 신고 전

구분	내용
적하목록 제출	수입자(운송회사)는 수입물품이 입항지에 도착 후 14일 이내에 적하목록(Manifest) 제출
수입허가증 구비	홍콩으로 수입하는 대부분의 상품은 수입허가 없이 화물의 수취가 가능하나, 일부 홍콩세관에서 규정하는 화물의 경우 홍콩 도착 7일 이내에 수입허가증 발급
수입허가증 발급대상 목록	마약류 ; 광학디스크기기 ; 의약품 ; 복제 약품 ; 동물 ; 멸종위기 동식물 ; 살충제 ; 화학약품 ; 폭발물 ; 무기 ; 쌀 ; 섬유 ; 냉동육 ; 가금류 ; 오존층 파괴물질 ; 라디오운송장비 ; 좌측 운전용 차량 ; 복사기 ; 엔진(111.9kw 초과) ; 방사성 물질 및 기기(X-ray 장치 등) ; 전략물자(메모리칩, 광섬유, 핵무기 관련물질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 트레이드내비

수출입 신고가 필요 없는 품목은 환적 화물(일부 품목 필요), 자동차를 제외한 개인 휴대품, HK\$ 4,000(약 US\$ 513) 미만의 우편물, 견본품, 광고목적의 HK\$ 1,000(약 US\$ 128) 미만의 수입품, 전시품, 스포츠 경기 참가용품, 증정품, 중고 공컨테이너, 인가한 배에서 포획한 어류 등이다. 대부분의 상품은 신고 후 3~7일내 자동적으로 수입허가증이 발급되며 수입허가증 발급 대상 품목은 수출입 규정, 비축 물자 규정 등에 의해 홍콩 도착 7일 내에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하므로 수입 허가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화물도착 4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홍콩은 화물 통관 시 수입허가증 발급대상 품목을 20여 가지로 분류하고 관련부서의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 한편, 인삼 등의 한약재는 허가받은 수입자만이 취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수입자는 라이선스 및 유통을 위한 도소매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나. 수입신고

홍콩은 수입자가 수입신고면제 대상화물 이외의 수입화물에 대해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표 31>과 같다.

<표 31> 홍콩 통관절차 - 수입 신고

구분	내용
수입신고서 제출	▶ 수입신고서 제출 면제 대상이 아닌 수입화물은 입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수입신고서 제출 ▶ 수입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는 홍콩 정부가 지정한 다음 중 하나의 서비스 업체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함 - Brio Electronic Commerce Limited - Global e-Trading Service Limited - Tradelink Electronic Commerce Limited ▶ 수입신고 증빙서류 -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P/L) - 선하증권 (Bill of Lading, 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Airwaybill, AWB) - 구매확인서(Purchasing Order) - 수입허가증(대상 품목의 경우, 멜론 해당 없음) - 위임장(위탁수입의 경우) - 기타 세관 요청 서류
수입신고서 제출 면제 대상	▶ 홍콩세관은 환적화물, 개인휴대품 등 규정된 수입화물에 대해서 수입신고를 면제함
수입신고 비용	▶ 수입신고 시 홍콩세관에 수입건당 수입신고 비용을 지불해야 함 ▶ 비 식품류 : 건당 수입물품가격 HK\$46,000까지 HK\$02 HK\$46,000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선 HK\$1,000당 HK\$0125 ▶ 식품류 : 수입물품 가격에 상관없이 수입신고 건당 HK\$02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 트레이드내비

다. 물품검사

홍콩세관은 수입화물에 대해 일부 물품을 임의로 추출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전자적 사전검사 내용을 살펴보면 <표 32>과 같다.

<표 32> 홍콩 통관절차 – 물품검사

구분	내용
전자적 사전검사	▶ Electronic System for Cargo Manifests (EMAN) : 해상운송수단으로 수입되는 화물의 정보를 홍콩 도착 전에 세관에 전자적으로 미리 제출하도록 하는 시스템 ▶ Air Cargo Clearance System (ACCS): 항공기로 수입되는 화물의 정보를 홍콩 도착전에 세관에 전자적으로 미리 제출하도록 하는 시스템 ▶ Road Cargo System (ROCARS) : 육상운송수단으로 수입되는 화물의 정보를 홍콩 도착전에 세관에 전자적으로 미리 제출하도록 하는 시스템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 트레이드내비

라. 관세 납부 및 통관 완료

홍콩은 일반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제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물품세 성격으로 술, 담배, 메틸알코올, 탄화수소의 4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한다.

<표 33> 홍콩 통관절차 – 관세납부

구분	내용
관세부과 대상 품목	▶ 주류, 담배, 탄화수소, 메틸알코올 등 4개 품목
통관 완료	▶ 수입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관세가 올바른 방법으로 결정되어 납부되면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이 완료 됨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 트레이드내비

3

AEO 제도

(1)

제도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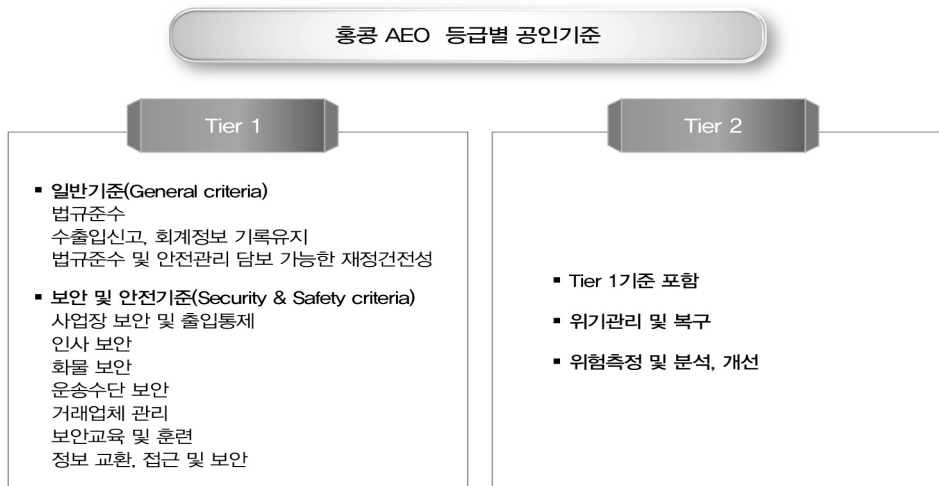
가. 도입 경과

홍콩의 AEO제도는 2010년 6월 시범 운영(Pilot Test)을 시작으로 공인대상 업체와의 지속적 간담회를 수행하였다. 간담회를 통해 공인기준, 혜택 등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2년 4월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홍콩 AEO 제도는 관세법 시행령(Nil)에 법적 기반을 두고 있으며 홍콩세관 및 소비세국(Hong Kong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에서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EO 프로그램은 수입업체, 수출업체, 제조업체, 화물운송주선업체, 운송업체, 창고운영업체, 터미널 운영업체 총 7개 부문을 인증 대상으로 하며 2017년 9월 기준 총 40개 기업이 인증을 획득하고 있다.

나. 운영 현황

홍콩세관에서는 AEO 공인기준을 Tier 1 등급, Tier 2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Tier 1 등급에 대한 공인기준은 일반기준과 보안/안전 기준으로 구분된다.

〈그림 29〉 홍콩의 AEO 등급별 공인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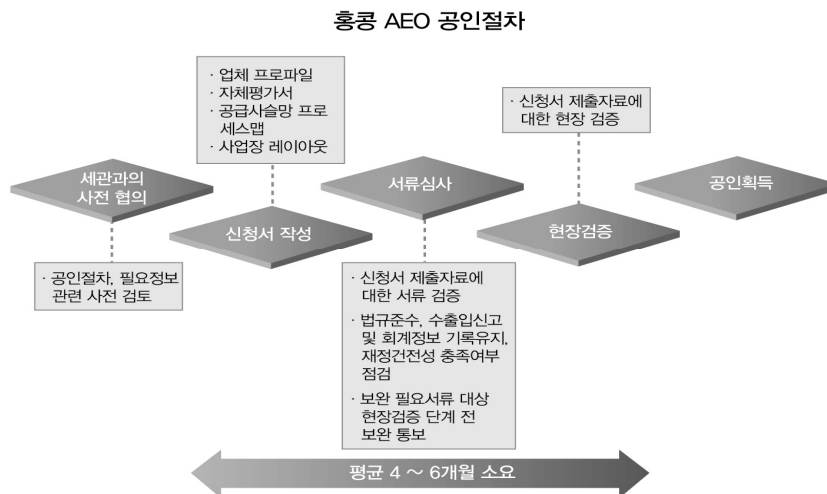
일반기준은 보안기준에 대한 심사 전 업체의 신청요건을 검토하는 기준으로 “법규준수”, “수출입신고, 회계 정보 기록”, “재정건전성” 중 3가지 기준으로 구분된다. “법규준수”기준에서는 최근 2년간 법규준수 위반내역 유무를 확인한다. “수출입신고, 회계 정보 기록”기준은 첫째,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인증서, 자격 등 관련자료 기록 유지, 둘째, 해당 자료 기록 유지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내부감사 수행체계, 셋째, 데이터 기록 유지/보관/보호 관련 내용이 명시된 절차, 넷째, 권한 없는 자로부터의 수출입신고 및 회계 정보를 보호하는 보안체제로 구성된다. 신청업체가 일반기준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AEO 공인신청은 기각된다.

보안/안전기준은 <그림 29>와 같이 사업장 보안 & 출입통제(Premises Security & Access Control), 인사 보안(Personnel Security), 화물 보안(Cargo Security), 운송수단 보안(Conveyance Security), 거래업체 관리(Business Partner Security), 보안 교육 & 훈련(Security Education & Training), 정보 교환, 접근 & 보안(Information Exchange, Access & Confidentiality) 중 9개의 기준으로 구분된다. Tier 2 등급에 대한 공인기준은 Tier 1 등급 공인기준에 “위기관리 및 복구(Crisis Management & Incident Recovery)”, “위험 측정 & 분석 & 개선(Measurement, Analysis & Improvement)” 기준이 추가된다.

(2) 공인 절차

홍콩의 AEO 제도 공인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림 30>과 같다.

<그림 30> 홍콩의 AEO 공인절차



AEO 공인절차별 관리주체는 홍콩 본부세관으로서 AEO신청서 접수, 현장검증, 공인부여와 관련한 일련의 공인 업무 및 갱신심사 혜택부여 등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 공인 신청

기업이 AEO 공인을 신청하기 전 세관과의 협의단계가 있다. 이는 공식적 공인절차는 아니나 사전에 세관과 공인절차, 공인기준 등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세관과의 협의 이후 업체는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서를 발송 및 전송한다. 이때 업체 소개, 주요 업무 활동, 운영 절차, 보안관련 인증 등이 명기된 업체 프로파일과 자체평가서(Self-assessment Questionnaire), 공급망 프로세스 맵, 사업장 도면(Premise Layout)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나. 서류심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홍콩 본부세관에서는 신청된 자료에 대한 서류심사를 수행한다. 서류심사 시 “법규준수”, “수출입신고, 회계 정보 기록”, “재정건전성”으로 구성된 일반기준에 대해 심사를 수행한다. 일반기준 관련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대해 업체가 제출한 자체평가서를 토대로 보안/안전 기준에 대한 심사를 수행한다.

다. 현장 검증

현장검증단계에서는 공급망 프로세스 맵과 사업장 도면을 참고하여 업체가 작성한 자체평가서 내용을 실제 수출입 업무 프로세스와 대조하여 검증한다.

라. 공인 결과보고(통과/기각)

현장검증 결과에 따라 공인 통과 및 기각이 결정되며 공인 통과 업체에 대해서는 공인 인증서가 부여되며 홍콩 AEO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서류심사 및 현장검증에 대한 심사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공인신청부터 공인 결과 보고까지의 기한은 평균 4개월~6개월 소요되며, 이는 업체의 사업장 개수, 비즈니스 모델 등에 따라 달라진다.

마. 사후관리

홍콩 AEO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AEO인증업체는 인증 후 공인기준에 대한 지속적 이행 책임이 있다. 또한, 사업장 변경/업종변경/공인기준에 대한 변동사항 시 홍콩 본부세관에 즉시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림 31〉 홍콩의 AEO 사후관리



홍콩 본부세관은 매 3년마다 공인유지를 위해 AEO인증업체에 대한 갱신심사를 수행한다. AEO인증업체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갱신심사 신청을 하며 심사 절차는 AEO공인심사와 동일하다. 기업이 갱신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나 관세법 위반 내역 발생 시 AEO 공인 정지가 되며 미충족 사항에 대한 보완 미이행 및 범법행위 발생 시 공인이 취소된다. AEO인증 취소업체의 경우 취소일로부터 2년 동안 인증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31〉로 표현할 수 있다.

바. 기타 특이사항

홍콩의 AEO 인증 기업은 <http://www.customs.gov.hk>에 접속한 후 인증기업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3) 주요 혜택

홍콩 AEO인증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표 34>과 같다.

<표 34> 홍콩의 AEO 혜택

혜택	Tier 1	Tier 2
수출입물품 검사율 축소 적용	○	○
Kitemark(영국 산업규격 합격품 표시증) 부여	○	○
수입국 세관에서의 수입검사비용 감소	○	○
MRA 혜택 부여	○	○
재고손실 및 도난 감소	○	○
수출입 통관 시 최우선순위 부여		○

첫째,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율을 축소하여 적용한다. 홍콩의 경우 전체 항공화물에 대해 3% 범위에서의 검사, 해상화물에 대해 5% 범위 내에서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AEO인증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물품 검사율이 감소되고 특히 Tier 2 AEO 인증기업의 경우 수출입 통관 시 최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통관원활화의 혜택을 부여받는다. 둘째, AEO업체에 대해 Kitemark(영국 산업 규격 합격품 표시증)을 공인업체에 부여하여 안전 업체로 인지되어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혜택을 부여받는다. 셋째, 보안이 강화된 AEO업체는 재고손실 및 도난이 감소되며 넷째, 수입국 세관에서의 수입검사비용 감소 등 MRA 혜택을 부여받는다.

4

MRA활용 방법

- ① <한국 관세청>은 한국 AEO 수출기업 공인정보 송부 (한국 관세청 → 홍콩 관세청)
 - ② <홍콩의 선사, 포워더 또는 화물운영인>은 적하목록 제출시 한국 AEO 수출업체의 상호 및 사업장 주소를 Shipper란에 입력
 - ③ <홍콩 관세청>은 한국 관세청이 제공한 상호 및 주소와 선사 등이 입력한 상호 및 주소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AEO MRA 혜택이 부여됨
- * 한국 AEO 수출자는 관세청에 제공한 영문 상호명 및 사업장 주소와 동일한 상호·주소를 홍콩으로 수출시 사용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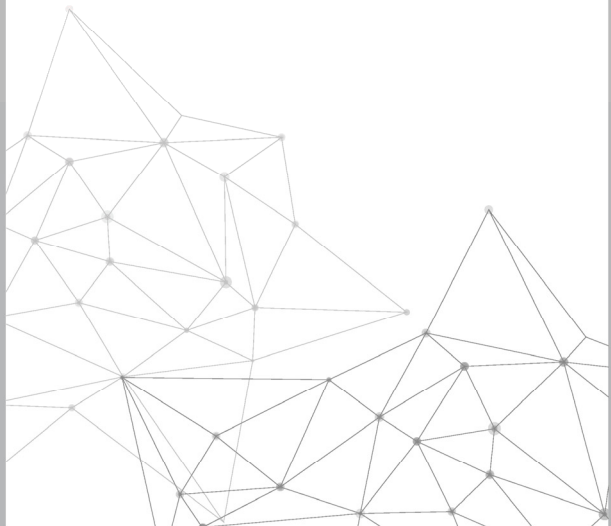
<한-홍콩 AEO MRA 혜택>

화물검사율 축소	•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에 대한 수입 검사율 축소
신속통관	• AEO 공인업체의 경우 화물검사 시 우선검사 등을 통해 신속통관 가능
세관연락관 지정	• 통관애로 발생시 기업 자체해결 방식에서 세관연락관이 담당·해소하여 MRA의 이행을 담보 * 애로해소 창구不在 → 신설
비상시 특별조치	• 천재지변, 테러 등 물류장애로 정상적 수출입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우대조치를 지속적으로 보장

아시아(ASIA)

인도

(India)



1

국가 개요

일반 사항	국 명	인도(India)
	면 적	328만 7,260km ² (한반도의 15배, 남한 면적의 33배)
	수 도	뉴델리(New Delhi)
	인 구	13억 1,689만 명(2017년) * IMF-WEO 2018.4월
	주 요 도 시	뉴델리(2,851만 명), 뭄바이(1,998만 명), 콜카타(1,468만 명) 등
	민 족	인도 아리안족(72%), 드라비다족(25%), 몽골족 및 기타(3%)
	언 어	힌디어, 영어 외 21개의 공용어
정치	건 국 일	1947년 8월 15일(영국으로부터 독립)
	정 치 체 계	내각책임제
	국 가 원 수	대통령 : 프라납 무커지(Shri Pranab Mukerjee) 총리 :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경제	화 폐 단 위	루피 Rupee, Paise
	1인당 GDP	1,982달러(2017년) * IMF 2018년 4월
	교 역 량 (2018년 기준)	수출: 322,292 US\$ Mil 수입: 617,946 US\$ Mil
	주요 교역품	자동차 제품, 철강판, 합성수지, 석유제품, 합성고무, 석유화학 합성연료, 기타기계류 등

자료원: Census of India, Ministry of Home Affairs, CIA World Fact book, IMF, 인도통계청,
WITS(wits.worldbank.org)

한 / 인도 관계	
교역 규모	대 인도 수출(2019년) : 15,096,302 US\$ Thousands 대 인도 수입(2019년) : 5,565,259 US\$ Thousands 무역수지(2019년): 9,531,042 US\$ Thousands
교역 품	- 수출품목 : 무선중계기 자동차부품, 금은세공품, 철비합금, 기타 석유제품 등 - 수입품목 : 나프타, 알루미늄과 기타합금철, 기타정밀화학, 아연과 * 무역협회 MPI
투자 교류	- 한국의 대인도 투자(2018년 3월까지 누적액, 신고기준) - 건수/총액: 3,159건, 70.9억 달러 - 주요 업종: 제조업(81.81%), 금융업(5.41%), 도소매업(5.16%) 등 - 인도의 대한국 투자 (2016년 상반기 누적) - 총액: 1억 1,801억 달러 - 주요 업종: 운송용 기계 60%(쌍용 마힌드라, 타타 대우 상용차), 서비스(17.9%) 등
교민	약 1만 1천명(2017년)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주인도한국대사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2

통관절차

(1)

수출 통관절차

수출자는 운송증권(Shipping Bill)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세관 또는 EDI 서비스 센터의 수출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수출 통관절차를 완료한다. 세관직원은 부과 가능한 관세와 기타 세금을 평가하고 관세환급이나 관세면제 적용대상의 경우 이러한 수출 인센티브 적용이 타당한지 점검한다. 수출물품의 검사 여부는 선적 전 운송증권에 해당 여부가 표시된다. 부두,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및 ICD(Inland Container Depots)의 세관직원은 백분율을 기준으로 수출물품을 랜덤 검사한다. 검사결과 신고서와 물품 간 불일치 발생 등 오류나 선적과 관련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선적은 허용된다. 검사 단계에서 허위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가. 수출신고

수출자는 통관 전 관세청(DGFT)에서 수출입코드(Importer Export Code, IEC)와 외환코드(Foreign exchange dealer code)를 먼저 획득해야 한다. EDI 시스템에서 IEC코드 신청은 관세청의 세관시스템에 의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수출금액 확인을 위해 승인된 외환딜러코드를 등록해야 하고,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을 위해 지정은행에 당좌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EDI가 아닌 수기로 수출통관을 진행하면 송금보증서류(Guaranteed remittance form, GR form)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세관은 송금보증서류와 수출입코드(IEC)의 작성내용을 비교 확인 후 이를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으로 송부한다. 단, 2만 5,000달러 이하의 수출과 50만 루피 이하의 선물 수출의 경우 송금보증 서류 작성이 제외된다.

부두의 물품관리인은 수출물품 검사목록과 EDI 수출신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수출 물품을 부두로 입하시킬 수 있다. 물품관리인은 수령한 검사목록에 따라 실제로 출입시킨 수출물품의 양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두에 수출물품을 양하한 뒤, 수출자 또는 관세사는 지명된 세관직원에게 연락하여 부두의 물품관리인이 배서한 검사목록과 물품의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및 소비세 환급신청서 등의 수출통관서류를 제출한다. 세관직원은 실제로 수취한 수출물품의 수량을 확인한 후 이를 전자 운송증권에 표기한 뒤 모든 원본 서류를 수출물품 검사를 진행할 부두검사인(Dock Appraise)에게 전달한다.

나. 물품검사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세관등록이 완료되고 검사 여부가 결정되면 신고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수출자의 귀책으로 물품가격, 관세환급 사항, 출항 및 입항 등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출물품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물품검사 제외 대상

컨테이너 창고(ICD/CFS) 또는 이와 유사한 창고에서 세관직원에게 의해 물품이 봉인된 수출물품 및 무료 운송물품은 일반적으로 현품검사를 하지 않는다. 단, 컨테이너실이 위조되었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현품검사를 진행한다. 특이사항으로 인해 창고물품의 현품검사를 하는 경우 세관 부감독관(Deputy/Assistant commissioner)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물품검사의 기준 및 비율

물품검사의 기준 및 비율은 수출물품의 관세환급액, 인센티브 비율 또는 무료 운송물품의 가격에 따라 상이하다.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액에 대해 10만루피를 기준으로 물품검사 비율이 결정된다. 수출촉진용 자본재(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EPCG)와 관세면세인증물품(Duty Exemption Entitlement Certificate, DEED)의 인센티브 금액에 대해 50만루피를 기준으로 검사비율이 결정된다. 대외무역정책에 따른 무료 운송물품 가격에 대해 200만루피를 기준으로 검사비율이 결정된다.

〈표 35〉 인도의 수출물품 검사 기준

구분	기준	검사비율
관세환급액	10만루피 이하	2%
	초과	10% (AEO 5%)
수출인센티브금액 (FOB 기준)	50만루피 이하	2%
	초과	10% (AEO 5%)
무료 운송물품가격 (FOB 기준)	200만루피 이하	2%
	초과	10%

주) 민감 지역(두바이, 샤르자, 싱가포르, 홍콩 및 콜롬보) 수출시 기준 이하 25%, 기준 초과 50%)

자료: CBEC(2015)

3) 기타 물품검사 요건

인도세관은 물품검사 기준에도 불구하고 수출물품과 관련한 특정 정보가 있는 경우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검사할 수 있다. 범규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개월에 한번 정도 물품검사 비율을 높이고 이 중 추출된 수출물품 중 최소 2건부터 최대 20건을 현품 검사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수출신고 물품부터 50번째 물품까지 검사하는 경우와 물품 검사일을 지정하여 해당일에 수출신고된 100개의 물품을 추출하여 검사하는 경우 등이 있다.

대외무역정책, 관세환급 및 기타 수출과 관련된 인센티브의 혜택을 주장하는 수출자는 각 수출진흥제도에 따른 혜택의 내용을 운송증권에 명시할 의무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부패하기 쉬운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수출물품은 현품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만약 부득이하게 검사하는 경우 해당 세관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관련 농수산물 위원회 또는 세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현품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검사 당일에 통관되어야 한다.

수출신고서와 현품검사 결과 내용이 상이한 경우 물품을 검사한 세관직원은 이를 운송증권에 기재하고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운송증권상 내용과 현품에 대한 서류 및 검사내용이 상이한 경우, 세관직원은 전자운송증권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서류와 함께 세관 부감독관(Assistant/Deputy Commissioner)과 수출국장(Commissioner of customs(Exports))에게 전달한다. 수출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수출신고 내용의 변경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세관 담당자와 협의할 수 있다. 만약 수출자가 세관의 의견에 동의하는 경우 운송증권 및 관련 서류의 내용은 변경되어지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관세법 등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다. 컨테이너 적입

컨테이너로의 수출물품 적입 또는 벌크화물의 경우 세관직원(Preventive supervision)의 감독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세관직원은 컨테이너에 적입된 실제 물품의 세부사항, 봉인번호(the bottle seal number), 그리고 EDI 시스템에 컨테이너와 적입된 수출물품의 세부 사항을 입력하고 수출자 운송증권 사본에 사인한다. 만약 컨테이너 적입물품 또는 벌크화물의 수량 또는 포장 개수에 오차가 있는 경우 세관직원은 EDI 시스템을 통해 운송증권에 그러한 사항을 기입하고 수량을 정정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환급 또는 관세면제 인증물품은 수량 정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는 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제조공장, 컨테이너 창고(ICD 또는 CFS) 또는 세관이 허용한 기타 장소에서 출하되는 수

출물품은 세관직원에게 의해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밀봉 또는 봉인(bottle sealed or lead sealed)되어야 한다. 보세운송트럭 또는 기타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운송수단은 밀봉 또는 봉인되어야 한다.

라. 수출허용과 수출신고서 수정

수출신고서와 실제 물품에 대한 검사결과 별다른 상이점이 없는 경우, 세관은 수출자용 운송증권에 수출허용이라는 도장을 날인하여 수출자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한다. 적절한 수출통관을 위해 수출자 또는 대리인은 세관직원의 수출허용 도장이 날인된 수출자용 운송증권 복사본을 운송회사에 전달해야 한다.

수출신고 후 생성된 검사 목록표(check list)의 정정이나 수정은 EDI 시스템상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운송증권 번호가 생성되기 전에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운송증권 번호가 생성되었거나 물품이 이미 수출용 부두에 반입된 이후에 정정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품이 수출허용을 받기 전이라면 수출국 세관 부감독관의 허가를 수출허용을 받은 후라면 수출담당 보안공동감독관(Additional/Joint Commissioner in charge of Export)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바. 환급신청

수입관세의 환급청구는 물품이 실제 수출된 후에 EDI 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자동 접수된다. 운송증권의 상태(status)와 환급청구의 재가 여부는 서비스센터 내 질의부서(query counter)에서 확인 가능하다.

운송증권이나 환급청구에 관해 세관에서 의문점을 갖거나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 수출자는 서비스센터를 통해 세관의 의문점을 해결해야 한다. 수출자가 서비스센터에 세관의 의문점 또는 결함에 대한 내용을 회신하지 않으면, EDI 시스템상 환급청구는 접수되지 않는다.

선사 또는 항공사 등 운송회사는 수출적하목록(Export general manifest, EGM)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세관 EDI로 송부함으로써 물리적으로 수출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세관은 이를 통해 관세환급 청구를 승인해준다. 특정일에 승인된 모든 관세환급 청구는 표로 정리한 뒤, 시스템을 통해 은행계좌로 이체된다. 은행은 2주일에 1번씩 수출자의 각 계정에 환급금을 입금한다.

아. 수출관세와 수출세 적용품목

수출관세(export taxes or tariff)는 인도의 인플레이션 억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14년 기준 적용대상은 보크사이트(bauxite), 티탄철광(ilmenite), 특정 동물의 생피, 가죽 및 무두질한 가죽, 철광석 펠릿, 철 스크랩과 폐기물 등이다. 인도 정부는 수입관세율(법정세율)과 마찬가지로 조정한 수출관세율의 공표를 연간 예산집행 시기에 재정 법안으로 발표하거나 정부의 관보(notification)를 통해 발표한다.

관세청의 수출관세 일정에 따라 수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대상은 ① 수입물품 통제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재수출되는 물품 ② 관세법에 따라 압수한 물품 또는 몰수, 벌금 또는 기타 지불 대신 수출하는 물품 ③ 인도에서 생산한 물품이 외국에서 전시용 또는 박람회용으로 수출되고 그러한 물품을 외국에서 판매하거나 달리 처분하지 않는 경우 ④ 「관세법」제25조의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중앙정부가 인정하는 선물이나 무상샘플 등이다.

〈표 36〉 인도의 수출관세(tariff) 적용품목

품목	수출관세율(FOB 기준)
철광석 펠릿	5%
보크사이트	5%
티탄철광	10(unprocessed) 5(upgraded)
동물의 생피, 가죽 및 무두질한 가죽	10~25
철 폐기물 및 스트랩, 철광석 및 강철의 재용해한 스크랩 및 잉곳	15

자료: WTO(2015), Trade Policy Review-India, WT/TPR/S/313.

수출세(export cess)는 인도의 특정 산업 발전을 위해 부과된다. 2016~2017년 기준 적용대상은 특정 향신료, 셀락 및 락 기반 제품, 담배, 망간 광석, 크롬 광석, 운모 제품 및 철광석 등이다.

〈표 37〉 인도의 수출세(cess) 적용품목

품목	수출세율
셀락과 락 기반 제품	100Kg 당 2.3루피
특정 향신료, 담배	FOB 가격의 0.5%
망간광	1톤당 4루피
크롬광	1톤당 6루피
운모제품	FOB 가격의 3.5%
철광석	1톤당 1루피

자료: CBED, The second schedule-export tariff

(2) 수입 통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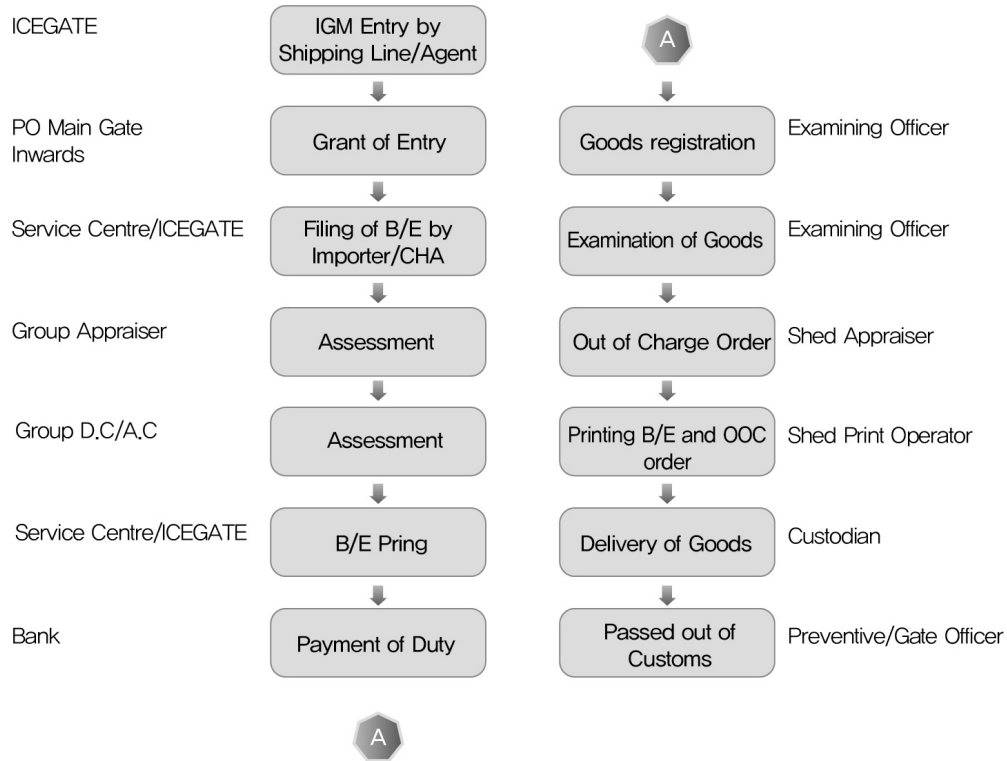
수입자는 수입상품, 원산지, 운송수단(선박 또는 항공기)등의 세부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세사법에 의해 등록된 관세사(customs broker)를 고용하여 수입통관 업무를 처리한다. 수입통관서류의 관리, 제시 및 통관절차는 업무를 능숙하게 하도록 교육받은 세관직원에게 의해 처리된다. 세관직원의 주요 업무는 대외무역법 및 수입규제법률에 따라 수입신고서와 수입신고서의 특정 정보를 면밀히 조사하고 수입물품의 가격, 품목 분류, 세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세관직원은 수입물품이 신고서상 기재된 운송수단에 실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입적하 목록명세서(Import general manifest, IGM)와 제시된 문서를 수기 또는 EDI 시스템을 통해 조사한다.

세관직원은 수입물품의 의무사항 또는 수입허가대상 확인을 위해 물품을 검사한다. 제출된 수입신고서와 기타 관련 서류를 중심으로 검토되며 심사한 세관공무원의 보고에 따라 의무 등이 결정된다. 수입물품에 별도 금지사항이 없는 경우 관리자는 해당 물품을 향후 검사대상에서 제외시킨 후 통관을 허용한다.

세관직원은 물품의 기존 정보가 아닌 세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세가격(Tariff value)과 품목분류 정보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한 후 관세평가를 진행한다. 이렇게 평가된 물품의 관세는 수입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납부한다.

〈그림 32〉 인도의 수입통관 절차



자료: India Customs(2016), Indian Customs An overview.

수입통관이 보류되어 별도 장소에 적재중일 때에는 해당 항만 또는 국제공항의 세관직원이 예외적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세관공무원은 물품의 자연적인 상태 점검, 관세평가, 기타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지정 세관(Custom House–Air Cargo Complexes ICDs)의 요청에 따라 샘플을 채취한다. 물품 상태, 수량, 가격 등에서 별다른 불일치가 없는 경우 통관보류가 해제(out of customs charge)되고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납부하면 통관이 완료된다.

품목분류와 관세평가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법률 조항의 위반이 보이는 경우, 물품에 대한 추가조사를 반드시 거친 후 최종적으로 통관한다. 수입자는 채권 또는 담보를 제공 하는 조건으로 잠정적인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 물품이 수입금지 품목에 해당되거나 잠정적인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은 필요한 경우 조사 결과 등이 알려 지고 판결 절차가 완료된 후에 이의제기의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가. 수입신고서 작성

수입자는 수입신고서 제출 전 대외무역총국(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DGFT)에서 수출입 코드(an Importer-Export Code, IEC)를 받아야 한다. 세관은 온라인 EDI 시스템을 통해 수출입코드(IEC)를 대외무역총국(DGFT)으로부터 전달받는다. 수입물품이 EDI 시스템을 통해 통관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식적인 신고서가 제출된 것이 아니므로, 수입자는 통관을 위한 수입신고서 처리에 필요한 특정사항이 있는 화물신고서를 세관에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EDI 시스템에서 수입업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모든 관련 정보를 담은 전자 형식의 신고서를 EDI 서비스센터로 전송하여 수입신고를 완료한다. EDI는 수입신고 데이터를 받으면 수입자 또는 관세사가 수입신고서의 적정성 확인을 하도록 체크리스트를 생성한다. 수입자 또는 관세사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면, EDI 서비스센터 운영자는 EDI 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서를 접수하고 EDI 시스템은 인쇄된 체크리스트에 승인된 수입신고번호를 생성하고 수입자 또는 관세사에게 재전송한다. 수입자 또는 관세사는 통관 전 최종 수입신고서에 서명한다.

수입신고번호는 운송업자에 의해 작성된 수입적하목록명세서(IGM)와 비교하여 검증한 뒤 발급된다. 서류 수동방식에서 수입자는 해당 선박에 명시된 화물을 검사한 선박회사의 의견이 명시된 수입신고서를 필요로 한다. 선박회사의 의견을 받은 후 수입신고서에 번호가 부여되며 이는 모든 수입신고서 사본에도 영향을 미친다. EDI 시스템에서는 수입신고서와 수입적하목록명세서의 검증을 EDI 시스템 자체에 의해 처리하며, 확인 후 수입신고번호를 생성한다. 수입신고번호 등록 후 수입신고서는 서류 형태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관세평가를 담당하는 세관부서로 이관된다. 해당 세관부서는 관세가 달리 적용되는 물품 별로 다수의 그룹으로 포진되어 있으며, 관세평가, 수입 규제 등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조사를 겸한다.

EDI 시스템이 아닌 항구 또는 공항 세관을 통해 가정용 소비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자는 수입신고서를 4부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 원본과 사본은 세관, 세 번째 사본은 수입자, 그리고 네 번째 사본은 송금은행에 제출한다. 항구 또는 공항 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수입신고서 이외에 서명된 송장, 포장리스트, 선하증권, 화물지시서(D/O) 또는 항공운송장, GATT 관세평가 신고서 양식, 수입자 또는 관세사가 작성한 수입신고서, 필요한 경우 신용장(L/C), 보험증권, 필요한 경우 수입허가자격증서, 산업자격증(Industrial licence), 검사증명서, 가능한 경우 카탈로그, 기계류, 예비품 또는 화학 물질에 대한 목

록, 기술 문서 작성 서류, 예비부품, 기계 구성요소 또는 기계의 개별 가격 명세, 특혜관 세율을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함께 제출한다.

나. 자진신고(Self-assessment)

2011년 재정지원법(Vide finance Act)에 따라 「관세법」제17조에 수출입 물품에 대한 수출입자의 자진신고납부제도가 도입되었다. 수출입자는 수출입신고서 또는 운송증권을 근거로 수출입 물품에 대해 납부할 관세를 자체평가하고 자진신고 해야 한다.

자진신고납부제도에서 수출입자는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품목분류, 관세율, 관세평가, 관세면제 및 관세 혜택 등을 올바르게 신고하며 이를 자체 검증할 책임이 있다. 수입자가 전자적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 경우, 관련 담당 세관직원은 수입자에게 수기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수입자가 제출한 수출입 신고서가 위험관리시스템(RMS)에 의해 전산심사가 금지된 경우에는 적절한 세관직원에게 의해 수기로 확인될 수 있다. 전산심사 금지는 위험관리시스템 이외에도 세관장이나 세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의 승인을 받아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EDI 시스템에 전산심사 금지 기록을 작성한 후 수기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산심사 금지 명령에 따라 세관은 수입신고서 재검토 조치, 실물 검사 또는 두 가지 조치를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수입신고자의 자진신고 내용이 부정확하다면 관세는 재평가될 수 있다. 자진 신고한 수입신고서 또는 운송증권의 검증은 수출입 물품의 관세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품목분류, 관세평가, 관세율, 관세면제 또는 기타 관련 사항의 정확성에 따라 위험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검증을 선택적으로 수행한다. 검증을 위해 세관직원은 수출입물품의 관련 문서나 정보를 요구하는 등 신고서와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관세평가에 대한 자진신고가 부적절하면 세관직원은 해당 관세를 재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5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재평가한 관세를 통지해야 한다. 세관이 재평가한 관세에 수출입자가 동의하지 않지만 신속 통관이 필요하다면 수출입자는 우선 잠정관세를 납부하고 부족한 세액에 대한 담보를 추가 제공해야 한다. 잠정관세 대상은 ① 수출입자가 재평가된 관세에 동의하지 않거나 ② 세관에서 관세를 재평가하는 데 시일이 소요되거나, 또는 ③ 긴급 통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있다.

수출입자가 자진신고를 할 능력이 없거나 자진신고를 하였지만 관세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수출입자는 세관직원이 잠정적으로 계산한 관세를 선택할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잠정 관세는 최종 관세로 확정되며, 자진신고가 완료되면 잠정관세는 재평가된 관세로 전환된다.

다. 물품검사

수입물품 중 일부는 수입신고서의 세부명세의 정확성을 판단하고자 랜덤으로 물품검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물품검사가 필요한 수입 전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정보를 완벽히 가지고 있지 않아 자진신고 전 물품검사를 요청한 경우 세관에서 수입자가 자진신고 전 물품을 검사해야겠다고 결정한 경우 랜덤으로 추출되지 않았더라도 물품검사를 진행하며 이를 최초물품검사평가(First check appraisal)라 한다.

최초물품검사평가는 ① 수입자는 수입신고서 제출시 또는 EDI에 수입물품의 명세를 입력할 때 최초물품검사평가 신청 이유를 작성하여 신청 ② 세관은 수입물품 검사를 위해 수입신고서의 사본에 검사명령을 기재한 뒤 이를 수입자 또는 관세사에게 반환하여 수입(보세)창고로 가져오도록 지시 ③ 창고 또는 부두의 물품검사인은 검사명령에 따라 물품검사 후 해당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샘플 취득 ④ 수입자는 관세평가를 위해 담당 세관직원이 수입신고서 반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수입물품은 자진신고 및 관세납부 이후에도 검사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를 2차 물품검사평가(Second check appraisal)라 한다. 대부분의 위탁판매물품(consignments)은 2차 물품검사에 적용되지만, 위탁화물 전체가 아닌 무작위로 선별된 물품만 검사된다.

EDI 시스템 하에서 수입신고서는 세관 심사부서 또는 최초물품평가검사에 의한 심사 후 물품검사 여부가 결정되며 검사대상으로 선별시 EDI 전산에 등록된다. 등록이 끝나면 수입신고서는 창고 물품검사인에게 전달되고, 관세사는 수입신고서와 함께 모든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창고물품검사인은 물품검사 후 EDI 시스템에 해당 결과를 입력하고 최초물품검사평가그룹에 해당내용을 전달한다. 관세평가가 이미 완료된 경우 통관보류를 해제한다.

수입자, 관세사 및 창고 물품검사인은 수입신고서와 통관명령을 각각 인쇄하여 보관해야 한다. 모든 사본에는 물품검사 보고서, 통관번호 및 창고 물품검사인인 이름이 적혀 있다. 2개의 사본은 담당 세관직원의 서명 후 각각 수입자 또는 관세사에게 교부된다. 1개의 사본은 수입신고서의 세관 사본이 첨부되어 창고 물품검사인이 보관한다.

라. 담보의 제공

무관세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 물품은 통관 시 은행의 담보를 세관에 제공해야 한다. 가령 수출촉진계획에 따른 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각 조건이

행을 위해 미리 은행 담보를 세관의 관세평가 전에 제공해야 한다. 만약 수입자가 은행담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수입물품의 관세는 지불해야 한다.

마. 관세납부

수입자는 세금납부 고유서식을 이용하여 지정은행에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관할 세관마다 지정한 은행명과 지점명이 다르므로 수입자는 관세 납부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입자는 세관에서 반환 받은 수입신고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은행은 배서하여 관세가 납부되었음을 증명한다.

3

AEO 제도

(1)

AEO 제도의 도입

가. 도입 경과

인도의 AEO 제도에 대한 도입경과를 살펴보면 2005년 11월 24일 고시 제42호 (Notification No.42/2005-Cus)를 기반으로 "우수업체 인증 프로그램(Accredited Client Programme, ACP)"을 도입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에 인증을 부여했다. AEO 제도가 민관 협력으로 혜택과 책임을 공유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WCO 가입국의 주요 프로그램이 되었다. 인도는 AEO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2011년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벤처기업부(Ease of Doing Business), 관세청(Central Board of Excise & Customs) 등 인도 정부에서 기존 ACP 프로그램과 파일럿 테스트 중인 AEO 프로그램을 통합하였다.

2012년 11월 16일 Circular No. 28/2012에 완벽한 AEO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참여자를 수출업자, 수입업자 그리고 다른 물류 운영자를 포함하여 확대하였다.

2016년 7월 22일 WCO의 SAFE framework 표준에 기초하여 ACP와 AEO 무역원활화를 모두 포함한 관세법(Customs circular No.33/2016)을 근거로 새로운 AEO 프로그램을 개정하였다. 또한 2018년 1월 17일 Circular 03/2018, 2018년 8월 10일 Circular 26/2018에 의해 개정되었고 개정된 WCO SAFE Framework 2018 조건을 반영하여 AEO 적용의 조건과 프로세스를 최신화하였다.

나. 운영 현황

1) 공인 자격요건

인도 AEO 공인의 자격요건은 신청 업체는 인도에 설립되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먼저, 사업자 등록번호,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대한 상세 명세서(ex. 수출입 물품 상하차, 보관 등)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신청업체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명의의 업체여야 하고, 최근 3년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신설 법인의 경우 AEO 프로그램 매니저와 상의 하에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청일 직전 년도 기준으로 수출 실적이 최소 25건 또는 수입실적이 최소 25건(수입부문 신청 시) 이상이어야 하고, 일반 수출입업체의 경우 수출입 실적 최소 25건 이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청업체는 신청부문의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한 공인기준이 적용되지만 중소기업의 규모 및 비즈니스모델을 고려하여 수출입관련 서류 보관, 안전 보안기준에 대한 공인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인도의 AEO 공인은 AEO 공인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이 신청가능하고 공인기준은 법규 준수, 수출입 관련 자료 기록, 재무건전성, 안전 및 보안으로 구분된다.

2) 법규 준수

법규 준수는 회계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기, 위조, 밀수입, 소비세 대상이 되는 물품의 미신고 등의 위반사항이 없어야하고, 신청인(대표자) 또는 고위간부에 대한 기소 여부가 없어야 한다. 단, 상기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항소로 승소하였을 경우 공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고내용과 화물의 불일치 등 이상상황이나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세관에 보고하는 절차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현황설명 및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이상상황 및 불법행위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3) 수출입관련 자료 기록

AEO 신청업체는 수출입관련 자료를 기록 및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체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세업무와 관련하여 통제활동 준수, 일반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actice, GAAP) 및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을 준수하는 회계 시스템 또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불법 거래 또는 내부공모 방지를 위한 신청업체의 규모에 적합한 수출입 물품의 업무를 프로세스 단계별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수출입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고, 접근 권한 설정 등 정보의 교환 및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보유해야 한다.

이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세관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할 세관과의 컨택포인트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와 세관신고서의 정확한 작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통제 활동이 명시된 절차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 PC 및 수출입 관련 문서에 권한이 없는 자 또는 신원미확인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보유해야 한다.

4) 재무건전성

AEO 공인을 위한 재무건전성은 AEO 공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관리를 담보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파산, 청산, 자본잠식 등이 없이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최근 3년간 관세의 체납이 없어야 하고, 감사법인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

5) 안전 및 보안

AEO 신청업체는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요구사항과 더불어 수출입업무시 필요한 안전 보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 내부통제활동을 마련하여야 한다. 내부통제활동의 주요 항목은 취급절차 보안, 사업장 보안, 물품 보안, 운송수단 보안, 인사보안, 거래업체 보안, 보안교육 및 위협인식 등에 대한 관리다.

가) 취급절차 보안

취급절차 보안에서 수출입 공급망 보안을 준수하기 위해서 신청업체는 비즈니스 모델 및 공급망과 관련된 안전 보안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통제활동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장내 화물의 무결성, 운송수단 물품 상하차시 무결성, 운송 중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가이드라인 또는 절차가 명시된 보안 정책 및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매뉴얼은 운송수단의 봉인 부착방법 등 봉인관리 절차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취급절차 보안에는 수출입 공급망 관련 화물의 운송, 취급, 보관에 관련 무결성 및 보안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입 관련 정보의 교환, 손실을 예방 방지할 수 있는 절차, 거래업체로부터 수취하는 수출입 관련 정보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취급절차 보안의 보안절차에는 수출입 화물 선하증권 정보에 대한 정확성 적시성 관련 절차, 수출입 화물의 중량, 라벨, 화인, 수량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 수출입화

물의 구매주문서 또는 운송의뢰서에 수출입 화물을 대조 및 검증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물품을 인수하거나 불출하기 전에 운전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물품의 과부족, 이상 상황이 발생시 이를 해결하고 조사해야 한다.

나) 사업장 보안

수출입 공급망 보안을 준수하기 위해 신청업체는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을 건축해야 한다. 또한, 물품 상하차 지점, 적입지점, 운송수단 보관지역에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AEO 신청업체는 사업장 보안을 위해서 건물은 불법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안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출입구, 울타리, 창문의 안전관리를 위한 잠금장치 설치 및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담당자 지정을 통한 접근통제장치 발급 관리, 출입구(사람, 차량)에 유인 경비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차량의 경우 예정된 차량이 왔는지 여부를 차량 번호를 통해 확인하며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개인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한다.

접근권한 설정을 통해 비인가자 및 권한 없는 자의 출입통제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수출입 관련 문서 보관지역, 물품 보관지역을 접근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수출입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하고 접근통제구역에 접근통제구역 표식을 부착한다.

건물 및 울타리 등 시설 장비에 대한 주기적 점검 수행하고,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물품 취급 및 보관시설 안에 내국물품, 외국물품, 고가물품, 위험물품을 구분하여 보관하며, 적절한 출입과 안전관리를 위해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물품 취급 및 보관시설 인접지역에 개인차량의 주차를 금지한다.

다) 물품 보안

수출입 공급망 보안을 준수하기 위하여 신청업체는 물품의 교환, 손실 방지를 위한 통제활동을 마련하여야 한다. 권한이 있는 자만이 수출입 물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직원식별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물품 보안에 대한 모든 봉인은 PAS/ISO 17712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강화 봉인을 체결하여야 한다. 항공화물 관련 안전강화 봉인의 경우 PAS/ISO 17712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강화 봉인의 수준과 유사한 봉인을 사용하는 것은 탄력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해상화물에 대해서는 PAS/ISO 17712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강화 봉인을 필수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물품 보안 담당자는 보안정책에 따른 컨테이너 봉인의 무결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자체 봉인 배포 시 담당자 지정을 통해 봉인을 배포하고 해당 내역을 기록 유지한다. 컨테이너 이상여부를 확인할 경우 정면, 좌측, 우측, 바닥, 천장, 문 내 외부, 외부 차대 등 7가지 지점을 점검해야 하고,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또는 무단침입 발견 시 검문 및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수출물품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물품 반출 시 운송신고서, 구매주문서 등과 비교 대조하여야 한다. 수출입 화물의 불일치 발견 시 통제절차를 보유해야 한다.

라) 운송수단 보안

수출입 공급망 보안을 준수하기 위하여 신청업체는 운송수단 보관, 운송 등 보안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청업체는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에 대한 보안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고,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화물 운송 중 이상상황 발생 시 해당 내역에 대한 내부 보고 및 세관 보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운송수단에 불법 화물의 잠재 은닉장소에 대한 주기적 점검 물품 운송 중 적기에 추적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추적 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물품 운송 중 날씨, 교통체증, 경유 등 상황 발생 시 운송인은 수출업체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다.

마) 인사 보안

수출입 공급망 보안을 준수하기 위하여 신청업체는 채용 예정 직원을 심사하고, 직무 중요성을 고려하여 근무 중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직원 채용 시 관세법 위반 내역 또는 범죄 위반 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수출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배후 사정을 점검한다.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여 직원의 식별 절차에 따라 모든 직원 또는 부서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출입구에 비인가자 또는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기록 유지 절차(ex. 방문증)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 퇴직직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설 및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

바) 거래업체 보안

수출입 공급망 보안을 준수하기 위하여 신청업체는 거래업체 보안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거래업체를 선정하고 검증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업체 선정 전에 재무건전성, 보안 기준 등을 확인하고, 수출입 업무 관련 보안에 기반하여 거래업체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AEO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업체의 계약서,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 관련 질의 답변서(self-assessment security questionnaire), 거래업체가 AEO 보안기준을 충족한다는 확인서, 거래업체 임원의 안전관리 준수 서약서, C-TPAT, PIP 등 국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았음을 증빙하는 서류 등의 사본을 수취하여야 한다.

사) 보안교육 및 위험 인식

수출입 공급망 보안을 준수하기 위하여 신청업체는 관련 직원에 보안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각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이해하고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위험상황 대처 및 보고절차 교육 프로그램과 물품 취급, 내부공모, 접근통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보안 교육은 회사 보안 정책,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각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위험, 수출입물품 보안, 접근통제, 불법사항, 혐의사항 등 이상상황의 인지 및 보고, 운송수단 관리 담당자에 대한 수출입물품 보안을 반드시 포함한다. 보안 교육을 수행한 후 세관이 검증하는 현장심사를 수행할 때 보안 교육의 수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2) 공인 절차

가. AEO 공인

인도의 AEO 공인은 AEO 프로그램 매니저가 관할 세관의 Directorate General of Performance Management 팀에 AEO 신청 관련 검토 요청하며 지정된 인원이 자격요건을 검토한다. “DG”를 통해 AEO 공인을 신청하며 Aeo.India@icegate.gov.in를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인도의 공인은 수출입업체에 대해서 T1, T2, T3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AEO T1, T2는 AEO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신청이 가능하다. AEO 제도의 매니저가 검토한 결과 범규준수, 수출입 관련 서류 기록, 재무건전성 등 제출된 서류가 공인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AEO-T1, T2의 공인이

가능하다. 단, T2의 경우 신청 사업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수행한다.

AEO-T3의 경우 T2 공인을 받은 업체가 T2의 등급을 2년 이상 유지한 이후에 T3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업체의 거래업체(수출입, 물류, 터미널 운영인, 관세사, 창고운영)가 AEO T2, LO 또는 C-TPAT, PIP 등 AEO와 유사한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T3의 공인이 가능하다.

AEO-LO는 물류업체, 터미널 운영업체, 관세사, 창고 운영업체 등을 대상으로 AEO 공인등급의 구분이 없이 AEO 공인이 이루어진다. 먼저, LO 공인 인증은 AEO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업체가 신청이 가능하고, 법규준수, 수출입관련 서류 기록, 재무건전성, 안전 보안 기준 등의 서류를 충족할 경우 공인이 가능하다. T2인증과 같이 신청 사업장에 대한 현장검증이 이루어진다.

나. 사후관리

1) 갱신심사

인도의 AEO 공인업체의 사후관리는 공인 유효기간 만료 30 ~ 90일 전에 갱신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1 인증 업체는 30일, T2 인증 업체는 60일, T3와 LO 업체는 90일 전에 갱신심사 신청서를 제출한다. 갱신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존에 신청했던 내용과 비교하여 변동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제출한다.

AEO 갱신에 대한 심사는 AEO 자격 유지, AEO 공인 후 업체가 최초 공인심사와 동일한 공인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법적 독립체 변동, 업체명 및 주소 변동, 업종변동, 회계 및 ERP 시스템 변동, 관세관련 임원 변동, 사업장 추가 또는 삭제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 시 AEO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AEO 프로그램 팀에 변동 사항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법적 독립체가 변동할 경우에는 AEO를 재신청해야 한다.

AEO 공인업체가 관세 관련 이슈사항 발생 시 지역 CRM(Client Relationship Manager)에 보고해야 한다. 자진보고할 경우 업체의 해당 사항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 동일사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대책 수립에 대한 세관의 원인 검토 후 AEO 자격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공인 재검증

AEO 제도 관리팀은 AEO 공인 재검증을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AEO 공인의 승인 조건

및 기준은 공인업체의 공인 부문, 등급에 따라 검증기간이 다르다. 이에 대한 명시는 없지만 2~5년에 한번 이루어진다. 단순 변동사항에 대한 서류검토 또는 현장검증이 이루어진다.

(3) 주요 혜택

인도의 AEO 제도의 주요 혜택은 AEO-T1, AEO-T2, AEO-T3, AEO-LO 부문별로 적용된다. 먼저 AEO-T1의 주요 혜택을 살펴보면, AEO-T1 공인업체는 화물의 수출입 원활화를 통해 화물 반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컨테이너 수 등 수출입 무역량에 따라 수출입 컨테이너 직접 화물 운송인 DPD(Direct Port Delivery)가 가능하다. ID 카드 발급을 통한 CFS 등 세관 관할 구역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한다. 은행에 보증을 제공해야 할 경우, AEO 공인 업체가 아닌 수출입업자가 제공할 보증료의 50%로 보증금을 차감해 준다. 단, 관할 당국이 임시적으로 압수품 반출을 위해 은행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세, 소비세(Central Excise), 서비스 이용료(Service Tax) 등에 대한 조사 기간을 6 ~ 9개월 이내 완료하도록 단축한다. 관세, 소비세, 서비스 이용료 등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당국의 수준에서 분쟁해결은 조사기간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정기적 사후심사(Post-Clearance Audit)는 2년에 1회 수행하여 사후심사 빈도를 완화한다.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vessel)의 도착 및 출발에 대한 정보를 e-mail로 통보하고, 초과근무비용(Merchant Overtime Fee, MOT) 미지불로 연중 해상 수출입 통관관련 요청이 가능하다.

AEO-T2의 혜택을 살펴보면, T1에서 제공되는 혜택이 부여되고, AEO-T1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화물의 수출입 원활화를 통한 화물 반출 시간이 단축된다. DPD(Direct Port Delivery) 또는 DPE(Direct Port Entry)를 통한 운송방식이 아닌 경우, 수출입화물에 대한 세관에 의한 봉인 무결성 검사 및 수출입신고서류에 대한 정밀검사를 수행하지 않고, 컨테이너 대상 지정 시 우선검사를 수행한다. 관세는 세관이 통보한 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관세 환급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72시간 이내 접수하고, 세관직원이 사업장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 최우선 검사를 수행한다. 세관에 승인을 받은 후 수출화물에 대한 인증업체는 자체봉인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은행 보증 제공 시, AEO 공인 업체가 아닌 수출입업자에게 제공할 보증료의 50%로 보증금을 차감해준다. 단, 관할 당국이 임시적으로 압수품 반출을 위해 은행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기적 사후심사는 3년에 1회 수행하여 사후심사 빈도를 완화한다. 업체의 관세 환급, 소

비세, 서비스 이용료 등에 대한 환급 신청은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집행한다. 세관이 요청할 경우 업체의 통합된 수출입 정보는 “ICEGATE (Indian Customs Electronic Commerce / Electronic Data Interchange gateway)”를 통해 개별적으로 전달될 것이다. 수출입 신고 시 추가 증빙자료가 없고, 관세 경험이 풍부한 중간급 관리자 이상의 지역 세관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AEO 및 관세 관련 이슈사항을 자문하고 신속히 해결해준다. MRA 혜택을 부여하여 MRA를 체결한 수입국에서 수입통관을 할 경우 통관원활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EO-T3의 혜택을 살펴보면 T2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모두 부여하고, AEO-T1, AEO-T2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화물의 수출입 원활화를 통한 화물 반출 시간을 단축한다. 컨테이너 검사는 원칙적으로 생략하지만 무작위 검사에 지정될 경우 최우선 검사를 수행한다. AEO-T3의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관련 증빙자료를 원본이 아닌 자체 인증된 사본을 발송해도 인정해준다. 은행 보증을 제공할 경우 보증금이 없지만 관할 당국이 임시적으로 압수품 반출을 위해 은행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타 정부기관 및 부서의 요청으로 검사(식품 검역 등)가 이루어질 경우 우선검사를 실시하거나 정밀검사를 생략한다. 업체의 관세 환급, 소비세,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환급 신청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한다.

AEO-LO의 혜택을 살펴보면 물류업체(Logistic Service Providers), 터미널 운영업체(Custodians or Terminal Operators), 관세사(Customs Brokers), 창고 운영업체(Warehouse Operators)로 구분하여 혜택을 부여한다.

물류업체의 경우 수입물품 관리에 관한 규정(Goods imported regulation)에 명시된 환적화물에 대한 은행 보증 수수료 면제, 신속 채권 발행, 통과화물(외국화물이 운송 도중 인도를 통과하는 경우)에 대한 세관 통제대상 제외, 국제 환적화물의 경우 적입된 화물에 대한 분리 작업 미수행 시 세관 통제대상 제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터미널 운영업체의 경우 보세구역 화물취급에 관한 규정(Customs Area Regulations)에 따른 은행 보증료 면제, 보세구역 화물취급에 관한 규정(Customs Area Regulations)에 따른 영업기간 연장(10년)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관세사는 관세사 자격 관리에 관한 규정(Customs Brokers Licensing Regulation) 8조에 따른 은행 보증료 면제, 관세사 자격 관리에 관한 규정(Customs Brokers Licensing Regulation) 9조에 따른 관세사 자격 유효기간 연장(인도의 경우 관세사 자격은 갱신이 필요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고 운영업체는 신규로 창고를 추가하는 경우 구비서류의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승인, 신규 추가 창고건에 대한 납부 수수료 면제, 신규 추가 창고건에 대한 재정건전성 충족기준 미적용, 보세화물 장치기간 연장에 대한 보안 충족기준 미적용, 민감화물 (sensitive goods) 보관 관련 보안 충족기준 미적용 등의 혜택이 있다.

4

MRA활용 방법

- ① <한국 관세청>은 한국 AEO 수출기업 공인정보 송부 (한국 관세청 → 인도 관세청)
- ② <한국 AEO 수출기업>은 자사의 AEO공인번호를 인도 수입자에게 통보해야 함
- ③ <인도 수입자>는 통보받은 AEO 공인번호를 포함한 한국 수출자의 OBIN(Overseas 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을 인도 관세청에서 발급받아 수입신고서에 기재
- ④ <인도 관세청>은 한국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한국 AEO 수출기업 공인정보와 대조하여 혜택 부여

< 한-인도 AEO MRA 혜택 >

수입검사를 축소	•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에 대한 수입 검사를 축소
수입서류 심사 간소화	•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에 대한 수입신고시 서류심사 비율 축소
신속 통관	• AEO 공인업체 우선검사 등을 통해 신속통관 가능
세관연락관 지정	• 통관애로 발생시 기업 자체해결 방식에서 세관연락관이 담당·해소하여 MRA의 이행을 담보
비상시 특별조치	• 천재지변, 테러 등 물류장애로 정상적 수출입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우대조치를 지속적으로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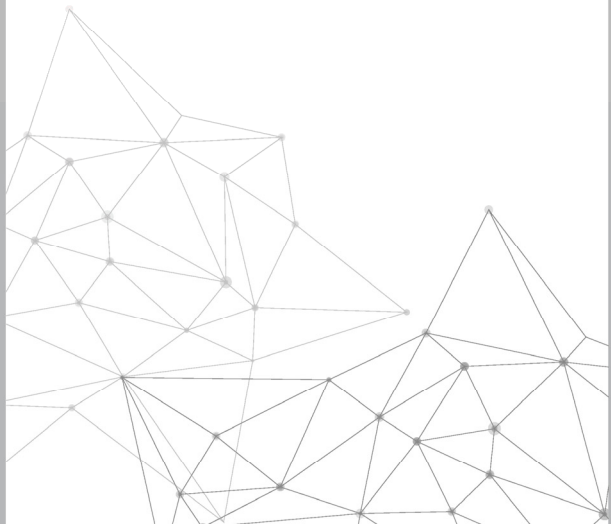
※ 참고자료 : OBIN 등록신청서(양식)

OBIN GENERATION FORM
1. Sending country (MRA PARTNER COUNTRY)
2. Details of exporter in the MRA Partner Country ○ AEO NAME ○ AEO E-MAIL ID ○ AEO TRADER IDENTIFICATION NUMBER · Country code · AEO Identification Number ○ AEO ADDRESS · Street and Number · Postcode · City · Country Code ○ AEO LIFECYCLE · Start date · End date ○ AEO STATUS · AEO Certificate Status
3. Details of importer in India ○ Name ○ E - mail id ○ Address ○ IEC code ○ Contact Number/ Person

아시아(ASIA)

대 만

(Taiwan)



1

국가 개요

일반 사항	국 명	중화민국(中華民國, Republic of China) * 중국이 참석하는 국제행사는 '중화타이베이(中華台北, Chinese Taipei)' 사용
	면 적	36,193km ² *한반도의 1/6, 한국의 1/3
	수 도	타이베이시(台北市, Taipei City) *서울의 1/2 크기
	인 구	2,357만(2018년 5월 기준) *한국의 1/2
	주 요 도 시	타이베이시(台北市, Taipei City), 타이중시(台中市, Taichung City), 가오슝시(高雄市, Kaohsiung City) 등
	민 족	중국 본토 출신 97%(민남인)·객가인)·다른 성 출신자 순, 원주민 2%, 중국인·외국인 배우자 1%
	언 어	중국어(표준어) 위주. 민남어(민남 방언)도 통용
정치	정 치 체 계	총통제
	국 가 원 수	총통: 차이잉원(蔡英文 · Tsai, Ing-wen/1956년생) 부총통: 천젠런(陳建仁 · Chen, Chien-Jen/1951년생) - 2016년 1월 16일 제14대 총통대선에서 당선, 2016년 5월 20일 취임(임기 4년)
경제	화 폐 단 위	뉴타이완 달러(NT\$)
	1인당 GDP	25,546달러(2018년 예상치)
	교 역 량 (2018년 1~4월)	수출: 1,065억 달러 수입: 906억 달러
	주요 교역품	반도체, 기구부품, 컴퓨터, 철강판, 광학기기 등

자료원: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 대만 중앙은행

한 / 대만 관계	
교역 규모	대 대만 수출(2019년) : 15,666,310 US\$ Thousands 대 대만 수입(2019년) : 15,717,684 US\$ Thousands 무역수지(2019년): -51,374 US\$ Thousands
교역 품	- 수출: 반도체, 석유제품, 석유화학중간원료, 기초유분 순 - 수입: 반도체, 기구부품, 컴퓨터, 철강판, 광학기기, 정밀화학원료 순
투자 교류	- 한국의 대 대만 투자(2018년 1~5월 기준) - 56건, 12,288천 달러 - 대만의 대한국 투자(2018년 1~5월 기준) - 8건, 3,817천 달러
교민	4,328명(2018년 5월)

자료원: 한국 관세청,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대만 내정부 이민서

2

통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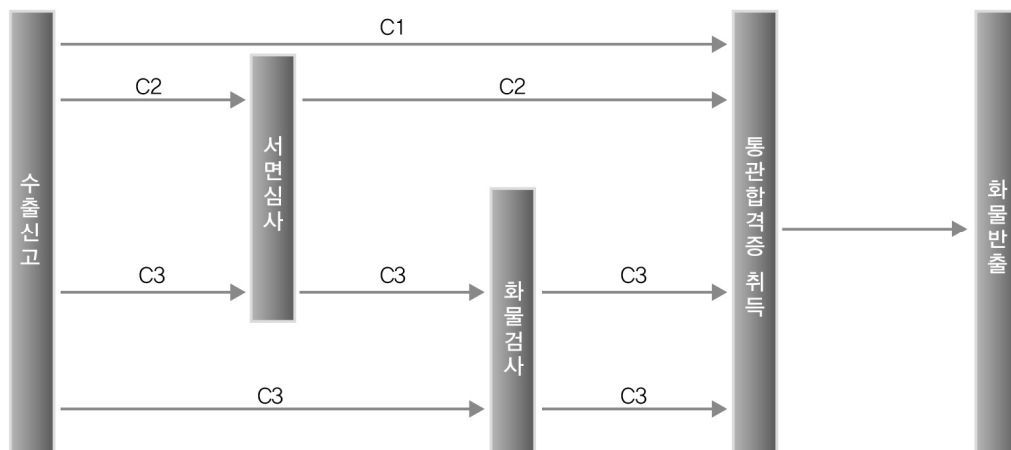
(1)

수출통관절차

수출 시 수출신고서,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포장명세서, 수출허가증, 상업송장, 수출화물 입고 증명, 위임장, 설명서 또는 도안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출신고와 수출 적하목록이 일치하면 수입과 마찬가지로 C1, C2, C3로 나누어 검사가 이루어지고 C2, C3에 해당할 경우 수출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C3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자는 FOB가격이 5,000달러 이상일 경우 1,300 대만달러를 추가 검사비로 납부해야 하며 5,000달러 미만일 경우 650 대만달러를 검사비로 납부해야 한다. 동일 수출자가 함께 선적되는 물품에 대해 여러 건의 수출신고를 하였을 시에 검사는 한 번에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추가 검사 요금은 전체를 한 건으로 처리하여 납부한다. 수출 시 부과되었던 요금을 이중 송금했을 경우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여 세관에 요청하면 환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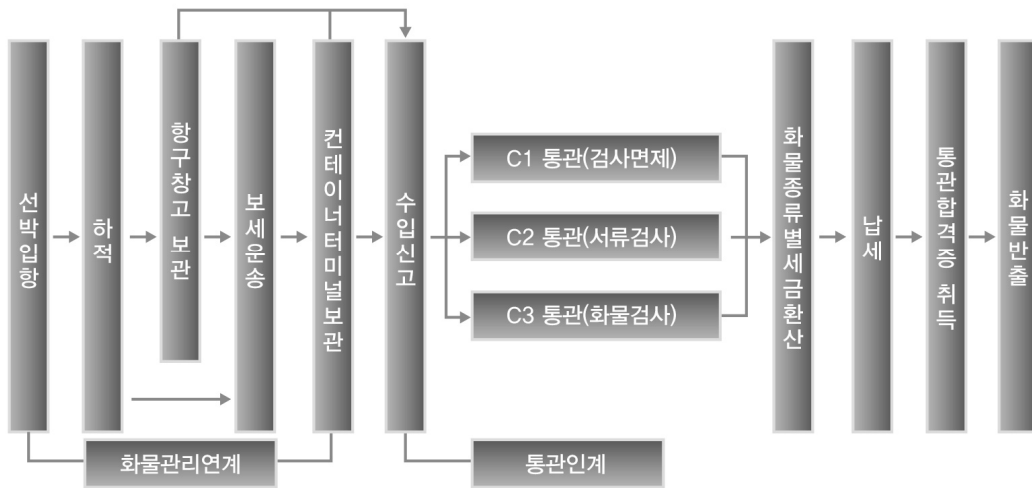
〈그림 33〉 대만 수출통관 절차



(2) 수입통관절차

대만의 수입통관절차는 4단계로 ① 물품 반입 및 수입신고 → ② 물품검사 → ③ 세금 납부 → ④ 물품반출 및 관세환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34〉 대만 수입통관 절차



대만의 수출입관련 업무는 세관 자동화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관세법 제10조 1항 및 3항 그리고 재정부의 화물통관자동화 실시방안을 기준으로 한다. 항공화물 통관 자동화는 1992년, 해운항공화물 통관 자동화는 1994년 그리고 국제인터넷망 통관작업은 항공의 경우 2004년, 해운의 경우 2005년에 개시되었다.

가. 물품 반입 및 수입신고

수입신고는 서면 및 인터넷 모두 가능하며 수입화물 도착 후 15일 내 수입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인터넷 연결방식의 통관은 자료 전송일을 기준으로 하고 서면 양식의 경우 서면 자료 도착일을 기준으로 한다.

수입신고는 납세의무자(The duty-payer of customs duty)가 직접 해관에 가서 신고하는 직접신고와 수입신고 및 납세 등 수속을 관세사(Customs broker)가 대행하는 위탁

신고 방식이 있다. 수입신고는 대만 수입업체 및 관세사가 모두 할 수 있으나 수하인이 수입허가증이 없는 경우에는 통관 자체가 불가능하다.

수입자는 중화민국해관수입세칙에 의거하여 수입상품에 대한 세칙과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서에 기입해야 하며 세관에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여 관세를 산정을 돕고 있다. 사전품목분류 심사 시 사전품목분류 신청서, 카탈로그, 매뉴얼, 성분표, 감정보고서, 가공제조설명서, 조작방법 및 원리, 사진이나 도안, 샘플 등을 구비해야 한다.

수입통관 전용 사이트에 연결하여 통관하는 경우 Invoice, B/L(D/O) 또는 기타 관련 자료를 세관 규정에 따라 입력 후 전송하며 전송 후 15분 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통관 전용 사이트에서 해당 수입품의 수입방식이 선별되어 수입통관 과정을 검색할 수 있다. 수입신고 사이트 접속은 수입자가 IC증명 카드(Certificate IC Card)를 발급받아야만 가능하다.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를 비롯하여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2부, 화물인도지시서 혹은 항공화물운송장, P/L 1부, 선적예정목록(Container Loading List) 1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밖에도 위탁신고의 경우 위임장 1부, 수입제한 항목의 경우에는 수입허가증 원본(Import Permit), 카탈로그, 제품명세서,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수입자동차 신고사항명세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입허가증의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에 등록된 수출입 업체나, 해운, 항공, 국제택배 등 수입제한 품목 외 FOB 조건 2만 달러 이하인 물품의 경우 면제된다.

수입물품이 실린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세관에 수입신고 수속을 해야 하며, 만약 기한 내에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당 200 대만달러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입항일로부터 36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에는 해당 수입물품을 세관에서 관매해 세금과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세관에서 보관한다. 수입업자가 5년 내에 선하증권 및 기타 증명서류를 첨부해 환급 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나. 물품 검사

물품이 반입되면 관세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중 일부 검사 면제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은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 한다. 검사 시 수출입 화물 검역준칙 제11조에 따라 수입상품에 대한 포장리스트, 선적예정목록, 팸플릿, 설명서, 상세도(설계도), 공중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검사는 C1(서면 서류 심사 면제 및 화물 검사 면제), C2(서

면 자료 심사), C3(서면 자료 및 화물 검사 후 통관)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검사 시 C1에 해당되더라도 제한적 상황인 경우에는 원칙상 서류 및 검역 면제이나 세관원의 요청에 따라 선행 통관일 익일부터 3일내 보완 자료를 발송해야 한다.

수입신고인이 세관의 검역부문에 검사를 신청하면 검사원들은 신고인이나 화주와 함께 화물이 있는 장소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문건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화물을 검사한다. 검사는 수입신고서 내용과 실제 화물의 일치 여부, 화물 외부의 표기 및 번호 조사, 수입신고서상의 수량 대조, 물품명이나 상표, 규격, 상품번호, 원산지, 수량, 중량 등을 검사한다. 일반적으로 화물 중 일부를 지정하여 발췌해 검사하며 보통 화물의 10%를 발췌하여 그 물품이 수입신고서의 내용과 일치할 때 나머지 90%에 대해 일치한다고 판정한다. 고위험으로 분류된 수입상이 홍콩, 마카오, 일본, 한국,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한 화물이거나 해외에서 반송되어온 수출품, 명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갖춘 비밀 안전, 입국 여행객의 물품은 수입물품 전량을 검사한다.

대만 세관에서는 물품 수입 시 그 등급을 일반(G), 저위험(L), 고위험(H)로 분류하고 있다. 매번 세관에 수입품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인수를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하면 컴퓨터가 검사 여부 및 필요한 테스트, 발췌수량 등을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따로 수입상을 분류해 놓는 것은 아니다.

다. 세금납부

수납방식은 현금 지불, 인터넷상에서 자동 지불, 세금 후불 실시 규정에 따른 수입 화물 선반출 및 담보 제공 후 대금 지불 방식, 거래은행이 세관전용 입금계좌 및 국고 입금계좌로 송금을 대행하는 방식의 4가지가 있다.

통관관련 비용은 관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하며 수입품에 한해 관세 및 특별관세를 제외하고 세관이 일괄대리 수납하고 있다. 수입품의 경우 수입세금 수납 시 무역진흥서비스비용도 함께 수납해야 한다.

라. 물품반출 및 관세환급

물품 반출은 대만 세관에서 가장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세금의 완납 여부 및 금액이 오차 유무, 미납 혹은 연체된 세금 유무 및 연체에 따른 과태료, 검사 시 요구 서류 구비, 세관 규정 위반 사항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

수입신고 수리 및 관세납부(담보제공)가 이루어진 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서 즉시 반출 가능하다.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물품 검사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출이 불가능하다. 수입관세가 일부 면제되는 일시적 수입절차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제한 또는 금지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닌 경우 세관은 신고서의 항목이 확인되거나 혹은 확인될 필요가 없을시 접수 직후 바로 통관한다.

판매가 불가하고 폐기 처리해야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관의 감시하에 자체 폐기 처분을 해야 하며 폐기 완료일까지 미처리한 경우 세관이 소각 및 폐기처리한 후 그 관련 비용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킨다.

환급에 대한 행정은 관무서의 보세 및 세금환급처 제3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원료 수입 업체와 가공생산업체, 그리고 완성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수입관세를 비롯하여 물품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출품에 대한 세금 환급은 해당 수출품의 원료를 수입한 다음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을 초과할 경우 세금환급이 불가능하다.

관세환급 신청 시 세관에서 요구하는 수출품 세금환급 신청서(甲, 乙, 丙 양식이 있음), 세금환급용 수입신고서 사본, 수출품의 사용 원료 및 해당 원료 공급업체에 대한 자료, 세금환급 동의서 등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

3

AEO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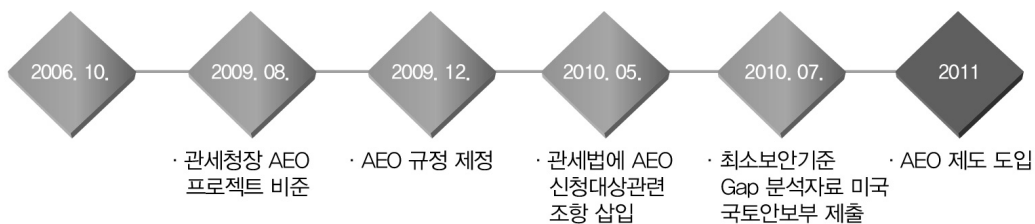
(1)

AEO 제도의 도입

가. 도입 경과

대만은 2006년 10월 WCO에 SAFE Framework를 실행하기 위한 도입의향서(Intent of Letter)를 제출했다. 2009년 8월 대만 정부가 AEO 프로젝트를 비준했고, 2009년 12월 AEO 규정을 공포하였다. 2010년 5월 관세법에 전체 공급망 구성원의 AEO 신청대상 관련 조항을 포함하였고, 동년 7월에 보안기준을 미국 국토안보부(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기준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만은 WCO SAFE Framework, 미국 C-TPAT, EU AEO, 국내 조건 등을 종합하여 AEO 규범을 마련하여 2011년 AEO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대만의 AEO 도입 경과는 <그림 35>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5> 대만의 AEO 도입 경과



나. 운영 현황

대만 AEO 제도의 공인기준을 살펴보기 전에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표 38>과 같다. AEOC는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3년간 연 매출액 NTD 5억 이상(한화 약 188억)을 유지해야 한다. 업체의 연 수출입 실적은 \$5천만 이상(한화 약 568억)으로 최근 3년간 결손액이 없어야 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위법 및 범법 기록이 없어야 한다. 보세공장과 일반 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업체의 경우 관세, 납세, 적법한 관세절차를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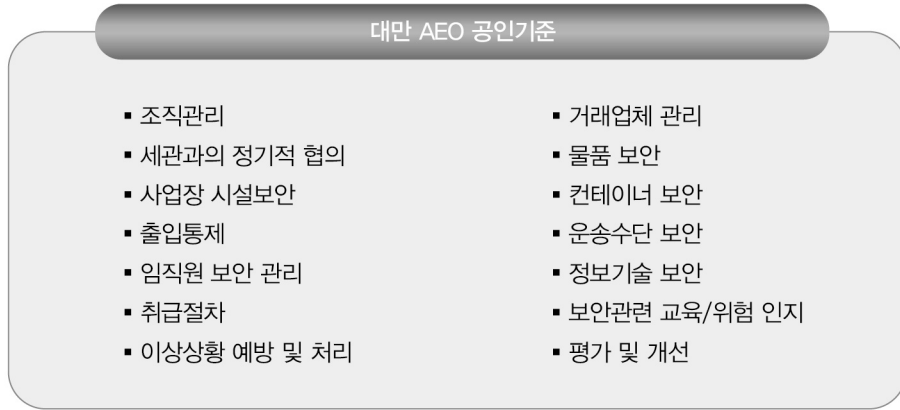
수한다는 진술서와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AEOS는 AEOC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최근 3년간 관세법 위반내역이 없고, AEO 공인기준(AEO Security Vetting Items and Validation Criteria) 충족해야 한다. 또한 AEO 운영절차 보유,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회계 및 재무 정보처리와 보관이 요구된다.

〈표 38〉 대만의 AEO 공인 자격요건

구 분	내 용
AEOC	· 5년 이상 사업 영위 / 최근 3년간 연 매출액 NTD 5억 이상(한화 약 188억) · 연 수출입 실적 \$5천만 이상(한화 약 568억), 최근 3년간 결손액 없음 · 최근 3년간 위법/범법 기록 없음 · 보세공장과 일반공장 사업자등록번호가 같은 업체의 경우 관세, 납세, 적법한 관세절차를 준수한다는 진술서와 함께 신청 가능
AEOS	· AEOC 요구사항 충족 · 최근 3년간 관세법 위반내역 없음 · 최근 3년간 위법/범법기록 없음 · AEO 공인기준(AEO Security Vetting Items and Validation Criteria) 충족 · AEO 운영절차 보유,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회계/재무 정보처리 및 보관

〈그림 36〉과 같이 공인기준은 (1) 조직 관리(Management Organization), (2) 세관과 정기적 협의(Consultation,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3) 사업장 시설 보안(Physical and Premises Security), (4) 출입통제(Access Control), (5) 임직원 보안 관리(Employee Security), (6) 취급절차(Procedural Security), (7) 거래업체 관리(Business Partner Security), (8) 물품 보안(Cargo Security), (9) 컨테이너 보안(Container Security), (10) 운송수단 보안(Conveyance Security), (11) 정보기술 보안(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12) 보안관련 교육/위험 인지(Security Training and Threat Awareness), (13) 이상상황 예방 및 처리(Incident Prevention and Handling), (14) 평가 및 개선(Assessment and Improvement) 등 14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림 36〉 대만의 AEO 공인기준



(2) 공인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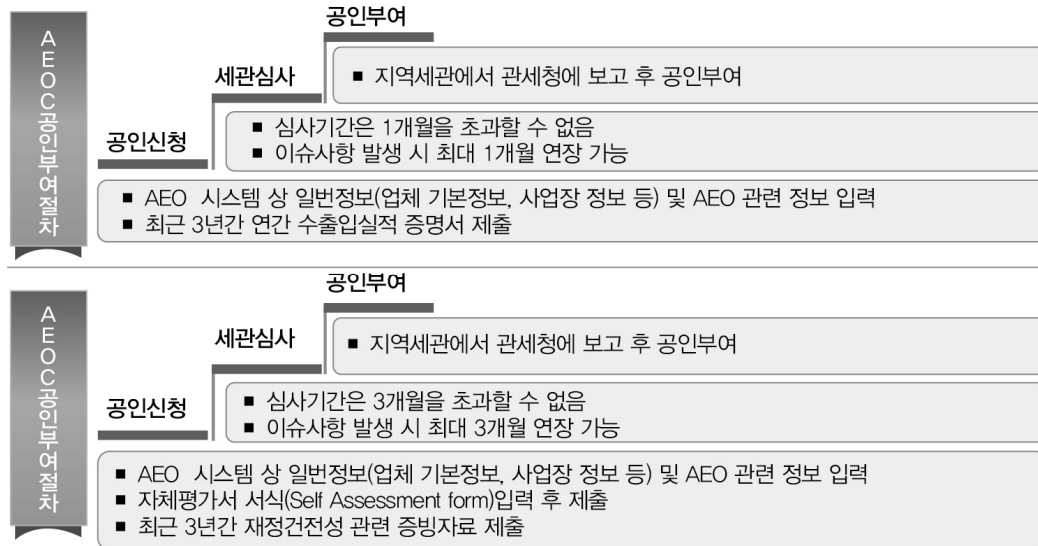
대만 AEO 제도의 공인절차는 업체가 세관에 신청서 제출,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세관이 심사(서류심사), 공급체인안전전문가(SCSS, Supply Chain Security Specialist)의 현장심사 수행, 최종의사결정을 위한 서류검토와 타당성 보고서 AEO 센터로 전송, 공인 후 증명서 발급한다.

가. 공인 신청

AEOC, AEOS의 공인절차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그림 37〉과 같다. AEOC 공인신청은 <http://sso.customs.gov.tw/userguide.htm> 로그인 후 AEO 시스템에 접속하고, 업체 기본정보, 세관 담당 직원 지정, 사업자 정보 등 일반정보와 AEO 정보를 입력하고, 최근 3년간 연간 수출입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AEO 공인을 신청한다.

AEOS는 AEOC와 같이 AEO 시스템에 접속하고, 업체 기본정보, 세관 담당 직원 지정, 사업자 정보 등 일반정보와 AEO 정보를 입력한다. AEOC와 다르게 자체평가서 서식(Self Assessment form)을 입력하고, 최근 3년간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AEO 공인을 신청한다.

〈그림 37〉 대만의 AEOC/AEOS 공인절차



나. 세관심사

AEOC와 AEOS의 공인심사는 업체가 제출한 서류와 현장을 세관이 심사한다. 이때 AEOC 공인의 경우 심사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슈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대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반면에 AEOS는 심사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슈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대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공인 결과보고(통과/기각)

마지막으로 세관심사의 기준을 충족하면 지역세관에서 관세청 보고하고 업체에게 공인을 부여한다.

라. 사후관리

대만의 AEO 인증 업체의 사후관리를 살펴보면 AEOC, AEOS 모두 3년의 공인유효기간을 부여한다. 단 AEOC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AEOS는 3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갱신신청 시 AEOC의 경우 제출서류는 최초 공인신청서류와 동일하고, 업체 대

표 진술서(affidavit)를 통해 수출입 업무 정보 시스템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AEOS의 경우에는 업체에서 수행되는 연 1회 자체평가서를 통해서 갱신심사가 수행된다. 공인기준에 대한 심사는 무작위로 수행되고, 공인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보완이 행기간이 30일 부여된다. 업체는 최대 30일의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보완 이행기간이 만료되거나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AEOS 공인기준을 미충족할 경우에는 공인이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공인이 취소될 경우 취소일로부터 3년간 공인신청을 할 수 없다.

AEOC, AEOS 공인 업체가 상호 및 업종을 변경하면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내용의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AEOC 업체는 세관직원이 변경내용에 대한 서류를 검토한 후에 승인이 이루어지지만 AEOS 업체는 서류와 현장검토를 수행한 후에 승인된다. 또한 AEOS 업체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관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면 1년의 자격정지가 주어진다.

(3) 주요 혜택

대만의 AEO 제도는 일반 AEO(AEOC), 안전 및 보안 AEO(AEOS) 등 2개 유형이 있다. AEOC는 법규준수도, 전산통제시스템, 최소 무역 물동량 등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안전과 보안을 목표로 한다. 안전 및 보안 AEOS는 2009년 말에 실행되었고, MR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EO의 유형이다.

대만 AEO의 혜택을 살펴보면, AEOC, AEOS가 받는 혜택에 차이가 있다. AEOC의 경우는 첫째, 수출입신고 서류 및 물품검사 비율이 감소된다. 단, 최근 3년간 관련 법령의 위반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수입통관 후 월별 기준으로 사후 관세 납부가 가능하다. 이는 수입신고 서류 및 물품검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재수입 통관의 경우 최초 수출신고로 갈음되어 반출 신청이 가능하다.

AEOS의 경우에 수출입업체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첫째, 수출입신고 서류 및 물품검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수출입물품 검사의 대상을 지정할 경우 검사를 생략하거나 우선검사가 가능하다. 셋째, AEO 물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세관 전담지정(Single Contact Window)'을 통해 이슈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넷째, 수출입물품에 대한 'Cargo Scanning'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수입업체는 Incoterms 본선 인도조건(Free on Board, FOB)의 조건으로 신고가격이 1억 NTD(약 37억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서류 및 물품검사가 면제된다. 수입업체는 수입통관 후에 월별기준으로 사

후 관세납부가 가능하고, 최초 수출신고로 갈음하여 재수입 통관 시 반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고가격 100만 NTD(약 37억7천만원) 이상의 경우 서류 및 물품검사가 면제된다.

전반적인 AEO 등급별 주요 혜택을 정리하면 <그림 38>과 같다.

<그림 38> 대만의 부문별 AEO 주요 혜택



4

MRA활용 방법

- ① <한국 관세청>은 한국 AEO 수출기업 공인정보 송부 (한국 관세청 → 대만 관세청)
- ② <대만 수입자>는 수입신고시 한국 AEO 공인정보 입력
 - (XML 이용시) 30번 항목 'AEO Code of seller'에 AEO 코드 입력
 - (EDI 이용시) 14번 항목 'Business Administration Number of seller'에 AEO 코드 입력
- ③ <대만 관세청>은 AEO공인번호가 있는 수입신고된 건에 대해 수입검사를 축소 혜택 부여

<대만 수입신고서>

Import Declaration		Categories of Transport (1)	Type of Declaration (2)	Ordinal No.	Page No.	Page No. / Total No. of Page :	
		Declaration No. (3)				Vessel Registration No (4)	
Name of Vessel/Transport ID (5)	Master Airway Bill / Bill of Lading No (8)		Exchange Rate (16)				
Code of Vessel (6)	Voyage No./Flight No. (7)	House Airway Bill / Bill of Lading No (9)	FOB Value (17)		Currency	Amount	
Name/Code of Port of Loading (10)	Exportation Date (13)	Date of Importation (14)	Freight (18)				
Code of Storage Location (11)	Code of Import Transport Mode (12)	Date of Declaration (15)	Insurance Fee (19)				
Duty Payer (24)	BAN (23)	Customs Supervision Code (25)	Relation to Seller (26)	Mode of Duty Payment (27)	Expense to be added (20)		
	Chinese Name	AEO Code			Expense to be deducted (21)		
	English Name				CIF Value (22)		
Foreign Seller (30)	Chinese/English Address				Licensing Note (28)	Customs Approval No (29)	
	Chinese Name				AEO Code		
	English Name						
Item No. (34)	Country Code (31)	Business Administration No. (32)	Customs Supervision Code (33)				
	Country of Origin (36)		Import Permit No.-Item No. (37)				
	CCC Code (38)		Unit Price (39)	Term of Trade/ Currency	Net Weight (KG) (40)	Duty-paying Value / Dutiable Quantity (36) (IWD)	Duty Rate (44)
	Tariff No.	Statistic Code					
(Competent Authority Designated Code)							

〈 한-대만 AEO MRA 혜택 〉

수입검사율 축소	• 상대국 AEO화물이 수입되는 경우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조치	• AEO기업 화물의 경우 우선 검사 및 서류심사 실시
세관연락관 지정	• AEO 화물 애로발생 시 소통창구 지정
비상시 우선 조치	• 천재지변, 테러, 물류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AEO화물 우선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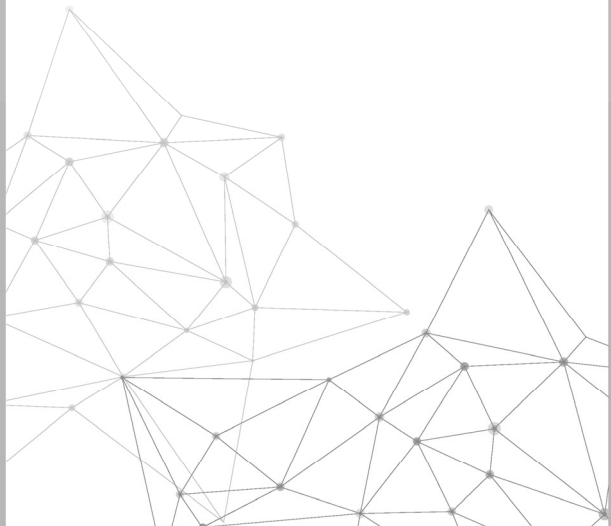
※ 〈대만〉 AEO 공인기업인지 여부 확인

- http://aeo.customs.gov.tw/aeo/PTL_AEO_601.aspx

아시아(ASIA)

태 국

(Thailand)



1

국가 개요

일반 사항	국 명	태국(The Kingdom of Thailand)
	면 적	513,120km ² (한반도의 2.3배)
	수 도	방콕(Bangkok)
	인 구	6,918만 명(2018년 IMF 전망 기준)
	주 요 도 시	방콕, 나콘 랏차시마, 우본 랏차타니, 콘캔, 치앙마이, 부리람 등
	민 족	순수 태국계(75%), 중국계(14%), 말레이계(11%)
	언 어	태국어(공용어), 영어(상용어)
정치	건 국 일	1782년 4월 6일(현 차크리 왕조 출범일)
	정 치 체 계	입헌군주제
	국 가 원 수	국왕: 라마 10세(마하 와치랄롱콘, Maha Vajiralongkorn), 2016년 12월 1일 즉위 총리: 프라윗 찰오차(Prayuth Chanocha), 2014년 8월 25일 29대 총리 취임
경제	화 폐 단 위	Baht, Satang(1/100밧)
	1인당 GDP	6,336달러(2017년)
	교 역 량 (2018년 기준)	수출: 252,485 US\$ Mil 수입: 249,174 US\$ Mil
	주요 교역품	컴퓨터 및 부품, 자동차, 전자집적회로, 자동차 부품, 화물차, 정제유 등

자료원: IMF,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B), 태국투자청(BOI), World Bank, 태국 중앙은행(Bank of Thailand)
WITS(wits.worldbank.org)

한 / 태국 관계	
교역 규모	대 태국 수출(2019년) : 7,804,095 US\$ Thousands 대 태국 수입(2019년) : 5,317,602 US\$ Thousands 무역수지(2019년): 2,486,494 US\$ Thousands
교역 품	- 수출: 철강판, 반도체, 합성수지, 합성고무, 석유제품, 동제품 등 - 수입: 반도체, 컴퓨터, 임산 부산물, 가정용 회전기기, 목재류 등
투자 교류	- 한국의 대 태국 투자 (2017년 말 누계 신고기준) - 3,018건, 32억 7,451만 달러 - 태국의 대 한국 투자 (2017년 말 누계 신고기준) - 375건, 1억 6,182만 달러
교민	약 2만 5,000명

자료원: 관세청, KITA, 태국 외교부, 외교통상부, 태국 투자청(BOI),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KOTRA, 주 태국대사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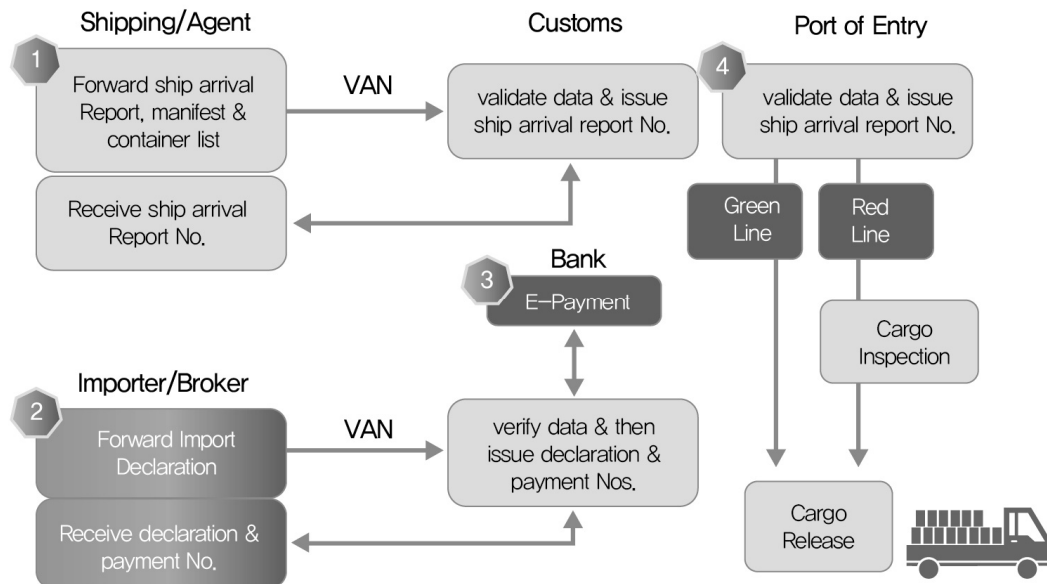
통관절차

(1)

수입통관절차

태국의 수입통관절차는 태국의 수입업자 위주로 수입신고전 준비, 수입신고 및 세금납부, 화물 검사 및 물품 반출, 관세환급의 단계로 나누어진다. 즉, ① 선박회사(Shipping Agent) 또는 통관업자가 화물 도착전에 적하목록(manifest)을 전송하여 화물도착 보고가 이루어지면 ② 수입자 또는 통관대행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전송하여 수입신고 내용의 검증이 이루어진다. 이후 ③ 세관에서 통지한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하면 ④ 화물 검사 후 물품을 반출하는 <그림 39>와 같이 총 4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림 39> 태국의 수입통관절차



자료: 태국 관세청 홈페이지

가. 수입신고전 준비

화물의 도착 전 또는 도착 시점에 운송사(또는 대리인)는 세관 컴퓨터 시스템에 선박 도착 보고와 함께 적하목록을 전송한다. 수입 화물의 입항지(Port of Entry) 도착 전 또는 도착한 때, 선박회사 등은 세관에 적하목록, 컨테이너 목록 제출과 함께 물품 도착 보고를 해야한다. 이상이 없는 경우 선박 도착 보고 번호가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되어 운송사에 전송된다. 세관에 전자적으로 전송된 정보에 오류가 없는 경우 항공기 또는 선박의 도착 번호가 생성되고 선박회사 등에 전송된다.

수입자는 감면신청, 수입요건 구비 등 수입신고전에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고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수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수입신고서,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 AWB),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이 있다. 그 외에도 필요 시 수입허가서, 원산지증명서, 세관의 요구에 대비하여 물품의 카탈로그, 제품 성분표, 기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

나. 수입신고 및 세금납부

2007년 전자수출입신고, 전자적하목록, 전자 납부, 전자보세운송 및 보세창고 등으로 구성된 전자통관시스템이 도입되어 수입자, 수출자, 관세사, 선박회사 등 무서류 신고 환경과 통합된 통관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세관시스템 사용을 위해서는 세관에 등록해야 하고, 사업자(business operator)여야 한다.

수입물품이 입항지에 도착한 후 수입자는 수입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입물품 세관신고서를 작성 완료 후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세관에 전송하여 수입신고한다. 수입물품의 특성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면허, 원산지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자(또는 관세사)가 수입신고서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세관의 심사 후 신고번호 및 관세 등 제세 납부 번호가 생성되어 신고인에게 전송된다. 수입자는 관세 등 제세 납부 번호를 부여받으면 이를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당해 세액을 관세청에 직접 납부하거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태국 투자청의 투자 승인을 통해 태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태국 투자청의 투자 승인을 받은 사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매 수입 시 투자청이 발급해준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된 면세 승인서류를 제출해야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어긴 경우 관세청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관세 감면혜택과 관련하여 투자청

승인 업체도 면세 승인서를 매 수입 시 제출해야 하며 공공기관 기증 물품, 외교 물품 등도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면세 승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휴일에도 임시 개청을 할 경우 통관이 가능하다. 휴일에 통관 요청을 할 경우 임시 개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 화물 검사 및 반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입신고된 화물의 검사 및 서류심사 등 모든 심사와정이 완료된 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태국은 세관이 서류심사 완료 후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하고, 그 후에 화물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및 관련 제세가 통보되면 수입업자는 검사 물품을 준비하고 지정된 검사원이 샘플 검사를 수행한다. 샘플링 검사 수는 수입물품 수량이 10개 이하인 경우는 1개 50개 이하인 경우 2개, 100개 이하인 경우 3개, 500개 이하인 경우 4개, 1,000개 이하인 경우 5개이며 1,000개 이상인 경우도 5개 샘플 검사를 수행한다. 검사는 수입신고서 등 서류와 실제 물품의 일치 여부 검사와 수입 금지 품목의 수입여부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신고 제품의 적하목록과 수입품의 불일치 등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벌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수입신고서를 접수하면 세관에서 수입 화물을 녹색신고(Green Line) 또는 적색신고(Red Line)로 분류하며, 수입자의 세금납부 후 녹색신고 화물은 즉시 통관 완료, 적색신고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HS 코드를 잘못 신고하거나 수량 및 규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수입신고 했던 내용과 실제 화물 검사 내용에 불일치 사항이 발견되면 벌금을 부과한다.

수입자는 세관의 확인 및 검증이 완료된 수입신고서와 세금납부 영수증을 물품 보관창고에 제시하고 물품을 반출할 수 있으나 적색신고 물품의 경우 선별 시스템에 의해 입항지 관세당국에 통보되고 관세당국은 해당 물품을 세관검사 장소로 옮겨 물품을 검사한다. 사전 선별 기준이 적색신고인 물품인 경우 항만공사(Port Authority)가 세관의 실제 화물 검사를 위하여 화물 컨테이너를 이동시킨다. 녹색신고 건은 즉시 통관이 완료되면서 화물의 상태가 전자적으로 항만공사와 수입자(또는 관세사)에게 통보된다. 즉, 사전 화물 선별시스템에서 녹색신고로 지정받은 경우 물품이 즉시 반출 가능하고, 수입자는 세관 검증 이후 부여받은 수입신고서와 세금 등 납부 영수증을 세관 창고에 제출하여 물품을 반출한다.

라. 관세환급

생산, 혼합, 조립 또는 포장 작업을 수행하여 수입일로부터 1년 내에 수출된 수입품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수입관세를 환급해 준다. 수입자는 관세환급이 발생하게 될 항구의 세관에 관세환급신청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등록 서류, 법인 등록 서류 또는 사업 등록 서류, 법인 또는 회사의 공인된 주소를 표시하는 상무부의 확인서, 유효한 공장 운영 허가서 등의 사본 2장을 제출한다.

관세환급 신청에 대한 승인은 신청서가 환급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수입자 확인 코드와 함께 3업무일 내에 결정되며, 승인서는 다음 업무일 내에 수입자에게 송부된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환급 신청이 부령(the Ministerial Regulations)에 의해 금지되지 않아야 하고, 수출품을 생산, 혼합, 조립 또는 포장하는데 사용된 수입품의 양이 세관에 승인된 또는 통보된 기준과 일치해야 한다. 수입품이 환급 과정에 지정된 항구나 출구를 통해 수출되어야 하고, 수출품을 생산, 혼합, 조립 및 포장하는데 사용된 수입품이 태국 내로 수입된 날짜로부터 1년 내에 수출되어야 한다. 환급 신청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수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수출제한 기한이 세관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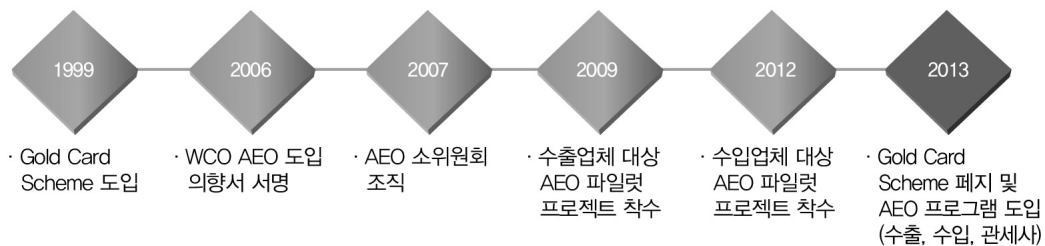
AEO 제도

(1) 제도의 도입

가. 도입 경과

태국은 1999년 종합인증 우수 수출업체 대상으로 통관 원활화를 목적으로 "Gold Card Scheme"를 도입하였다. 2006년 WCO AEO 도입 의향서에 서명을 하고, 2007년 AEO "소위원회(Working Group)"를 조직하였다. 2009년, 2012년 각각 수출업체,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AEO 파일럿 프로젝트를 착수하였다. 그 결과 2013년 10월 1일에 "Gold Card Scheme"을 폐지하고,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를 대상으로 AEO 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였다. 2014년 AEO 조직을 수립하여 9월에 홍콩 세관, 11월에 한국 세관과 상세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AEO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다. 2015년 4월 MRA 소위원회를 설립하여 2015년 6월에 홍콩 세관과 처음으로 MRA를 체결하였다. 전술한 태국의 AEO 도입 경과를 흐름별로 정리하면 <그림 40>과 같다.

<그림 40> 태국의 AEO 제도 도입경과



나. 운영 현황

태국 AEO 공인은 수출입업체, 관세사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AEO 공인을 위해 수출입업체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AEO 공인 신청업체는 태국 내 법인으로 자본금 5백만 바트(원화 약 1억 7천만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회계법인이 인정한 재무제표 상의 '안정'을 유지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는 산업통상부에 제출해야 한다. AEO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업체의 수익이 2년 이상 발생해야 하

고, 신청업체의 재정상태는 “태국 산업 연방”, “태국 상공회의소”, “태국 국제 운송”, “의회”, “태국 항공화물 포워드 연합”, “태국 골드카드 수출입 연합” 등의 기관 중 한 곳에서 인증을 받아야한다.

수출입 관련 업무는 공인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수행(e-customs를 통해 세관직원 조회)해야 한다. 단, AEO 공인을 받은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와 거래하거나 관세사를 채용하여 신청업체의 사업장에 근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관세법 27조에 따른 밀수출입 위반내역, 사기 및 위조에 따른 형법 위반 내역이 없어야 하고, 태국 세관에 AEO 공인신청일 기준 3년간 위반내역을 조회한다.

신청업체는 보안 관련 내부통제활동을 계획하고, 위험평가 및 관리를 위해서 태국 AEO 공인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업체의 본사는 산업통상부 기업 관리 부서에 등록되어 있고, 공인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AEO가 취소되지 않은 업체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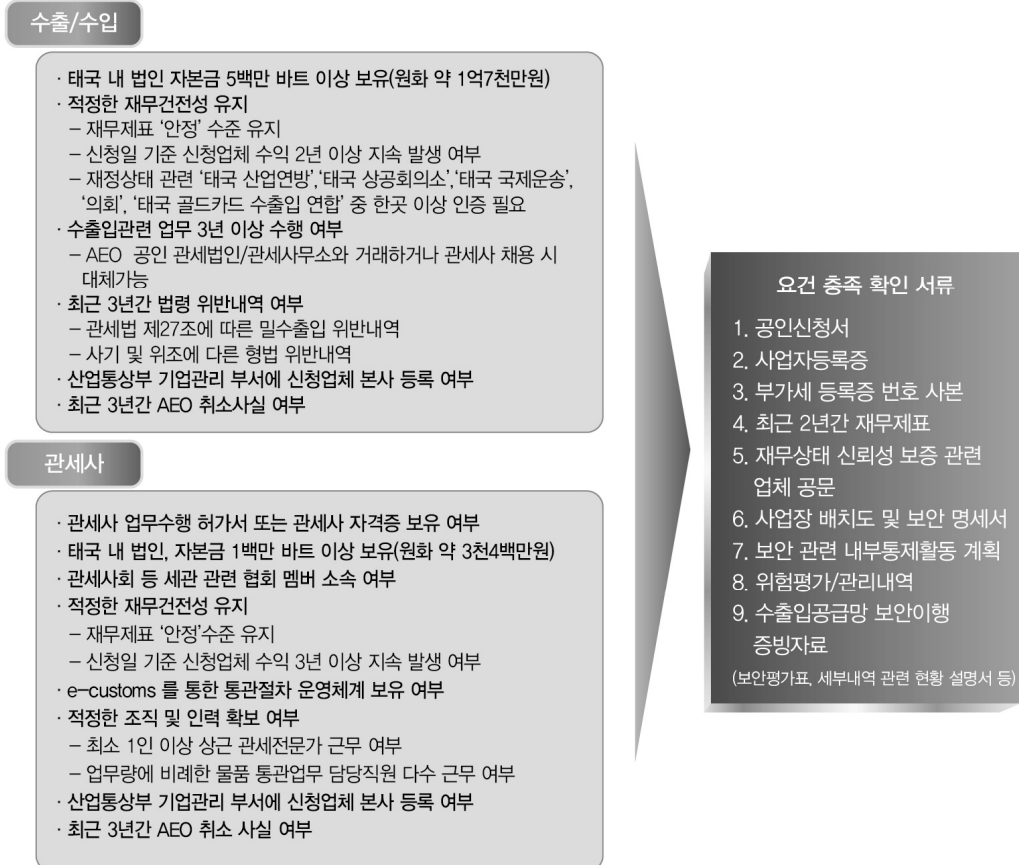
다음으로 AEO 공인 신청을 원하는 관세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관으로부터 관세사 업무수행 허가서 또는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태국 내 법인으로 자본금 1백만 바트 이상(원화 약 3400만원)을 보유해야 한다.

관세사 부문의 AEO 신청은 관세사가 관세사회 등 세관 관련 협회 멤버이며 3년 이상 통관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수출입업체의 공인 부문과 같이 회계법인이 인정한 재무제표 상의 ‘안정’을 유지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는 산업통상부에 제출해야 한다. AEO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업체의 수익이 3년 이상 발생해야 한다. 관세법 27조에 따른 밀수출입 위반내역, 사기 및 위조에 따른 형법 위반 내역이 없어야 하고, 태국 세관에 AEO 공인신청일 기준 3년간 위반내역을 조회한다.

AEO 공인을 신청하는 관세사는 e-customs를 통한 통관 절차 운영 체계 보유하고, 최소 상근직의 관세 전문가를 1인 이상 보유하거나 업무량에 비례한 물품 통관업무 담당직원을 다수 보유해야 한다.

수출입업체의 공인기준과 같이 신청업체는 보안 관련 내부통제활동을 계획하고, 위험평가 및 관리를 위해서 태국 AEO 공인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업체의 본사는 산업통상부 기업 관리 부서에 등록되어 있고, 공인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AEO가 취소되지 않은 업체여야 한다. 태국의 각 부문별 AEO 공인기준을 총망라하면 <그림 41>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공인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확인서류가 누락 없이 제출되어야 한다.

〈그림 41〉 태국의 부문별 AEO 공인기준 및 증빙서류



(2) 공인 절차

가. 공인 신청

AEO 공인신청을 원하는 수출입업체는 신청서와 함께 부가세 등록증 사본, 대표자명 등과 관련된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산업통상부 요건을 준수하는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및 재무상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업체 공문, 사업장 내부통제환경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배치도 및 보안 명세서, 수출입공급망 보안 이행을 증빙하는 보안 평가표 및 세부내역에 대한 현황설명서 등 이행증빙자료를 “관세 절차 및 평가 부서”의 “AEO 등록 및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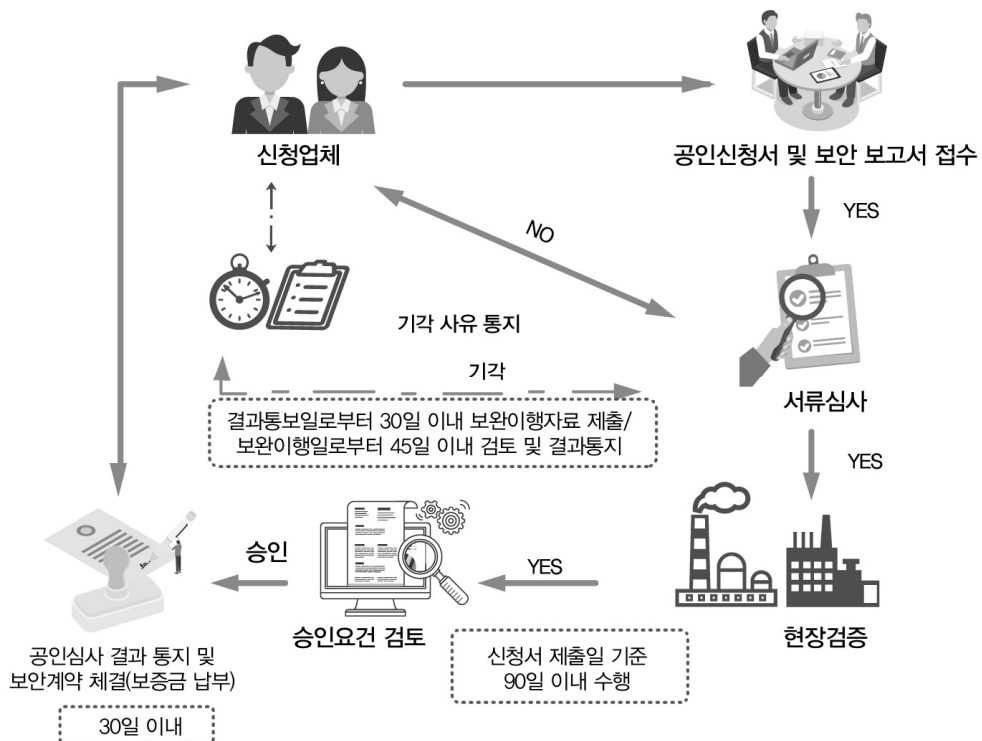
택과”에 제출해야 하고 태국 세관에서는 신청인 제출서류에 대한 보안을 유지한다.

AEO 공인신청을 원하는 관세사는 공인기준에 대한 증빙자료와 일반사항(사업자등록증, 대표자명 등 관련 서류 등), 관세 전문가 목록표 및 전문가 자격 번호, 산업통상부 요건을 준수하는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사업장 내부통제환경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배치도 및 보안 명세서 등 이행증빙자료를 “관세 절차 및 평가 부서”의 “AEO 등록 및 혜택과”에 제출해야 하고 태국 세관에서는 신청인 제출서류에 대한 보안을 유지한다.

나. 현장 검증

세관은 서류검토를 마치고, 현장검증을 통하여 최종 공인심사를 수행한다.

〈그림 42〉 태국의 AEO 공인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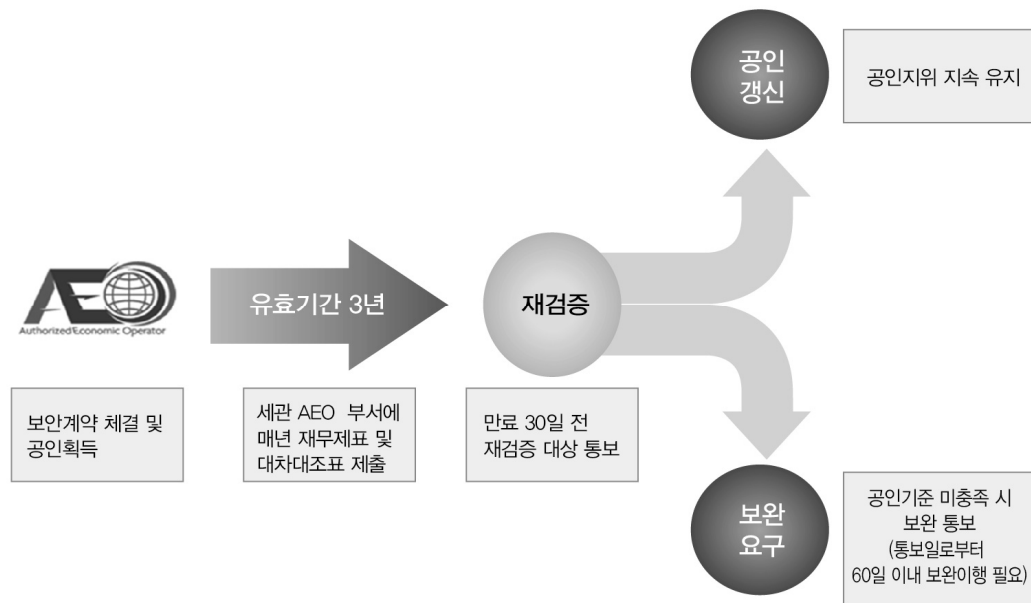
다. 공인 결과보고(통과/기각)

서류검토, 현장검증을 통하여 최종 공인심사 결과는 공인신청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업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AEO 업체의 공인심사 결과 ‘기각’ 시 태국 세관은 공인심사 결과 및 기각 사유를 문서로 통보한다. 이를 통보받은 업체는 추가 보완이행자료를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관세 절차 및 평가 부서”의 “AEO 등록 및 혜택과”에 제출하고, 태국세관은 추가 보완이행자료 수취일로부터 45 일 이내 적정여부 검토 후 최종 결과 통보한다.

라. 사후관리

AEO 공인업체는 공인 후 관세 납부 능력 및 사업 운영 능력에 대한 검토를 위해 매년 재무제표와 대차대조표를 AEO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림 43〉 태국의 AEO 공인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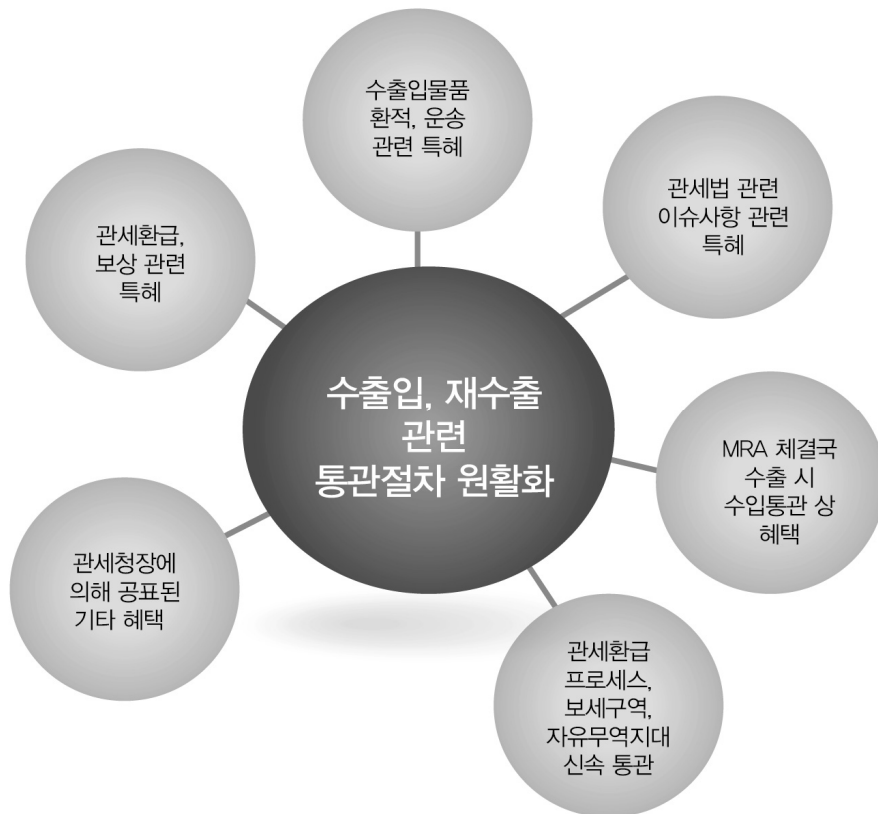
AEO 공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는 재검증 프로세스를 3년에 한번 수행한다. 세관에서는 공인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재검증 수행 대상임을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수출입업체의 경우 현장검증일 1주일 전 AEO 등록 및 관세혜택과에 “연장신청서” 제출을 통

해 준비를 위하여 재검증 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현장검증 시 AEO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완이 통보되며 AEO업체는 보완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완이행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인획득 이후 수행되는 태국의 AEO 공인 사후관리 절차는 <그림 43>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3) 주요 혜택

<그림 44>에 나열된 태국 AEO의 주요 혜택을 살펴보면 수출입, 재수출과 관련된 통관 절차의 원활화, 관세 환급 보상과 관련한 특혜, 관세법 관련 이슈사항에 대한 특혜, MRA 체결국으로 수출 시 체결국 수입통관 상의 혜택, 관세청장에 의해 공표된 기타 혜택 수혜, 관세환급 프로세스, 보세구역 자유무역지대에서의 신속 통관 절차 등이 있다.

<그림 44> 태국의 주요 AEO 혜택



4

MRA활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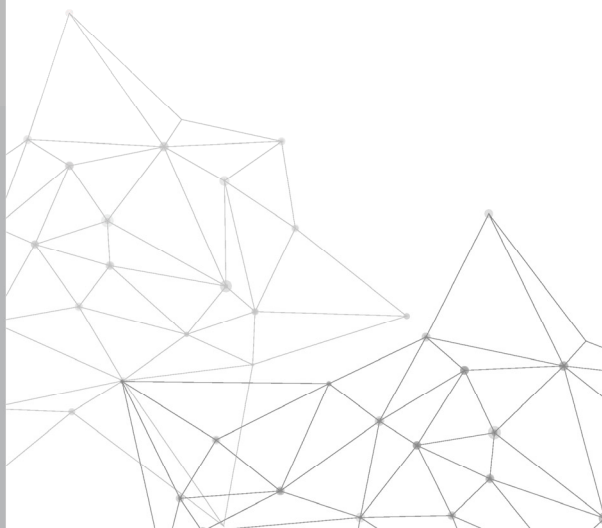
- ① <한국 관세청>은 한국 AEO 수출기업 공인정보 송부 (한국 관세청 → 태국 관세청)
- ② <태국 관세청>은 자체 구축된 AEO D/B에 입력
- ③ 한국 AEO 수출기업은 태국의 수입자에게 정확한 (영문) 한국 AEO 수출기업명, 한국 AEO 인증번호를 통보
- ④ 태국 수입자 또는 수입신고 시, 한국 AEO 수출 기업명, 한국 AEO인증번호, 국가코드 (KR)를 기재
- ⑤ <태국 관세청>의 AEO D/B와 일치하는 수입신고 건에 대해 수입검사를 축소 등 MRA 혜택 부여

〈한-태국 AEO MRA 혜택〉

수입검사를 축소	• 상대국 AEO기업의 수출화물에 대하여 수입검사를 축소
수입화물 신속통관	• 수입검사 또는 서류심사시 상대국 AEO 화물에 대해 우선검사 실시
비상시 우선조치	• 국경보안 강화, 국경폐쇄, 자연재해 등으로 물류흐름 장애발생시 우선조치

아시아(ASIA)

아랍에미리트 (UAE)



1

국가 개요

일반 사항	국 명	아랍에미리트연방 (United Arab Emirates, UAE)
	면 적	8만 3,600km ² (한반도 면적의 약 37% 크기, 전 국토의 97% 사막)
	수 도	아부다비(Abu Dhabi)
	인 구	약 1천 43만 명(2018년 IMF 추정, UAE 자국민 약 11.6%, 외국인 약 88.4%)
	주 요 도 시	아부다비(Abu Dhabi), 두바이(Dubai), 샤르자(Sharjah), 아즈만(Ajman) 등
	민 족	자국민 '에미라티' 19%, 아랍계 및 기타 21%, 아시아계 60% 등
	언 어	공용어: 아랍어(갈프, 레반트, 이집트, 마그레브 방언) 상용어: 영어, 힌디어, 우르두어, 말라얌어 외
정치	건 국 일	1971년 12월 2일(영국으로부터 독립)
	정 치 체 계	7개 토후국(에미리트)으로 구성된 연방대통령제
	국 가 원 수	대통령: 셰이크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하얀 (2004년 11월 4일 취임) (Sheikh Khalifa Bin Zayed Al-Nahyan) 부통령 겸 총리: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쉬드 알 막툼 (2011년 1월 재선)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경제	화 폐 단 위	아랍에미리트 디르함(AED; United Arab Emirates Dirham)
	1인당 GDP	US\$ 5만 6,000 (2017년)/ PPP (구매력 기준)
	교 역 량 (2018년 기준)	수출: 387,910 US\$ Mil 수입: 244,646 US\$ Mil
	주요 교역품	수출: 원유, 금, 에틸렌, 알루미늄, 귀금속 등 수입: 금, 기계, 자동차, 귀금속, 항공부품 등

자료원: IMF, CIA, UAE 경제부, UAE 연방통계청, World Bank, ILO, WITS(wits.worldbank.org)

한 / UAE 관계	
교역 규모	대 UAE 수출(2019년) : 3,469,772 US\$ Thousands 대 UAE 수입(2019년) : 8,991,147 US\$ Thousands 무역수지(2019년): -5,521,376 US\$ Thousands
교역 품	우리 수출: 자동차 및 부품, 연초류, 원동기, 무선전화기 등 우리 수입: 원유, 금, 알루미늄, LPG 등
교민	약 1만 3,000명

자료원: KOTIS, 한국수출입은행, 주UAE 대한민국대사관, KITA, 관세청

2

통관절차

(1)

수입통관절차

아랍에미리트는 에미리트별로 세관이 있지만, 통관절차는 모두 동일하며 절차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수입의 80%를 두바이 세관에서 처리하며, 10%를 아부다비 세관에서 처리한다. 아랍에미리트 통관 절차는 물품도착 → 수입 물품 보세 구역반입 → 서류작성 → 관세 납부 → 수입물품 검사 → 반출로 이루어진다.

해상수입의 경우는 Dubai Trade(www.dubaitrade.ae)에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Ports & Customs Documentation Centers에 서면으로 등록할 수 있다. 선박 도착 날짜에 맞추어 수입업자는 선박회사(shipping agent)에 선하증권을 제출하고 선박회사는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O)를 발행해주어야 한다. 화물인도지시서의 만료기한을 넘겼다면 세관에서는 화물을 수입업자에게 넘겨주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에이전트는 기한을 연장해야 하고 선박회사는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 할 수도 있다.

통관을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 Dubai Trade Portal(www.dubaitrade.ae)에 회원 가입하고 수입 신고서를 두바이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관세나 다른 비용들을 E-payment 통해서 신용카드나 자동이체(direct debit)로 지불할 수 있다. 관련된 서류 제출 후 두바이 세관은 관세와 수입 승인을 위해서 서류를 검토하고 관세와 그 밖의 비용들을 지불한 후 수입신고서를 프린트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물품의 설명, 총수량, 물품의 가치정보 기재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와 인증 내용이 있는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무게, 포장 방법, HS code 정보 기재한 원산지 증명서 원본 등을 포함한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면세 물품이나 수입이 제한된 물품의 경우 필요한 수입허가서가 필요하다.

Dubai Trade의 사이트를 통해서 e-token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e-token 시스템은 트럭이 Jebel Ali 항구에 들어가면서부터 나가기까지 모든 과정을 알 수 있다. 등록된 트럭을 통해 Jebel Ali 항구에서 화물을 운반할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면 e-Token 번호는 Dubai Trade를 통해서 부여된다. 수입업자는 운반인에게 e-token 번

호를 제공해야 하고, 운반인은 Jebel Ali 항구 e-token 번호를 알려주어야 들어갈 수 있다. DP World는 컨테이너를 지정된 e-token 번호를 가지고 있는 운반인에게 컨테이너를 넘겨준다. 운반인은 기기수도증(Equipment Interchange Receipt, EIR)을 받고, 검사가 필요하다면 운반인은 화물을 지정된 구역으로 옮겨야 한다. 검사가 완료된 후 운반인은 기기수도증(EIR)을 보안요원에게 보여줌으로써 Jebel Ali 항구를 나갈 수 있다.

가. 수입신고전 준비

UAE의 수입통관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투명하지만, 수입업체는 수입전에 미리 수입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수입업자는 반드시 관세청으로부터 유효한 수입업체 코드를 획득해야 하며 아랍에미리트에 등록된(아랍에미리트 국민이 지분을 최소 51% 소유해야 함) 회사만이 자격이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직접 진출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수 없는 제조업자 → 에이전트(유통업자) → 소매업자 → 소비자 유통구조로 에이전트를 통하여 공급이 가능하다. 에이전트 선정이 시장진출의 성패를 좌우하며 선정 시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아랍에미리트는 자국 에이전트 보호정책으로 인해 독점판매권을 주게 되면 분쟁 시 불리해진다. 계약서의 계약 기간, 거래물품의 내용, 가격, 인도시기와 방법, 대금결제 방법 등을 잘 작성하여 분쟁 시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에이전트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기존의 에이전트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종료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가축, 유제품, 지방과 기름, 꿀, 계란, 과일주스, 소금, 이스트, 동물사료, 세제, 위생용품 등의 물품의 경우 현지 에이전트 없이 외국기업이 수입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연방세관(Federal Customs Authority)이 세관절차 개선 및 통합을 위해 창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별 세관을 통해 실제 통관이 진행되면서 세관별로 업무수행 상세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아, 수입신고전 통관세관을 통해 통관세부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지 바이어들은 D/P, D/A를 선호하며 L/C, T/T, D/P · D/A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대금 결제 조건에 부가적 행정처리가 필요하다. 현지 은행 거래 시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하고, 이란 무역 제재와 관련하여 이란과 관련이 없어도 금융거래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법인세, 소득세가 없고 기업이 대부분 비공개이므로 재무제표나 영업실적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바이어 신용조사가 어렵다. 인도, 아랍, 아프리카 출신의 소규모 사무실들의 무역 사기가 빈발하여 미결제와 마켓 클레임의 위험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나. 수입신고

아랍에미리트는 연방법과 에미리트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에미리트 별로 법규나 시행령이 있으나 수입 통관절차의 경우 통일화 시켰다. 두바이 세관은 eMirasal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수입 물품 통관 시 상업송장(Invoice) 및 원산지 증명서에 해외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수입신고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하증권(Bill of Lading),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등의 서류를 갖추어 수입신고를 한다.

다. 관세납부 및 환급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후 관세를 납부하게 되며, 관세 납부는 수입 물품 검사 이전에 이루어진다. UAE는 개방적 시장경제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예외적으로 특정품목에 대해 무관세 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왕실, 정부, 외교관의 용도로 수입하는 상품이나 병원, 자선단체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과 원산지가 GCC 회원국인 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이다. 담배는 100%, 주류는 50%의 특별 고관세가 적용된다. 기타 가축류, 기초 식품류, 약품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UAE에 수입된 물품이 6개월 이내에 다시 수출되는 재수출용 수입물품은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관세환급은 Bill of Entry 상에 재수출용 물품임을 기재하고 일단 부과된 관세액을 납부하고 관세환급 신청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또한 전시 또는 시연 샘플의 일시 수입에 대한 전시품 관세면제 제도가 있다. 인보이스 원본과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개최주최로부터 받은 참가확인서를 첨부하여 입국 세관에 신고하면 출국 시 환급한다.

라. 물품검사 및 반출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서류가 잘 갖추어지고, 특이한 점이 없다면 대부분 특별한 검사 없이 통관이 이루어진다. 수입물품 검사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검사 일시를 지정 받는다. 지정된 날짜/시간에 화주 또는 대리인 입회하여 수입 물품 검

사가 이루어지며 이상이 없으면 수입신고서에 “Cleared”라는 확인을 날인한다.

이스라엘 보이콧 규정에 따라 이스라엘 부품이 들어간 제품이나 이스라엘 생산 제품, 이스라엘 국기 및 히브리어가 들어간 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의 경우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고 저가신고(Under Value) 및 원산지 신고에 유의해야 한다.

수입자는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이 완료되면 물품반출서를 발급받아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3

AEO 제도

(1) AEO 제도의 도입

가. 도입 경과¹⁴⁾

최근 세계의 무역 허브로서 성장하고 있는 UAE는 수년간 광범위하고 가속화된 현대화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AEO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도입하였다. 매년 약 2천만 개의 컨테이너가 UAE 항구에서 처리되고 두바이의 Jebel Ali 항구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세계에서 9번째로 큰 항구이다. 또한 UAE는 연간 400만 톤의 항공화물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물동량의 증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AEO 제도를 도입하였다. 두바이 세관은 2015년 9월에 AEO 프로그램의 수행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공식적으로 2016년 10월에 도입되었다. 두바이가 가장 먼저 AEO 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였고, 다른 에미리트에서 실행될 것이다. 이는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AEO 프로그램이 단시간에 실행되었다. WCO SAFE Framework 표준이 포함된 국제적인 표준을 사용하고, 다른 국가의 AEO 프로그램으로부터 우수사례를 참작하여 두바이 세관의 국제적인 경험으로 효율적인 내부의 사업모델이 뒷받침됨으로써 가능하였다.

나. 운영 현황

UAE의 AEO 프로그램은 운송 및 세관 절차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법규준수 및 보안을 포함한 총체적이고 현대적인 접근방식이다. 세관과 관계가 있는 공급망 모든 당사자가 AEO 공인을 신청할 수 있고, 특히 국가 경제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소기업도 대상에 포함이 된다. UAE의 AEO 프로그램은 등급 및 단계가 없이 법규준수 및 보안의 수준에 따라 비 공인업체와 구별하여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UAE의 AEO 공인기준은 기록 유지(Record Keeping), 재정건전성(Financial Viability), 법규준수(Compliance), 보안(Security) 등 4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록 유지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우수한 평가원칙과 일치하는 평가시스템으로 평

14) <https://mag.wcoomd.org/magazine/wco-news-81/dubai-customs-launches-the-uaes-innovative-aeo-programme/>

가기반 세관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세관이 신청업체의 세관 및 운송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품의 흐름을 관리하는데 알맞은 신청업체의 사업 유형 및 규모에 부합하는 행정조직을 구축하고, 불법 또는 비정상적 거래를 감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역량을 갖춘다. 상업 시책(commercial policy measures) 또는 농산물 무역에 관련된 면허 및 승인 처리를 만족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업체 경력(records) 정보의 보관과 정보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마련한다. 이를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발견될 때마다 직원이 세관에 신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ICT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IT 보안 조치를 실시한다.

재정건전성은 과거 3년간 관세 및 수수료 지급과 부채가 없어야 하고, 그 등급은 Dun & Bradstreet 등급 B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법규준수는 과거 3년간 충분한 법규준수 경력이 있어야 하고, 신청업체, 업체 담당자, 세관 문제에 책임이 있는 자 등의 당사자가 세관 규칙을 심각한 위반 또는 반복적인 위반이 없어야 한다.

보안은 신청업체의 시설과 장비에 불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불법 침입에 대한 보호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물품 취급 지역에 비인가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적절한 출입 통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물품 취급에 대한 조치에는 원재료의 도입, 교환 또는 분실에 대한 보호와 단위화물의 무단 변경이 포함된다. 신청업체는 금지 및 제한된 상품의 수출입 허가를 처리하고 이들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국제 공급망에서 안전한 거래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검증 가능한 조치를 시행하고, 보안이 요구되는 민감한 위치에서 일하는 채용예정자에 대한 보안 심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해당 직원이 보안 인식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 공인 절차

UAE의 AEO 공인을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업체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신청업체는 국제 공급망 구성원이거나 관세 관련 활동을 하고 있고, UAE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즉, UAE의 세관 비즈니스 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AEO 신청 전에 충족할 필요가 있는 재정적 또는 기타 공식적인 기준은 없지만 업체의 제조현장 또는 세관 프로세스 절차(예, 수출)와 같은 제한된 AEO 인증을 신청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신청업체 또는 고위경영진은 AEO 신청일로부터 3년 내에 법원에서 경제활동과 관련된 심각한 형사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아야 한다. 각 법인 전체에 요구되는 신청서는 1부이고, 신청업체는 두바이에 신청하기 전에 세관이 3년 내 AEO 자격을 취소하지 않아야 한다.

가. 공인 신청

UAE의 AEO 공인 신청은 먼저, AEO 자격을 위해 업체가 신청하는 최초 단계로 AEO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업체와 세관 당국 간의 거래를 시작하는데 주요 문서이다. 세관 당국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업체가 AEO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즉, AEO 인증은 최초 과정으로 AEO 신청업체가 AEO 자격을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두바이 세관은 신청서의 완전성과 신청업체의 적격성을 확인한다. 이 프로세스는 승인 신청으로 하위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도 있고 승인 거부로 종료될 수도 있다. 두 경우 모두 세관이 AEO 신청업체에 결과를 통보한다.

나. 현장방문(확인)

AEO 심사 프로세스는 신청업체가 AEO 자격에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체평가서(Self Assessment Questionnaire, SAQ),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심사(Validation) 등 3가지 하위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수행된다.

SAQ는 AEO 심사 절차의 첫 단계이다. 신청업체가 의무적으로 신청업체와 관련된 사업유형에 맞춘 자체평가서를 분석하고 작성하여 제출한다. AEO 검증팀은 신청업체에게 적합하게 잘 맞도록 만든 자체평가서를 작성한다. 신청업체와 회의 중, 가능한 간소화 혜택과 신청업체의 이점을 설명하고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자체평가서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정보 수집은 신청업체와 그 활동에 가장 적합한 간소화 및 혜택을 고려한다. 이 단계는 신청업체의 공급망 활동에 알맞은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급망에서 업체의 비즈니스 역할, 상품의 유형, 구체적인 평가관점, 유형, 상품의 원산지, 보안 이슈, 타 규제요구사항, 사업의 재무 또는 물류 회계시스템의 신뢰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험평가를 위해서 심사팀이 자체평가서를 작성한 이후 AEO 정보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포함한 이용할 수 있고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한다. 이는 최초 위험평가를 토대로 수행하고, 모든 부문의 인증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위험평가는 AEO 신청업체의 강

점과 약점을 발견하는데 필요하다.

심사는 AEO 관리자의 승인 후에 시작된다. 심사가 배정되는 동안 정보는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되어 분석된다. 현장 방문은 AEO 심사자가 AEO 신청업체의 프로세스, 시스템 및 시설과 장비를 검토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수행된다.

다. 공인 결과보고(통과/기각)

AEO 인증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되었을 때 Key Account Manager(KAM)가 지정되고, KAM이 인증서를 발급한다. 그리고 인증서 세부사항은 CMS / ECR에 입력된다. 인증서는 세관과 업체 상호 간의 신뢰를 자극하고 업체의 AEO 자격이 무료 혜택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다.

라. 사후관리(지속적인 파트너십)

UAE의 AEO 공인 사후관리는 관리 및 모니터링(Management and Monitoring)으로 이루어진다. 관리 및 모니터링은 KAM, 모니터링과 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 갱신(Re-Validation) 등 하위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먼저, KAM은 승인 및 서비스 수준, 현재 면허 및 공인 내용의 변화와 AEO 자격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후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를 AEO 업체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모니터링과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AEO 관리의 기본으로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갱신의 목적은 DC에서 정의한 AEO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심사하고 확인하는 절차이다. 갱신은 새로운 위험 또는 일탈이 확인되는 경우 계획되고, 그 범위는 심사와 비슷한 방식이거나 부분적으로 특정 영역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또한 갱신의 범위가 달라지더라도 심사절차에 정의된 동일한 절차, 보고서 및 관리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 주요 혜택

UAE의 AEO 인증 업체는 다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AEO 프로그램의 일부로 시행된 혜택이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고서 수정을 위한 유예기간
2. 종이 서류 기록물 제출의 삭제
3. 신고서 수정 후 요구되는 검사 없음
4. 재수출을 위한 기간 연장
5. 신속 승인
6. 검사 우선순위화
7. 승인 후 평가 감소
8. 패널티 없는 오류의 자체공개
9. 해체하지 않는 검사 기술사용
10. 우선순위 탁송물 픽업
11. 전담 핵심 계정 관리자
12. 다른 기관과의 핵심 계정 관리자 조정
13. AEO 자체 협약
14. 패널티 완화
15. AEO 증서 수여
16. 세관 AEO 사이트에 등재
17. 두바이 AEO 마케팅의 무료 사용 등

4

MRA활용 방법

- ① <한국 관세청>은 한국 AEO 수출기업 공인정보 송부 (한국 관세청 → UAE 관세청)
- ② <한국 AEO 수출기업>은 수출 시 AEO 공인번호를 UAE 수입자에게 통보
- ③ <UAE 수입자>는 수입신고시 AEO 공인번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
- ④ <UAE 관세청>은 한국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한국 AEO 수출기업 공인정보와 일치하는 경우 MRA 혜택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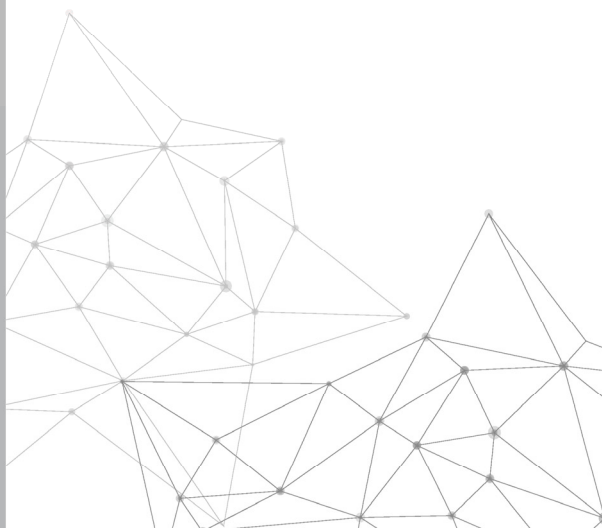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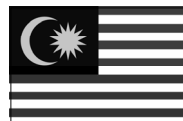
<한-UAE AEO MRA 혜택>

수입검사율 축소	• AEO 화물이 수입되는 경우 검사율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 AEO 화물에 대한 수입신고시 서류심사 비율 축소
우선 통관 조치	• AEO기업 화물의 경우 우선 검사 및 서류심사 실시
세관연락관 지정	• AEO 화물 애로발생 시 소통창구 지정
비상시 우선 조치	• 천재지변, 테러, 물류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AEO화물 우선 조치

아시아(ASIA)

말레이시아

(Malaysia)



1

국가 개요

일반 사항	국 명	말레이시아 연방(Federation of Malaysia)
	면 적	330,252 km ² (한국의 3.3배 / 한반도의 1.5배)
	수 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인 구	3,205만 명(2017년)
	주 요 도 시	쿠알라룸푸르(180만 명), 셀랑고르주(565만 명), 조호주(50만 명), 페낭주(170만 명), 말라카(90만) 등
	민 족	말레이계(68.8%), 중국계(23.2%), 인도계(7.0%), 기타(1.0%)
	언 어	공용어: 말레이어(Bahasa Malaysia) 상용어: 영어 * 약 140개 언어가 사용되고 있음(말레이시아 반도 40개, 사바 54개, 사라왁 46개)
정치	건 국 일	1957년 8월 31일(영국으로부터 독립)
	정 치 체 계	내각책임제 (총리 : Tun Dr. Mahathir bin Mohamad)
	국 가 원 수	Sultan Muhammad V(15대 국왕, 2016.12.13 취임) -말레이계 9 개주 술탄이 5년마다 순환하며 국왕 역할 수행
경제	화 폐 단 위	Ringgit Malaysia(RM)
	1인당 GDP	9,818달러(2017년)
	교 역 량 (2018년 기준)	수출: 247,324 US\$ Mil 수입: 217,358 US\$ Mil
	주요 교역품	수출: 전자집적회로, 석유/가스, 석유제품, 팜유, 석유정제품 등 수입: 기계류 및 운송장비, 전기전자 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 등

자료원: IMF(WEO April 2017), Bank Negara Malaysia, Global Trade Atlas, WITS(wits.worldbank.org)

한 / 말레이시아 관계	
교역 규모	대 UAE 수출(2019년) : 8,843,499 US\$ Thousands 대 UAE 수입(2019년) : 9,279,940 US\$ Thousands 무역수지(2019년): -436,441 US\$ Thousands
교역 품	우리 수출: 자동차 및 부품, 연료류, 원동기, 무선전화기 등 우리 수입: 원유, 금, 알루미늄, LPG 등
교 민	약 1만 3,000명

자료원: KITA, 수출입은행, 외교통상부, 관세청

2

통관절차

(1) 수출통관절차

수출품은 관세규정 1977(Customs Regulations 1977)의 제1목록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육로, 항로, 해상으로 수출될 수 있다. 수출신고를 할 때,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수출자는 수출 직전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제2세관양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한다.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출품의 경우, 수출자는 물품을 운송하기 전, 그리고 물품 도착 10일 내에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해 물품이 양륙한 지역의 세관에 규정된 양식으로 수출품의 세부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포장의 개수와 설명, 모든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내용 설명, 무게, 크기, 수량, 가치, 원산지, 목적지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수출자나 그 대리인은 세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송장, 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 또는 분석 확인증, 포장명세서, 수출허가(수출 금지 품목일 경우), 수출품의 가치가 100,000링깃 이상일 경우 외화관리 양식(Foreign Exchange Control Form, KPWX), 세관이 수출자 신고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타 문서 등을 제시하고, 세관이 서류를 보관할 수 있다.

물품 분류와 관련하여, 모든 수출품은 관세령 1996(Customs Duties Order 1996)에 명시된 말레이시아 세관의 관세 번호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물품 이름, 상표, 사업 분류, 원산지, 구성물, 용도 등의 내용이 필요하다. 물품 분류에 관한 문의사항은 물품이 수출되는 특정 세관 또는 Technical Services Division에서 처리한다.

수출품 적하목록의 경우, 현지 선박 이외에 통관항을 출발하는 모든 선박의 소유주나 대리인은 출발 7일 이내에 세관에 선박의 수출품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다른 통관항까지 수출세 부과 대상 물품을 해상으로 운송하는 경우, 수출세를 지불할 때까지 또는 물품이 도착할 지역의 세관이 만족하는 수준의 수출세액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해상 수출 선적을 금지한다. 수출세 부과 대상 물품을 말레이시아 국경을 넘어 말레이시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철도 운송하는 경우, 수출세를 지불하지 않거나 생산지 또는 목적지의 세관이 만족할 만큼의 수출세액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운송을 금지한다.

출항허가증의 경우, 모든 선박은 선박의 선장이나 대리인이 세관으로부터 규정된 양식의 출항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통관항을 출항할 수 있다. 출항허가증을 받은 선박이 48시간 내에 항해하지 않는 경우, 선박의 선장이나 대리인은 항해하지 않는 이유를 세관에 보고하고, 세관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출항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통관공항을 통해서만 항공 수출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수출품은 내륙 통관지점이나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다. 수출 면허의 경우, 관세령 수출금지품목(관세법령 2008) 목록 물품의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 면허가 필요하다.

법적인 선적 장소에서, 세관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 규정된 요일 및 시간에만 또는 세관의 허가를 받은 시간에만 해상 수출을 위한 선적을 할 수 있다. 규정된 경로로, 규정된 장소에서, 규정된 요일과 시간에, 또는 세관의 허가를 받은 시간에만 철로 및 육상 교통으로 수출을 할 수 있다.

수출 금지 물품의 선적 및 말레이시아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해상 운송은 금지되어 있다. 단, 도착하는 지점의 세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적 물품 가치의 3배 이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수출 신고를 수출 후 7일 이내에만 하면 된다. 송장 또는 선적서류는 항구에서 수출을 위해 이동시킬 때 항구에서 사용될 수 있다. 송장에는 물건의 설명, 가치, 수량, 수출 목적지를 꼭 기재하여야 한다.

(2) 수입통관 절차

말레이시아의 통관용 물품분류체계는 HS를 토대로 9단위 기준으로 수입관세율은 200~300%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1996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최고 수입 관세율을 2000년까지 15%로 인하하고, 2020년까지 철폐하는데 합의하였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입물품의 원산지 규정을 규율하는 국내 법규를 갖고 있지는 않고 이는 비특혜 원산지규정과 관련되어 있다. ASEAN CEPT와 관련하여 특혜 원산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바 CEPT 제도는 ASEAN 국가들이 당해 물품이 ASEAN 국가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이거나 FOB 가격의 4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40% 부가가치 산출 시 원재료, 노임 및 간접비용 등이 고려된다.

수입물품은 세관을 거쳐 통관되며 법에 의해 제외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customs duty), 판매세(sales tax), 및 소비세(excise duty)가 부과될 수 있다. 수출입 관련 여타 통관양식으로는 수입물품의 경우 제1세관양식이 요구되고, 제3세관양식은 말레이시아 내 물품 운송 시, 제8세관양식은 환적용, 제9세관양식은 보세창고에서의 일시반출용으로 요구되는 양식이다.

모든 수입품은 수입세 납부에 상관없이 제1세관양식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개수, 포장/상자 설명, 가치, 무게, 수량, 물품 종류 및 원산지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수입품이 상업용일 경우, 수입품이 수입관세 부과 대상일 경우 제1세관양식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수입품의 송장 가치가 적어도 하나의 운송 건에 대해 10,000링깃 이상인 경우, 수입품이 수입관세의 부분 면제를 받는 경우 추가적으로 제출이 필요하다.

수입품의 가치 평가에 관한 문서 및 기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물품의 수입 후 6년 동안 물품의 구매, 가격, 가치, 결제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물품의 가치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물품 가치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 10,000링깃 이상 500,000링깃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적 물품이 도착하고 난 후나 도착 이전에 선적 관련 서류들에 대해 검토하여 정밀 검사 또는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결정한다.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대부분 농산물) 브로커 또는 중개인은 관련 기관과의 검사 일정을 정한다. 수입 허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 선적 물품의 도착 이전에 해당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통관 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

보세창고에 보관되거나 보세창고 보관 면제를 받은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수입자는 보세창고를 관할하는 세관에 수입품을 신고해야 한다. 물품이 세관의 통제를 벗어나기 전에 또는 물품이 양륙 1개월 내의 기간에 이동하지 않는 경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규정된 양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세관이 서면 공지를 통해 수입자가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서를 3일 내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세관 보세창고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육로나 해상으로 수입된 관세 부과 대상 물품 그리고 개인 용도의 여행자가 방이 수입 장소에 도착할 때, 수입자가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해 규정된 양식 또는 규정된 방식으로 세관에 수입품을 신고해야 한다. 우편으로 수입된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수신자는 세관의 요구에 의하여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해 규정된 양식으로 수입품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상자의 개서 및 설명,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무게, 크기, 수량, 가치, 원산지 국가 등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국내 소비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가 모든 신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는 추정되는 금액의 관세 및 그 이하의 보증금 지불과 함께 물품을 내 보낸다. 이 외에도 2개월 또는 세관이 허가하는 그 이상의 기간 내에 정확한 신고를 해야 할 때, 정확한 액수의 관세 및 기타 부과 금액을 평가하여 지불하게 하며, 초과한 보증금은 환불된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압수하여 Consolidated Fund에 추가한다.

수입 품목에 대한 품목 분류가 끝나고 관련 서류들이 제출되어 수입 관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통관 절차가 마무리된다. 한편 관세 협약에 따른 낮은 수입 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원산지 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은 1998년 6월 말 개장한 KLIA(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를 비롯하여 반도 북부에 Penang, 반도 남부에 Senai(Johor Bahru), 동 말레이시아에 Kuching, Kota Kinabalu 등이 있다. Kuching 공항은 동 말레이시아의 Sarawak 주에 위치해 있으며 Kuala Lumpur를 출입하기 위한 중간 경유지로 활용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 총 11개의 주요 컨테이너 항구가 있으며 그 중 4개 항구는 말레이반도에 그리고 나머지는 동말레이시아에 위치하고 있다. Bulk 화물의 경우 상기 11개 Port 외에 Terengganu에 Kemaman항구가 있고, Liquid Bulk화물은 Kemaman항구의 이용률도 높은 편이다.

말레이시아 중부의 길목인 Port Kelang항은 제1항구로 콰라룸푸르로부터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North Port와 West Port로 구성되어 있다.

가. 수입 신고 전 준비 단계

말레이시아로 수입품은 관세규정 1977의 제1목록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육로, 항로, 해상으로 수입될 수 있다. 해상이나 수로로 수입된 물품은 말레이시아 영토 내 법적 양륙지점에, 세관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 규정된 요일과 시간에 또는 세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양륙할 수 있다. 세관의 허가가 없으면, 일단 양륙했거나 하선한 경우 환적할 수 없고, 양륙하기 위해 다른 선박으로 옮겨진 물품은 원래 선박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관련법에 의해 어업용으로 허가받은 선박의 생선은 얼음 포장 여부와 상관없이 위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통관공항을 통해서만 항공 수입할 수 있고, 이러한 수입은 내륙 통관지점이나 내륙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무역거래의 투명성 및 예측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일통관창구(National Single Window, NSW)를 운영하고 있다.

적하목록은 선박의 경우 물품 도착 후 24시간 이내 하역하기 이전에 제출해야 하고, 항공 및 철도는 물품이 도착한 후 세관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 자동차는 수입하는 곳에 도착한 시점에 제출해야 한다. 적하목록 제출은 규정된 양식에 말레이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선장이나 대리인의 보증 및 확인이 필요하고, 원본과 복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통관항에 양륙될 각 상자의 표시, 개수, 내용물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하송인과 화물인수인의 성명, 선박에 적하된 모든 화물의 목록, 선박 내 모든 저장품의 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화물이 전부 하역된 후 2개월 이내 혹은 세관의 허락을 받은 기간 이내에 적하목록 확인서류 2부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적하목록에 변동사항이 있을 시 다시 개수를 세어 수정한 후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AK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 부분 2부로 구성되며, 각 발급장소 또는 발급사무소가 개별적으로 부여한 참조번호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중간 경우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물품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신청에 의거 Back-to-Back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Back-to-Back 원산지 증명서는 최초 수출 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한다.

나. 수입신고 및 세관의 심사 단계

2009년 9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무역 원활화를 촉진하는 단일통관창구를 개발하고 유지 및 운영할 서비스제공자로서 다강네트를 선정하였고 전자신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강네트는 서류없는 전자통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말레이시아 통상·산업회의소(Malaysia's National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의 위임 아래 1989년 설립되었다. 수출입업자, 통관관련 정부 및 민간기관, 은행, 보험사 등 통관 관련 모든 기관을 함께 연결하는 제도이다. 선하증권, 허가서, 선적 적하목록 등을 제출하고 선박의 예상도착시간을 확정하면 선통관이 가능하다. 물품 반입 14일 전에 서류 및 관세를 처리할 수 있다.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포워딩 에이전트는 51% 이상이 부미푸트라 지분의 회사여야 하고, 직원도 51% 이상 말레이시아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통관업이 가능한 자격

을 취득해야만 관세업무할 수 있고,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년에 1번 관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자격증은 2년 단위로 갱신이 필요하다.

선박이 말레이시아 영해에 도착한 후에 세관에 적합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선적화물을 부수거나 화물을 부리기 쉽도록 화물 적재방식을 변경하거나 포장의 개봉을 금지하고 있다.

수출입 관련 통관 양식은 수입물품은 제1세관양식, 말레이시아 내 물품 운송 시 제3세관양식, 제8세관양식은 환적용, 제9세관양식은 보세창고에서 일시반출용으로 각각 상이하다. 수출품은 제1세관양식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물품의 개서, 포장 및 상자 설명, 가치, 무게, 수량, 물품 종류 및 원산지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상업용 수입품의 경우 제1세관양식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수입품의 송장 가치가 적어도 하나의 운송 건에 대해 1만링깃 이상인 경우 수입품이 수입관세의 부분면제를 받는 경우 추가적으로 1A세관양식의 제출이 필요하다. 신고를 할 때는 상자의 개수 및 설명,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무게, 크기, 수량, 가치, 원산지 국가 등에 대해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수출자나 그 대리인은 세관의 요구에 따라 송장, 배송주문서,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또는 분석 확인증, 포장명세서, 수입면허(수입금지물품일 경우), 세관이 수출자 신고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타 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세관은 관련서류를 보관할 수 있다.

수입품 신고 항목의 구체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세관에 10일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하고 물품을 운송할 수 있다. 선박의 도착 후 수입품 적하목록이나 환적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세관이 인정한 경우 세관은 적하목록 제출 전에 화물의 양륙이나 환적을 허가해준다. 그러나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하지 않고 검사 받을 때까지 위의 화물을 수입자나 화물인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세관의 허가 없이 전달할 수 없다.

선박의 선장이나 대리인은 화물을 양륙한 후나 그 후 2개월 이내, 또는 세관의 허가를 받은 그 이상의 기간 이내에 확인서류 2부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과부족 적하 및 양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한 적하목록의 변동사항을 세어 화물의 수량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 후 2개월 내에 또는 세관이 허락한 그 이상의 기간 이내에 선박의 적하목록에 기입한 물품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못할 경우, 선장이나 대리인은 세관의 요구에 따라 5백링깃 이하의 벌금과 부과 관세 또는 관세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는 경우 2만링깃 이하의 금액이 부과된다.

법에 따라 어업용으로 허가받은 어업 종사용 선박이나 고용 인력, 화물을 싣지 않은 개인 소유 위락용 선박은 적하목록이 필요 없다. 그 밖에도 전함, 군 수송선 또는 정부 및 비상업적 서비스 용도로만 사용하는 말레이시아 정부 소유 또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일시적 운용 선박 등은 적하목록이 필요 없다. 또한 항해 가능한 강 상류 및 입구나 그 근처에 위치한 세관으로 항해가 제한된 선박, 재무부장관이 절대적으로 또는 조건적으로 지정한 예외 선박도 적하목록이 필요 없다.

세관은 선박과 항공기의 모든 부분에서 수출입 금지 물품 및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적재된 모든 물품을 비롯하여 적재 중에 있거나, 부리는 과정 중에 있는 물품 및 관련한 모든 서류의 제출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세관은 필요할 시 개봉을 위해 밀봉된 상자를 파손할 수 있다.

물품검사는 물품의 10%에서 100%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실제 말레이시아는 대부분 물품에 대해 까다롭게 검사하지 않고 통관해주지만 수입식품의 경우에 안전검사는 식품의 수입이 허가되기 이전에 문서를 검사하고 샘플링을 하며 수입식품 직접 조사를 수입 통관 단계에서 시행한다. 모든 수입창구에서 수입식품 관련 문서는 100% 검사하며 제품, 미생물, 화학분석 목적의 샘플링은 5% 검사한다. 수입식품은 직접 검사를 실시하기도 하며 육로를 통한 수입식품의 70%를 검사하고 해상을 통한 수입식품의 40%, 항공을 통한 수입식품의 35%를 검사한다. 수입식품의 위험성은 ① 수입식품 자동통관, ② 관련 문서 검사 후 통관, ③ 의무조사를 수행하고 실험실 분석을 위해 샘플링, ④ 조사와 샘플링, 샘플링 완료 후에 통관, ⑤ 조사와 샘플링, 샘플링 완료 후 억류, 그 분석결과가 1983년 식품법과 1985년 식품규제에 위반되지 않을 시 통관, ⑥ 수입식품 자동 거절 등 6개 단계로 나누어진다.

세관직원은 관세법 위반 또는 그에 따른 규칙, 면허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함이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모든 물품과 일체의 관련 물품 및 이동수단을 몰수할 수 있다. 물품 포장 용기, 포장, 운송수단, 등록된 순 톤수가 2백톤을 초과하지 않는 선박 또는 국제 운송에 관련된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 일체의 장부 또는 문서를 육상 또는 영해 내의 어떤 장소에서든 몰수할 수 있다.

몰수를 담당하는 세관직원은 지체 없이 몰수에 대한 내용 및 근거를 물품 소유자에게 인편으로 전달하거나 주소 또는 거처에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통보한다. 이러한 통보는 해당자에 대한 몰수가 이루어질 때 위반자,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앞에서 몰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경우 선주나 조종사 앞에서 몰수가 이루어지면 필요하지 않다.

다. 관세 납부 및 신고수리 단계

말레이시아의 수입신고부터 수리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1-2일이 소요된다. 소비세는 자동차, 담배, 4륜구동 차량, 오토바이, 주류 등에 부과되며 최소 30%에서 최대 150%의 세금이 부과된다. 특허보세창고의 석유를 제외한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경우 세관의 허가를 받아 물품을 보세창고에서 이동시키는 날의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허보세창고에 보관한 석유의 경우 석유를 특허보세창고로부터 이동하는 날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관세가 철폐되었거나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가 관세가 정해진 물품, 수입금지 해제로 관세를 정해야 하는 물품 등은 세관이 물품을 내보내는 날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물품의 경우는 비통관 물품임이 밝혀진 날의 관세율 또는 물품이 압수된 날의 관세율 중 더 높은 것을 적용한다.

세금납부 후 말레이시아 내에서 물품을 운송할 경우 제3세관양식과 물품관련 기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불법수입물품은 국가에 귀속되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창고비, 하적비 등의 기타 비용의 경우 수입자가 납부해야 한다.

관세 비부과 대상물품을 항공 또는 해상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자는 물품을 운반하기 전, 항공기나 선박의 도착 10일 내에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해 수입품의 세부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물품이 양륙한 통관항 및 통관 공항 세관에 규정된 양식으로 신고해야 하고, 해당 물품의 소유주, 선박의 선장이나 대리인, 항공기의 기장이나 대리인은 세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전까지 관세 비부과 대상 수입물품을 운송할 수 없다. 철도나 도로를 통해 수입된 관세 비부과 대상 물품의 경우에도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홍보, 전시회, 박람회 등 재수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 및 판매세가 면제된다. 은행은 세관에 수입관세와 판매세 납부금액에 대한 보증을 서며 관세가 면제된 상품은 1년 이내에 재수출되어야 한다.

라. 환급 단계

물품 검사 및 서류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관세납부 한 후 물품반출이 허가되며 관세에 상응하는 담보 확인 후 반출이 가능하다. 관세 등의 세금은 은행을 통해 송금해야 한다.

제조업체가 보세제조창고(Licensed Manufacturing Warehouses, LMW)로 승인될

경우 최소한의 통관절차만 필요하다. 제조공정에 바로 쓰이는 원자재 및 부품은 관세와 판매세가 면제된다. 수출 지향 산업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세제조창고는 제조공정이 특히 보세창고에서 이루어지도록 1967년 관세법 제65조에 의해 제정되었다.

관세를 지불하고 수입된 물품이 재수출되거나 말레이시아에서 물품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원료, 포장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 수출되는 완제품이 관세청장이 승인한 토지에서 제조되는 경우, 관세청장이 제조나 포장에 사용된 물품의 수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보관한 경우, 수입관세를 지불하고 수입일로부터 12개월 또는 관세청장이 허가한 그 이상의 기간 내에 물품이 재수출된 경우, 수출신고서에 관세 환급 요청을 할 것이라는 서면 공지를 하고, 재수출 후 6개월 또는 관세청장이 허가한 그 이상의 기간 내에 규정된 양식으로 관세 환급을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이 허가한 장소나 경로를 통해 완제품이 수출된 경우 등은 90-100%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

재수출되는 반품 물품의 경우 90%의 관세가 환급된다. 재수출을 위해 물품이 통관항이나 통관공항에 선적되는 것을 세관이 확인했거나 재수출되는 물품 운송 1건에 대한 관세 환급 요청이 최소한 50링깃일 때 및 관세 지불 후 12개월 이내에 재수출될 때 환급이 가능하다. 재수출되는 물품이 관세규정에 의해 환급이 금지되지 않았거나 재수출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세관에 서면으로 관세 환불 요청을 알리고, 재수출 3개월 이내에 규정된 양식으로 관세 환급을 요청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수입된 이후 물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재수출을 통해 환급되는 관세는 수입 당시 부과된 관세율 또는 재수출 시점에 비슷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 중 더 낮은 것에 따라 계산한다.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요청 시 규정된 양식 2부를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해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물품이 실제로 재수출되었음과 말레이시아 내 통관항이나 통관공항, 기타 항구에 재양륙 또는 열차 등에서 물품을 하역하지 않았음에 대한 내용을 신고한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관세 부과 대상 수입품이 말레이시아 도착 후 세관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기 전 손상 및 파괴되거나 사고로 분실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해당 물품에 대해 전체 또는 일부의 관세를 환불해준다.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수량이 부족할 경우 세관은 관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부족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환불해준다.

홍보, 조사 또는 재수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시점에서 관세 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품은 판매되거나 처분될 수 없고 1년 이내에 재수출되어야 한다. 수입 품목에 대한 품목 분류가 끝나고 관련 서류가 제출되어 수입관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통관절차가 마무리된다.

수입자가 모든 신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와 해당 물품이 국내 소비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물품인 경우 추정되는 관세 및 그 이하의 보증금이 지불되면 물품을 반출해준다. 이 외에도 2개월 또는 세관이 허가하는 그 이상의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지만 만약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압수하여 국고금에 추가하여 초과한 보증금은 환불된다.

수입품의 가치 평가에 관한 문서 및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물품 수입 후 6년 동안 물품의 구매, 가격, 가치, 결제 등 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관련 문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을 경우 물품 가치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1만링깃 이상 50만링깃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

AEO 제도

(1)

AEO 제도의 도입

가. 도입 경과

말레이시아는 농업, 제조업, 전자 및 IT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기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의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국가 중 하나이다.

제품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동, 문서 최소화, 인적 개입 최소화, 세관의 예측가능성 등은 JIT 재고 시스템의 제조 및 무역 영역에 기반한 글로벌 조달, 공급, 유통과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다. 세계 무역시스템은 공급망의 흐름을 중단시키고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테러 공격에 취약하고, 간접적으로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AEO는 WCO의 SAFE Framework of Standard(FoS)에 의해 도입된 개념으로 제품의 흐름에 따른 국제무역 공급망에 필요한 보안의 표준을 충족한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운영자를 말한다. RMCD(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가 개발한 AEO 제도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AEO는 더 나은 공급망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자거래를 장려한다. 매끄럽고 원활한 무역의 흐름을 위해서 AEO 업체는 제조 활동, 원재료 및 완제품의 이동, 보관 및 창고, 물품의 안전한 운송 및 취급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의 모든 관점에서 기업의 일상적인 관리에 국제적인 표준을 기반으로 높은 보안 기능 시행을 장려하고 있다.

나. 운영 현황

WCO SAFE FoS에 정의된 바와 같이 AEO는 수입업자(importers), 수출업자(exporters), 중개인(brokers), 운송업자(carriers), 혼재업자(consolidators), 중개자(intermediaries), 항만(ports), 공항(airports), 터미널 운영자(terminal operators), 통합 운영자(integrated operators), 창고업자(warehouses), 유통업자(distributors) 등을

포함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AEO 자격은 AEO 패널의 승인을 받은 무역업자 / 운영자에게만 주어진다.

말레이시아의 AEO 프로그램은 ①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국제 무역 보안 표준 구현, ② 말레이시아의 무역업자 / 운영자들 사이의 준수 수준과 인지도를 개선하여 각 공급망의 보안을 모니터링, ③ 무역업자 / 운영자가 확립된 기준에 따라 각자의 공급망 보안을 관리하도록 권장, ④ 말레이시아의 세관 관행을 WCO SAFE FoS를 기반으로 한 국제 모범 사례에 맞춤, ⑤ 세계무대에서 안전한 무역 국가로서의 말레이시아 입지, ⑥ 국제적으로 말레이시아 무역업자 / 운영자의 경쟁력을 강화 등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

AEO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 기준은 상품의 수출입 및 이동에 관여하는 기업, 말레이시아에서 최소 3년 동안 운영된 기업, WCO SAFE FoS를 기반으로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 물품 신고서와 관세 및 세금 지급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업이다.

기업은 적절한 재고관리 및 제품관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운송수단(운송 및 컨테이너)의 잠재적으로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보안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이 보안 기능에는 다음과 같은 보안관련 위반 사항을 보고하는 프레임워크가 포함된다.

1. 공급망 보안(supply chain security)
2. 비즈니스 보안(business security)
3. 물리적 접근성 보안(physical accessibility security)
4. 인사 보안(personnel security)
5. 세관 통관 보안(customs agents security)
6. 거래업체 보안(business partner security)
7. 화물 보안(cargo security)
8. 운송 보안(conveyance security)
9. ICT 및 정보 보안(ICT and information security)
10. 창고 / 저장 보안(warehouse / storage security)
11. 사고, 재해 및 조사 관리(management of accidents, disasters and investigation)
12. 위기 및 복구 관리(crisis and recovery management)

기업은 AEO 부서를 구성하여 공급망 보안을 관리해야 한다. 기업은 AEO 프로그램의 실행 및 감독을 담당할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관리자 규정은 기업의 정책, 조직구조 또는 기업의 규칙 및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지정된 관리자는 필요한 보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 운영의 일부를 외주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외주업체가 AEO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반드시 충족하게 해야 한다.

기업은 반드시 기업 운영성과를 최적화하기 위한 유능한 직원을 임명하고 기업 내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의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1. 적절하고 만족할 만한 각 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직원
2. 운영 절차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마련
3. 운영 프로세스 구조 마련
4. 문서화된 운영절차
5. 보고 목적을 위한 의사소통 채널 구축
6. 관세 문제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을 지정하여 RMCD와 컨택 포인트 구축
7. 상품과 운영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매카니즘
8. 전 직원이 AEO 법규준수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마련
9. RMCD의 법규준수, 기타 무역 통제 절차, 법률 및 규정 등을 체크하기 위한 종합적인 운영 절차를 포함한 AEO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통제 메커니즘 구조 수립

주요 제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을 다루거나 취급하는 기업은 AEO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의약품 또는 대량 살상 무기(WMD)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무기원료물질이나 금지 품목, AEO 패널¹⁵⁾이 결정한 기타 모든 상품의 범주는 제외된다.

기업, 이사회, 지정된 자는 말레이시아 경찰, 이민부, 기업위원회 등 관련 단체의 지배를 받는 관세법 1967 또는 관련 기관이 관할하는 기타 국내법에 대한 법규준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15) AEO 프로그램을 위한 심의 및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패널

기업은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1. AEO사무국¹⁶⁾ 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세관 공무원에게 업데이트된 물품목록 제공
2. 수입 / 수출과 관련된 상품 목록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업데이트를 점검하고, 개정된 세관 및 기타 무역 통제 절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운영절차를 통합한 AEO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관리를 구현
3. 상기의 AEO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관리에 기초한 AEO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내부감사와 같은 보안 위험 및 보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수행(최소 1년에 1회)
4. 내부감사 팀이 제안한 권장사항을 적시에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감사 팀과 경영진 간의 보고 및 의사소통 활성화
5. 공급망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업체가 예상하지 못한 화물운송 사고의 보고
6. 긴급 보안 상황 및 재난 발생시 복구를 위해 문서화된 비상계획 및 절차 실행
7. 수입 / 수출 / 이동, 재고, 조달 등과 관련된 정확하고, 완전하며,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하고, RMCD에 접근 가능한 기록 시스템(Companies Act 1965에서 요구하는 7년)에 파일을 보관

기업은 회계 장부 및 기록을 만족스럽게 유지하기 위해 회계 및 재무 기록 담당 부서를 구성할 수 있다. 기업은 직원의 합리적인 교육 및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의심스러운 사건을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 사내 안전 및 보안 인식을 포함한 세관 절차 및 물품 이동과 관련된 위험문제를 필요에 따라 식별한다. 또한 기업은 교육 방법 및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기업은 위법 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징계 규정 및 조치를 시행한다.

(2) 공인 절차

가. 공인 신청

AEO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기업은 아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6) AEO 프로그램 및 MRA 추진을 관리하는 담당자로 RMCD 본부 세관 부서의 세관원 팀

1. 신청서(Letter of application)
2. 기업의 이사가 서명한 AEO 신청서
3. 기업 프로필
4. CCM에서 발행한 기업 등록 인증서 사본
5. CCM에서 발급한 양식 24 및 49 사본
6. 완료된 법규준수 체크리스트 및 관련 증빙 서류
7. AEO 사안에 대해 RMCD와 연락을 취하도록 지정된 자의 이름 및 기업을 대표하도록 임명되고 권한을 위임받은 에이전트 목록
8. ISO 인증서, C-TPAT(있을 경우) 등의 승인 및 인증서 사본
9. RMCD에서 발행된 면허 및 기타 시설의 사본(있는 경우)
10.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최신 재무제표 사본
11. 상품 설명, HS 코드 및 법규 규정(승인, 허가 또는 면허증)에 관한 정보가 있는 AEO 제품 목록

기업은 AEO 사무국에 신청서를 한 부 제출해야 한다. 지사 및 지점이 하나 이상인 기업은 본사만 AEO 지위 신청서를 제출한다. AEO 업체는 제출서류에 명시된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RMCD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AEO 사무국은 추가 조치를 위해 AEO 패널에 회부한다.

나. 서류심사

AEO 사무국은 이사회, AEO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정된 자의 세부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배경 및 과거 기록에 대한 확인을 위해 RMCD와 연락을 취하여 RMCD, 왕립 말레이시아 경찰, 이민부, CCM 및 기타 관련 정부 기관의 집행 담당 부서 및 에이전트 규제 부서에 정보를 제공한다. AEO 사무국은 AEO 신청자와 합의를 하고, 신청서, 법규준수 체크리스트 및 제출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 현장 유효성 확인 감사를 위해 CA¹⁷⁾에 약속 서한을 제공해야 한다.

17) AEO 지원자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지명된 세관 선임자

다. AEO 패널 미팅

AEO 패널은 신청자가 주어진 기간 내에 법규준수 요구사항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업체보완과 현장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AEO 패널 미팅의 결과에 따라 AEO 사무국은 AEO 신청자에게 신청 실패 이유를 포함하는 결정을 통보한다.

라. AEO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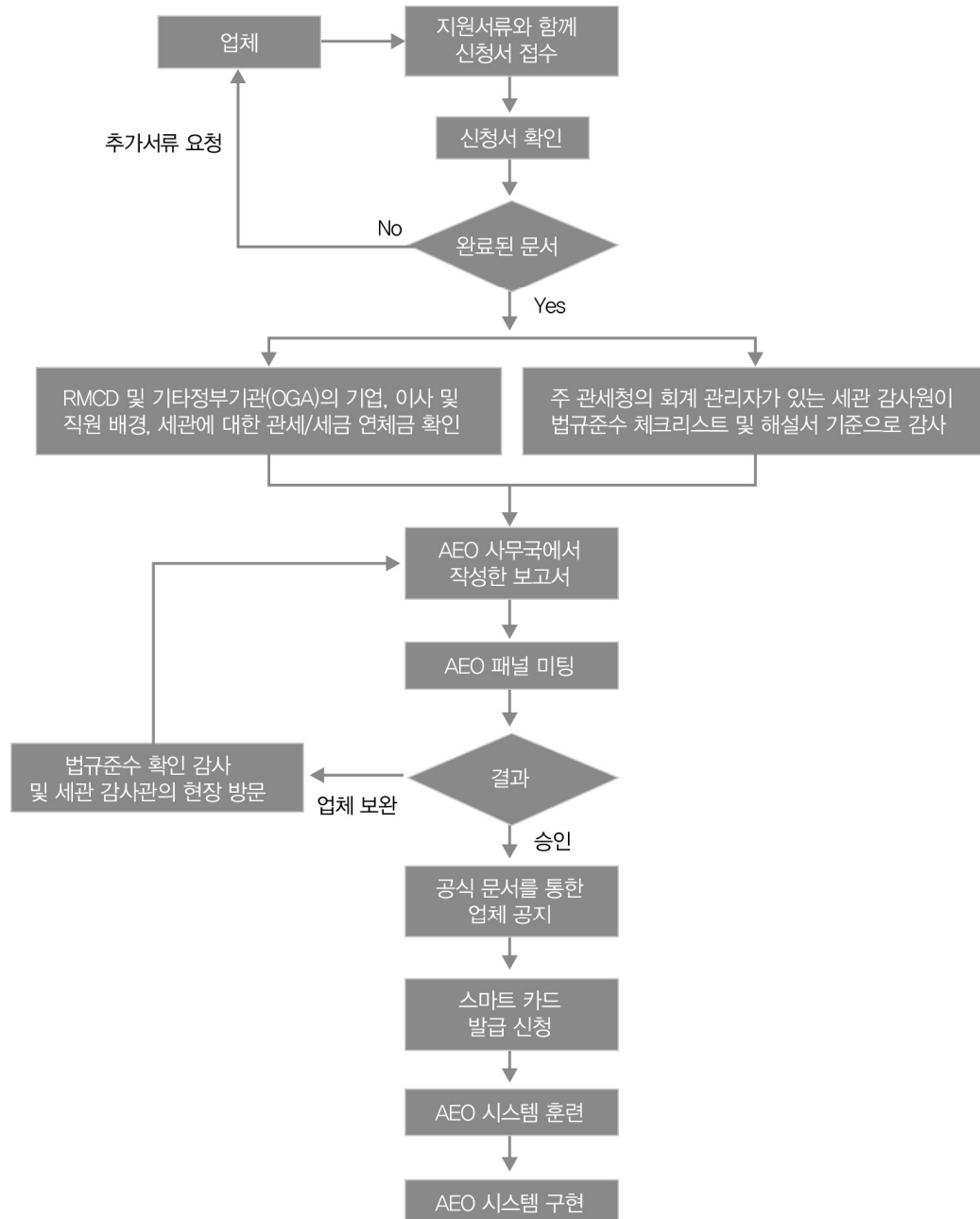
AEO 사무국은 AEO 프로그램의 시설과 혜택, 기업이 준수해야 되는 규칙 및 AEO 업체로서의 책임을 명시한 승인서를 AEO 업체에 송부한다.

AEO 승인을 통보받은 업체는 총괄신청서(General Bond) 양식의 보안을 제출한다. 업체는 2명 이상의 직원을 지정하여 세관 기본 과정에 참여하고 코스 인증서를 수령하고, 지정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정보를 AEO 사무국에 제출한다.

스마트카드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및 배포에 대한 내부통제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AEO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품의 수입, 수출, 이동, 현지판매에 대한 전자통관서류를 제출한다. 또한 전자송금을 통해 관세 및 세금 지불을 목적으로 지정 은행과 계약을 체결한다.

AEO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설 사용을 시작해야 하고, 업체가 해당 기간 내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AEO 사무국에 지연 사유와 시스템을 사용할 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그림 45〉 말레이시아 AEO 승인 절차



(3) 주요 혜택

AEO의 혜택은 크게 8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물품의 수입, 수출 및 이동을 위해 세관통제에서 직접 방출된다.

둘째, PRS(Permission Request Slip)를 사용하여 최소한의 신고만으로 세관통제를 벗어난다.

셋째, 지정된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CS를 사용하여 물품의 수입, 수출 및 이동에 대한 자체평가된 통관을 한다.

넷째, EFT를 통한 관세 및 세금을 지연할 수 있다.

다섯째, AEO 시스템을 활용하는 LMW는 원자재 이동에 관한 월별 명세서(M1), 완제품 명세서(M2)를 요구되고, RMCD에 제공할 것이다.

여섯째, AEO는 자유무역협정, 경제적파트너 협약(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조항에 따라 CS를 사용하여 원산지증명서로 우대 관세율을 청구할 수 있다.

일곱째, AEO는 RMCD와 함께 각각의 MRA에 따른 상대국의 세관당국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덟째, AEO 패널에 의해 승인된 기타 이익을 받을 수 있다.

4

MRA활용 방법

- ① <한국 관세청>은 한국 AEO 수출기업 공인정보 송부 (한국 관세청 → 말레이시아 관세청)
- ② <한국 AEO 수출기업>은 수출 시 AEO 공인번호를 말레이시아 수입자에게 통보
- ③ <말레이시아 수입자>는 14자리 'MRA ID'(국가코드 2자리 + AEO 공인번호 12자리)를 수입신고시 기재
- ④ <말레이시아 관세청>은 한국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한국 AEO 수출기업 공인정보와 일치하는 경우 MRA 혜택 부여

<한-말레이시아 AEO MRA 혜택>

수입검사율 축소	• AEO 화물이 수입되는 경우 검사율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 AEO 화물에 대한 수입신고시 서류심사 비율 축소
우선 통관 조치	• AEO기업 화물의 경우 우선 검사 및 서류심사 실시
세관연락관 지정	• AEO 화물 애로발생 시 소통창구 지정

〈말레이시아 수입신고화면〉

K1 REGISTRATION

IBU PEJABAT - H10

Form Reg. No: 1- - / H10 Transaction Type: Duty Status:

Form Header	Participant	Item	Cargo	QGA / Remark	Vehicle	K1A	PE
Importer Code: GST No: Name: Reg.Name: Address: Agent Code: GST No: Name: Address: EDI Ref.: Exporter Name: Address: MRA ID: Declarant Name: IC: Status:							

↑

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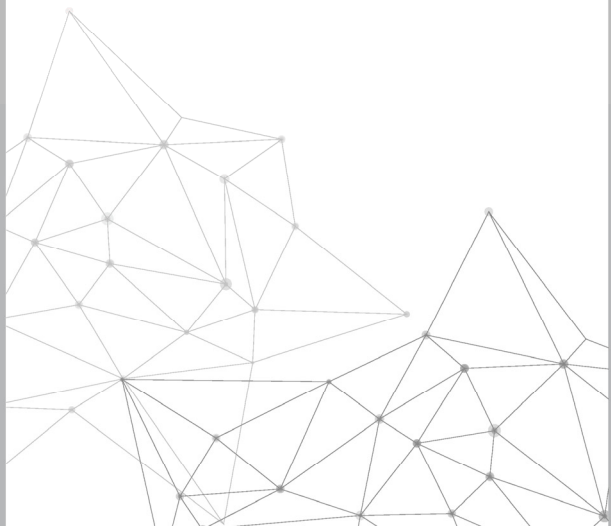
↑

KRAEO0111203

아시아(ASIA)

카자흐스탄

(Kazakhstan)



1

국가 개요

일반 사항	국 명	카자흐스탄 공화국(Republic of Kazakhstan)
	면 적	272만 km ² (한국의 27배)
	수 도	아스타나 : 102만 명
	인 구	1,825만 명(2018년)
	주 요 도 시	알마티(Almaty), 카라간다(Karaganda), 침켄트(Chimkent) 등
	민 족	카자흐인(65.5%), 러시아인(21.5%), 우즈베크인(3.0%), 고려인(0.6%) 등
	언 어	카자흐어(러시아어는 공용어)
정치	건 국 일	1991년 12월 16일
	정 치 체 계	대통령 중심제(임기 5 년)
	국 가 원 수	대통령: Nursultan Nazarbayev Abishevich 총리: Bakytzhan Sagintayev(2016년 9월 부임)
경제	화 폐 단 위	KZT – Tenge(텡게)
	1인당 GDP	8,484달러(2017년)
	교 역 량 (2018년 기준)	수출: 61,109 US\$ Mil 수입: 33,658 US\$ Mil
	주요 교역품	석유 및 광물 자원, 비금속, 철강 등

자료원: 카자흐스탄 통계청,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WTA, WORLD BANK, EIU, KITA, WITS(wits.worldbank.org)

한 / 카자흐스탄 관계	
교역 규모	대 카자흐스탄 수출(2019년) : 2,657,131 US\$ Thousands 대 카자흐스탄 수입(2019년) : 1,561,644 US\$ Thousands 무역수지(2019년): 1,095,487 US\$ Thousands
교역 품	우리 수출: 승용차, 석유화학제품, 가전, 휴대폰, 산업기계, 플라스틱, 철강 우리 수입: 합금철, 금, 열연강판, 은, 아연괴 및 스크랩, 냉연강판, 귀금속 장식품, 기타 정밀화학원료, 면사, 백금
투자 규모	한국의 對카자흐스탄 투자 규모 : 902건, 25억 9,961만 7,000달러 (2017년)
교민	약 1,200명(2017년)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한국관세청, 카자흐스탄 통계청,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2

통관제도

(1) 통관절차

카자흐스탄의 관세규정에는 카자흐스탄법 또는 국제법상의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 누구나 상품을 수출입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혹은 정부는 상품의 수출입 쿼터에 대한 허가, 금지권이 있으며, 대통령령이나 법령으로 관세의 적용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제품 또는 차량은 검사가 필수적이다. 특히, 카자흐스탄 세관은 2007년 8월 21일자로 세관 통관절차를 특별히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존에는 제출의무가 없었던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면장 원본을 제시하도록 함에 따라 통관절차가 크게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통관절차 강화조치는 불법적인 통관을 제재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카자흐스탄과의 무역거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자흐스탄에 등록돼 있고,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통관 중개사 또는 중개인은 수입 제품 또는 차량의 통관을 대리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수입통관에 적용되는 세금은 관세, 통관비용,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이 있다. 이 중 관세는 HS 품목별로 0%, 5%, 10%, 15% 등으로 일반화되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평균 수입관세는 약 9%이며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지 않는 장치 및 설비에 대해서는 대부분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러시아 및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는 관세동맹이 체결돼 무관세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법적인 제약이 없는 경우에 통관을 하는 개인(혹은 회사)은 수입 상품 및 차량 특성, 수량, 원산지, 도착지 등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통관 종류를 선택 변경 가능하다. 카자흐스탄 관세법의 통관 종류는 유통, 역수입, 세관창고, 면세점, 관세 부가 영역 내에서의 가공, 유통을 위한 가공, 관세 부가 영역 외에서의 가공, 임시 수입, 임시 수출, 수출, 역수출, 경유 화물, 상품 폐기, 반입 금지, 면세지역, 보세 창고, 특별 관세 대상 등 총 17가지로 구분된다.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패키징리스트(Packing List),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등이

요구된다.

세관에 상품 혹은 차량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관 신고를 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지방 관세청은 상품 혹은 차량의 수취인·운송업자의 서면 신청서 상에 기록된 신청자의 등록 장소와는 별도로 상품, 차량의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세관 신고자가 신고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 허가는 1년간 유효하게 지속된다. 세관 신고자는 세관신고를 종료하는데 필수적인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표 39〉 세관 신고자 제출 서류

- 세관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위임장
- 통관에 따라 상품을 사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는 무역계약서
- 매매계약서, 바터(Barter) 계약서, 기타 서류 등
- 운송 서류
- 송장, 견적서, 상품 사양 등 필요한 서류 및 수입금액
- 원산지 증명서
- 통관과 관련된 각종 세금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들
- 카자흐스탄이 동의·서명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선적서류 등 기타 필요한 서류들
- 화폐 관리규정의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들
- 동식물 관련 검역 증명서 (카자흐스탄 법으로 요구가 있을 때만 제출)
- 해외 무역에 종사하는 법인의 등록 서류

세관 신고서, 관련 서류들, 상품 및 차량 등(간접 견적 포함)에 대한 확인, 사전신고 (prior declaration)시 세관 신고서류 및 관련 서류들에 대한 확인 등은 세관 신고서와 통관 관련 각종 서류가 접수된 후 3일 이내에 카자흐스탄 관세청이 실행해야 한다. 상기 기간은 카자흐스탄 관세청장의 서면인가로 “접수 후 10일내 확인”으로 연장 가능하다.

통관 경비는 Customs Appliance Fee, Import Customs Duty, Import Customs VAT 등이 요구된다. Customs Appliance Fee는 첫 장은 50유로, 두 번째 장부터 매 장마다 20유로이다. 첫 장에 품목 1개 기재하고, 두 번째 장부터 3개씩 기재가 가능하다. Import Customs Duty는 CIF 송장 가치의 5~35%의 경비가 요구된다. Import Customs VAT는 송장 가치의 12%의 경비와 Import Customs duty, Customs Fee를 합한 경비가 요구된다.

3

AEO 제도

(1) AEO 제도의 도입

가. 도입 경과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 경제 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¹⁸⁾으로 EAEU Code를 개발할 때 채택된 EO 유형을 분류하는 접근방식은 인증서 유형을 기반으로 한다. 1 type은 원활화가(facilitation) EAEU 지역 전체에 적용되는 상품 선적과 관련된다. 2 type은 원활화가 세관 신고 및 보관과 관련이 있으며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 EAEU 회원국 영역에서만 적용된다. 3 type은 1 type과 2 type에 대한 원활화 조치 모두 구성한다.

나. 운영 현황

AEO 등록에 요구되는 사항은 업무 경험, 재정건전성(financial solvency), 청렴성(integrity)이 요구된다. 2017년 10월 3일자로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AEO의 시설, 조직, 운송수단의 요구사항이 수립되었다. 또한 AEO 등록을 신청하는 업체의 재정건전성은 2017년 9월 15일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의 승인된 절차에 의해 결정되었다.

(2) 공인 절차¹⁹⁾

AEO의 Type 1 인증서 발급과 등록 조건은 외국 경제 활동, 세관 대표로서 관세 활동, 임시 보관 창고의 소유자, 최소 3년 동안 세관 창고 또는 적어도 2년 전에 세관 운송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AEO 신청은 다음 기간 동안 물품 운송 서비스를 제외한 대외 무역 활

18) 중앙 및 북아시아, 동유럽에 위치한 국가의 경제 연합으로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등이 회원국임

19) <http://kaz-sw.com/aeo.xhtml>

동이 매년 유라시아 경제 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의 세관 국경을 통해 운송되는 상품에 대한 총 가치가 5억 유로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외국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매년 물품 운송 및 세관 신고 금액이 최소 200건 또는 매년 세관 신고서에 신고된 물품의 총 가치가 5억 유로 이상이어야 한다. 임시 저장 창고, 세관 창고, 저장 물품의 소유자로서 세관 분야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매년 총 비용이 5천만 유로 이상이어야 한다.

행동 강령 제535조에 따라 제공되는 AEO 공인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신청서 등록일에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에 반덤핑, 상계관세, 이자 등이 없어야 한다. 또한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의 세법에 따라 등록 법인의 부채가 없어야 한다.

AEO 등록 기관에 신청서를 등록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AEO 등록기관은 신청서를 승인 및 기각을 결정한다. AEO 신청을 기각할 근거가 있는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린 날 다음날에 서면 또는 전자적 형식으로 AEO 신청자에게 알린다. 신청서 심사 및 첨부서류, 세관 검사 실시 결과에 따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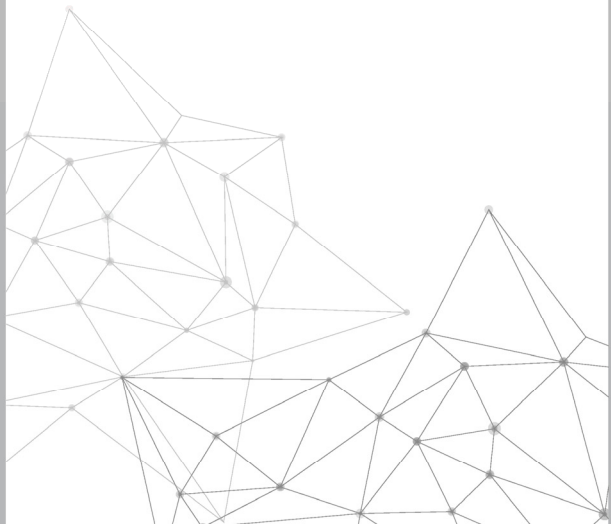
신청서에 표시된 정보를 신청자가 문서화하지 않은 경우 AEO 인증기관은 등록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승인 기관의 신청서는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의 제출 필요성을 신청자에게 알린다. 이때 신청서의 심사 기간은 요청된 서류를 제출한 날 또는 제출 마감일이 만료될 때까지 중단된다. AEO 승인 기관에 신청자가 기한 내에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된다.

※ 카자흐스탄은 MRA 활용 방법 협상 논의 중

아시아(ASIA)

몽골

(Mongolia)



1

국가 개요

일반 사항	국 명	몽골(Mongolia) *원래 “용감한”이란 뜻의 부족명칭
	면 적	1,564,116 km ² (자료원 : 몽골 통계청, 2019년 6월 기준)
	수 도	울란바토르(Ulaanbaatar)
	인 구	3,268,317 명 (자료원 : 몽골 통계청, 2019년 6월 기준)
	주 요 도 시	다르항(10만4천명), 에르데넛(10만3천명), 달랑자드가드(6만5천명) 등
	민 족	할흐몽골족(90%), 카자흐족(5.9%), 브리아드계(2.7%) 등 17개 부족
	언 어	몽골어
정치	건 국 일	1924년 12월 29일 (국가 독립일)
	정 치 체 계	국회중심의 의원집정부제 (대통령 직선, 내각책임제)
	국 가 원 수	대통령: 할트마 바툴가(Khaltmaa Battulga) 국무총리: 오희나 후렐수흐(Ukhnaa Khurelsukh)
경제	화 폐 단 위	투그릭(Tugrik, MNT로 표기), 변동환율제 채택
	1인당 GDP	3,489 달러(2017년)
	교 역 량 (2018년 기준)	수출: 7,012 US\$ Mil 수입: 5,875 US\$ Mil
	주요 교역품	수출품 : 구리, 금, 석탄, 아연, 석유, 철광석, 캐시미어 등 수입품 : 석유, 기계전자, 차량·수송기계, (가공)식품, 화학제품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KOTRA, 몽골 통계청, 몽골 한인회, WITS(wits.worldbank.org)

한 / 몽골 관계	
교역 규모	대 몽골 수출(2019년) : 291,073 US\$ Thousands 대 몽골 수입(2019년) : 32,596 US\$ Thousands 무역수지(2019년): 258,478 US\$ Thousands
교역 품	우리 수출: 석유제품, 기계류, 전기기기, 화물차, 버스, 조제식료품, 의료용품 등 우리 수입: 광물, 의류, 양모, 기계류 등
투자 규모	한국의 對몽골 투자 규모 : 79건 1356만 9천 달러 (2017년)
교민	약 3,000명 (2018년)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KOTRA, 몽골 통계청, 몽골 한인회, 관세청

2

통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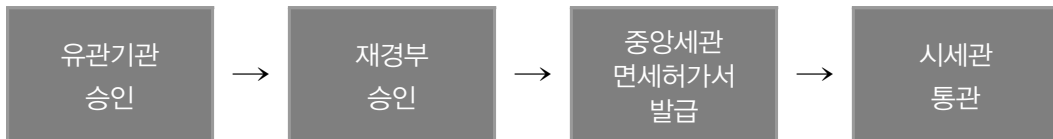
(1)

통관절차

몽골은 생필품의 80% 이상을 수입한다. 특히,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생활 소비제품을 하루에도 여러 컨테이너씩 통관하고 있다. 몽골에서 페인트 등 화학물질이 함유되는 물품은 샘플 검사를 필요로 하는데 일정 품목은 검사기간이 근무일 기준 5일이 소요되고, 도착 물품은 세관창고에 보관함으로써 비용이 발생한다.

몽골의 통관절차는 유관기관 승인, 재정부 승인, 중앙세관 면세허가서 발급, 시세관 통관 등 아래의 순서로 진행된다. 수입신고하면 세관 감사가 통관서류를 검토한 후 수입품과 운송수단을 직접 확인한다. 세관 감사가 부가세 및 관세를 책정한 이후 수입자가 납부하고 그 확인서를 감사에게 제출하면 신고자에게 수입품을 통관할 수 있는 허가를 발급한다. 이는 수입자가 통관신고를 하면, 세관이 통관서류 검토, 물품 및 운송 수단 확인, 부가세 및 관세를 책정한 후 납부확인을 완료했을 경우에 수입자에게 허가 발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림 46〉 몽골의 통관절차



의약품, 의료기기, 주류, 담배류, 화학물질 함유 제품 등은 1회용 수입허가(소요기간 근무일 5일)를 수입자가 받아야 하고, 의약품을 첫 수입할 경우 몽골 보건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샘플 검사가 필요한 품목은 식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화학물질이 함유된 모든 제품을 샘플 검사하고, 이 제품 이외의 기계, 장비, 생활용품 등은 국제품질인증서(ISO, HACCP 등)와 제조국의 인증서 혹은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다. 타 품목에 비해 의약품의 수입절차는 복잡하고, 나머지 품목은 몽골에 도착하자마자 샘플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검사결과를 세관에 기타 서류와 함께 제출 가능하고, 품목별 샘플검사 용량은 다르다.

몽골의 통관은 일반통관, 임시통관, 면세통관 등 3가지로 분류된다.

가. 일반통관

일반통관은 서류검토, 세금납부, 실물확인 검사 등 3가지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서류검토는 제출한 서류의 이상 유무, 세관 과표와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한다. 만약 여기서 문제가 되면, 제출한 금액과 상관없이 인정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인정과세를 피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수입자 수출자 간의 계약서와 은행송금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인보이스·패킹리스트 작성 시 화물에 대한 내역, 용도, 용량 등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설명 없이 제품의 코드 번호, 모델명 등만 기재할 경우, 세관에서 검토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인정과세가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수입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및 신고서 / 수출국과 본 제품 제조사 또는 정식 판매업체 간의 계약서 / 운송비 및 운송 수단 확인서 / 수입 물품 청구서 / 결제 관련 영수증 / 포장 내역서 / 수입물품 보험관련 서류 / 수입업체 사업자등록증(개인일 경우 신분증) / 위생 및 원산지증명서 / 해당 물품의 수입, 판매 등에 특별면허가 있을 경우 면허증 사본(의약품, 화학물질 함유 물품, 담배류, 주류 등) / 국경 전문감사 및 세관 감사를 통관한 통보서 등이 있다.

다음으로 세금납부는 세관에서 출력한 세금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혹은 시세관에서 세금을 납부한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인정과세가 이뤄질 경우, 세금납부 고지서가 나온 이후라면 번복이 어려우므로 그 이전에 통관브로커를 통해 어필이 되도록 한다. 만약 고지서가 이미 발급됐다면 정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심사를 다시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몽골의 세율은 특별세 적용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게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세율의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다.

- 관 세: (인보이스밸류 + 몽골국경까지의 운송료) x 5%
- 부가세: (인보이스밸류 + 몽골국경까지의 운송료 + 관세) x 10%

마지막으로 검사는 도착 컨테이너 야드 보세구역에서 시세관에서 받은 서류와 실물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최종 확인 도장을 찍은 후 화물을 반출한다. 만약 이때, 실물과 서류가 상이하다면 시세관에서 재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나. 임시통관

도로공사, 건축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기간만 몽골에 화물을 반입했다가 다시 화물을 반출할 경우에 적용하는 통관방식이다. 통관 준비 시 목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을 포함한 신청서와 수출자, 수입자 간 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 화물이 몽골에서 반출되면 세금을 환급받는다. 1년 단위로 허가를 받으며 이후에 연장이 가능하다.

다. 면세통관

ODA, EDCF, 정부지원사업 등 특별한 목적이 있어 공익에 도움이 될 경우 적용하는 통관방식으로서 몽골정부 유관기관의 신청서,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신청서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면세통관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첫째, 유관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승인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공항과 관련된 공사의 경우 항공청-관할시청-건설부 등 여러 기관이 있다면 가장 상위기관인 건설부로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승인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된다. 면세허가증 발급이 늦을 경우 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화물이 도착한 후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지체료(컨테이너 사용료, 화물보관료, 트럭대기료 등)가 발생하거나, 혹은 현장에서 연쇄적인 공기의 지연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심지어는 면세통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고 통관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둘째, 정부에서는 사전에 마스터목록을 제출해서 공사에 필요한 모든 품목을 사전에 등록해서 이후에 들어오는 화물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방식을 선호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일하다 보면 특히, 공사의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자재를 추가, 감소 혹은 교체해야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가급적 공기 순으로 분류해 순차적으로 화물 목록을 제출하는 식으로 위험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

3

AEO 제도

(1)

제도의 도입

가. 도입 경과

몽골세관(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of Mongolian, CGAM)은 매년 상품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세관 절차를 단순화하고, 세관관리에서 위험관리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세관관리정보시스템(Customs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CAIS)을 시행하여 상품에 대한 세관통제 개혁과 현대화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몽골세관은 글로벌 세관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국경 간 통관 절차를 현대화하고 통관시스템을 다른 국가와 맞추기 위해서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몽골은 2006년 6월 30일 세관절차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개정교토협약에 가입하고, 2006년 10월 1일에 발효함으로써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를 위한 HS 코드 표기를 도입하였다. 2005년 WCO가 SAFE Framework를 채택한 이후 몽골은 AEO 개념을 포함하여 이를 도입하기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다.

국제표준 및 문서를 기반으로 몽골 정부는 2008년 무역원활화 조치의 주요 측면을 명시하기 위해 몽골 관세법을 개정하였고, 몽골세관은 2016-2020 전략 계획을 채택하여 무역원활화를 추진하고 있다.

- 입법 업데이트
- 통합 위험 관리 구현
- 정보 기술 개발
- 만관 파트너십 형성
- 중국, 러시아 등 국경 및 세관 당국과 국경 관리와 통제 능력 강화
- 제품의 통관 시간 단축
- 법규준수 개선
- 싱글윈도우 시스템 소개
- 세관 청렴
- 역량 구축

나. 운영 현황

몽골세관은 2010년 7월 21일에 AEO 선정기준을 포함하는 규정(CGAM No.383)을 개발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설립하였다. 실무 그룹은 중국, 유럽연합, 일본 및 한국 관세청을 포함하여 WCO SAFE Frameworks에 부합하는 AEO 규정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2010년 12월 8일 몽골세관의 전문 협의회는 AEO 규정 초안을 기반으로 토론을 진행하였고, AEO 분야의 전문가 식별,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AEO 교육 확대, 법률지원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내외부 환경평가 등의 AEO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 그룹의 역량강화에 노력하였다.

몽골은 공급망 보안, 신속하고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통한 무역원활화, 기업통제에서 파트너십 네트워크로의 전환 등 AEO 시스템의 목적을 두고 국제무역 공급망 활동에 필요한 표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수출업체, 제조업체, 세관중개인, 화물운송업자, 운송업체 및 세관창고 등을 포함하여 모든 공급망 당사자가 AEO 시스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EO 인증 요구사항은 최소 3년의 대외무역활동, 세관의 법규준수 이력, 검증가능한 사업기록의 적절한 유지관리, 재무건전성 등이 있다. AEO 인증을 받기 위해서 크게 세관이 요구하는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4가지 주요기준 하에 28가지 하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몽골의 AEO 인증 절차는 기업이 AEO의 자체평가(Self-assessment)를 실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다음으로 내외부적으로 정보를 검증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유효성 검사를 실시한다. 중앙 세관의 승인 후 인증서가 발급되고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문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후검증을 수행한다.

다. AEO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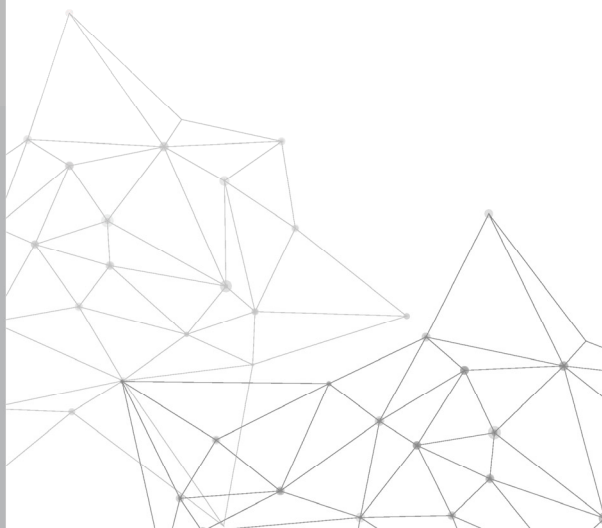
몽골 AEO의 혜택은 위험평가에 따라 문서감사를 없애거나 물적 검사가 감소된다. 또한 최소한의 데이터와 간소화된 절차로 통관하고, 수입통관을 위한 담보를 기탁해야 할 의무를 면제해준다. 관세 및 세금의 월별 할부 지급이 가능하고, 기업이 세관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특별 담당 공무원을 배정한다. 마지막으로 수입업체가 원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 몽골은 MRA 활용 방법 협상 논의 중

아시아(ASIA)

인도네시아

(Indonesia)



1

국가 개요

일반 사항	국 명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
	면 적	190만 km ² (세계 15위, 한반도의 9배), 약 18,000개 섬으로 구성 - 주요 5개 섬 : 자바, 수마트라, 칼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
	수 도	자카르타
	인 구	264,160,000 명 (자료원 : IMF WEO, 2019년 4월 기준)
	주 요 도 시	자카르타 (수도, 968만), 반둥 (318만), 수라바야 (276만)
	민 족	자바족 (40.1%), 순다족 (15.5%), 말라유족(3.7%), 바타크족 (3.6%), 마두라족(3%), 베타위족(2.9%), 반띠족(2.9%), 미낭까바우족(2.7%), 부기스족(2.7%), 발리족(1.7%), 중국족(1.2%), 기타 1300 여 부족
	언 어	인도네시아 어(Bahasa Indonesia)
정치	건 국 일	1945년 8월 17일
	정 치 체 계	대통령중심제
	국 가 원 수	대통령 : 조코 위도도 (Joko Widodo) 2019. 10.~2024. 10. 임기
경제	화 폐 단 위	루피아(Rupiah)
	1인당 GDP	13,998.18 달러
	교 역 량 (2018년 기준)	수출: 180,215 US\$ Mil 수입: 188,711 US\$ Mil
	주요 교역품	수출품 : 석탄 · 석유 · 가스 제품, 동식물성 유지, 귀석 · 귀금속류, 광 · 슬랙 · 회, 고무 등 수입품 : 석유 · 가스 제품, 철강제품, 보일러 기계류, 곡물 종자,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등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KOTRA, IMF, WITS,

한 / 인도네시아 관계	
교역 규모	우리 수출(2019년): 7,650,051 US\$ Thousands 우리 수입(2019년): 8,819,773 US\$ Thousands
교역 품	우리 수출: 휘발유, 선박, 합성수지, 경유, 편직물 등 우리 수입: 유연탄, 천연가스, 동광, 원유, 기타석탄 등
투자 교류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투자 규모 : 누적 150억 달러 (2017년 20억불)
교민	약 22,774명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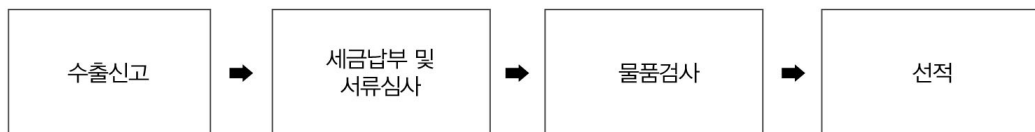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KOTRA, 관세청,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외교부

2

통관제도

(1) 수출 통관절차

인도네시아 수출통관은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Finance No. 148/PMK. 04/2011에 규정되어 있다. 수출통관절차는 수출신고, 세금납부 및 서류심사, 물품검사, 선적 절차로 이루어진다.



수출통관을 위해서는 납세자식별번호 NPWP(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가 필요하고, 수출식별번호 APE(Export Identity Number), 무역 라이선스 SIUP(Trading Business License), 제조허가증, 국내사업 투자허가증(PMDN) 또는 외국 투자허가증(PMA) 중 하나의 사업 허가증이 필요하다.

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신고서 PEB(Pemberitahuan Ekspor Barang 또는 BC 3.0)에 수출자, 수입자, 대리인(관세사) 정보, 운송수단, 물품설명(타입, 수량, 컨테이너 번호, HS 코드 등), 수출목적, 물품가격(CIF 가격 기준 신고)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여 신고한다.

PEB 제출은 신고서류에 직접 작성(PEB Manual), 전자 신고방식 PDE(Pertukaran Data Elektronik), 전자 데이터 저장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PEB 제출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수출신고를 해야 하고, 승객, 승무원, 개인물품은 PEB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수출업자는 500만루피아의 행정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취소된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하고, 수출신고서상 품목 및 수량을 잘못 신고한 경우는 최소부족 관세액의 100%, 최고부족 관세액의 1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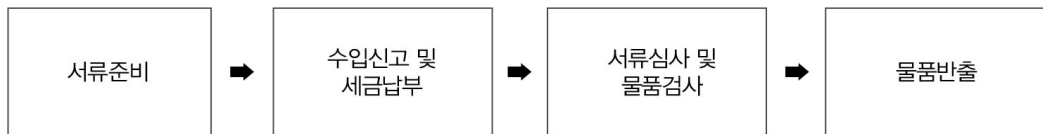
일부 수출품목은 국내수요 충족 보장, 천연자원 보호, 국제시장에서 특정 물품의 급격한 가격인상 대비, 특정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등을 목적으로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고, 수

출세는 PEB 신고서 제출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수출세를 부과하는 대상은 가죽, 목재, 라탄, 코코아두, 팜오일, 팜오일 원유, 광석 또는 원료 등이 있다.

수출통관 시 상업송장, 보험증서,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출허가서, 수출신고서(Export declaration of goods, PEB), 선하증권(Bill of lading),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세관은 온라인상으로 수출자가 제출한 신고서류를 심사하며 심사가 완료 되면 수출승인(NPE)을 수출자에게 통보한다. 수출물품 검사비용은 10%이며 재수입물품, 수입 시 다시 재수출되는 경우, 수출세가 부과되는 경우, 규정을 위반했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의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수입 통관절차

인도네시아의 수입통관은 서류준비, 수입신고 및 세금납부,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물품반출의 절차를 거친다.



가. 서류준비

수입허가 API(Angka Pengenal Impor)는 수입업자의 의무사항이며 API-U(Angka Pengenal Impor Umum), API-P(Angka Pengenal Impor Produsen) 등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API-U는 일반적인 수입허가로 무역업체를 위한 것이고, API-P는 원자재나 다른 재료를 수입하여 기업이 제조를 하기 위한 허가이다. API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API-U와 API-P를 허가받은 기업은 수입 시 매번 실적신고를 해야 한다. 서류상 정보변경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기업이 API-U와 API-P를 동시에 허가받을 수는 없다. 수입허가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API, 관세청등록번호(NIK)를 통합하여 NIB(Nomor Induk Berusaha)를 신설하였다. 2018년 7월 이후 신규 등록하는 기업은 API, NIK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NIB를 신청해야 한다.

일부 품목은 의무적으로 선적 전 검사(SGS 검사)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유의해야 한다. 중고기계 수입은 제조업 허가를 가진 실수요자 업체에 한하여 선적 전 검사를 실시하며 무역부가 발행한 중고기계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물을 재료로 한 식탁보, 수건, 양말, 의류 등 일반소재를 수입할 때 선적 전 검사가 의무적이다. 도자기 제품을 수입할 때도 선적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송사는 수입물품을 운반하는 운송수단이 인도네시아 관세지역으로 진입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세관에 운송수단의 도착예정을 통보해야 한다.

나. 수입신고 및 세금납부

수입자 또는 관세사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시스템(EDI)을 활용하여 세관에 제출한다. 수입신고서 PIB(Pemberitabuan Impor Barang)에는 신고자·수출자·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선박명칭, 물품가격 등의 정보가 필요하고, 상업송장, 보험증서,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입허가, 수입신고서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이 필요하다. 한-아세안 FTA 혜택을 받을 경우 FORM AK를 준비해야 한다.

세관에 제출된 서류와 수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며 수입자는 세금을 납부하고 물품의 통관절차를 시작한다. 수입 시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10%, 소득세 2.5%, 사치세, 소비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물품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것이 발견되면 차액에 대해 최대 1000%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수입신고 가격과 세관 데이터와 불일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인도네시아 세관은 수입자의 법규준수도와 신용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통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세관에 제출된 수입신고서와 서류를 검토하며 물품검사 여부를 결정한다.

통관서비스 등급은 고위험(Red), 위험(Yellow), 우수(Green), 최우수(MITA) 등급으로 나뉘고, 서류심사와 물품검사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 등급별로 통관소요시간이 달라진다. 고위험은 신고 후 약 7일, 위험은 약 4일, 우수는 약 1일이 소요된다.

수입통관서류는 세관에 제출하면 규정에 맞춰 서류제출 여부와 화물검사를 실시하고, 약 2년 동안 통관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고위험에서 위험 등급으로 상향된다. 위험 등급의 수입물품은 선적 서류심사 중 문제가 발생하면 고위험 물품으로 변경되고 통관을

재심사한다. 또한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최우수 등급은 현실적으로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수입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MITA Non-Priority’를 만들었다. MITA Priority와 Non-Priority는 관세유예 여부의 차이가 있다. 수입자가 MITA Priority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과 신뢰성을 갖춘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금체납이 없는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라. 물품반출

고위험 등급의 통관 행정서비스는 세관의 검사관이 실제 화물을 검사하게 된다. 대부분 기업이 고위험으로 분류되기에 다른 통관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서류와 물품의 내용이 일치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검사 후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에 세관은 통관을 허가하고, 화물출고 동의서를 발급하여 수입자가 물품창고에 제출하면 물품의 수령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관세납부 이후에 3~4일 내에 통관이 가능하다.

수입된 물품은 인도네시아에 도착 후 최대 2개월 동안 항구의 임시창고에 보관이 가능하지만 Tanjung Priok 항구는 최대 1개월 보관이 가능하다. 규정된 기간 내에 통관허가를 받지 못하면 물품의 소유권이 세관으로 이전되어 세관이 물품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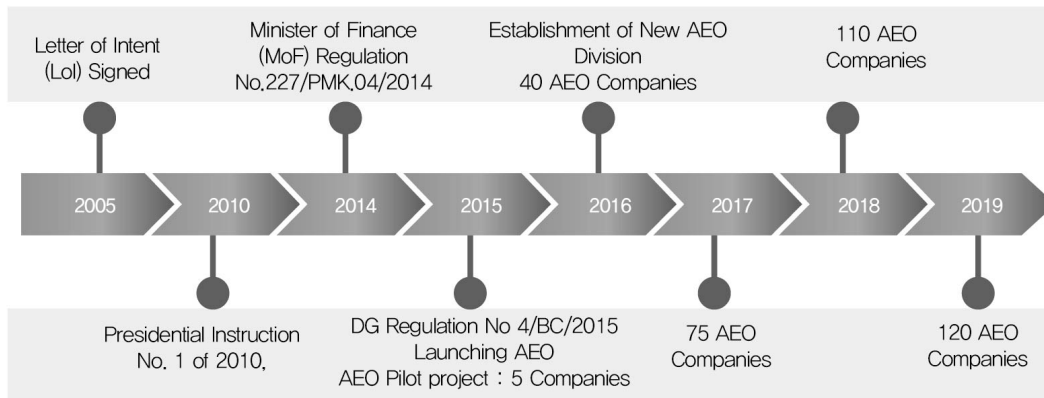
AEO 제도

(1) 제도의 도입

도입 경과

인도네시아 AEO의 시작은 세관명령준수프로그램(Customs Compliance Program: Main Partner Priority Lane)이다. 인도네시아는 2005년 AEO 이행을 위해 WCO SAFE FoS에 서명이후 AEO 및 정보기술의 구현을 위해 투자환경을 지원하는 2010년 대통령 명령 1호(Presidential Instruction No.1)를 통해 AEO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2014년 AEO 관련 재무부 장관규정(Minister of Finance Regulation No.227/PMK.4/2014), AEO 승인 절차에 대한 세관장 규정(Director General Regulation Number PER-4 / BC / 2015)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인도네시아 AEO의 도입경과를 살펴보면 <그림 47>과 같다.

<그림 47> 인도네시아 AEO 도입경과



나.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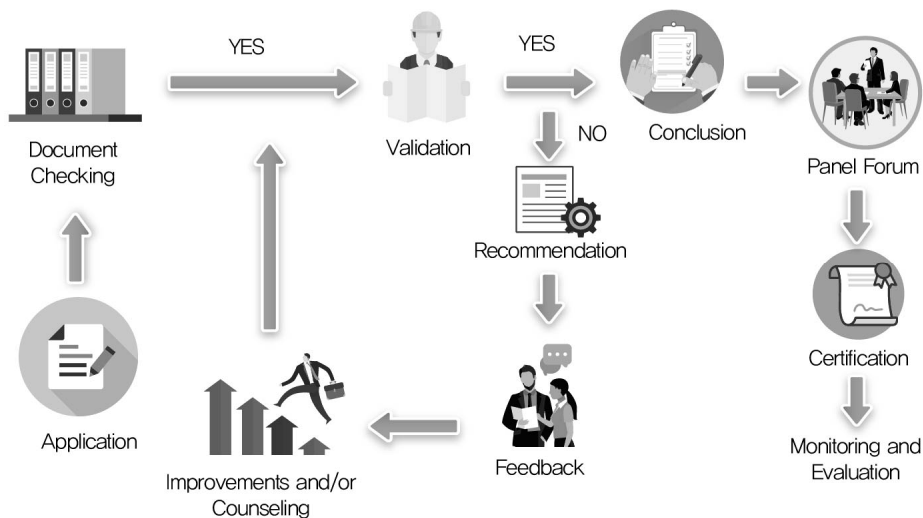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AEO 대상업체는 수출업자, 수입업자, 관세사, 운송업자, 임시 보세업자, 보세업자, 국제물류 관련업자(터미널 관리자, 혼재업자 등)로 인도네시아는 AEO를 통해

안전한 공급망, 적극적인 AEO 참여로 무역공급망 확보, 세관절차 간소화, 국제표준의 준수 및 인식 등을 목표로 한다.

인도네시아의 AEO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세규정을 어기지 않았는지 위법행위 여부, 최근 2년 동안 세금 및 벌금을 미납금 없이 성실하게 납부했는지 여부, 회계감사이행 성실도, 적절한 시스템 보유, AEO 전담직원, 기밀 유지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보유, 화물안전 감시, 직원들의 안전 보장 등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적절한 시스템 보유는 내부통제 시스템, 물품이동에 대한 안전시스템, 직원교육을 위한 시스템, 무역데이터 관리 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인도네시아 AEO 조건 및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세관 규정 준수;
2. 무역 데이터 관리 시스템;
3. 재정 능력;
4. 상담,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5. 교육, 훈련 및 관리;
6. 정보 교환, 액세스 및 기밀 유지
7. 화물 보안;
8. 품의 이동 안전;
9. 위치 보안;
10. 직원 안전;
11. 거래 파트너의 보안;
12. 위기 관리 및 사고 복구; 그리고
13. 시스템 계획 및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시스템 개선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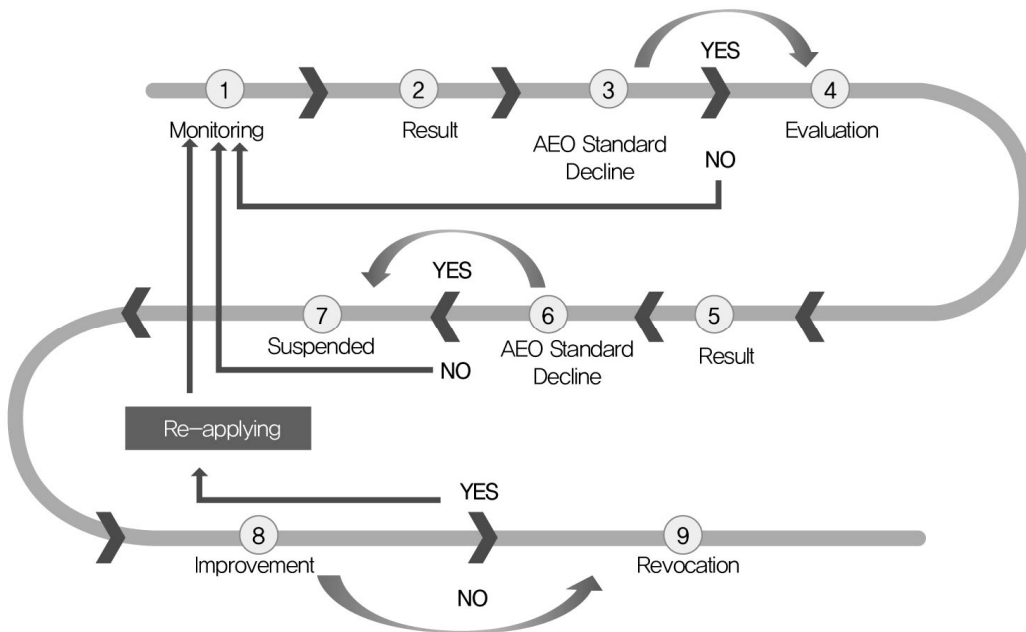
〈그림 48〉 인도네시아 AEO 공인 절차



AEO 공인 절차는 <그림 48>과 같다. 먼저, AEO 신청 기업이 자체평가서(Self-assessment)를 작성하고, 기업의 구조, 표준운영과정에 대한 기술, 사무실·공장·창고 등 정보, 전년도 기준의 감사보고서 사본 2부, 공급망에 대한 목록 및 연락처 등의 정보를 포함한 AEO 필요서류를 확인하여 제출한다. 다음으로 세관에서 서류심사(Document Checking)를 수행하고, 현장심사(Validation)를 통해 점검한다. 현장심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권고사항을 기업에 피드백하여 기업이 보완 후 재심사하고, 현장심사를 충족할 경우 패널포럼을 거쳐 AEO 공인을 부여한다.

AEO 공인 이후 사후관리 절차는 <그림 49>와 같다. 사후관리는 모니터링 결과 AEO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AEO 유지 및 취소 여부를 판단한다.

<그림 49> 인도네시아 AEO 사후관리 절차



다. AEO 혜택

AEO 기업은 최소한의 문서 조사 및 물리적 검사를 통해 상품을 출시하는 프로세스를 가속화하여 물류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AEO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국제 무역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세관의 경우 자원 할당의 감독, 서비스 및 효율성이 향상되고, 국가의 경우 물류 공급망 안전과 보안을 구현하여 국가 경

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 무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받는다.

인도네시아 AEO 혜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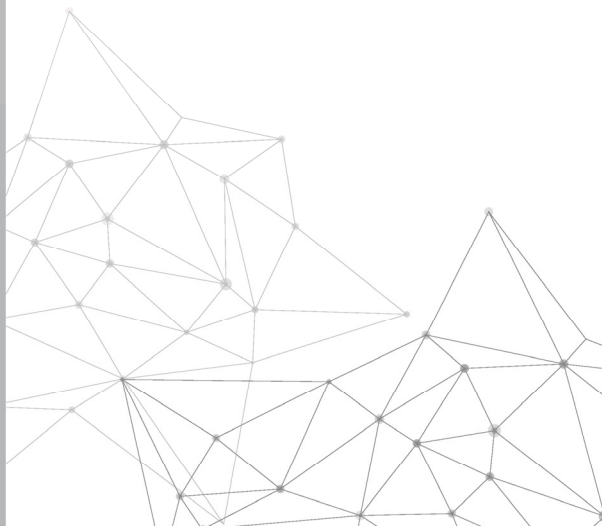
1. 최소한의 서류제출과 통관 시 검사비율 축소
2. 통관심사 우선권
3.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최우선 서비스
4. 새로운 세관 프로그램에 우선 적용
5. 기업 보증
6. 세금기한 연장
7. AEO 전담 매니저 배치
8. 근무 외 시간에도 혜택 가능
9. 보안사고 감소
10. 보안, 물류관계자들과 원활한 소통 가능

※ 인도네시아는 MRA 활용 방법 협상 논의 중

오세아니아(Oceania)

뉴질랜드

(New Zealand)



1

국가 개요

일반 사항	국 명	뉴질랜드(New Zealand)
	면 적	27만 534km ² (남한의 2.7배)
	수 도	웰링턴(Wellington), 1865년 오클랜드에서 천도
	인 구	487만 명(2018년 1/4 기준) 북섬에 약 76% 거주
	주 요 도 시	오클랜드(153만 명), 웰링턴(45만 명, 수도), 크라이스트처치(37만 명) 등
	민 족	유럽인(70%), 마오리(14%), 아시아인(11%), 남태평양 도서국(7%), 기타(3%)(2013년)
	언 어	영어(공용어), 마오리어(원주민어)
정치	건 국 일	1840년 2월 6일 (영국 총독과 마오리 대표 간 Waitangi 조약 체결)
	정 치 체 계	입헌군주국 Jacinda Ardern (노동당 당수, 2017년 10월 취임)
	국 가 원 수	영국 Queen Elizabeth II
경제	화 폐 단 위	뉴질랜드 달러(NZ\$)
	1인당 GDP	4만 1,590달러 (2017년)
	교 역 량 (2018년 기준)	수출: 39,797 US\$ Mil
		수입: 43,685 US\$ Mil
	주요 교역품	원목, 낙농, 육류, 알루미늄 등

자료원: Statistics New Zealand(www.stats.govt.nz), WITS(wits.worldbank.org)

한 / 뉴질랜드 관계	
교역 규모	대 뉴질랜드 수출(2019년) : 1,391,888 US\$ Thousands 대 뉴질랜드 수입(2019년) : 1,299,866 US\$ Thousands 무역수지(2019년): 92,022 US\$ Thousands
교역 품	• 대 뉴질랜드 주요 수출품목 : 자동차, 석유화학, 건설중장비, 철강, 기계류, 전기전자, 플라스틱 등 • 대 뉴질랜드 주요 수입품목 : 원목, 낙농, 육류, 알루미늄, 채소류 등
투자 교류	• 우리나라의 대 뉴질랜드 투자액 → 605건, 5억 3,300만 달러(2018년 1분기 기준) • 뉴질랜드의 대한 투자액(Financial Outflow) → 407건, 8,800만 달러(2018년 1분기 기준)
교민	한국 출생 이민자 수는 2만 5,000명이며 뉴질랜드 출생자까지 포함할 경우 약 3만 명으로 집계됨

자료원: 뉴질랜드 국회, 한국 수출입 은행, 한국 무역 협회,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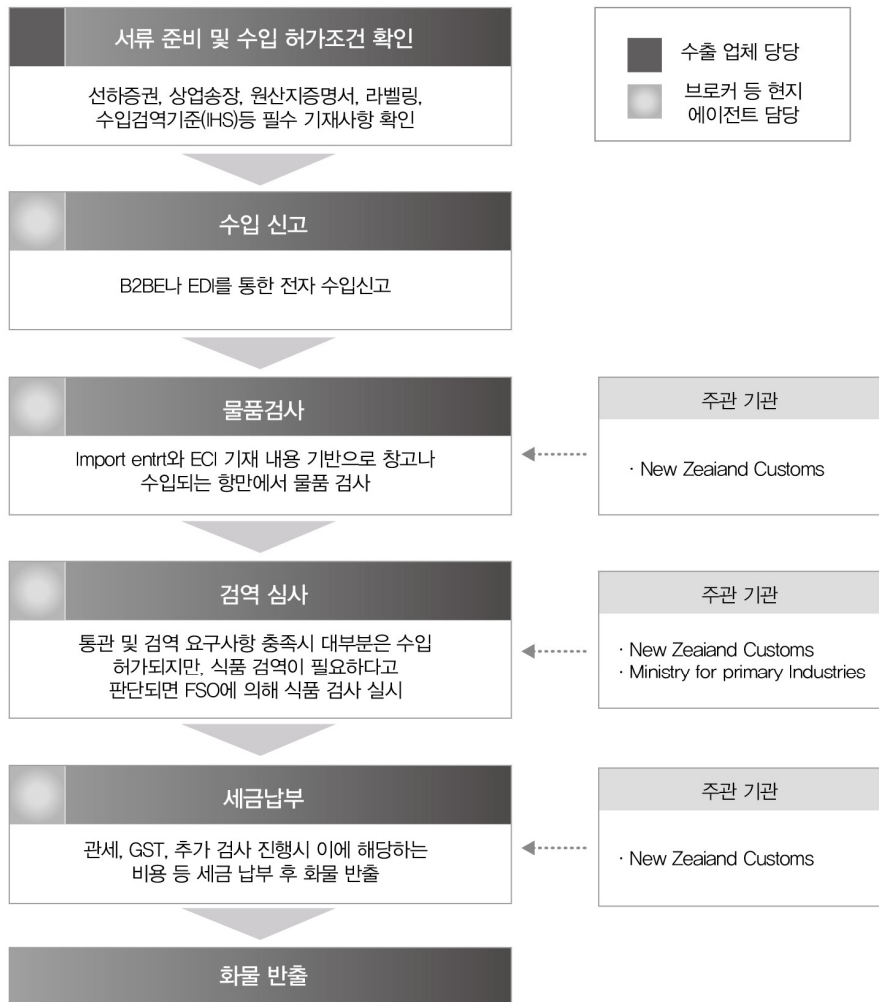
2

통관절차

(1) 수입통관절차

뉴질랜드는 동식물 보호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엄격한 통관 및 검역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동식물 제품 등에 대해서는 사전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수입 신고전 검토 및 준비가 필요하다. 뉴질랜드의 수입 프로세스는 <그림 5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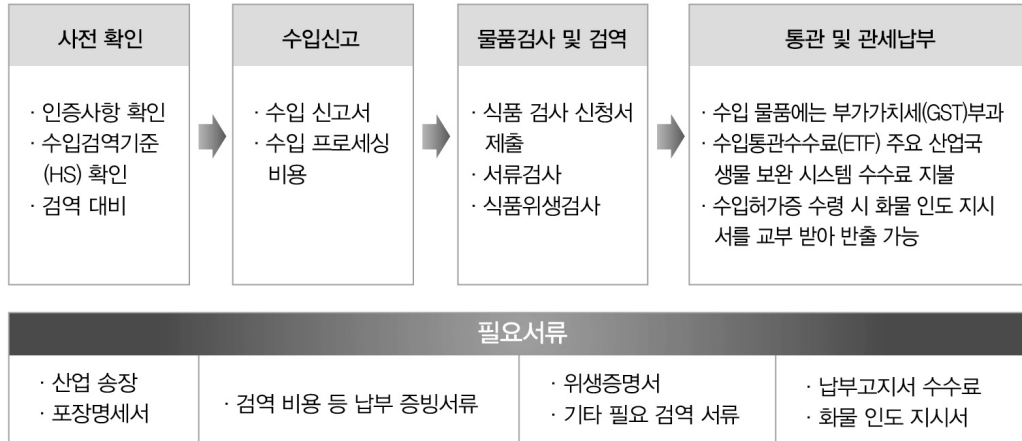
<그림 50> 뉴질랜드 수입 프로세스



가. 사전 확인

수입 통관 절차는 보통 사전확인 단계, 수입신고 단계, 물품검사 단계, 통관 및 관세납부 단계로 나누어진다. 수입통관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면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뉴질랜드 통관절차 및 필요서류



수입통관 절차의 사전 확인 사항은 인증사항, 수입검역기준(HS), 검역 대비 등이 필요하다. 수입검역기준(Import Health Standards, IHS)은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동식물,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검역 및 허가에 관한 규정이다. HS는 Biosecurity Act 1993 법령을 근거로 작성되었고, 위험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수입검역기준은 자연환경 및 동식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통제조치가 개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판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서 아무런 IHS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품목은 수입이 불가능하다.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MPI) 웹사이트²⁰⁾에서 수입검역기준에 대해 검색이 가능하다.

MPI의 규정에 따라 인체 건강이나 자연 및 동식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 식품의 경우 통관 검역 시 필요한 생물보안 승인, 혹은 식품 안전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올바른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식품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반송이나 폐기처분 될 수 있으므로, 수입검역기준의 규정에 따라 수출 전 관련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

20) <https://www.mpi.govt.nz/law-and-policy/requirements/import-health-standards/>

여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총 31개에 달하는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에 대한 세부 항목은 뉴질랜드 관세청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²¹⁾

식품의 경우 Food Act 2014 발효일인 2016년 3월 1일부로, MPI는 식품 수입업자 이름 및 연락처를 파악하기 위해 식품 수입 전에 Joint Border Management System에 등록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매년 등록 갱신을 해야 하고, 등록비용은 MPI의 청구서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수입 통관을 위해 식품업체에게 식품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수입업자의 식품 안전여부의 확인 서류는 식품업체가 본국의 식품 안전 프로그램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서, 식품업체가 식품 안전 감독 당국에 등록되었다는 증빙 서류, 제품 세부 정보(화학적, 물리적, 미생물학적 품질), 식품이 호주 뉴질랜드 식품표준 코드(ANZFSC)에 부합한다는 증빙 서류, 제품 라벨이 영어로 표기되고 모든 원료 성분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규정 등이 필요하다.

나. 수입 신고

뉴질랜드 관세청은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수입업자, 브로커, 에이전트 등으로 하여금 ‘수입 신고(import entry)’와 Electronic Cargo Information(ECI)을 전자로 작성하기를 요구하며, 이는 Customs Online Declarations(B2BE) 웹사이트²²⁾나 Electronic Data Interchange(EDI)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가능하다.

B2BE를 통한 신고는 소규모 수입업체에게 더 적합하며, EDI는 더 크고, 자주 수입하는 업체에게 적합하다. 만약 제품이 NZD 1,000미만 이라면, 간소화된 수입절차로 통관이 가능하다. 만약 수입제품의 금액이 NZD 1,000이상인 경우, 브로커의 Trade Single Window(TSW) 클라이언트 코드 외에도 수출업체의 공급자코드(Supplier Code)가 필요하다.

운송업체는 화물이 수입지에 도착하면 도착통지(Notice of Arrival)를 하고, 수입자는 운송업체로부터 운송서류를 인수받아 상업송장 등과 함께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다. 수입자는 선적 서류(상업송장 등)를 세관 홈페이지 또는 EDI를 통해 접수하고 수입허가 및 통관 절차를 진행한다. 수입통관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검역 비용 등 납부 증빙서류,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그 밖

21) <http://www.customs.govt.nz/features/prohibited/imports/Pages/default.aspx>

22) <https://www.cusweb.co.nz/customs/LoginPage.html>

의 검역 서류 등이 요구된다. 수입 신고서는 제품 도착 20일 전에 등록되어야 하며, 지연 방지를 위해 수입 브로커는 더 일찍 등록 할 수 있다. 수입이 허가되면, 브로커는 수출업체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다. 물품 검사 및 검역

동식물 및 농수산물의 경우 수입검역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다. 수입검사의 목적은 도착 물품과 상업송장 상 기재된 물품과의 대조 및 수입 규제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확인 그리고 위험물품 적발 등에 있다. 검역 대상 물품은 수입검역기준에서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검역 및 검사가 진행되며,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되고,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된 경우 수입신고 이후부터 물품 반출까지는 최소 15시간(공휴일 제외)이 소요된다. 세관에서는 컴퓨터 시스템(CASPER)을 활용하여 무작위로 수입물품을 검사한다(농산물의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도 하며, 평균 검사비율은 7.5~10% 수준임).

물품 검사는 뉴질랜드 관세청과 MPI로부터 수입 식품이 통관과 검역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대부분 식품은 수입이 허가된다. 하지만 식품 안전 통관이 필요한 경우, 수입업체가 MPI의 Central Clearing House로 탁송품에 대한 정보를 보내야 한다. 이후, 식품을 검사, 샘플 추출 및 시험이 Food Safety Officer(FSO)에 의해 진행된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탁송품은 거부되며, 통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업체가 해당 제품에 대한 보관과 라벨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물품 검역은 관세청은 수입 신고(import entry)와 ECI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창고나 수입되는 항구에서 검사가 실시 될 수 있다. 검역 대상 물품은 IHS에서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검역 및 검사가 진행되며,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다. 통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충족하여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물품 반출까지 15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제품의 경우 억류(detained), 몰수(forfeited), 압수(Seized) 될 수 있다.

〈표 40〉 뉴질랜드 통관절차 및 필요서류

지연 종류	사유 및 설명
억류된 제품 (Detained Goods)	▶ 사유 -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경우 -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 Customs and Excise Act 1996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설명 - 통관 완료 후, 위법사항을 제외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상시대로 제품을 인수할 수 있다. 위법사항의 경우 몰수나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몰수된 제품 (Forfeited Goods)	▶ 사유 - Customs and Excise Act 1996 위법 ▶ 설명 - 몰수 조치는 관세청이나 관련 기관이 위법 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법했을 때 자연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 제품 몰수 시에는 제품의 권리는 국가로 넘어간다.
압수된 제품 (Seized Goods)	▶ 사유 - 몰수된 제품에 대한 압수 ▶ 설명 - 제품 압수 시, 관세청이 국가를 대신하여 제품을 압수한다. -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의 압수 사유에서 알 수 있으며, 제품 회수 절차 또한 여기서 알 수 있다.

라. 통관 및 관세 납부

관세 납부는 납부고지서(납부번호 포함)를 교부받은 납세의무자는 이를 납부하면 된다. 대부분의 수입물품에는 부가가치세(GST)가 부과된다(예외 존재). 모든 수입물품에는 수입 통관 수수료(IETF : Import Entry Transaction Fee) 29.26 NZD(GST 포함) 및 주요 산업국 생물보완시스템(Biosecurity system)에 따른 통관 수수료 19.98 NZD(GST 포함)를 합한 49.24 NZD(GST 포함)가 부과된다(2015년 7월 1일자 기준). 상업이나 영리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 시 브로커나 에이전트, 혹은 운송 주선인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중간자가 관세에 관하여 모든 처리를 담당 한다. 그 외로, 직접 통관 진행 시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숙지해야 한다. 각 HS Code별 부여되는 관세는 뉴질랜드 관세청의 'the working tariff document'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외에 부가가치세(GST)는 제품판매가, 반덤핑세, 관세, 이외 일부 제품에 부과되는 부과세와 제품을 운송 하는 동안 지불한 물류와 보험금액의 15%로 책정되어 부과되며, 이에 추가로 수입 통관 수수료(import entry transaction fee, IETF) NZD 29.26(GST포함)과 IMP 생물보안시스템(biosecurity system)에 따른 통관 수수료 NZD 19.98(GST포함)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부과 과세에 대해서는 뉴질랜드 관세청의 duties & charges²³⁾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3)<http://www.customs.govt.nz/incommercial/importcharges/dutiesandcharges/Pages/default.aspx>

3

AEO 제도

(1) 제도의 도입

가. 도입 경과

2004년 뉴질랜드 세관은 수출 중심의 세관-수출업자간 자율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SES(Secure Exports Schemes)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WCO SAFE Framework에 규정된 표준을 참고하여 도입된 SES는 수출물품이 포장되고 선적을 위해 적재 시 불법침입으로부터 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16년 10월 기준 SES 인증업체의 수출량은 전체 수출량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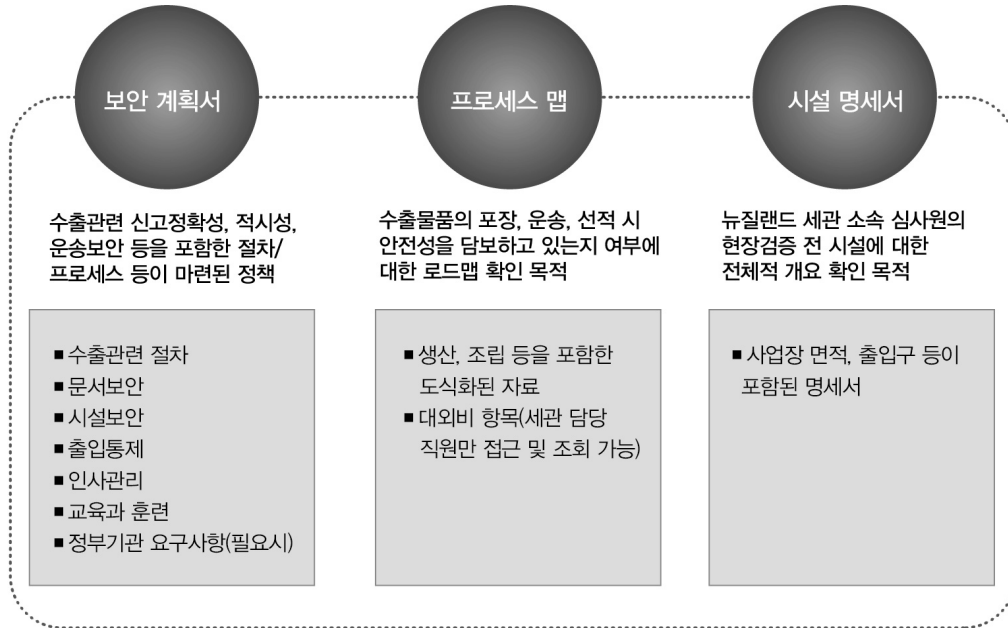
나. 운영 현황

뉴질랜드의 SES 인증을 위한 기업의 공인기준은 <그림 52>와 같이 크게 보안계획서(Security Plan), 프로세스 맵(Process Map), 시설 명세서(Site Plan)로 구분된다.

“보안계획서”는 수출관련 신고 정확성, 적시성, 운송 보안 등을 포함한 절차/프로세스 등이 마련된 정책으로 ‘수출관련 절차’, ‘문서 보안’, ‘시설 보안’, ‘출입 통제’, ‘인사 관리’, ‘교육과 훈련’, ‘정부기관 요구사항(필요시)’으로 구성된다. 업체가 수출물품에 대한 보관, 포장, 운송 업무 등을 거래업체에 위탁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포함하며, 사업장 별 업무 프로세스 및 비즈니스 모델을 반영하여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수출관련 절차(Procedural Security)’에는 물품 포장 전 검사, 봉인 체결 및 관리, 컨테이너 물품 적입 시 보안, 이상상황/불법/혐의사항 발생 시 세관보고 항목이 있으며 업체의 실제 수출업무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절차를 구비하여야 한다. ‘운송수단 및 봉인관리’ 항목은 운송수단에 대한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으로부터 침입을 방지하고, 운송수단에 부착된 봉인의 안전성을 유지의 목적이 있으며 운송수단 명세서, 봉인에 대한 기술서가 주요 제출서류이다. ‘수출물품 포장 전 검사’ 항목은 물품 수량, 중량 등 출고시점에서 관련 서류(구매주문서, 운송의뢰서, 포장명세서, 인보이스 등)와 대조·검증하여 물품의 안전성을 담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프로세스 맵, 체크리스트, 이상상황 발생 시 보고 절차 등이 주요 제출서류이다. ‘이상상황 보고’ 항목은 화물 불일치, 침입자 식별 등 이상상황 시 신속한 해결 및 보고에 목적이 있다.

〈그림 52〉 뉴질랜드의 SES 공인기준



‘문서보안’은 수출신고 관련 서류(선적서류, 수출신고서, Invoice 등)에 대한 원본 및 정보 보안 증빙자료가 주요 제출서류이다.

‘시설장비 보안’은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외부에 대한 무단접근의 예방에 목적이 있으며 접근통제구역 설정 및 접근통제장치에 대한 관리 등이 주요 제출서류이다.

‘출입통제’는 신원 미확인자/권한없는 자가 시설에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고 직원 및 방문자(차량 포함)에 대한 통제에 목적이 있으며 출입통제 관련 체계 구축 자료 등이 주요 제출서류이다.

‘인사관리’는 채용예정자 및 임직원에 대한 법규위반내역 점검에 목적이 있으며, 직원 점검 자료가 주요 제출서류이다.

‘교육과 훈련’은 임직원에 대한 수출정보 및 수출물품 보호 및 통제에 목적이 있으며 해당 교육에 대한 관련 직원 교육 시행 증빙자료 등이 주요 제출서류이다.

‘프로세스 맵(Process Map)’은 수출물품의 포장, 운송, 선적 시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road map 확인이 목적인 공인기준이다. 생산, 조립, 영업(선적관련 서류, 수출물품 정보), 포장 전 검수, 포장, 물품 상차, 운송 절차, 목적지 등을 포함하여 도

식화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프로세스 맵의 경우 대외비 항목으로 뉴질랜드 세관 담당 직원만이 접근 및 조회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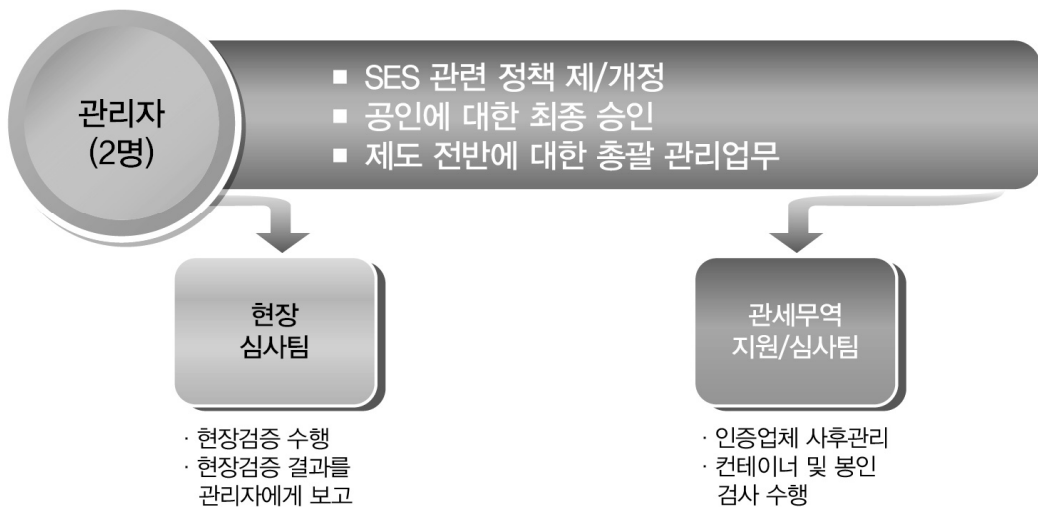
‘시설 명세서(Site Plan)’은 뉴질랜드 세관 소속 심사원의 현장 검증 전 시설에 대한 전체적 개요 확인에 목적이 있으며 사업장 면적, 출입구(차량, 사람), 접근통제구역, 시설 내외부 조명, 주차 공간, 울타리 높이, 컨테이너 보관 장소/적립장소 등이 포함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인 절차

SES 관리부서는 2명의 관리자의 총괄하에 현장심사팀과 관세 무역 지원/심사팀으로 구성된다. 관리자는 SES 관련 정책 제·개정, 공인에 대한 최종 승인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현장심사 팀(On-site validation team)은 현장 검증을 수행하고 검증 결과를 관리자에 보고한다. 관세무역 지원/심사 팀(Customs Trade Assurance, Audit Team)은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컨테이너/봉인 검사를 수행한다. 뉴질랜드의 AEO 제도 공인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림 53>과 같다.

<그림 53> 공인관리 부서

뉴질랜드 SES 관리부서



가. 공인 신청

기업이 AEO 공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NZCS507)”와 함께 “보안계획서”, “프로세스 맵”, “시설 명세서”, “운송 거래업체 기술서”를 세관에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소속 현장심사 팀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심사(검증) 일자를 업체와의 협의 하에 조율한다.

나. 현장방문(확인)

AEO 공인 신청을 마친 기업은 현장심사 팀에서 사업장 방문을 통해 “보안계획서”, “프로세스 맵”, “시설 명세서”에 명시된 항목을 검증한다. 주요 검증항목은 수출신고서 정보 무결성 확인, 관세 정보 확인, 업체 책임자의 수출절차 이해도(인터뷰)이다.

다. 공인 결과보고(통과/기각)

현장심사 팀에서 심사 완료 후 “심사 결과보고서(Management Report)”를 작성하여 통과/기각 여부를 SES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심사 통과 업체에 대해 신청업체의 대표자가 “Customs-approved Secure Package”에 서명하면서 SES 인증이 부여된다.

라. 사후관리(지속적인 파트너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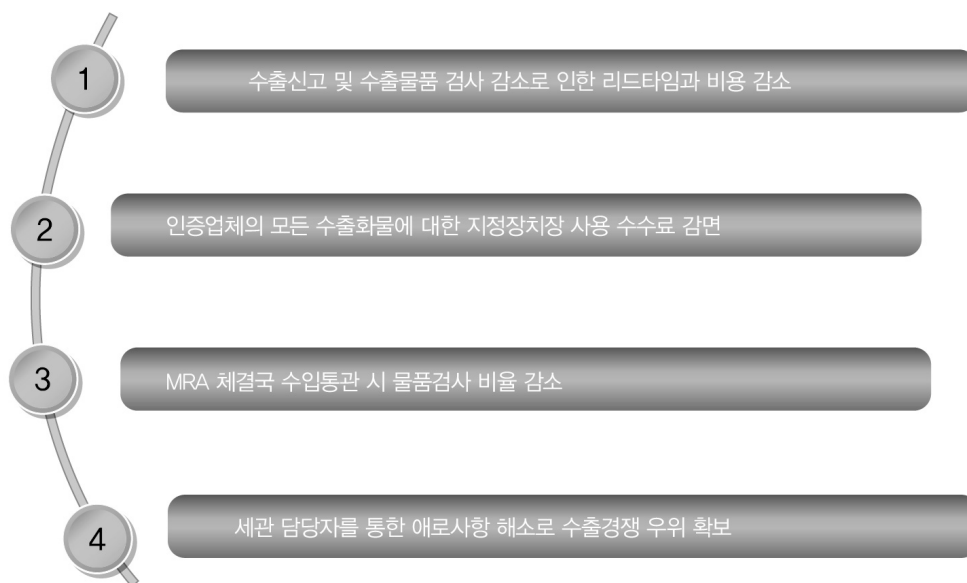
SES 인증의 경우 최초 인증 시 인증이 지속 유지된다. 별도의 갱신심사는 없으나 “관세 무역 지원/심사팀”이 수시로 현장검증을 수행한다. 이때 미흡사항 발생 시 공인이 취소된다. 또한, SES 인증업체의 이행사항중 하나인 ‘뉴질랜드 세관에서 승인한 또는 세관 명의로 배포한 봉인 미체결’ 시 공인이 즉시 취소된다.

SES 인증업체에 대해 “관세 무역 지원/심사팀” 세관직원이 1:1로 지정되어 수출 공급망 보안 관련 교육, 관세 관련 이슈사항 발생 시 지속 협의, 공인기준 중 보안 계획서 변경 시 자문을 수행한다.

(3) 주요 혜택

뉴질랜드 세관에서는 수출업자가 SES 인증 시 수출 프로세스 상 통관상, 비용적 혜택을 부여하며 세부 내용은 <그림 54>과 같다.

<그림 54> 뉴질랜드의 SES 주요 혜택



첫째, 수출신고 및 수출물품 검사 감소로 인한 lead타임 및 비용이 감소한다. 둘째, 인증업체의 모든 수출화물에 대한 지정장치장 사용 수수료 감면으로 비용상의 혜택을 부여 받는다. 셋째, MRA 체결국 수입 통관 시 물품 검사 비율 감소 및 애로사항 발생 시 뉴질랜드 세관 담당자를 통한 해소로 수출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수입국에서는 뉴질랜드 세관에서 승인한 또는 세관 명의로 배포한 봉인을 통해 뉴질랜드 SES 인증업체의 수입화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

MRA활용 방법

- ① 뉴질랜드의 AEO제도 명칭: SES(Secure Exports Scheme)
- ② <한국 관세청>은 한국 AEO 수출기업 공인정보 송부 (한국 관세청 → 뉴질랜드 관세청)
- ③ <뉴질랜드 관세청>은 해외 공급자부호(Unique Supplier Code) 발급 시 한국에서 통보받은 AEO공인정보를 반영하여 시스템에 등록함
- ④ <뉴질랜드 수입자>는 뉴질랜드 관세청 시스템의 정보를 기초로 수입신고시 공급자 상호와 해외 공급자부호를 기재하고, 우리나라 AEO 화물로 인식되면 MRA 혜택을 제공받게 됨

※ MRA 혜택을 받기위해 한국AEO수출자가 별도로 조치해야 할 사항은 없음

<한-뉴질랜드 AEO MRA 혜택>

서류심사 및 실제검사 축소	•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축소를 통한 신속통관
수입검사시 우선조치	• 물품검사로 선별된 화물 우선검사
세관연락관 지정	• 통관애로 해소창구 지정
우선조치	• 국경패쇄시 우선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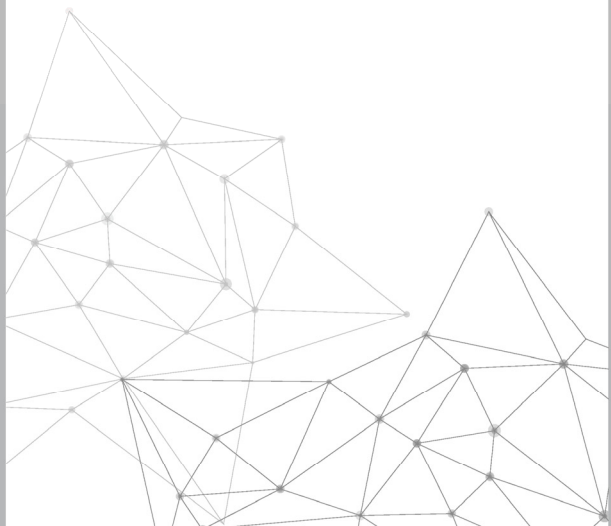
(참고) 뉴질랜드 해외공급자부호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 <http://www.customs.govt.nz/news/utilities/Pages/Supplier-Codes.aspx>

* 회사 소재 '국가명'과 '상호'로 검색 가능

오세아니아(Oceania)

호 주
(Australia)



1

국가 개요

일반 사항	국 명	호주(Commonwealth of Australia)
	면 적	768만 km ² (한반도의 약 35배, 남한의 약 80배)
	수 도	캔버라
	인 구	2,497만 명 (2018년 6월)
	주 요 도 시	시드니(513만명), 멜버른(485만명), 브리스베인(241만명), 퍼스(204만명), 아들레이드(133만명) 등
	민 족	영국계(36.1%), 호주계(33.5%), 중국계(5.6%), 인도계(4.6%) 등
	언 어	영어(공용어), 원주민어(수백개 방언)
정치	건 국 일	1901년 1월 26일
	정 치 체 계	영연방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양원제)
	국 가 원 수	Queen Elizabeth II 영국 여왕: 영국 여왕은 상징적 존재로 실질적인 권한은 없으며 연방정부는 연방 총독(Governor-general), 주 정부는 주 총독(Governor)이 영국 여왕을 대리해 연방 및 각주를 대표한다. Scott Morrison 총리(실권자): 집권당의 당수로 호주의 실질적인 지도자
경제	화 폐 단 위	호주 달러(A\$)
	1인당 GDP	US\$ 5만 6,000 (2017년)/ PPP (구매력 기준)
	교 역 량 (2018년 기준)	수출: 252,776 US\$ Mil 수입: 235,519 US\$ Mil
	주요 교역품	수출: 광물성 연료, 광물, 귀금속류, 육류, 곡류, 무기화학물, 핵반응기계 및 희토류 등 수입: 자동차, 핵반응 기계, 전자기기, 광물성 연료, 의약품, 광학 및 의료기구 등

자료원: IMF, 호주준비은행, 호주무역투자진흥처, 호주통계청, Global Trade Atlas, WITS(wits.worldbank.org)

한 / 호주 관계	
교역 규모	대 호주 수출(2019년) : 7,890,566 US\$ Thousands 대 호주 수입(2019년) : 20,608,238 US\$ Thousands 무역수지(2019년): -12,717,672 US\$ Thousands
교역 품	대 호주 수출 품목: 해양구조물, 선박, 승용차, 경유, 제트유 및 등유 등 대 호주 수입 품목: 유연탄, 철광, 천연가스, 가축 육류, 당류 등
투자 교류	• 한국의 대 호주 투자 (2017년) - 신고건수 93건 / 신고액 US\$ 5억 3,300만 • 호주의 대 한국 투자 (2017년) - 신고건수 26건 / 신고액 US\$ 1억 4,300만
교민	18만 명 (2018년 1월)

자료원: 외교통상부, 한국무역협회, 한국 관세청, Invest Korea, 한국 수출입 은행 등

2

통관절차

(1)

수출 통관절차

호주의 국경관리 및 보안 관리는 주로 수출입 물품의 통관과 관세 등의 부과, 징수의 책임기관인 호주 세관 및 국경관리 서비스(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ACBPS)와 농수산물 등의 검역,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농림수산부(Department of Agricultural, Fisheries and Forestry Biosecurity, DAFF)가 담당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평균관세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관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청정지역’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일부 농수산물에 대하여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는 국가로 통관에서 DAFF의 역할과 기능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 일반 품목

호주는 자국에서 수출되는 품목 중 2,000 호주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품목은 기본적으로 수출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신고와 마찬가지로 ICS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식이나 서면신고를 통해 일정한 수출신고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2천 호주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경우에도 개인적 자산, 애완동물, 2천 호주달러 미만의 수출품, 관세법 제162A항에 언급하고 있는 카르넷(Carnets), 호주 우편물 혹은 외교관 물품, 군용선박이나 항공을 이용해 운반되는 군용 물자 등의 경우는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수출신고는 ① ICS를 통한 전자신고 방식, ② Form B957(수출신고서)을 작성하는 서면 신고 방식, ③ Form B957a(Export Declaration Supplementary Page)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수출자는 수출품이 선적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수출 시점에서 6개월 이전부터 수출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다.

어떠한 방식을 사용해서 수출신고를 하더라도 수출자에게 동일한 정보가 요구되며, 수출신고서 작성에는 수출자 혹은 수탁자(Consignee), 수출 선적항 혹은 공항 및 최종 목적지

적지, 예상 수출일자(Intended date of export)²⁴⁾ 수출품의 본선인도가격(FOB), 분류, 수량 및 수출물품에 대한 기술, 필요한 경우 기타 관련 서류 등의 정보를 요구한다. 수출 신고 작성에서 신고서 작성자 혹은 작성 대행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수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수출신고 정보는 호주 통계국(ABS)의 호주 교역데이터 작성의 기초자료이며 호주 통계국 자료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반영되는 만큼 수출입 신고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신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특히 관세 및 기타 세금의 부과가 이루어지는 수입신고의 경우는 이중, 삼중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수출신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신고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정보제공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호주 관세법 1901 제231조 1항의 (d)에는 고의로 혹은 부주의하게 ACBPS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누락할 경우 5,000 호주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자의 보고의무는 ① 호주에서 출발하는 모든 선박과 항공은 출발 3일 전까지 주요 적하목록을 ACBPS에 신고처리 해야 한다. ② 수출승인서(Certificated of Clearance)를 받기 위해서는 출발신고서(departure report)를 ACBPS에 신고처리해야 한다. ③ 수출 관련 모든 서류는 수출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수출자가 호주사업자번호(ABN)를 가진 경우 반드시 동 번호를 수출신고서 작성에 사용해야 한다.²⁵⁾ ⑤ 수출 이후 수정된 수출신고서 정보에 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 ⑥ 수출신고서가 취소되었을 경우, 수출자는 7일 이내에 수출신고번호(Export Declaration Number, EDN)를 철회해야 한다. ⑦ 수출신고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출품의 이동이 있을 경우 ACBPS에 신고해야 한다.

수출신고서를 ACBPS에 신고처리하면 ACBPS는 각각의 수출신고서에 대하여 수출신고번호(EDN)를 부여한다. EDN은 수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Clear의 경우와 추가적인 정보나 수정이 필요한 Error의 경우로 분류되며 CLEAR EDN은 법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

수출신고서 신고처리 후 수출 물품 정보에 변동이 발생하면 아무 때라도 수출신고서의 수정이 가능하며 이러한 정보를 ‘실질적으로 가장 신속하게(as soon as practicable)’ 수

24) 전자서명 방식으로 신고 처리된 수출신고서의 예상 수출일자는 반드시 신고처리일이나 혹은 신고처리일 이후의 날짜를 적시해야 한다.

25) 수출신고서를 작성에 기본적으로 수출신고서 작성자와 수출물품 소유자의 ID가 필요한데, 수출신고서 작성에 사용되는 ID는 호주기업번호(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나 ACBPS에서 발행하는 세관고객 ID(Customs Client Identifier, CCID)가 사용될 수 있다. CCID는 ABN을 소유하지 않은 수출신고자 혹은 수출품 소유주에게 ACBPS가 부여하는 고유 ID이다.

정하는 것은 수출자 혹은 신고자의 의무사항이 된다. 또한 수출신고서에 명시된 수출 예정일의 30일이 지나도록 수출이 되지 않고 수출신고서의 수정도 일어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출신고서에 대한 허가는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수출자가 상품 수출 후 수출신고서에 대한 수정이 '정기적(regular)'으로 발생하는 경우 ACBPS는 수출신고서 정정이 추후에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체크할 수 있다. 다만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경매로 팔리거나 운송기간 중 발생하는 국제 시장가격에 영향을 받아 어쩔 수 없는 변동이 발생하는 품목일 경우 수출자는 'Confirming Export Status'를 신청하여 ACBPS의 조사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수출하려던 물품의 수출이 취소되었을 경우, 수출자 혹은 신청자는 해당 수출신고서를 취소해야 하며 이 경우 수출신고서에 부여된 EDN은 상실된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다시 수출될 경우 수출자는 새로운 수출신고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2) 수입 통관절차

호주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상품의 종류나 원산지 등 수많은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ACBPS 수입신고 절차는 기본적으로 수입업체에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으며,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수입업체는 자체적으로 수입품목을 관세율 품목 목록에 맞추어 정확하게 분류해야 하며 모든 의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수입품목 신고 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시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반품목의 수입신고 방식 및 절차와 식품 수입 절차를 구분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 품목

호주 수입통관신고는 방식에 따라 완전수출신고(Full Import Declarations, FIDs)와 간이수입신고(Self Assessed Clearance, SAC), 그리고 비동반개인자산(Unaccompanied Personal Effects, UPEs) 방식 등으로 나뉘어진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완전수출신고로 수입자 혹은 수입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세관의 관리 하에 있는 품목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통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Customs Act 1901 제68항에 따라 1천 호주달러 이상의 수입은 동 절차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도록 하고, 1천 호주달러 이하의 수입은 SAC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동반개인자산 혹은 여행자 수화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 신고 절차나 담배나 주류, 차량, 12개월 이내에 구입한 물품은 비동반개인자산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간이수입신고는 해상 혹은 항공화물을 통해 수입되는 수입품목의 가치가 1천 호주달러 이하일 경우에 해당되며, 국제우편을 통해 수입되는 1천 호주달러 이하 품목에 대해서는 간이수입신고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간이수입신고는 일반적으로 운송을 화물보고자(회사)가 적화보고를 제출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경우 수입자는 추가적으로 해당 수입품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그림 55〉 Form B319 (ICS 고객 등록 서류)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Registering as a client in the Integrated Cargo System																				
NOTICE: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quired so that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can properly identify you and your electronic communications through the Integrated Cargo System. The information you provide will be given to th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nd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 Depending on the nature and content of your electronic communications with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this information may also be passed to other agencies.																						
Part A - Client has an ABN																						
Company name (if applicable):		ABN: <table border="1" style="width: 100px;"><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table>																				
Part B - Client is an organisation without an ABN																						
Name of organisation:																						
Part C - Client is an individual without an ABN																						
Title:	First name:	Second name:	Family name: Suffix:																			
Part D - All clients																						
Street address (must be a street address, not a PO box address):		Suburb or town (mandatory):																				
State/Territory (mandatory):	Postcode (mandatory):	Country (mandatory):																				
Postal address (if different from above):	Suburb or town:																					
State/Territory:	Postcode:	Country:																				
Contact name:	Email:																					
Telephone (business):	Telephone (after hours):	Mobile:	Fax:																			
Contact purpose (for example, to lodge export declarations):																						
Role requested: ☐ Importer ☐ Exporter ☐ Other role (please specify):																						
Client registration lodged by:		Telephone number:																				
☐ I have attached 100 points of identification with this form (see reverse).																						
Signature:		Dat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use only CCID / ABN:																						

B319 (February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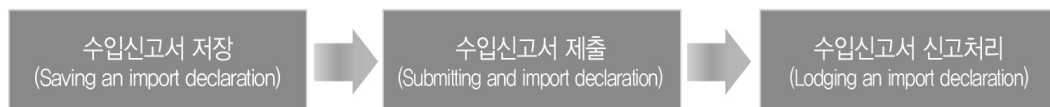
간이수입신고는 신고 유형에 따라 완전서식(Full Format)과 간이서식(Short Form)으로 나누어진다. 완전서식은 관세 양허 혹은 예외가 적용되는 품목이나 수입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품목, 혹은 술이나 담배와 같이 부가가치세(GST)를 납부해야 하는 품목의 경우 완전서식을 이용하는 것이 통관절차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반면에 간이서식은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수입통관이 가능할 경우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 완전서식만을 써야 하거나 간이서식만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

수입신고는 수입물품의 목적에 따라 Nature 10과 Nature 20, Nature 30 및 Nature 10/20으로 분류된다. Nature 10은 가계소비(home consumption)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으로 세관에서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Nature 20으로 신고하는 품목은 수입 시 창고로 보내지는 물품으로 수입자는 통관을 위한 관세 납부를 창고에서 물품을 옮기는 시점까지 유보할 수 있다. 동 신고서를 통해 통관을 신고하는 물품은 세관에 허가를 받은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Nature 20으로 신고하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품을 국내 소비를 위해 옮길 경우는 Nature 30을 이용하여 신고하며 이때 관련된 관세 및 내국세를 지불하고 세관의 인도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Nature 10/20은 동일 탁송물(single consignment)이 국내 소비를 위한 물품과 창고로 인도될 물품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이용한다.

수입신고는 호주 통합화물관리시스템인 ICS(Integrated Cargo System)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수동으로 신고할 경우 ACBPS가 수입자를 대신하여 입력한다. ICS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림 55>의 Form B319(Client Registration Form)를 작성하여 ACBPS에 ICS client로 등록해야 한다. 수입자 혹은 수입업체가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ABN이 ICS의 고유 식별번호로 사용되며 ABN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ICS는 등록자(업체)에게 Customs Client Identification(CCID)의 고유 ID를 부여한다.

ACBPS에 등록을 완료한 수입자 혹은 승인된 대행업자(Customs broker)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시작할 수 있다. 수입신고는 <그림 56>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

<그림 56> 수입신고 절차



저장(Saving) 단계는 수입자 혹은 수입 대행업자가 ICS 수입신고서의 Heading 부분을 완료하고 저장하는 과정으로 수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ICS는 임시 식별번호를 부여한다. 수입신고 건마다 부여되는 임시 식별번호는 최초 저장 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수입자 혹은 대행업자는 수입신고 첫 단계부터 다시 수입신고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제출(Submit) 단계에서 수입자는 수입신고서에 요구하는 정보의 입력을 완료하고 ICS에 수출신고서를 제출한다. Nature 10의 경우 운송, 수입품목 세 번, 과세가격 등의 관세 및 내국세 부과와 관련한 정보 등을 수입자(혹은 대행업체)가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신고 자료가 유효하게 접수되면 신고 내용에 따라 ACBPS는 녹색신고(Green line), 적색신고(Red line), 황색신고(Amber line)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녹색신고 물품은 추가적인 검사 없이 통관이 가능한 품목으로 수입자 혹은 대행업체가 과세 및 내국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신고 수리서를 받을 수 있다. 적색신고 품목은 품목 분류의 오류나 검역 대상 물품이 적절한 검역을 받지 않은 경우, 혹은 가격이 송품장 내용과 다른 경우 등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한 품목으로 정밀한 검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 황색신고 품목은 위장 수입물품이나 관세 포탈의 우려가 있는 물품, 마약, 수입금지 도는 제한 물품 혹은 이와 같은 경우로 의심되는 경우이다.

ACBPS의 수입신고서에 대한 검토와 지역사회 보호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통과할 경우 수입신고서는 신고처리(lodge)된다. 수입신고서의 신고처리는 수입신고서 제출과 동일한 날에 완료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수입신고서 제출과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수입자는 통관을 위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신고수리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면 수입된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수입물품의 반출을 위해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서를 접수하여 반출을 신청하는 수입자 혹은 수입자의 요청으로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업체는 ① 수입신고수리서, ② 소유주의 신원증명 서류(Evidence of Identity, EOI), ③ 세관고객 ID(CCID) 또는 호주사업번호(ABN), 인보이스, B/L(Bill of Lading), 항공운송장, Commercial Document(필요한 경우), ④ 관련 세금 납부 증명서, ⑤ 필요시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 적절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소유주의 신원증명은 수입과 수출의 신고처리 과정에서 ACBPS에 제출해야 한다. 신원증명은 ICS를 이용한 전자증명 방식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신고는 수출입신고 건마다 ACBPS를 방문하여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원증명은 <표 41>에서 주요증명서, 2차 혹은 기타 증명서의 합이 100점이 넘는 경우에 가능하다. 주요 증명서가 사진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2차 혹은 기타 증명서는 반드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원본을 지참하여 해당 신고서 소유주의 신원확인을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ACBPS는 신원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 요청 서류는 ACBPS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팩스나 우편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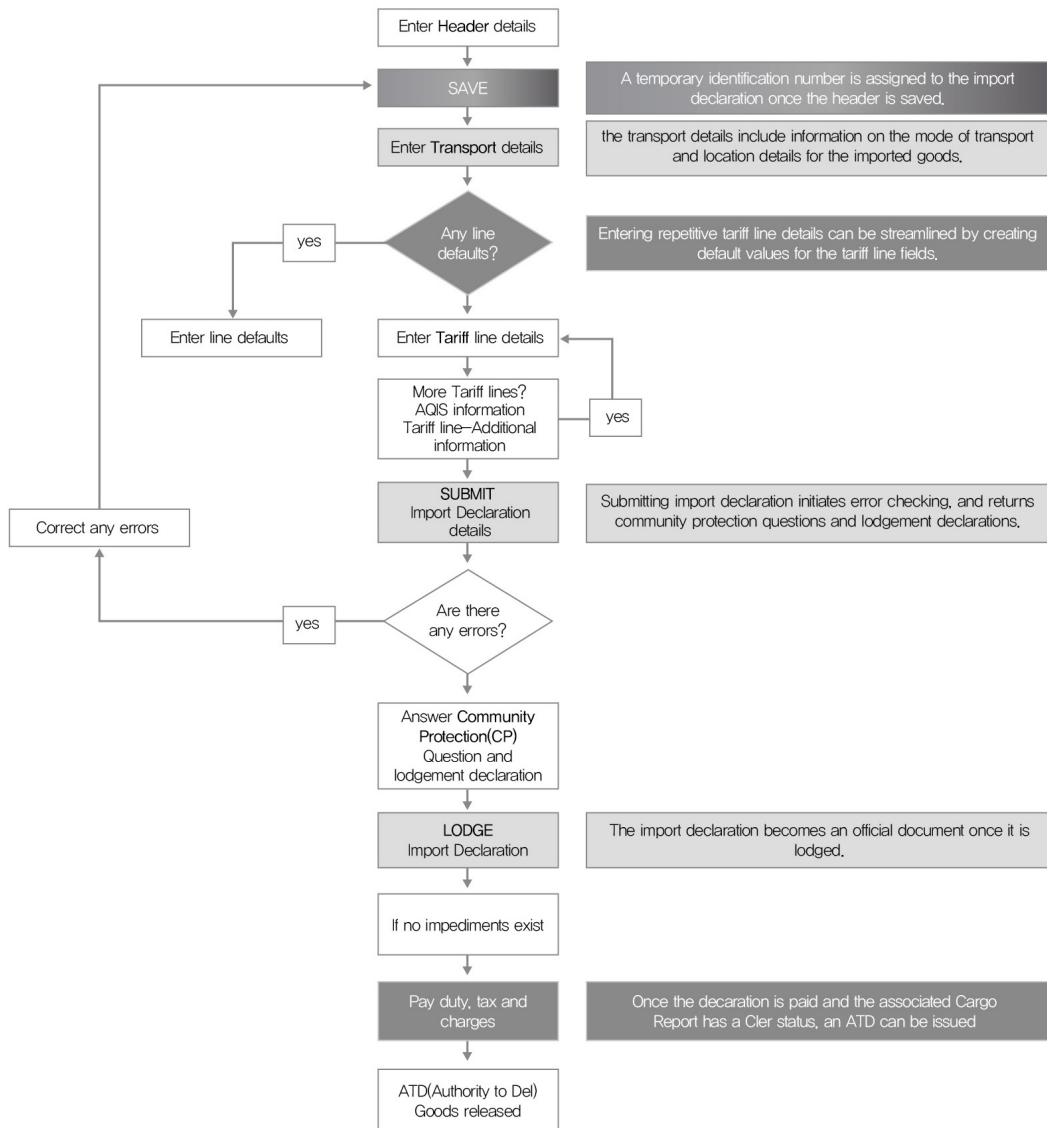
<표 41> 중국의 수출할당과 승인대상물품 목록

구분	점수	종류
주요증명서	70	출생증명서(Full birth certificate) 호주시민증(Australian citizenship certificate) 여행서류(현재 유효한 여권/만료되었지만 취소되지 않은 여권) 기타 여권과 동일한 특징을 지닌 서류(Other document of identity having the same characteristics as a passport)
2차 증명서	40	호주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운전면허, 총기허가증 등) 공공서비스 고용증명카드(Public Service employee identity card) 대학 학생증 재정지원 등을 위해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기타증명서	35	대출서류 고용주 편지(현재 혹은 과거 2년 이내의 고용주) Rating notice
	25	결혼 증명서 신용카드 의료카드 외국 운전면허증

자료: 호주 관세청(Australian Customs Service)

일반 품목의 수입신고 절차의 Flow Chart를 살펴보면 <그림 57>와 같다.

<그림 57> 수입신고 절차 Flow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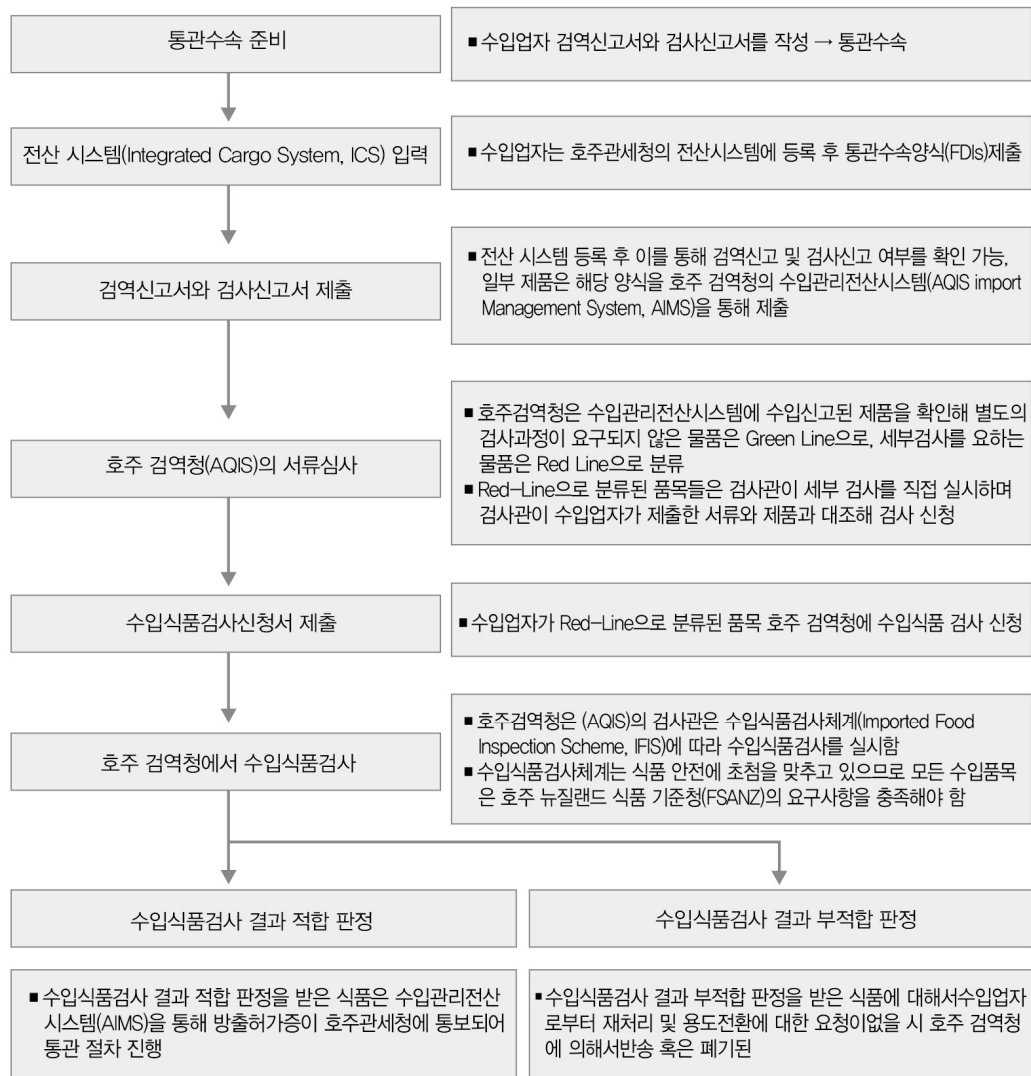


자료: Australian Customs Service 홈페이지

나. 식품 수입

호주의 식품 수입은 제조업 제품의 수입과 유사하게 ICS를 통해 수입자가 수입 품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제조업 제품의 수입과 달리 강력한 검역 및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수입 식품에 대한 검역, 안정성 검사, 라벨링 등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과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 일반적인 식품 수입 절차는 <그림 58>와 같다.

<그림 58> 호주 식품 수입 절차



호주의 식품 수입절차는 ICS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저장(Saving), 제출(Submit), 신고처리(Lodging)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 그러나 일반 품목의 수입절차와 함께 검역신고서와 검사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 시 제출하고, 해당 기관의 승인이 완료되고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수입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해 방출허가가 이루어진다. 이로써 ACBPS에 통보함으로써 세관에서의 작업이 완료된다.

다. 관세 및 기타 세금 부과

신고 처리된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정보에 따라 해당 수입품목에 대해서 관세 및 기타 관련 세금이 부과된다. 관세의 경우 수입품목, 수출국, 원산지 충족 여부 등에 의거 Customs Tariff Act 1995에 따라 일반관세나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는다. ACBPS는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을 대신해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GST나 와인균등세 혹은 고급자동차세 등을 수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2018년 7월 1일부터 호주 기업이 아닌 호주 소비자에 의해 호주로 수입되는 1,000호주 달러 이하의 저가품의 판매에 대해 GST가 적용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저가 제품은 과세 가격이 1,000호주 달러 이하의 유체품으로, 국제운송료와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 1,000호주 달러 한계치는 세관 가격을 기초로 한다. 과세되는 GST 세율은 일반적으로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고객에 의해 지불된 총 금액의 10%이다. 즉, 저가 수입물품 판단기준은 FOB인 반면 GST 부과기준은 일종의 CIF 기준이다. 이들 저가 수입물품에 대한 GST를 부과, 징수하고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으로 보고하는 당사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비거주자 공급자(Non-resident suppliers; NRS), 전자적 분배 플랫폼 운영업자(electronic distribution platforms; EDPs), 재배송업자(re-deliverers)이다.

기존에는 GST, 수입관세, 국경 통관 및 생물 보안 요금, 고급차 세, 와인세가 중계업자를 통해 호주에 도착할 때 과세가능한 수입품, 즉, FOB 가격으로 1,000호주 달러를 초과하는 수입품에 대해서만 호주 이민 국경보호부(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DIBP)²⁶⁾에 의해 징수되었다. 단, 주류와 담배류는 기준 가격 이하 여도 과세된다. 그리고 DIBP는 제품이 올바르게 신고되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없다는

26) DIBP는 2017년 12월에 national security, law enforcement, emergency management, border control, immigration, refugees, citizenship, and multicultural affairs의 업무를 수행하는 Department of Home Affairs (내무부)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국경관리 및 관세 관련 업무는 Department of Home Affairs산하의 Australian Border Force(국경수비대)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1,000호주 달러 이하로 신고된 제품의 위험 평가를 하게 된다. 이 중 몇몇의 경우 신고가 부정확하게 되거나 세금 납부 책임이 발생한 경우 납부되지 않은 세금의 납부를 위해 수입업자에게 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새롭게 도입된 저가 수입품에 대한 GST 과세 정책은 기존의 1,000호주 달러를 상회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한 DIBP의 역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저가 한계치 아래의 제품에 대해 호주 국세청(ATO)으로 GST 납부를 위한 징수와 평가 책임 등의 역할이 비거주자 공급업자, 전자적 분배 플랫폼 운영업자, 재배송업자에게 부과되어, 호주 세금 체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들 업체에게 행정적인 부담을 주게 되었다.

저가 수입물품에 대한 GST 부과에 따라 새롭게 의무가 부과된 비거주자 공급업자 등은 누구이며 이들의 GST 부과 책임 및 등록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업자는 제품의 판매자를 의미한다. 이들이 소비자에 의해 수입되는 저가 제품을 판매하고 호주로 그 제품을 가져오는 것을 도와주었다면 그 판매에 적용되는 GST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단, 그 판매가 GST에 책임이 있는 플랫폼 운영업자를 통한 공급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즉, 공급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다면 그 플랫폼 운영업자가 공급업자를 대신하여 이들 판매에 대한 GST 부과 등의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 공급업자는 일반적으로 호주 이외의 외국에 기초를 둔 업체이나 소비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수입되고 호주 밖으로부터 원천을 둔 제품을 판매하는 호주 기업이라도 새로운 법 하에서 GST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만약 공급업자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GST를 위해 등록되었거나 등록하는 것이 요구된다면 이들 판매에 대해 GST를 부과해야 한다.

둘째, 전자적 분배 플랫폼 운영업자(EDPs)는 상인들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한 운영업자이다. 이들 플랫폼 운영업자도 그들의 플랫폼을 통해 상인들이 호주에 있는 고객에게 저가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GST 목적을 위한 공급업자로 취급된다.

셋째, GST에 책임이 있는 재배송업자는 제품이 배송되도록 호주 밖의 주소의 사용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도와주는 해외메일박스 서비스나 수령인의 대리인으로써 호주 밖에서 제품의 구매를 지원하거나 구매하는 쇼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호주로 제품을 가져오는데 도움을 준 업체를 말한다. 그러나 공급업자나 전자적 분배 플랫폼 운영업자 또한 호주로 제품을 받는 것을 지원한다면 이들 업체가 재배송업자를 대신하여 GST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운송업자는 보통 재배송업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급업자나 플랫폼 운영업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계약되어 있고 해외 메일박스나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업체가 제품을 구매하고 재판매한다면 이 업체는 재배송업자가 아니라 오히려 공급업자이다.

이상의 GST 부과 책무 당사자가 GST 부과 등의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는 GST를 위해 등록하거나 등록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 제품이 소비자에게 저가 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이들이 호주로 그 제품을 획득하는데 도움을 준 경우이다.

GST에 책임이 있는 3 주체 가운데 단지 한 주체만이 하나의 판매에 대해 GST를 부과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선순위는 만약 플랫폼 운영업자가 판매에 대해 GST 책임이 있다면 공급업자는 GST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리고 만약 플랫폼 운영업자나 공급업자가 판매에 대한 GST 책임이 있다면 재배송업자는 GST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한편 GST 부과 책무 당사자의 호주 국세청(ATO)으로 GST 등록 기준은 공급업자의 경우 GST 매출액²⁷⁾, 플랫폼 운영업자의 경우 해당 플랫폼을 통한 매출액, 재배송업자의 경우 호주로 도착하는데 소비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요금과 GST가 적용되는 다른 저가수입제품 판매 가격이 각각 12개월 기간 내에 75,000호주 달러 이상인 경우이다.

공급업자, 플랫폼 운영업자 및 재배송업자가 반송된 제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환불한다면, 그 제품에 대해 징수한 GST를 환불해야 한다. 만약 환불을 했고 호주 국세청으로 GST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해당 금액만큼 다음 GST 보고에서 지불해야 할 GST를 공제할 수 있다.

GST 부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저가 수입품에 대해 GST 부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이 그의 호주 사업자 번호(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와 그가 GST 등록업체라는 것을 확인한 경우이다. 둘째, 다양한 제품이 혼합하여 1,000호주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의 탁송품으로 호주로 선적되는 것이 명확하다면 GST가 국경에서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그 판매에 대해서는 공급업자 등이 GST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 셋째, GST 면제(예를 들어 몇몇 의료제품공급업자는 GST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는 매입세액 공급(input taxed)으로 알려진 제품으로 GST가 그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공급업자 등의 GST 책무는 예외적인 GST 면제 제품 등이 아니고 기업이 아닌 개인의 1,000호주 달러 이하의 호주로 수입되는 저가물품

27) 비거주자 공급업자가 GST 등록의 최저한계치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할 때 호주 고객에게 판매한 서비스나 디지털 제품과 같은 GST가 적용되는 다른 판매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 대략, GST 매출액은 호주와 연결되고 GST가 적용되는 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급으로부터의 총 소매판매수익이라고 할 수 있다.

에 대해 적용된다.

저가 수입물품에 대한 공급업자 등의 GST 부과와 별개 수입이므로 수입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저가수입물품이 항공이나 해상을 통해 호주로 도착한다면, 이들 제품은 자가평가신고(Self-Assessed Clearance (SAC) Declaration)를 해야 한다. 이 신고에 대한 요금은 없다. 이것은 그들의 서비스가 관여되는 화물회사나 포워더에 의해 다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편이나 소포를 통해 도착한 화물은 별도의 자가평가신고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 대신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정보가 담긴 우편 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 (N10) - Post (B374 Form))를 호주 국경수비대에 보내야 한다. 일단 호주 국경수비대에 의해 우편이나 소포를 통한 화물이 통과되면 이들 제품은 호주 우정국에 의해 배송될 것이다. 이들 제품의 가치를 평가할 때 호주 국경수비대가 그 제품의 가격에 관해 신고자에게 증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신고된 가격을 실증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서신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제품의 신고 가격이 호주 국경수비대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그 제품은 호주 우정국에 의해 수신자에게 배송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제품의 신고가격이 호주 국경수비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신고자는 호주 우정국으로부터 그 화물에 대한 수입신고서를 호주 국경수비대로 전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첫 번째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다.

3

AEO 제도

(1)

제도의 도입

가. 도입 경과

호주는 APEC 2007의 주최국으로써 실제적 공급망 안전조치를 개발함으로써 호주 지역 내의 공급망 안전을 위한 호주세관의 업적과 리더십을 보여주하고자 2006년 7월에 AEO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Pilot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Pilot 프로젝트의 목적은 첫째, 수출업자, 수입업자 그리고 공급망에 있는 다른 당사자들에 대한 보안 인증을 위한 신청과 평가절차를 테스트하고 미세조정하기 위함이고 둘째, Pilot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약정한 다른 세관당국으로부터의 상호인정의 협정에 도달하기 위함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IBM Australia, Fonterra Australia, Murray Goulburn Co-Operative Limited, the Foster's Group, Australia Meat Holdings 등 5개의 호주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호주세관은 AEO 프로그램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는 업무절차를 개발하고 최소 안전 요구를 평가하고 인증절차와 신청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다. Pilot 프로젝트의 시행절차는 첫 번째 단계로 WCO SAFE Framework의 부록 2(만관 협력에 따른 기술표준)에서 서술하고 있는 표준에 기초한 최소안전기준을 개발하고, 미국의 C-TPAT, 뉴질랜드의 안전 수출 파트너십 프로그램(Secure Export Partnership Programs)과 같은 AEO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했다. 두 번째 단계로, 최소 안전기준 개발과 관련하여 또한 기타 관련된 호주 정부기관 프로그램, 특히 검역과 항공 안전에 적용되었던 기준 등을 벤치마킹했다.

세 번째 단계로, 참여한 기업들이 적절히 개발된 안전기준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와 인증을 위해 호주세관에 제출되었다. 네 번째 단계, 참여회사들의 방문평가 허용에 따라 호주세관은 각 Pilot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방문평가 하였다. 이 같은 AEO Pilot 프로젝트를 통해 궁극적으로 호주 AEO 프로그램이 국제무역에 있어서 안전성을 개선하고 동시에 합법화물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상호보완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안전성과 원활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업계들 사이의 협력적 협정을 통해서, 그리고 정부 간 상호인정 협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나. 운영 현황

호주의 AEO 제도인 ATT(Australian Trusted Trader) 제도는 2015년 ATT programme 고시에 법적 기반을 두고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ATT 신청업체는 이민국경보호국(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DIBP)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양식에 신고서명을 해야 한다. ATT 참여업체는 신청서 제출 전 최소 2년 동안 수출입 관련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신청업체는 재무기준, 관세 관련법 준수, 운영시스템역량, 소통과 정보의 수준, 수출입과 관련된 다양한 안전 조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물적 검사 및 감사(Physical Inspection and Audit)는 이민국경보호국은 12개월 내에 업체가 자진 신고한 공급망 안전 및 무역준수 기준에 대한 검사 및 감사를 실시한다. 이민국경보호국이 업체가 자진 신고한 내용의 평가 결과에 만족할 경우, 업체는 '신뢰무역업체(Trusted Trader)' 지위를 계속 유지하며 추가적인 혜택을 누린다. 업체의 지위는 주기적인 재심사 등 이민국경보호국의 관리를 받아야 유지될 수 있다. 어떠한 지위에서건 공인을 받으려면, 참여자의 혜택 및 의무사항을 기재한 '신뢰무역업체합의서(Trusted Trader Agreement, 이하 TTA)'를 이민국경보호국과 체결해야 한다.

관세청장은 업체가 ATT 공인기준을 미충족 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ATT 지위는 정지 및 변경 또는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업체가 ① 영연방, ② 업체의 국제공급망 안전 ③ ATT 제도 시행의 목적 등에 심각한 위협을 끼친다면, ATT 지위는 즉각 정지될 수 있다. ATT 해지 후, 업체의 ATT 지위 및 관련 혜택은 사라지고, 해지 후 3년 내 재신청할 경우 해지내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ATT 공인의 일반기준은 ① 세관요건 준수사항, ② 상업기록관리만족시스템, ③ 재무건전성, ④ 협의, 협력 및 소통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세관요건 준수사항은 관세관련법 준수으로써 신청업체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간 관세 관련법 준수가 양호한 수준이어야 한다. 또한, 담당관리자, 거래업체, 신탁인, 직원 등 수출입활동에 관련된 이들의 지난 10년간 관세법 관련 위반사례나 영연방, 국가, 지역의 법령 위반 사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둘째, 상업기록관리만족시스템은 재무정보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역량, 물류기록관리 등이 있다. 재무정보기록은 수출입 활동과 관련하여 신뢰할만하고, 추적가능하고 안전하게 확보된 기록에만 한정한다. 시스템운영역량은 신청업체가 사용하는 전자 또는 수동 운영시스템은 정확한 기록이 가능하며, 호주 이민국경보호국 직원(IBP)이 아래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생성한다.

- (1) 신청업체가 영연방에 제공한 수출입활동 정보가 정확한지 평가한다.
- (2) 신청업체가 관세 관련법, 본 법령(ATT고시) 및 체결한 TTA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 (3) (1)에 언급된 대로, 영연방에 제공된 정보 출처를 확인한다.
- (4) 거래 및 신청업체의 수출입에 관한 감사추적을 입수한다.

또한, 신청업체가 사용하는 전자 또는 수동 운영시스템은 신청업체의 수출입 관련 금융 거래, 신청업체의 수출입 활동 중 일부 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신원을 분명하게 기록한다. 물류기록관리시스템은 수출입 관련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신뢰할만하고, 추적가능하며 안전한 시스템을 말한다. 신청업체는, 비인가 된 사람이 시스템에 무단 접근하여 데이터를 취득, 조작 또는 삭제할 수 없도록 효과적인 관리 절차를 보유해야 한다.

셋째, 재무건전성 기준은 재무 기준은 신청업체는 상환만기일이 다가오는 대로, 모든 채무를 상환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업체는 감사 보고서의 재무비율, 대차대조표, 기업해산, 주 소유자 파산 등의 최근 2년간 재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협의, 협력 및 소통 기준을 살펴보면, TTA에 따라 업체는 변동사항, 수출입 활동에서 관세 관련 법 및 ATT 고시 또는 TTA를 준수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 관세 관련 법 및 ATT 고시 또는 TTA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ATT 고시상 위법행위에 대한 유죄선고 등의 사항을 인지한 후 신속하게 이민국경보호국에 알려야 한다.

ATT 공인의 안전관리기준은 ① 교육 및 훈련, ② 정보교환, 접근 및 기밀, ③ 화물안전, ④ 운송수단 안전, ⑤ 사업장 안전, ⑥ 인사관리, ⑦ 거래업체관리, ⑧ 측정, 분석 및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교육 및 훈련은 인사보안과 직원훈련을 나타낸다. 업체는 관세관련법 준수나 화물안전에 관여하는 직원이나 거래업체에게 관련 교육을 (법규준수 교육 등) 제공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조치를 취한다. 직원훈련은 신청업체는 수출입 안전을 위한 역할 또는 무역준수 활동과 관련하여 직원을 교육시켜야 한다. 직원의 잠재위험 확인절차뿐만 아니라 교육의 성격, 수출입 활동을 하는 직원에 대한 관리 수준은 구체적으로 한다.

둘째, 정보교환, 접근 및 기밀은 소통 및 정보 수준, 정보소통기술(ICT) 환경을 나타낸다. 업체는 소통 및 정보 수준을 위해 업체가 사용하는 전자 또는 수동 운영시스템이 생성하고 입력하는 수출입 관련 정보는 정확해야 하고, 업체가 영연방(호주 관세청장, 이민국경보호국직원, 다른 정부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는, 관세관련법, ATT 고시 또는 TTA 요건을 따라야 한다. 또한, 업체는 정보의 남용, 손실 및 무단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업체의

수출입 활동의 일부를 맡아서 하는 사람과 업체 간의 연락, 업체의 수출입 활동과 관련하여 업체와 영연방(관세청장, 이민국 직원, 다른 정부기관 간) 간의 연락 조치를 취한다.

ICT 환경은 ① 재무, 운송 기록 관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어플/ 업체 자체 개발된 어플 인지, 시장에 출시된 상용 어플인지 여부, ② 서버를 사용 및 안전 등 IT하드웨어의 물리적 안전, ③ IT 인프라 지원을 외부 위탁을 통해 하는지, 내부관리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④ 어플 및 파일 저장 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내 관리하는지, 위탁관리하는지 여부, ⑤ 데이터 중복 및 시스템 간 모순되는 데이터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시스템 간의 연계성, ⑥ 바이러스 보호 및 방화벽 사용 등의 시스템 안전, ⑦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의 시스템 접근 방법 및 접근 기록방법(로그인), ⑧ 백업/회복 및 재난 복구 절차, ⑨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과 같은 시스템 변화 관리를 위한 절차, ⑩ 데이터 처리나 데이터 무결성 문제 등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 ⑪ 시스템 안전 침입의 파악 및 조사를 위한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화물안전은 화물의 불법, 무단 이동, 변경 또는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화물의 이동, 변경 또는 개입(관세법상 허가 또는 승인된 경우 제외)을 막기 위해 세 관통제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를 위해 컨테이너 안전, 화물보관, 화물처리작업 등을 수행한다. 컨테이너 안전은 업체가 컨테이너의 불법 또는 무단 변경이나 개입을 막기 위해 ① 화물 포장 전, 그리고 운송 중, 컨테이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 ② 운송 중 안전을 위해 적절하게 봉인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해야 한다.

화물보관은 업체가 수출입 화물, 보관화물 및 그 화물 관련 데이터의 안전 및 무결성을 위하여 관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보관기간 중 화물의 불법 이동, 변경 또는 변경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관리 및 모니터링 절차는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1) 재고기록 및 관리
- (2) 세관/비세관 품목 파악
- (3) 동일 사업장이나 다른 사업장 간 화물 이동(이동에 관한 기록)
- (4) 정확한 확인 및 수치
- (5) 거래특성의 정확한 기록
- (6) 감사 대상 데이터/감사 추적 활용
- (7) 물품의 정확한 세관통관 상황(가능한 경우)
- (8) 시의적절한 거래기록

화물처리작업은 수출입 관련 제조품 및 가공품의 운송, 취급, 보관과 관련된 과정 및 데이터의 무결성을 위하여 통제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을 중심으로 통제 및 감시절차를 마련한다.

- (1) 처리결과 및 편차
- (2) 정확한 파악 및 정량화
- (3) 거래 속성의 정확한 기록
- (4) 감사 데이터/감사 추적의 이용
- (5) 정확한 상태
- (6) 정확한 (과세) 가격; 그리고
- (7) 시의적절한 처리결과와 기록

넷째, 운송수단 안전은 운송안전, 컨테이너 안전, 화물수송 등을 관리한다. 먼저, 운송 안전은 업체가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① 화물의 안전을 기하고, 운송 도중 불법 또는 무단 이동, 변경 또는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조치, ② 물품과 관련된 상업 또는 기타 문서를, 업체 사업장으로 반입, 반출되는 물품과 일치시키는 조치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한다.

컨테이너 안전은 불법 또는 무단 변경, 또는 개입으로부터 컨테이너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체는 ① 화물 포장 전, 운송 중의 컨테이너 안전을 위한 조치, ② 운송 중의 화물 안전을 위해 컨테이너에 적절한 봉인을 하는 조치사항을 포함한(단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화물수송은 수출입 화물의 운송, 취급 및 보관에 관련된 과정 및 데이터의 무결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화물 이동시, 불법 이동, 변경, 개입으로부터 화물을 지키기 위해 다음을 중심으로 통제절차를 마련한다.

- (1) 판매 주문서, 송장, 운송량/운송제품의 대조
- (2) 정확한 파악 및 정량화
- (3) 거래속성에 대한 정확한 기록
- (4) 감사 데이터 및 감사 추적 이용
- (5) 정확한 상태/원산지
- (6) 정확한 상품 코드
- (7) 정확한 과세 가격
- (8) 정확한 목적지; 그리고
- (9) 시의적절한 운송 기록

다섯째, 사업장 안전은 사업장에서의 시설/장비 관리를 말한다. 업체의 사업장에서 ① 허가 받은 사람만의 출입을 허용하며, 사업장 및 사업장 화물에 접근을 통제하는 조치, ② 사업장으로의 반입 또는 반출 동안, 그리고 사업장에 물품을 보관하는 기간 동안 불법 또는 비허가된 이동, 변경 또는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조치 등의 안전 조치를(단, 다음에 국한되지 않는) 취한다. 또한, 해당되는 경우 업체는 수출입 과정 중 울타리, 출입구 및 경비실, 주차, 건물구조, 잠금장치 등, 조명, 정보시스템 및 비디오 감시 카메라 등의 물리적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울타리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물품취급 구조물 안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여 내국물품, 외국물품, 고가물품, 위험물품을 구분하여야 한다. 수출업체는 모든 울타리의 무결성과 손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출입구 및 경비실은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하고, 적절한 출입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주차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개인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건물구조는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을 건축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잠금장치 등은 모든 내·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회사 관리자는 열쇠와 자물쇠의 발급을 관리하도록 한다. 조명은 현관 및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및 비디오 감시 카메라는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무단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정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여섯째, 업체는 인사관리를 위해 ① 업체의 수출입 활동에 있어,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 직원 및 채용 예정자 또는 현/예정 거래업체에 대한 조사, ② 준수교육 등을 포함하여, 관세 관련법 준수 또는 화물 안전 준수에 참여하는 직원 및 거래업체를 위한 관련 교육, ③ 업체가 승인을 하지 않는 이상, 퇴사 직원 및 계약 종료된 거래업체의 사업장 출입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채용 예정자 심사 및 주기적인 현 직원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인식 및 적절한 안전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사전 검증을 위해 채용예정자의 입사지원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신원조회 및 조사를 위해 국외, 국내, 주 및 지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채용 후에는 직무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퇴사직원의 신분증과 시설 및 시스템 접근권한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안전 교육 및 위험 인식을 위해 안전요원은 위험인식프로그램을 수립 및 유지하여 안전 위험 인식을 고취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IT 시스템 접근을 허용하거나 회수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거래업체관리이다. 거래업체는 수출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계약을 맺은 업체를 의미한다. 거래업체는 계약서에 의해 참여하게 된다. 업체는 서비스 제공업자, 제조자, 제품 공급업자 및 벤더 등 거래업체를 점검 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 문서화된, 검증 가능한 절차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해당되는 모든 업체에 대해 ① 거래업체의 확인 및 선정 절차, ② 거래업체와 합의한 안전조치 절차 및 지침, ③ 거래업체의 안전사고관리 등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업체는 ATT 안전기준에 맞게, 안전 절차를 거래업체가 개발하도록 하여 화물수탁지점(또는 원산지)에서의 운송 무결성을 높이도록 한다. 거래업체의 절차 및 시설에 대해 위험 기반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참여자가 요구하는 안전기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수출입에 있어 직접적 역할은 없지만, 업체가 마련한 안전무역준수 절차 또는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당사자도 안전관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해야 한다. 이때, 수출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와 (ATT)신청업체가 맺은 계약서에 안전 요건을 포함시키고, 안전요건 준수를 점검한다. 운송, 안전, 청소 및 유지 등의 외주 서비스 거래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안전 요건을 반드시 포함시킨다.

여덟째, 측정, 분석 및 개선은 안전조치 일반, 안전위험 평가로 구성된다. 안전조치 일반은 신청업체가 안전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업체의 수출입활동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한다.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안전위험 평가는 업체가 수출입 활동과 관련하여 문서화된 안전위험평가를 실시했어야 한다. 안전평가절차는 업체의 수출입활동에 관련된 모든 사업장을 포함한다. 업체가 운영하는 수출입활동에서 생겨날 수 있는 안전위험을 다루고, 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한다. 수출입 활동에서의 업체 역할에 있어서 안전 위험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장 및 물품에 대한 물리적 위험, 거래업체를 위한 제도 및 외부 안전서비스조직이 수행하는 위험 평가 등을 수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다음에서 나타나는 또는 다음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요소로 고려한다.

- (1) 취급하는 물품의 종류
- (2) 업체의 수출입 활동에서 사용되는 사업장 및 건물(보관, 과정, 운영 등 목적별로 구별)

- (3) 방문객 출입, 직원 출입, 직원 채용 및 훈련, 임시근로자 및 하청업체 근로자 채용
- (4) 화물의 운송, 적재 및 하역
- (5) 컴퓨터 시스템, 회계기록 및 문서
- (6) 하나 이상의 외부 당사자가 요구하는 안전 절차 및 조치
- (7) 제3당사자의 안전 인증

(2) 공인 절차

ATT는 공인을 신청하기 전에 국제공급망에서 최소 2년 동안 활동을 하고 호주 사업자 번호가 있는 재무건전성을 갖춘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가. 공인 신청

업체가 ATT 공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첫째, "ImmiAccount"에 등록해야 한다. ATT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사업운영 방법을 이해하고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의 일반적인 정보, 시스템 및 기록, 인사보안, 제3자 및 물리적 보안 등의 정보를 신청서에 포함해야 한다.

나. 현장방문(확인)

호주세관은 업체의 공급망 보안 및 무역 준수 프로세스가 세관의 ATT(Australian Trusted Trader Program)고시를 충족하는지 평가한다. 세관은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담당직원을 만나 상호 협력하여 업체의 공급망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한다.

다. 공인 결과보고(통과/기각)

호주 세관은 업체의 신청서를 평가하여 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업체의 신뢰성이 확인되면 ATT 인증을 제공하고 호주 영연방과 공식 계약을 체결하고 ATT의 혜택을 누린다.

라. 사후관리(지속적인 파트너십)

ATT 인증은 호주 세관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다. ABF AM이 업체에게 자격이 되는 혜택에 대한 접근을 도와준다.

(3) 주요 혜택

ATT는 국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의 관료제적 형식주의를 감소시키고 수출 시장의 확실성을 개선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안팎으로 화물의 흐름을 촉진함으로써 리드타임을 단축시켜 시장에 보다 빨리 접근 할 수 있다. ATT 공인업체는 세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ATT 혜택을 통해 업체의 비즈니스 시간 및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

ATT의 주요 혜택을 정리하면 AM 지정, 우선 처리(priority processing), 우선 통관(priority treatment of goods at the border), 세관 협력 및 ATT 행사 초대, 로고 사용, MRA, 데이터 관리(data report), 간단한 TSS 비자 절차, APEC 비즈니스 여행 카드, 혼재된 화물통관, 관세지연, 원산지 사전판결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AM 지정은 ATT 인증을 획득하면 업체의 AM으로 ABF(Australian Border Force Officer)를 배정한다. 업체의 AM은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단일 연락창구가 되어 아래 문제를 해결한다.

- (1) 법규준수도 향상
- (2)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국경 통관 문제 해결
- (3) ATT 혜택, 이벤트, 규정변경 및 비즈니스 관련 기타 정보 제공

둘째, 우선 처리는 National Trade Advice Center와 National Refunds Intervention을 통해 관세, 평가 및 원산지, 선관위 검토, 관세 환급 청구 및 관세 수입, 관세 환급 및 면제 신청과 관련된 사전 판결을 포함하여 우선 처리를 받는다. ATT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는 관세, 평가 및 특정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선행 규칙에 우선 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우선 통관은 ATT 업체가 비즈니스가 위험이 낮은 것으로 간주하고 국경에서 우선 처리를 제공한다. 이는 빠른 세관 절차와 세관의 개입의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화물 검사가 필요한 경우 우선 처리를 받는다. ATT로부터의 수입할 경우, 위험이 낮

은 것으로 간주되어 도착할 때 검사가 축소된다. 국경에서 경험한 모든 문제 (예 : 시험 상품)에 대해서는 AM에게 문의하여 상품에 우선순위가 부여되도록 할 수 있다.

넷째, ATT 업체는 사업 이행과제 또는 실행계획을 정부와 협력하여 협상을 진행할 수 있고, ATT 독점 행사에 초대된다. Australian Border Force는 호주 공인 상인의 향후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공인 된 상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무역 촉진 혜택을 모색하기 위해 업계와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TT 업체는 업계와 관련된 이행과제 또는 실행계획에 참여하고 주요 정부 의사 결정권자와 협력하며 미래의 무역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ATT의 다양한 포럼을 통해 산업자문그룹회의, ATT 심포지엄 등에 초청되어 내무 및 호주 국경 관리 임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섯째, ATT 업체는 ATT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로고는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한다. ATT 로고는 호주 상인 및 공급망의 보안에 대한 신뢰를 구축한다.

여섯째, ATT는 국가 간 상호인정약정에 따라 호주의 ATT 공인 자격을 인정한다. ATT 공인을 받은 수출업체는 파트너 국가의 국경에서 무역원활화 혜택을 받으며 국제 시장에 빠른 접근이 가능하다.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는 호주가 정한 계약을 맺은 경제에서 호주의 신뢰할 수 있는 거래자를 인정한다. 이러한 협정은 파트너 국가의 경제에서 귀하의 물품에 우선순위 대우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해지므로 해외 시장에 대한 예측 가능성, 확실성 및 배포 속도가 향상된다. 호주는 캐나다, 중국, 홍콩, 뉴질랜드,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의 국가와 MRA를 체결하였다.

일곱째, 호주 사업자 번호로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월별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고 사기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월간 화물데이터 보고서는 매월 AM이 호주사업자번호(ABN)로 수입 및 수출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보고서를 e-mail로 발송할 수 있다. 월별 보고서는 공급망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월별 보고서는 상품을 가져 오거나 내보내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업체인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

여덟째, TSS 비자 후원 인증은 ATT 인증 업체로서 TSS (Temporary Skill Shortage) 비자에 대한 공인 스폰서가 되기 위한 간소화 된 액세스가 가능하다. TSS 비자는 숙련 된 호주인을 찾을 수 없는 진정한 숙련 된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TSS 비자 소지자는 최대 4 년간 호주에서 일할

수 있다. 이는 지명된 직업, 비자 흐름 및 상황에 따라 다르다.

후원인증 신청은 비즈니스 스폰서가 되기 위해 신청하거나 스폰서십을 갱신 할 때 공인 스폰서가 되기를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해야 한다. 처리 사무소는 업체가 ATT 인증 상태를 신청서와 자동으로 일치 시키며, 세관은 합리적인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평가한다. 공인 자격을 취득하면 TSS 지명 및 비자 신청서가 우선 처리되어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은 5일 이내에 처리된다.

아홉째,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비즈니스 여행 카드 (ABTC)는 일부 아시아 태평양 경제 국가에 보다 빠르고 쉽게 진입 할 수 있게 해주며 많은 국제공항의 ABTC 소지자를 위해 출입구를 빠르게 추적한다.

ATT 공인업체로서 최고경영자, 사업목적의 잦은 여행, ABTC 개인 신원 및 범죄 기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ABTC의 일부 기준을 자동으로 만족한다. 성공적으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여권 세부 정보와 별도의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도 입국 및 체류 할 수 있는 장소를 열거한 ABTC를 발행받을 수 있다.

열 번째, 혼재된 화물통관 혜택은 모든 해상화물 및 항공화물 유형에 대한 여러 화물 신고서에 포함된 화물에 대해 단일 수입 신고서를 접수 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수입 처리 수수료 (IPC) 만 지불하면 된다.

운송 업체 및 화물 운송 업체는 지금도 화물 보고서를 제공해야하지만 단일 수입 신고를 통해 통합 발송물이 삭제된다. 모든 해상 및 항공화물의 경우 ① 선하 증권 또는 선하 증권 번호는 동일, ② 수입업자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 등 하나 이상의 운송 라인 (HAWB / HBL / 컨테이너)이 있는 경우 여러 공급 업체가 하나의 수입 신고에 등재 될 수 있다.

열한 번째, 관세 연기 혜택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월별 지불로 연체료 지불을 연기하기 위해 재화소비세(GST)를 연기를 허용한다. 단일 인보이스가 생성되어 전자로 비즈니스에 전송되며 지정된 은행 계좌에서 자동 인출 될 수 있다. 이 혜택은 증가된 현금 흐름 및 관리 프로세스의 감소를 통해 ATT 업체를 지원한다.

재화소비세 (GST)를 부과하는 ATT 업체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월말에 지급하는 월간 21일 지불 상품이 수입됩니다. 예를 들어, 3 월에 수입 된 모든 해당 상품에 대한 관세는 4 월 21 일 또는 다음 은행 근무일에 계좌에서 인출되어야 한다. 이 혜택은 GST 연기 계획을 통해 GST 지불을 연기하고 WET (Wine Equalization Tax) 또는 LCT (Luxury Car Tax) 의무가 없는 ATT 수입업자에게 제공된다. ATT 업체는 의무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 단위 지불금으로 연기함으로써 현금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열두 번째, ATT 원산지 사전판결은 ATT 수입업자가 다중관세 분류 및 위탁으로 상품의 사전판결을 적용하여 원산지 증명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ATT 업체의 원산지 사전판결 특혜는 중국-호주 자유 무역 협정 (ChAFTA)에 따라 상품을 수입하는 ATT 업체를 지원한다. 이 혜택은 ATT 수입 업체가 ChAFTA에 따른 원산지 및 위탁 규칙을 충족하는 다수의 관세 분류 및 위탁품으로 분류 된 상품을 나타내는 단일의 특별 선고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AT & T 원산지 사전 판결은 여러 가지 기존의 사전 판결에 대한 필요성을 대체하며 5년간 유효하다. 이 혜택은 ChAFTA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는 공인 수입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ATT 업체는 원산지 증명서 획득과 관련된 제3자의 직접 비용에 대한 관리 부담을 줄이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4

MRA활용 방법

- ① <한국 관세청>은 한국 AEO 수출기업 공인정보 송부 (한국 관세청 → 호주 관세청)
- ② <한국 AEO 수출기업>은 호주 관세청으로부터 발급받은 별도의 해외공급자 ID Code(11자리 구성)를 호주의 수입자에게 통보
- ③ <호주 수입자>는 호주 관세청의 통합화물관리시스템(ICS)에 수입신고 시 통보받은 해외공급자 ID Code를 기재
- ④ <호주 관세청>은 한국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한국 AEO 수출기업 공인정보와 대조하여 MRA 혜택 부여

<한-호주 AEO MRA 혜택>

수입검사를 축소	• AEO 화물이 수입되는 경우 검사를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 AEO 화물에 대한 수입신고시 서류심사 비율 축소
우선 통관 조치	• AEO기업 화물의 경우 우선 검사 및 서류심사 실시
세관연락관 지정	• 양국 간 즉시 연락할 수 있는 컨택포인트 지정
비상시 우선 조치	• 천재지변, 테러 등 비상 발생 시 AEO화물 우선 조치

〈호주 수입신고화면〉

Line No 1

Supplier ID 12093584522 find Supplier TIN

Vendor ID

Tariff Information

Tariff Classification No 63021000 Statistical Code 10 Related Transaction Ind ☐

Valuation Basis Type TV Treatment Code GST Exemption Code

Goods Description DUTY TAXES AND CHARGES AUTOMATION Quantity 1000.0 Unit NO Add

Type	Amount	Currency
Valuation Elements		
Price	5000.00	AUD f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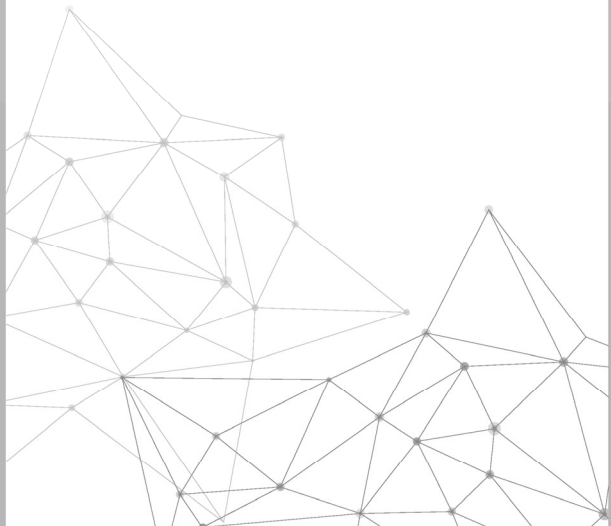
Origin/Preference

Origin Country Code ID Preference Origin Country Code find Preference Scheme Type GEN Preference Rule Type

유럽(Europe)

터 키

(Turkey)



1

국가 개요

일반 사항	국 명	터키공화국(Republic of Turkey)
	면 적	78만 3,562km ² (남한의 7.8배)
	수 도	앙카라(Ankara)
	인 구	8,080만 명(2017년)
	주 요 도 시	이스탄불(1,480만 명), 앙카라(535만 명), 이즈밀(422만 명) 등
	민 족	터키계(80%), 쿠르드계(17%), 아랍인(36만 명), 아르메니아인(5만 명), 소수의 유태인 등
	언 어	터키어(공용어), 쿠르드어,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정치	건 국 일	1923년 10월 29일
	정 치 체 계	대통령 중심제
	국 가 원 수	대통령: Recep Tayyip Erdogan(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 2014년 8월 28일 최초 취임 이후 재선(2018년)
경제	화 폐 단 위	Turkish Lira(TL)
	1인당 GDP	10,597달러(2017년)
	교 역 량 (2018년 기준)	수출: 168,023 US\$ Mil
		수입: 223,039 US\$ Mil
	주요 교역품	자동차 및 엔진, 컴퓨터, 전자제품, 석유, 의류, 농산물 등

자료원: 터키 중앙은행, 대외무역청, 통계청, OECD, Sta, WITS(wits.worldbank.org)

한 / 터키 관계	
교역 규모	대 터키 수출(2019년) : 5,297,808 US\$ Thousands 대 터키 수입(2019년) : 1,189,057 US\$ Thousands 무역수지(2019년): 4,108,751 US\$ Thousands
교역 품	• 대 수출 주요 수출품목 : 합성수지, 철강, 자동차 및 부품류, 평판디스플레이, 석유화학합성원료 등 • 대 수입 주요 수입품목 : 의약품, 기계부품, 수목 및 식물류, 자동차부품, 의류, 항공기부품 등
투자 교류	• 우리나라의 대 터키 투자액 → (1987~2017) 신고 : 650건/ 27.1억 달러 • 터키의 대 한국 투자액 → (1996~2015) 신고 : 94건/1,860만 5,000달러
교민	총 교민 수 약 2,800명(2016년, 해외거주 신고기준)

자료원: 터키 대외무역청,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외교부, 관세청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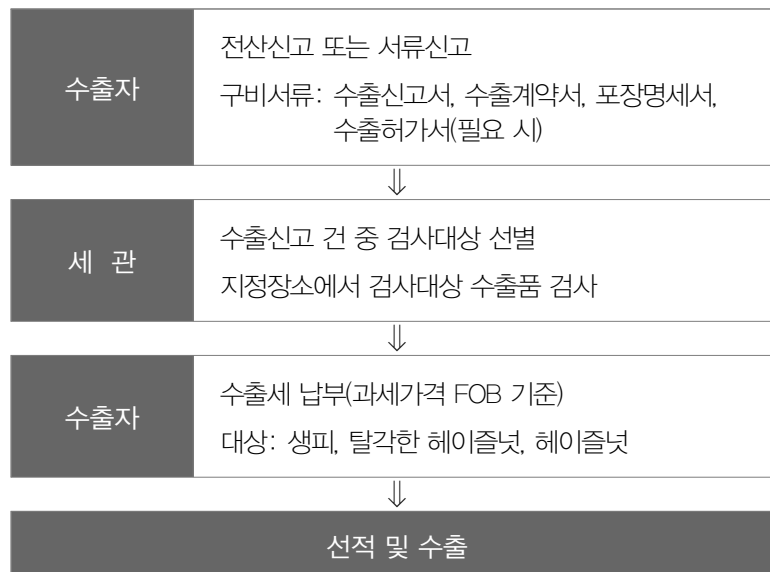
통관절차

(1) 수출 통관절차

수출자로부터 전산 또는 서류로 수출 신고를 받은 세관은 검사 대상 물품을 선별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FOB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수출세를 부과하며 수출세 납부 대상 물품은 수출세 납부 후 선적되어 수출됨으로써 수출 절차가 완료된다.

터키는 일부 품목의 수출 시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대상 품목은 생피(raw skin)와 탈각하지 않은 헤이즐넛(unshelled hazelnuts), 탈각한 헤이즐넛(shelled hazelnuts)이다. 생피는 kg당 0.5달러, 헤이즐넛은 kg당 0.04달러, 탈각한 헤이즐넛은 kg당 0.08달러가 수출세로 부과된다.

〈그림 59〉 터키의 수출통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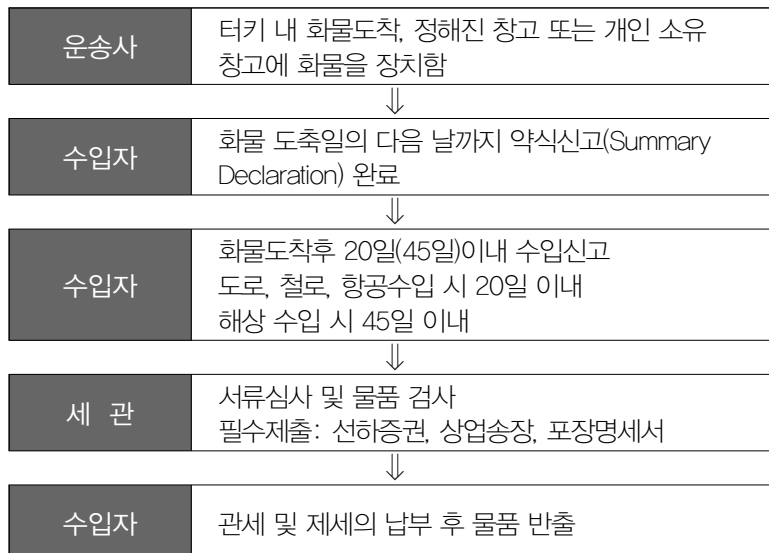
(1) 수입 통관절차

터키의 수출입 절차 전반은 유럽연합의 절차를 준수한다. 터키 관세법(Customs Law No. 4458)에서는 터키의 관세 지역으로의 물품 수출입과 그 운송 수단에 적용되는 규칙을 정하고 있으며, 터키의 통관 실무와 EU 실무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터키 전역에 143개 세관이 있고, 그 중 71개소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71개 세관에서 터키 무역량의 거의 대부분이 통관 처리되고 있다. 터키는 통관 시스템에 의해 통관 절차의 전자화, 데이터 저장 및 보안이 확보되어 있고, 세관의 전자 시스템은 통관 절차를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BILGE'라는 명칭을 가진 세관의 전자 시스템은 화물의 약식 신고, 수출입 신고, 보세창고 절차, 관세 징수, 위험 분석 등의 기능을 한다. 수입업체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BILGE 시스템을 이용해 신고서를 제출, 등록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터키의 수입 통관 절차는 크게 ① 물품 반입 → ② 약식 신고서 제출 → ③ 수입신고 → ④ 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 → ⑤ 관세 및 제세의 납부 → ⑥ 물품 반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BILGE를 이용한 약식신고(summary declaration)는 물품이 세관에 도착한 날의 바로 다음 영업일의 영업 종료 시까지 이행되어야 한다. 약식신고는 수입되는 물품의 개요를 적은 서류의 형식을 취하고, 이 문서는 컴퓨터 시스템을 갖춘 세관에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적하목록 또는 선하증권의 원본이 약식신고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그림 60〉 터키의 수입통관 절차



수입 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물품의 소유자(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다. 도로, 철로, 항공 수입의 경우 물품의 도착 후 20일 이내에, 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물품 도착 후 45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 기한은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수입 신고 시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 Bill)이며 필요 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상업 송장은 원본 포함 3부를 필요로 하며 물품의 완전한 명세와 필요한 모든 지불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출국의 터키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서류 인증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국 현지의 상공회의소가 영어로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수출국의 터키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이 필요하고, 2통을 작성하여 원본 중 1통은 수입 시 관세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2010년, 터키 관세당국은 수입 신고 전 물품의 장치 장소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입업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그들 소유의 창고나 통관대리인(customs agent)의 소유 창고에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특정 세관과 연계된 정부 관리 창고에만 물품 보관이 가능하였으나 창고를 소유한 고객에게 물품을 운송한 후에 장치하거나, 여러 장소로 나누어 장치할 경우 통상적인 통관 시간보다 더 걸릴 수 있다. 따라서 물품이 매우 큰 중량 또는 용적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 소유의 세관의 창고에 반입하여 신고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컨테이너 도착 시 화물 소유주는 3가지 종류(A: Entry, B: 신고인, C: Exit)의 컨테이너 등록 서류(Entry Voucher)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한다. 세관에서 등록 절차 및 등록 서류 번호 부여가 끝난 후 화물 소유주는 B(신고인) 및 C(Exit) 서류를 돌려받는다.

등록된 컨테이너는 서류에 등록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출되어야 하며, 만약 반출이 불가능할 경우 화물 소유주는 만료일 이전에 세관에 불가피한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기간 연장이 인정될 경우 해당 컨테이너는 최장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세관에서는 화물 송장(C/I, Commercial Invoice)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하며, 이때 확정된 매매계약서(Sales Confirmation Contract),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포장명세서(Packing List)도 세관에 의해 심사된다.

수입 신고된 품목들은 적색선(Red Lane), 황색선(Yellow Lane), 청색선(Blue Lane), 녹색선(Green Lane) 등 4가지의 라인으로 구분되어 통관되고 있다.

- Red Line: 위험도가 높은 물품의 검사(전수 또는 랜덤 검사)
- Yellow Line: 서류 심사
- Blue Line: 대형 기업에 적용되는 간단한 서류 심사
- Green Line: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물품, 세관신고서의 제출만으로 통관 완료

물품 검사는 보통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된다. 통상 무작위로 검사하게 되나 평소 언더밸류 거래, 덤핑 수출 등으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쿼터 품목의 경우에는 실제 중량과 서류상의 중량이 일치하는지 까다롭게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중고기계의 통관 시에는 기계의 내용연수가 터키에서 법률로 정한 일정 기간을 초과했는지를 철저하게 검사하며 제작 시한이 넘은 중고기계에 대해서는 통관을 불허하고 있다.

일부 의료용품 및 전기용품은 터키 보건부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나 반입허가서를 물품 검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통상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면 물품 검사 당일 물품 반출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3~4일이 소요된다. 수입 물품 반출을 위해서는 수입자가 관세와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터키 산업통상부 산하 터키표준연구소(TSE)나 보건부 허가서를 취득해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물품 검사에서 통관 시까지 약 2주 이상 소요된다. 2004년 비EU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CE마크 획득을 의무화 하였으며, 통관 시 TSE 테스트를 의무화한다. 대부분의 품목이 CE마크 없이 터키로 수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가. 수입신고전 준비

터키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따라, 그리고 대금 결제 방식(신용장 또는 전신환 송금 방식 등)에 따라 세관에서 요구하는 통관 서류는 달라질 수 있다. 제품에 따라 터키의 바이어가 원산지증명서(C/O) 또는 수출국의 터키대사관 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류, 섬유 식물제품, 비료, 석유화학 제품에 대하여는 수입이 가능한 통관 세관이 따로 정해져 있다.

비EU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수입품에 대해 CE마크 획득을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품목이 CE마크를 필요로 하며, TSE(터키표준연구소)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해야 한다. CE마크 관련 적합성 검사 및 검증, 증명서 발급 등은 EU 내 인증기관뿐

아니라 터키에서 설립된 인증기관(NB)도 수행하고 있다. CE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간단한 추가 절차로 TSE 인증 획득이 가능하다.

일부 자동차 부품은 CE 승인은 물론, 터키 표준 규격(TSE) 승인을 요구한다. 특히 원산지가 유럽이 아닐 경우에는 제품 기술, 품질, 안전과 관련된 검사 외 추가적으로 터키 시장에서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터키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부과 세계 1위 국가이며, 한국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의약품 승인의 경우 성분별로 담당기관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각 성분별로 해당되는 기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HS 품목 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므로 품목 분류 문제는 가장 민감하며 분쟁이 많은 이슈 중의 하나이다. 한국·터키 간 운송에 필요한 1컨테이너당 비용은 8,000 ~ 9,000달러이며, 약 35 ~ 5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입 물품 및 대금 결제 방식에 따라 세관에서 요구하는 통관 서류가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수입 품목이 섬유류인 경우 통상적인 선적 서류 이외에 대사관 인증 및 원산지 증명서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터키 상법으로 원산지 증명 및 대사관 인증이 필수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이어에 따라, 또 바이어의 주거래 은행의 내부 시스템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비해야 한다.

의약품 승인을 위해서는 성분별로 지정된 담당기관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느 한 기관에서라도 성분에 대한 불합격 판정을 내릴 경우 수입통관이 이루어질 수 없다.

CE마크를 획득하더라도 터키 관세당국이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의 자체 적 합성 판정 증명서를 신뢰하지 않고, 터키 내 기술검증기관(TSE)의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CE마크 적용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게 통관이 지연되거나, CE 마크가 요구되지 않는 품목인데도 관세당국이 CE마크를 요구하는 등의 혼란이 있다. TSE 인증에 3~6개월이 소요되며 심사 비용, 시험 비용 등을 지불해야 한다.

동일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 간, 사람 간 다른 관점과 견해를 가지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수입자가 신고한 HS 코드와 다르게 품목 분류할 수 있다. 최근에는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복합 기능을 가진 기계류, IT 기기류 등에 대해 품목분류에 대한 이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HS 코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달라지므로 업체 측과 관세당국 양 당사자에게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터키로 수출하는 품목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 규제 대상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

한 채 수출을 하였다가, 높은 관세 또는 수입상의 수입 거부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수입 중고 기계나 중고 핸드폰, 중고 자동차 부품 등의 판매 목적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물품의 현지 도착 후 수입자의 화물 인수 거부 시 전매 또는 한국으로의 재선적이 불가능함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터키 통관 규정상, B/L 상 수하인(Consignee)의 서면동의 없이 수하인 변경이 불가능하며, 그 결과 서면동의 없이는 보세구역 내 화물의 수하인 변경 및 한국으로의 재선적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은 화물이 현장에 도착한 상태에서 바이어들로 하여금 화물 인수 거부 및 가격 인하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나. 수입신고

약식신고(summary declaration)는 물품이 세관에 도착한 날의 바로 다음 영업일의 영업 종료 시까지 BILGE를 이용하여 이행해야 한다. 수입 물품의 개요를 적은 서류이며, 전자적 제출이 가능하다. 적하목록 또는 선하증권의 원본이 약식신고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터키의 목적항에 도착한 이후, 수입 시 이용한 운송수단에 따라 20일 또는 45일 이내로 수입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로, 철로, 항공 운송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물품 도착 후 20일 이내에, 해상 운송을 이용하여 물품을 수입 시에는 45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터키 영역에 도착한 화물은 세관 지정 창고, 그리고 지정 창고가 아닌 개인 소유의 장소에도 장치가 가능하다.

터키의 총 143개의 세관 중 약 71개소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전자적 방식(GBS)을 통하여 수입신고를 한다. 그러나 작은 도시에 위치한 세관 중에는 통관 업무를 하지 않는 곳도 있다. 터키에서의 수입신고는 대리인(관세사)을 통한 신고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터키에 들어오는 컨테이너 등록 시 세관은 화주로부터 3개의 서류(등록, 변경, 반출)를 받으며, 한 번 수입 신고된 컨테이너는 3개월 이내에 재신고하여 연기 또는 반출해야 한다.

터키는 과세가격에 대해 WTO 관세평가협정을 따르고 있으며, 명백히 낮은 금액이나 허위로 의심되는 금액으로 수입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관세당국은 신고 가격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추가 서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2011년 2월, 유지보수를 이유로 터키의 모든 세관 컴퓨터 시스템이 예고 없이 정지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터키로 수입하려는 또는 터키에서 수출하려던 모든 화물에 대기(waiting)가 발생하고 지연이 불가피하였던 적이 있었다.

터키의 무역 관련 법령과 제도는 EU의 선진국 수준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인 운용과 관련한 관료 행정, 자주 바뀌는 각종 지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EU와 관세 동맹 체결 후 터키의 행정시스템이 유럽 기준에 맞게 변화하면서 시스템이 예고 없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다. 세관의 심사 및 검사

세관에서는 상업송장, 매매계약서 등 수입관련 서류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법률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세관에서는 수입 신고된 물품을 위험도에 따라 적색선, 황색선, 청색선, 녹색선의 4가지 라인으로 분류하여 심사와 검사를 진행한다. 고위험 물품의 경우 적색선으로 분류되어 제품 검사를 받아야 하며, 비교적 저위험 물품인 경우 황색선으로 분류되어 서류심사로 통관처리되고, 위험이 낮은 물품은 녹색선으로 분류되어 단지 세관신고서만으로 통관이 완료되며, 청색선으로 분류된 물품은 단순화된 검사를 실시한다.

터키는 셰이프가드 및 반덤핑 상계 조치 1위국이며, 우리나라에 대해서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무역규제를 발동하고 있는 국가이며, 터키에서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비교적 자주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류의 경우 터키어로 상세정보를 기재한 라벨이 적절히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와인의 경우 양조장 이름, 양조 연도, 품종, 병의 용량, 색깔, 알코올 함유량(%), 함유 성분명과 함량,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주류에는 제품명, 상표명, 생산 회사명과 주소, 수입하는 회사명과 주소, 제품 생산 번호와 생산 날짜, 원산지, 순중량/용량, 성분과 첨가물의 함량 목록, 농림부의 생산·수입 허가 번호와 날짜, 저장 방법 및 이용 안내, 제품 주의 사항, 알코올의 함유량(%)의 기재를 요한다.

심사를 위한 녹색, 청색, 황색, 적색선 지정에 있어 수입물품의 적출국에 따라 라인을 나누는 경향이 있다. 극동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대부분 적색선, 유럽지역의 물품은 황색선, 그리고 수입이 잦거나 잘 알려진 기업이 수입하는 제품은 청색선으로 분류된

다. 중국,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주로 적색선이라는 통관 심사대를 거치게 하여 엄격한 세관 통관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터키 정부는 한국산 및 동남아산 폴리에스터 직물류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하였으며, 직물류 수입통관 지정 세관의 개수가 축소되어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라. 세금 납부 및 물품 반출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한 경우 통상적으로 물품 검사 당일에 수입 물품 반출이 가능하다. 단, 추가적으로 인증이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약 2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수입자는 관세와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한 후 수입 물품을 인수할 수 있다. 관세 및 제세금은 전산을 이용하거나 세관을 통해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수입 관세의 계산은 CIF 가격(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관세이외에 부가가치세(VAT), 특별소비세(SCT), 수입관련세금(KKDF) 등이 부과된다. 물품 반출을 위해서는 모든 세금의 납부 이외에도, 물품 장치 기간에 따른 창고료를 지불한 후 물품을 인수할 수 있다.

3

AEO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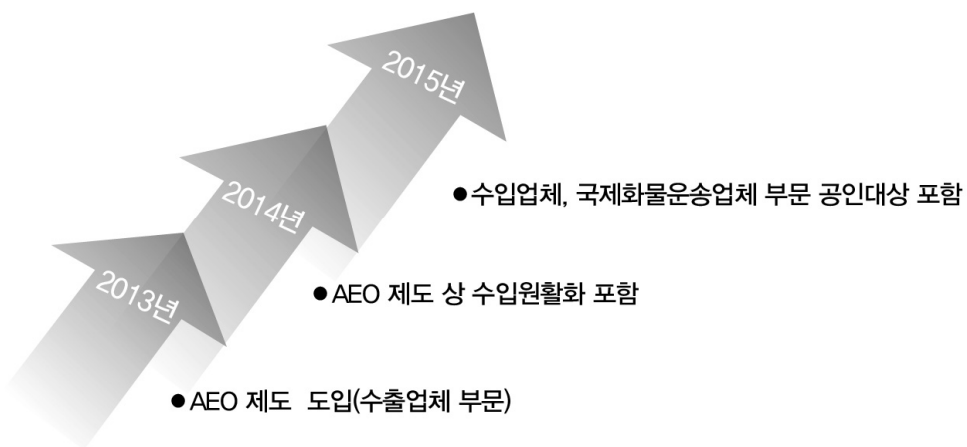
(1)

AEO 제도의 도입

가. 도입 경과

터키의 통관과 외국무역을 위한 전략적 비전은 전 세계적으로 상업 활동을 쉽고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AEO 제도의 실행 준비는 2012년 3월에 시작했고 2013년 1월 10일 AEO 제도를 도입하였다. AEO 제도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안내서(handbooks)를 2013년 1월에 출판하였다. 2013년 4월에 AEO 공인을 위한 최초출원을 받았고, 9월 23일에 첫 AEO 증서가 발행되었다. 2014년 5월에 제정법(legislation)이 수정되었다. 터키 AEO 제도의 목적은 공급망에서 요구되는 리드타임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무역업자의 해외무역 활동을 원활화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 최적화를 장려하여 보안(Security)을 강화한다. 이러한 터키의 AEO 제도 도입 경과는 <그림 61>로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다.

<그림 61> 터키의 AEO 제도 도입경과



터키는 WCO의 AEO 이행가이드북, CCIP AEO 조문, EU AEO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세관, 한국 관세청과 워크숍을 통해 세부 공인기준, 사후관리, 혜택 등을 검토하였다. 터키는 수출업체 사업장을 방문하여 업체 의견을 수렴하여 2012년 3월 AEO T/F를 구성하였다. 가이드, 소책자, 매거진, 비디오 등 홍보물을 발행하고, 지역세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세미나를 수행하여 AEO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AEO 제도 도입에 착수하였다.

AEO 제도의 도입을 위해 2013년 1월 관세법 시행령에 AEO의 세부조항을 기입하고, 동년 1월 10일에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AEO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2015년 1월에 수입업체, 국제 화물 운송업체를 공인 대상에 포함하였다.

나.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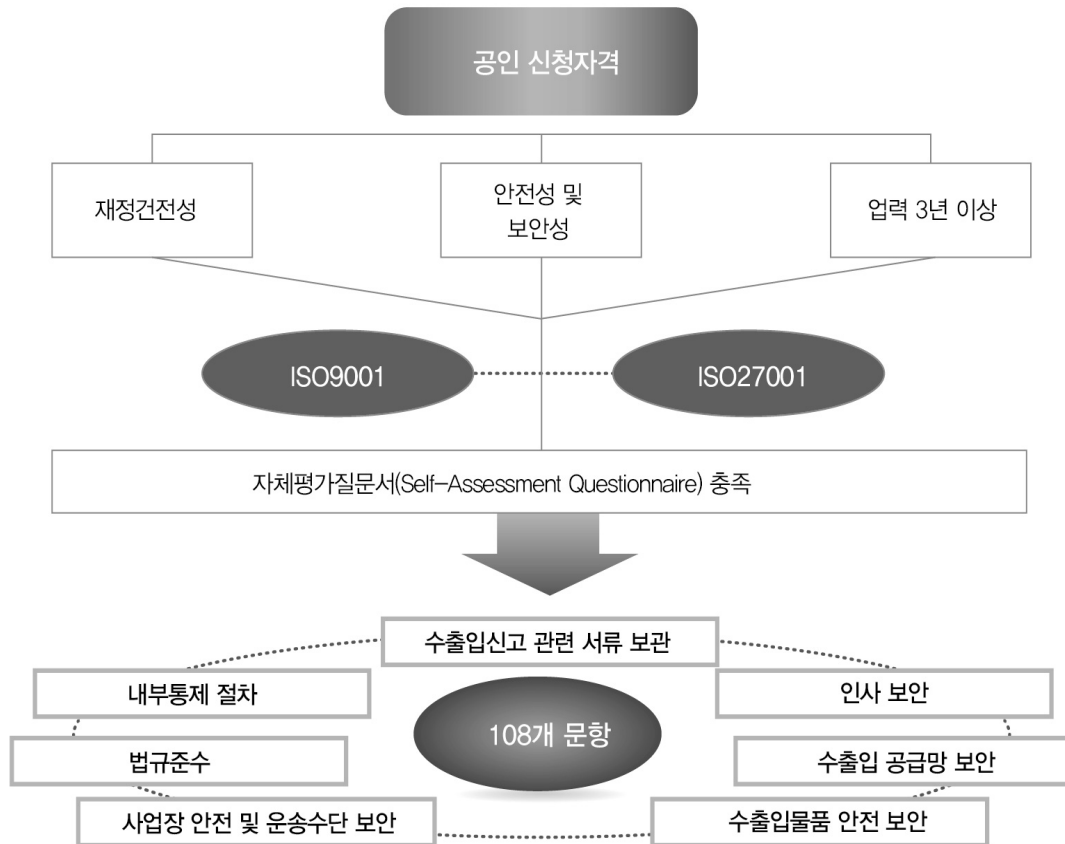
터키의 AEO를 공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 평가 결과 <표 42>의 신뢰성 요건을 확실히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재정건전성을 갖추고, 필요한 안전성 및 보안 방법을 실행해야 한다. 터키에서 설립되고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업체여야 AEO 공인을 신청할 수 있다.

<표 42> AEO 공인업체 신뢰성 요건

구분	요건
이사회 임원	자기자본의 10% 이상을 소유한 자연인, 세관 및 대외무역거래에서 업체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 직원이 터키 형법전, 탈세 및 탈세미수 위반에 관련된 조세 절차법, 밀수 금지 및 기소에 관한 법, 반밀수법, 자산 공개 및 뇌물·부패 척결에 관한 법, 터키 통화 가치 보호에 관한 법, 석유 시장 법, 범죄수익 세탁 예방, 마약 감시에 관한 법, 마약 관련 법, 국가 안보에 반하는 위법행위, 한정질서 및 동 질서의 기능에 대한 위법행위, 국가 기밀에 대한 위법행위 및 간첩행위, 국제 위법행위, 횡령, 부당유용, 선의의 오용, 사기성 파산, 위증죄 처벌, 중대한 무고죄·형사상 명예훼손·담합입찰관련 위법행위, 계약상 의무 이행에 대한 조작행위, 범죄행위에서 야기된 자금의 세탁 관련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상 처벌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없어야 한다.
해외영구 거주권을 가진 이사회 외국인 임원	자기자본의 10% 이상을 소유한 자연인, 세관 및 대외무역거래에서 업체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 직원이 터키 형법전 국제 위법행위, 국가 안보에 반하는 위법행위, 한정질서 및 동 질서의 기능에 대한 위법행위, 국가 기밀에 대한 위법행위 및 간첩행위, 횡령, 부당유용, 뇌물, 신뢰의 오용, 절도, 사기, 위조, 선의의 오용, 사기성 파산, 위증죄 처벌, 중대한 무고죄·형사상 명예훼손·담합입찰관련 위법행위, 계약상 의무 이행에 대한 조작행위, 범죄행위에서 야기된 자금 세탁 관련 위법행위, 탈세 또는 탈세 미수, 세관 밀수 위반행위 또는 세관 밀수 미수, 석유 밀수 위법행위, 마약 밀수 위법행위, 부당 이익 위법행위로 인하여, 또한 터키 또는 타국의 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형사상 처벌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없어야 한다.

AEO 신청업체는 최신의 ISO 9001과 ISO 27001 자격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터키의 AEO 공인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요건과 기준을 정리해보면 <그림 62>와 같다.

<그림 62> 터키의 공인신청 자격 및 기준



AEO 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업체는 수출입 신고 관련 서류 보관, 내부통제 절차, 법규준수, 사업장 안전 및 운송수단 보안, 수출입 물품 안전 보안, 수출입 공급망 보안, 인사 보안 등 7개 주제에 108개 문항을 포함한 자체평가질문서(Self-Assessment Questionnaire)를 충족해야 한다. 안전관리 문항을 정리하면 <표 43>와 같다.

〈표 43〉 안전관리 자체평가질문

구분	문항
거래업체관리	10. 귀사가 정기적 또는 빈번하게 거래하는 개인과 조직, 그 소속 분야를 나열하십시오. 11. 귀사 소유가 아닌 창고 및/또는 보세 창고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운영인의 상세 연락처 및 귀사와 거래하는 사업의 규모를 기재하십시오. 79. 제3자가 화물을 취급하는 경우 책임 소재를 식별하는 절차가 있는가? 그렇다면 간략히 설명하십시오. 91. 거래 개인 및 업체의 선별에 있어서 무엇을 고려하는지, 귀사의 관련 방법은 무엇인지, 귀사의 거래 파트너의 업무에 대하여 어떻게 통제하는지 간략히 기술하십시오. 92. 운송 대리인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 당해자의 신뢰성에 대한 예비 검토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간략히 설명하십시오. 93. 귀사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귀사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신뢰성에 대한 예비 검토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간략히 설명하십시오. 94. 귀사와 거래 중인 개인 및 업체가 귀사의 공급망 안전 요건을 어느 정도까지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귀사가 채택하고 있는 운영 방식이 무엇인가? 96. 귀사의 소프트웨어를 취급하는 거래 IT업체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가? 그렇다면 간략히 설명하십시오.
운송수단 등 관리	41. 세관 관련 업무 상 위반 시 세관 사무소(또한 운송사 역할을 하는 경우 화주)에 안내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가? 그렇다면 간략히 서술하십시오. 70. 컨테이너, 트레일러 및 이와 유사한 운송 수단에 대한 물리적 구조, 문 및 잠금 장치에 관한 통제 등 적입 전 통제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십시오. 71. 7가지 지점 검사(정면, 우측, 좌측, 바닥, 천장, 문 내외부, 후드·차대)에 따른 운송 수단의 적입 전 통제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십시오. 76. 봉인의 부착제거 과정이 있는가, 또한 봉인의 무결성이 확보되며 인가자에 의하여 부착되는가? 그렇다면 간략히 설명하십시오. 77. 운송 수단의 잠재적 은닉 장소에 대해 주기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가? 간략히 설명하십시오. 81. 선적에 관련되지 않은 비인가자 및/또는 비인가 화물이 귀사의 권한 및 책임 하에 있는 귀사 시설 내부에 위치한 화물 및 운송 수단(트럭, 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컨테이너 등)에 대한 개입 및/또는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가 활용하고 있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십시오. 82. 선적에 관련되지 않은 비인가자 및/또는 비인가 화물이 귀사 권한 및 책임 하에 있는 귀사 시설 외부에 위치한 화물 및 운송 수단(트럭, 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컨테이너 등)에 대한 개입 및/또는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가 활용하고 있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십시오.
출입통제관리	46. 최근 수년 문서에 대한 비인가 접근과 관련한 위법사항이 있는가? 해당 건을 배제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간략히 서술하십시오. 49. 시설 내 화물 및 직원의 일반 안전 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가? 이와 같은 방법이 직원 및 방문객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간략히 서술하십시오.

구분	문항
출입통제관리	59. 직원이 시설 내 다양한 구역에 접근하고 이와 같은 시설 내 직원의 움직임을 기록하며 보안 지역에 제한적인 접근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 또는 이와 유사한 통제 규정이 있나? (시스템실 출입문의 카드 리딩, 엘리베이터에 대한 승인 등 각 층별 접근 등) 그렇다면 간략히 서술하시오. 60. 귀사 시설 내 다양한 구역에 대한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하고 방문객의 출입 및 존재여부를 기록하는 시스템 또는 이와는 별도로 기타 ID통제 방법이 있는가? 그렇다면 간략히 서술하시오. 61. 승인 없이 시설에 출입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 또는 차량을 식별하고 고발 및 필요한 개입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가? (지침서, 비상 유무선 전화, 다양한 안내문, 등) 그렇다면 간략히 서술하시오. 63. 귀사의 직원, 방문객,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모든 출입 지점에서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는가? (카드 출입 등록, 물리적 통제, 엑스레이 등) 간략히 서술하시오.
인사관리	98. 화물 흐름, 안전, 등록, 보관, 상하역, 주문 관리, 화물의 선적 준비와 관련된 구역 및 행정 수석 등 안전에 민감한 직군에서 근무하는 영구/임시 직원 또한 귀사 시설 내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의 직원 등의 채용 전에 당해자의 근무 기록 및 사법 기록에 대한 질문서를 작성하고 있나? 간략히 설명하시오. 99. 상기 98번에 명시된 질문서를 주기적으로 작성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반복 작성하고 있는지 명시하시오. 101. 귀사 직원이 퇴직하거나 해고당하는 경우 귀사 시설 내 비인가 접근을 제한하기 위하여 물리적 또는 전자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102. 퇴직 또는 해고 예정 직원에 대하여 어떠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가?
취급절차관리	15. 반출입 화물의 실제 운송과 운송주문 서류 상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고 있나? 그렇다면 간략히 기재하시오. 16. 반출 후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반출 후 보고서의 일자 및 건수를 기재하시오. 해당 보고서에 기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간략히 기재하시오. 19. 일자 및 시간 정보에 덧붙여 최종 화물의 흐름 또는 판매 가능 화물의 흐름을 기록하기 위한 사내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간략히 기재하시오. 20. 명백한 특징과 함께 상업 화물을 기록하기 위한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간략히 기재하시오. 21. 구매 주문 수령 시점부터 최종화물이 구매자에게 배송될 때까지 일자와 시간 정보에 덧붙여 화물의 생산 및 거래 기간 동안 인풋과 아웃풋이 거치는 각 단계를 기록하기 위한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간략히 기재하시오. 22. 창고에서 1차 재료를 반출하고 생산 과정에 투입하여 최종 화물을 생성하고 생산 과정에서 발견한 손실에 대해 추적하며 최종 화물을 보관하는 과정에 대하여 기록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간략히 설명하시오. 39. 관련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은 물론 심사의 양립성을 확보하며 수정, 분실 및 고의적 오기(誤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사 및 중개인 등이 제출한 서류 등 세관 관련 업

구분	문항
취급절차관리	무 및 운송 목적으로 제출한 문서에 기재된 모든 데이터를 통제할 방법이 있는가? 간략히 서술하시오. 41. 세관 관련 업무 상 위반 시 세관 사무소(또한 운송사 역할을 하는 경우 화주)에 안내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가? 그렇다면 간략히 서술하시오. 42. 세관 법령과 양립하지 않는 부적절성 및/또는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 세관 사무소에 보고하기 위하여 또한 해당 보고를 하기 위한 직원을 지정하기 위하여 따르는 절차가 있는가? 그렇다면 간략히 서술하시오. 47. 화물 이동과 관련한 상세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승인을 받은 담당자와 담당 부서는 누구인가? 간략히 기술하시오. 48. 화물 이동과 관련한 정보를 변경하기 위한 승인을 받은 담당자와 담당 부서는 누구인가? 변경 사항은 기록되는가? 그렇다면 간략히 서술하시오. 65. 최근 수년 동안 화물 구역, 선적 구역 및 하역 구역에 안전 문제 또는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는가? 해당 경우에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간략히 서술하시오. 68. 귀사의 안전 구역에 대한 화물 및 직원의 비인가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간략히 서술하시오. 69. 비 통제구역에서 화물을 상하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가? 간략히 서술하시오. 72. 생산 과정 중 화물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보유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간략히 설명하시오. 74. 허가 없이 운송 과정에 개인이나 화물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가? 그렇다면 간략히 설명하시오. 75. 운송 서류의 작성, 화물의 물리적 검수(화물이 봉인되어 있으며 다른 운송수단으로 선적되지 않는 경우는 물리적 검수가 불필요), 운송 차량의 통제, 화물 운송, 운송 영수증의 수령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 간략히 설명하시오. 80. 다음의 사안에 대한 서면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간략히 설명하시오. (i) 화물 이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ii) 화물의 공항만 출발 및 시설 도착 시 화물에 대한 통제 유지, 가능한 경우 해당 과정에서 보관 장소 포함. (iii) 공항만에서 수출 화물을 운송 수단에 선적 시 이에 대한 모니터링 (iv) 공항만에서 수입 화물을 운송 수단에 선적을 완료할 때까지 이에 대한 모니터링
시설과 장비관리	50. 최근 수년간 시설 내외부에 안전 관련 문제 또는 사건이 발생한 적 있는가? 해당 건에 적용 가능한 조치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간략히 서술하시오. 53. 귀사 시설의 외부 경계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 간략히 서술하시오. 54. 세관 관련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건물이 불법 출입을 예방할 수 있는 자재로 건축되었는가? 간략히 서술하시오. 55. 감시 또는 통제 수단을 통해 건물의 창문, 문, 외벽 및 안전 구역(데이터 처리실, 하역지역/지점, 행정실, 기록 보관소 등)이 모니터링 되고 있는가? (도난 방지 알람 시스템 또는 실내외 CCTV 등) 그렇다면 간략히 서술하시오.

구분	문항
시설과 장비관리	56. 문과 창문, 실내외 출입구에 어떤 종류의 잠금 메커니즘이 설치되어 있나? 해당 메커니즘 또는 일반/전자 키에 접근하고 일반 재고를 통제하기 위하여 귀사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십시오. 57. 작업 특성에 편리하며 통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나? 귀사의 조명 시스템이 사보타주, 훼손 또는 고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수리되고 있나? 58. 모든 외부 보안 시설이 사보타주, 훼손 또는 고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수리되고 있는가 61. 승인 없이 시설에 출입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 또는 차량을 식별하고 고발 및 필요한 개입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가? (지침서, 비상 유무선 전화, 다양한 안내문, 등) 그렇다면 간략히 서술하십시오. 62. 화물, 개인, 차량이 시설에 대한 접근을 승인 받을 경우 고려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간략히 서술하십시오. 66. 화물 구역, 선적 구역 및 하역 구역의 내외부 창문, 문, 울타리 및 보안 구역과 저장소가 감시 또는 통제 조치를 통해 모니터링 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간략히 서술하십시오. 67. 시설 내 보안 구역 근처에 직원 또는 방문객이 개인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간략히 서술하십시오. 73. 고가 화물과 위험 화물을 기타 화물과 구별하여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가? 그렇다면 간략히 설명하십시오.
정보기술	18. 비인가 접근, 오용, 고의적 삭제, 분실 또는 행방불명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의 문서 및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간략히 기재하십시오. 39. 관련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은 물론 심사의 양립성을 확보하며 수정, 분실 및 고의적 오기(誤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사 및 중개인 등이 제출한 서류 등 세관 관련 업무 및 운송 목적으로 제출한 문서에 기재된 모든 데이터를 통제할 방법이 있는가? 간략히 서술하십시오.
교육과 훈련	104. 응급 상황에 대한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간략히 설명하십시오. 105. 귀사의 관련 직원이 의심 화물 및/또는 사건을 식별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교육 프로그램 및/또는 교육 자료,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있는가? 간략히 설명하십시오.

(2) 공인 절차

터키의 AEO 공인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업체가 일반정보 및 SAQ를 작성하여 지역세관을 통해 공인을 신청하고, 지역세관에서 신청서류를 검토 후 평가 결과를 위험관리 및 심사부서에 전달하면, 위험관리 및 심사부서에서는 현장심사를 수행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를 지역세관장에게 보고하고, 공인기준에 미흡한 경우 기각하고 충족할 경우 AEO 공인을 부여한다. <그림 63>을 통해 상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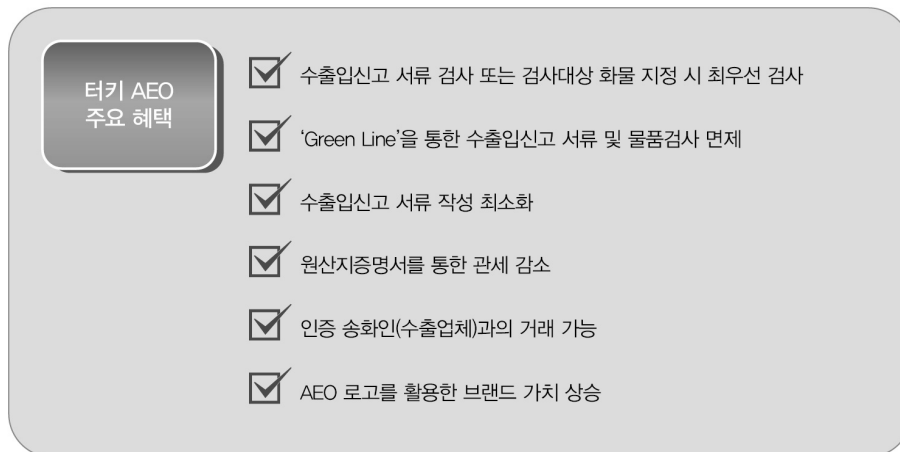
〈그림 63〉 터키의 AEO 공인절차



(3) 주요 혜택

터키 AEO 제도의 주요 혜택은 업체의 리드타임과 비용이 감소되는 것 이외에도 AEO 자격은 국제적인 당사자 간에 인식의 큰 틀을 제공하여 업체가 경쟁 우위를 가지도록 한다. 이러한 터키 AEO의 주요 혜택은 〈그림 64〉로 대표된다.

〈그림 64〉 터키의 AEO 주요 혜택



구체적인 주요 혜택을 살펴보면 위험관리시스템 상에 위험점수를 최하위 그룹으로 분류하여 수출입신고서류 검사 또는 검사대상 화물 지정 시 최우선적으로 검사한다. Green Lane을 통해 수출입 신고 서류 및 물품 검사를 면제하고, 반출입 신고 작성서류 및 증빙 자료를 최소화하여 수출입 신고서류의 작성을 최소화한다. 원산지증명서(Eur.1 movement certificate), EUR-MED Movement 증명서를 통한 관세를 감소하고, 인증 송하인(수출업체)과의 거래가 가능하다. AEO 인증 업체는 AEO 로고를 사용하여 업체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4

MRA활용 방법

- ① <한국 관세청>은 한국 AEO 수출기업 공인정보 송부 (한국 관세청 → 터키 관세청)
- ② <한국 AEO 수출기업>은 수출시 공인번호를 터키 수입자에게 통보
- ③ <터키 수입자>는 터키 관세통상부로부터 한국 AEO 수출자의 공인번호를 받아서 수입 신고시 기재해야함
- ④ <터키 관세통상부>는 제출된 정보를 확인하여 무역원활화 조치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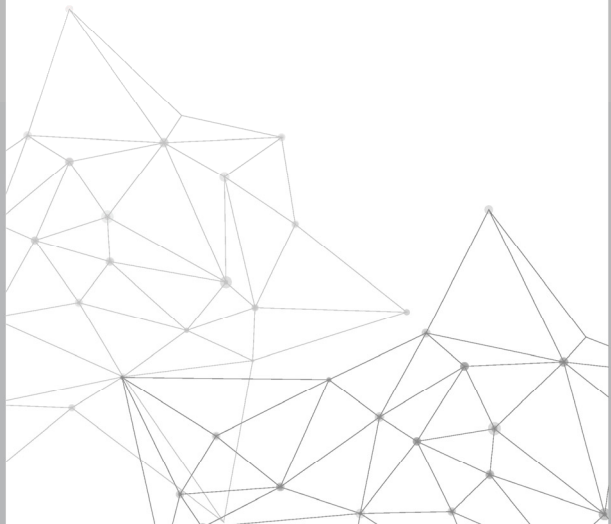
< 한-터키 AEO MRA 혜택 >

수입검사율 축소	• 상대국 AEO화물이 수입되는 경우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조치	• AEO기업 화물의 경우 우선 검사 및 서류심사 실시
세관연락관 지정	• AEO 화물 애로발생 시 소통창구 지정
비상시 우선 조치	• 천재지변, 테러, 물류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AEO화물 우선 조치

유럽(Europe)

이스라엘

(Israel)



1

국가 개요

일반 사항	국 명	이스라엘(State of Israel)
	면 적	20,770km ²
	수 도	N.A (*2017년 12월 트럼프 美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했으나, 국제법상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와 같이 표기하는 점 참고)
	인 구	884만명(2017년)
	주 요 도 시	예루살렘(80만 명), 텔아비브(40만 명), 하이파(27만 명), 리손레찌온(23만 명)
	민 족	유대인: 75.4%, 아랍인: 20.6%, 기타: 4.0%
	언 어	히브리어(공용어), 아랍어(아랍 소수민 공식 언어), 영어(상용어) 등
정치	건 국 일	1923년 10월 29일
	정 치 체 계	내각책임제
	국 가 원 수	대통령: 류벤 리블린(영어: Reuven Rivlin) (2014.7.24. 취임) 총 리: 베냐민 네타냐후(영어: Benjamin Netanyahu) (2015.3.31. 재취임)
경제	화 폐 단 위	신 셰켈(New Israeli Sheqel, NIS)
	1인당 GDP	42,264달러(2017년)
	교 역 량 (2018년 기준)	수출: 61,906 US\$ Mil 수입: 76,584 US\$ Mil
	주요 교역품	다이아몬드, 의약품, 직접회로, 항공기 부품, 전화기, 의료기기 등

자료원 : 이스라엘 통계청, 이스라엘 은행, EIU Country Report, WITS(wits.worldbank.org)

한 / 이스라엘 관계	
교역 규모	대 이스라엘 수출(2019년) : 1,426,747 US\$ Thousands 대 이스라엘 수입(2019년) : 901,205 US\$ Thousands 무역수지(2019년): 525,542 US\$ Thousands
교역 품	• 대 수출 주요 수출품목 : 자동차, 합성수지, 칼라TV, 자동차 부품, 건설중장비 등 • 대 수입 주요 수입품목 : 반도체제조용장비, 전자현미경, 항공기부품, 분석시험기 등
투자 교류	• 우리나라의 대 이스라엘 투자액 → (1913~2018.6) 2,162만 달러 • 이스라엘의 대 한국 투자액 → (~2016.6.) 신고 : 4,000만 달러
교민	총 교민 수 약 850명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2

통관절차

(1)

통관절차

이스라엘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원산지, 생산자 명칭 및 주소, 이스라엘 수입자 명칭 및 주소, 내용물, 미터법에 따른 중량 또는 크기 등을 히브리어 또는 영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물품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표시내용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매우 엄격한 라벨링 제도(Labeling Requirement)를 도입하고 있어 반드시 수출 전에 현지 수입업자와 상의해야 한다. 마킹은 제품에 직접 또는 포장지에 인쇄 등 방식을 통해 부착되어야 한다.

라벨링 제도 및 포장규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 44>과 같이 산업통상노동부 중량수치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4〉 라벨링 제도 및 포장 규격 정보 확인

내용
산업통상노동부 – 중량 수치과 (Department of weights and Measures)
• 주소 30 Agron Street, Jerusalem 94190
• 전화 +672-2-622-0678
• 팩스 +672-2-622-0670

이스라엘 관세청은 전자시스템을 1995년 도입하여 수입 신고와 통관에 사용되는 서류는 Entry Manifest – Form7을 사용하고 있다.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수입자나 수입자 대행인이 제출해야 하며, 세관의 전자시스템에 전송된다. 통관이 허용되면, 수입자 또는 대행인은 이스라엘 세관이 정한 일정 기간 후 Entry Manifest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동물, 식물, 동물제품, 채소와 과일 등의 경우 수입승인 외 이스라엘 보건부와 농업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종 소비재에 대한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아래 <표 45>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표 45〉 수입통관 서류

내용
• 선화증권 / 항공화물 운송장 • 화물송장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농식품 : 농업, 보건부의 인증 증명 필요 • 수입자 신고서 – 형식적으로 모든 수입건마다 수입자 신고를 필요로 함 – 다만, 최근 수입의 경우 각각의 공급업자/제조업자 (사업 관계에 대한 상세 기술 필요)에 대해 연례(1년에 한번) 신고서를 제출

이스라엘 세관에서 수입품의 통관을 위해 상업송장, 선화증권, 보험증권, 포장명세서, 수입허가서, 원산지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항구에 도착한 물품은 관세청이 지정한 국가 보세창고나 기타 지역에 보관할 수 있으며 10톤 이상의 상품의 경우 10일까지 창고료가 면제된다.

이스라엘의 관세법에서는 특정물품이 포장, 가공, 수리, 재생, 전시 등을 위해 수입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시 수입의 경우 세금의 면제는 보증서에 의해 보장되고 관세청이 정한 기간 내에 처리 또는 사용 후 수출되어야 한다. 일시 수입의 세금 면제를 위해서는 수입자는 물품이 일정기간동안만 수입되고 다시 수출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약식통관은 1,000달러 미만의 품목에 한하여 가능하다.

이스라엘 세관에서는 수출업체가 공급업체 이름 및 주소, 상품의 성격, 원산지, 이스라엘 고객 이름 및 주소, 대리인 이름, 약관, 환율(해당 시), 이스라엘 수입 면호(해당 시), 선적정보, 그리고 선적표시, 수량 또는 단위 등 모든 선적 상품에 대한 설명, HS CODE, 각 포장의 총 중량, 총 선적 금액 등 필수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사용을 선호한다. 총 선적 금액에는 이스라엘로 상품이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포장, 선적, 부두이용 및 수수료, 보험료가 포함을 말한다.

수출업체는 이스라엘 세관에 ‘승인 수출업체’를 신청할 수 있다. ‘승인 신청업체’는 ‘승

인 수출업체'번호와 상품이 원산지 요건에 적합하다는 확인이 들어있는 CO를 대신하는 송장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별도의 인증과 공정은 필요하지 않으며, 승인수출업체가 되고자하는 제조업체 또는 수출업체는 <표 46>와 같이 신고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표 46> 승인 수출업체 신청 방법

내용
승인 수출업체 신청 방법 • 신고 양식 작성 > Export Department, Israel Customs Service, 32 Agron Street, P.O. Box 320, Jerusalem으로 제출 • 연간 총 이스라엘 수출 금액이 2천만 달러 이상이고, 기타 문제가 없는 경우 선정가능 • 승인 수출업체는 모든 송장(신고필증)에 날인하는 ID번호를 부여 받게 됨 - 승인은 6개월 간 유효하며, 이후 수출업체가 이스라엘 세관에서 자동 연장을 받게 됨

기타 이스라엘 정부는 수출입과 관련하여 국제표준을 선택하고 있다. 안전 및 보건 보장을 목적으로 표준원의 인증이 요구되는 제품이 존재한다. 표준 인정이 없는 경우 테스트 기관에서 테스트하며,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환송 또는 파기하고 있다.

이스라엘 표준협회(SII)는 대부분의 제품 표준개발, 규정 준수 시험, 제품 인증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필요 시 관련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표 47>과 같다.

<표 47> 승인 수출업체 인증기관 문의

내용
인증기관 연락처 • The Standards Institution of Israel, 42 Levanon Street, Tel Aviv 69977 • 전화 : 972-3-6465154 • 팩스 : 972-3-6419683 • 웹사이트 : http://www.sii.org.il

관세의 경우 이스라엘 정부는 농산물과 같이 WTO, FTA 또는 기타 조약에 따라 쿼터 없이 무관세를 약속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TRQ(Tariff Rate Quorate 관세율 할당)를 유

지하고 있다. 관세율은 이스라엘 관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품목의 HS Code로 조회할 수 있다.²⁸⁾

이스라엘 수출 시 이용하는 선박이 이스라엘 항구 입항 전에 이집트와 요르단을 제외한 중동국가(사우디, 예멘, 리비아 등의 아랍국가)에 입항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을 목적지로 한 수출품은 이스라엘 중개인을 통해야만 통관이 되므로 통관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보건 공중도덕, 환경, 안보상의 이유로 이스라엘 정부는 총 17개 제품 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주로 생물, 채소류, 과일류, 식품, 음료수, 가스, 위조지폐/동전, 무기, 폭발물질, 마약 등으로 안보에 관련된 품목이 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타 국가 대비 주의해야 한다.

28) <https://taxes.gov.il/English/customs/CommercialImport/Pages/CustomsTaxTariff.aspx>

3

AEO 제도

(1)

AEO 제도의 도입

가. 도입 경과

이스라엘 세관(Israel Customs Directorate)은 WCO의 표준인 SAFE Framework를 기반으로 2011년에 AEO 제도를 도입하였다. AEO 제도는 세관에 의해 운영되고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표준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려는 업체가 공급망의 안전과 무역원활화에 기여하고자 도입하였다.

이런 업체는 이스라엘의 해외무역과 이스라엘과 MRA를 체결한 국가에서 무역 원활화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은 AEO MRA외에 수입 규제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비관세장벽으로 인증제도(수입건별 경제부의 개별 허가)를 운영 중이다.

나. 운영 현황

이스라엘은 2011년 AEO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업자, 관세사, 포워더, 창고업자(운영인), 항공화물터미널, 항만, 항공사에 AEO공인을 부여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면적이 우리나라의 대구경북 면적보다 조금 큰 정도이지만, 인구 대비 제한된 시장 규모와 천연자원의 부재 등으로 무역업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며, <표 48>과 같이 2018년 기준 약 186개의 공인을 부여하고 있다.

〈표 48〉 이스라엘 공인업체 수

공인업체 수
(2018년 Compendium 기준)

- 수출업자 : 77개
- 관세사 : 44개
- 포워더 : 51개
- 창고업자(운영인) : 9개
- 항공화물터미널 : 2개
- 항만 : 2개
- 항공사 : 1개

이스라엘의 AEO 공인을 위해서는 내부통제분야에서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사항과 수출입과 관련된 위험관리와 시스템의 운영체계를 심사한다. 재무건전성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안전관리 분야는 우리나라의 AEO제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과 동일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다음 <표 49>는 이스라엘 AEO와 한국의 AEO공인기준을 비교한 것이다. 안전관리 분야와 위험관리 분야를 제외하면 다소 차이가 있다.

<표 49> 한국과 이스라엘의 공인기준 차이

* ()안의 기준의 개수임

구 분	한국 (AEO)	이스라엘 (AEO)
법규준수	• 결격사유 (3) • 법규준수도 측정 (1)	• (규정없음)
내부통제	• 경영방침, 조직, 인력 (5) • 위험관리 (4) • 각종 운영체계 (5) • 법규안전관리 공유 (2) • 내부통제 평가 (2)	• 관리책임자의 책임·의무 (2) • 위험관리 (3) • (규정없음) • (규정없음) • 각종 운영체계 (2)
재무건전성	• 기업규모 (1) • 체납 (1) • 재무건전 (1)	• (규정없음)
안전관리	• 거래업체 관리 (6) • 운송수단 등 관리 (7) • 출입통제 관리 (5) • 인사관리 (3) • 취급절차 관리 (12) • 시설과 장비관리 (7) • 정보기술 관리 (2) • 교육과 훈련 (2)	• 거래업체 관리 (5) • 운송수단 등 관리 (5) • 출입통제 관리 (3) • 인사관리 (6) • 취급절차 관리 (14) • 시설과 장비관리 (16) • 정보기술 관리 (8) • 운송안전 훈련 (5)

(2) 공인 절차

이스라엘 AEO 공인의 절차는 AEO 신청, 서류심사(재무건전성 및 법규준수 검토), 현장검증, AEO 공인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가. 공인 신청

AEO 공인을 신청한 업체는 AEO 지원 신청서를 기입하고, AEO 공인에 요구되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모든 정보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스라엘 세관은 업체가 AEO 공인을 신청하면 재무건전성을 검토하고, 업체가 관세 및 대외무역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또한 수출입 업무 관련 서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고 복구하기 위한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토한다.

나. 현장 검증

이스라엘 세관은 보안관련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 보안관련 질의서를 검증하고 현장 검증을 수행한다. 보안관련 질의서가 신청업체의 재무건전성 및 법규준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세관은 보안 평가를 수행한다. 이때 신청업체는 보안관련 질의서를 스마트카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한다. 스마트카드는 AEO 신청업체의 전자서명으로 세관 인증을 통해 비밀번호가 발급되어 신청업체가 온라인으로 로그인하여 질의서 작성이 가능하다.

다. 공인 결과보고(통과/기각)

이스라엘 AEO 공인은 세관이 현장검증을 완료하고 60일 안에 공인심사 승인 및 기각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청업체가 AEO 공인 후 유효기간은 1년이다.

라. 사후관리

이스라엘의 AEO 공인은 매년 연말에 재검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인유지 또는 중지가 결정된다. 세관은 재검증 결과 공인 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인을 정지할 수 있다.

(3) 주요 혜택

공급망의 보안대책은 다양한 기준과 실행이 요구된다. 이러한 보안대책을 만족시키는 AEO 제도는 업체의 공급망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이스라엘 세관은 공인된 업체에게 통관검사비용 감소, 전자문서기반 절차 적용, 세관 전담직원 지정, MRA 체결국 수출 시 수입국 통관 상 혜택 등을 제공한다. 또한 수출입업체의 화물을 검사할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 수입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의 검사를 수행하고 수리해주는 先통관의 혜택도 부여된다.

이스라엘 세관은 MRA의 이행협정문에 MRA의 혜택을 명시하여 이스라엘 업체가 MRA 체결국에 수출을 할 경우 체결국의 수입통관 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향후 추가적으로 업체 사업장 내에서 수출입 물품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관세행정 절차를 최우선으로 적용할 것이다. 또한 수입신고서 제출의 생략, 해상 수출입 화물에 대한 “Fast Track”의 적용 등의 혜택도 추가될 예정이다.

4

MRA활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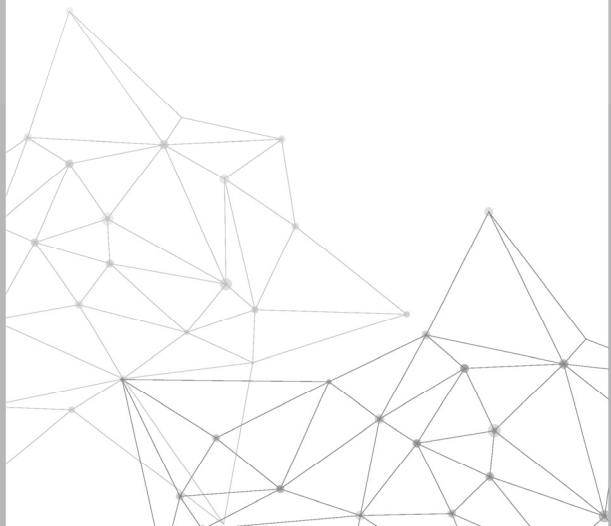
- ① <한국 관세청>은 한국 AEO 수출기업 공인정보 송부 (한국 관세청 → 이스라엘 관세청)
- ② <이스라엘 관세사>가 수입신고 전 이스라엘 관세청 시스템에 공급자 정보를 등록하고 Supplier Code를 자체 발급
 - * 한국 AEO수출기업은 상대국 수입자에게 한국 관세청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공인정보 (공인번호, 공인업체명, 주소, 공인일자, 우편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송부 필요
- ③ <이스라엘 관세청>은 수입신고 내용과 Supplier Code 정보를 비교
- ④ <이스라엘 관세청>은 중복되는 공급자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제
 - * 등록된 공급자 정보는 공개되며, 따라서 타 관세사에서 등록된 Supplier Code 사용 가능
- ⑤ <이스라엘 관세청>은 신고된 물품이 AEO 물품으로 인식되면 수입검사를 축소 등 혜택 부여

< 한-이스라엘 AEO MRA 혜택 >

수입검사를 축소	상대국 AEO화물이 수입되는 경우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조치	-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데이터 항목축소 (※ 예 : 공급자와의 관계 정보항목 등) - 서류심사 시 AEO 수입건에 색깔, 강조효과 등을 통해 우선 처리 - 담보제공 등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 완화
비상시 우선 조치	비상사태 발생으로 수작업 수입신고 시 최우선 처리

중·남미(Middle & South America)

멕시코 (Mexico)



1

국가 개요

일반 사항	국 명	멕시코(México)
	면 적	196만 4,375km ² (남한의 약 20배 크기)
	수 도	멕시코시티(CIUDAD DE MÉXICO / CDMX)
	인 구	1억 2,457만 4,795명(2017년 기준)
	주 요 도 시	멕시코 시티(2,158만 명), 과달라하라(502만 명), 몬테레이(471만 명)
	민 족	혼혈(MESTIZO, 62%), 원주민(INDIGENA, 28%), 기타(대부분 백인, 10%)
	언 어	스페인어
정치	건 국 일	1810년 9월 16일(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정 치 체 계	대통령 중심제
	국 가 원 수	Enrique Peña Nieto(2012년 12월 1일~2018년 11월 30일)
경제	화 폐 단 위	페소(\$ / peso)
	1인당 GDP	9,249(2017년)
	교 역 량 (2018년 기준)	수출: 450,532 US\$ Mil
		수입: 464,268 US\$ Mil
	주요 교역품	자동차 및 엔진, 컴퓨터, 전자제품, 석유, 의류, 농산물 등

자료원: KITA, 멕시코 중앙은행, IMF, EIU, 멕시코 통계청, OECD, WORLD BANK(2017년 추정치),
WITS(wits.worldbank.org)

한 / 멕시코 관계	
교역 규모	대 멕시코 수출(2019년) : 10,927,016 US\$ Thousands 대 멕시코 수입(2019년) : 6,159,866 US\$ Thousands 무역수지(2019년): 4,767,150 US\$ Thousands
교역 품	• 대 멕시코 주요 수출품목 : 광석, 석유 및 석탄, 자동차, 기계 및 컴퓨터, 광학기기, 철강, 소금 및 토석, 동(구리), 육류, 고무제품 • 대 멕시코 주요 수입품목 : 전기제품, 광학기기, 기계 및 컴퓨터, 자동차, 철강, 선박, 플라스틱, 고무제품 등
투자 교류	• 우리나라의 대 멕시코 송금액 → 송금 177건, 진출 23개사, 4억 5,653만 달러(2017년 기준)
교민	교민 수 1만 1,167여 명(외국국적동포 977명 한인 후손 5,000세대(1905년 멕시코 이주 한인 1,033명의 후손, 멕시코 국적 소지))

자료원: KITA, 수출입은행, 멕시코 경제부, 관세청

2

통관절차

(1)

수출 통관절차

멕시코에서 수출을 하려면 수출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정식 등록된 관세사를 이용해야 한다. 멕시코의 수출통관은 ① 수출서류 제출 ② 서류심사 ③ 물품검사 ④ 선적 및 수출의 순서로 요약할 수 있다. 수출서류는 수출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송장, 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 적하목록, 기타 증명서가 있다.

서류심사는 수출 신고 시 제출된 서류에 대해 재무부(SHCP)에서 정해놓은 규정에 맞게 구비되었는지 심사한다. 물품검사는 수입물품 검사와 동일하게 랜덤 시스템에 의해 진행되며, 녹색등은 검사가 생략되고 적색등은 물품 검사를 받는다. 선적 및 수출은 검사 과정이 끝난 수출물품은 선적할 수 있고, 수출이 완료된다.

(2)

수입 통관절차

멕시코의 수입 통관 절차는 크게 ① 선적 24시간 전 적하목록 신고 → ② 마스터 선하증권(Master B/L) 발행 → ③ 화물 도착 후 수입신고 및 서류 제출 → ④ 세관서류 검토 및 관세율 결정 → ⑤ 세금 납부 → ⑥ 화물 랜덤 검사 → ⑦ 화물 검사 완료 → ⑧ 물품 인도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물품이 국경이나 항구에 도착하면 하역 후 보세창고로 이관한다. 멕시코 세관은 수입신고서와 운송서류를 바탕으로 수입 HS code를 수출국의 HS code와 비교하는 등 서류를 검토한다. HS code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과할 관세를 결정하고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한다. 물품검사를 위한 물품 분류 및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물품검사에 해당 시 세관으로 물품을 이송하고 실질적인 통관심사(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를 진행한다. 물품 검사 완료 후 송달증명서(POD)를 발급하고 화주에게 인도 또는 보세창고에 보관한다. 통관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4~5시간 정도이나, 화물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1일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

적하목록 사전 전자신고를 살펴보면, 항공 운송주선인은 수입신고전 항공화물의 상세 정보를 세관에 사전 전자신고해야 한다. 사전 전자신고 내용은 선적자 정보, 인수자 정보, 선적될 수량, 선적물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자신고 시기는 운송 거리에 따라 상이한데, 장거리 운송의 경우 멕시코 관세구역의 첫 번째 공항에 도착하기 4시간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선사 또는 해상 운송주선인은 멕시코행 선박에 물품을 선적하기 24시간 전에 적하목록 정보를 세관에 전산 제출해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행 중인 사전신고제(Advanced Manifest System)와 유사한 규정이다. 신고할 내용은 <표 50>와 같다.

수입을 위한 각종 서류 준비에 대해 살펴보면, 멕시코 관세법 제100조에 따라 수입 전 멕시코 경제부(SE)에 수입자 등록이 필요하다. 수입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통관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세관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수입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는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선하증권(B/L), 수입허가서, 원산지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등이다.

수입신고서는 수입목적(판매, 임가공후 재수출 등), 관세율 결정정보(일반관세, 특혜관세, 덤핑관세 등), 관련법 규정 및 안전규격 증빙서류, 특별수입허가증, 원산지, 중량, 부피, 상표, 모델명, 기술명세서 등을 상세히 기록한 서류, 상품바코드와 비밀번호 혹은 관세사의 전자서명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표 50> 신고 내용

주요 내용
선적인과 화물 인도자에 대한 이름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그리고 화물도착 통보처 2010년 새로 시행된 규정에 의한 선적인과 인도자, 화물도착 통보처의 납세번호(FRC) 선적물품의 수량과 크기 선적물품의 전체 무게 또는 부피 선적물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 컨테이너 번호와 수량, 용적 컨테이너의 번호와 봉인번호 선적 전과 하역 후의 저장창고 위험물품의 식별번호와 비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서비스 계약의 종류(예: CY port/house door) 출발 및 도착 예상시간

상업송장은 물품 가격이 3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는 발행 장소와 일시, 멕시코 수입업체명과 주소, 제품의 규격, 수량, 상품번호, 날개 가격 및 추가가격 등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게재, 판매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인지 여부와 보복관세 부과 대상 품목인지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다. 공인된 원산지 발급기관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수입신고에 대해 살펴보면, 멕시코 관세법 제96조 및 제101조에 따라 멕시코 내 판매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입신고서 상 기재내용은 ① 수입목적, ② 관세율 결정정보, ③ 통관 관련 법령 충족 여부, ④ 관세사 또는 통관대리인의 전자서명이 있다. 수입목적(판매나 임가공 후 재수출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일반관세, 특혜관세, 덤핑관세 등의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상세정보를 기재해야 하고, 각종 법규(멕시코 관련 법, 공산품 안전규격 등)에 부합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수입물품의 부피, 특별수입허가증, 상표, 모델명, 기술명세서 등의 상세정보를 기록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품이 멕시코의 관련법에 의거한 모든 충족요건에 합당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관세사의 전자서명과 상품 바코드, 비밀번호 등도 기재해야 한다.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가격이 재무부(SHCP)의 기준단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제부(SE) 사전검사기관에 가격인증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관세 납부에 대해 살펴보면, 수입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은 수입신고서에 기록된 내용을 전산으로 검토한 후 자동 승인처리 해준다. 수입승인이 나면 관세사는 해당 물품이 랜덤검사대에 도착하기 전 과세를 납부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은 수입업자의 상업송장 물품가격에 포장비와 운송비, 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인 CIF조건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를 살펴보면, 세관에 수입관련 서류가 제출되면 해당물품이 검사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랜덤검사대를 통과해야 한다. 랜덤 검사대의 정보는 수입자, 수출자, 물품종류별, 물품의 가격, 원산지, 검역과 식물위생 위험, 범국가적 위험, 밀수 및 사기에 대한 타입별 정보를 모은 지능적인 위험 분석시스템에 기반한다. 랜덤검사의 방법은 관세사 또는 화주가 검사대에 부착된 신호등 버튼을 눌러 녹색등이면 검사가 생략되고, 적색등이면 검사를 받는다. 검사 후 랜덤 검사대는 제품이 다시 검사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수입물품의 통관 금지를 야기할 요인이 세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검사가 즉시 종료된다. 또한 랜덤 검사의 결과에 관계없이 멕시코 세관은 수입물품의 검증을 요청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검사와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물품은 압수되고 벌금이 부과되며, 수입절차를 대행하는 관세사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주요 내용은 <표 51>과 같다.

<표 51> 관세사 정지 또는 취소 사유

주요 내용
- 허가되지 않은 상품이 국내 영토에 반입되거나 운송 중인 해외 상품에 관세가 잘못 적용된 경우 - 금지된 상품을 수출입하거나 비관세 규정 및 제한 사항에 적용될 경우, 또는 반덤핑 관세 지불을 생략하는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상품이 국내 또는 국경 지역으로 반입될 때 지켜야 하는 절차와 세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유자의 상품에 대한 법적 지위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은 사람에 의해 상품이 운반되는 경우 - 세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품이거나 기재한 상품 가격과 실제 가격이 10%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경우 - 상품을 실은 운송 차량이 세관구역에 반입된 때, 통관과 관련하여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 세관에 신고한 송장에 기재된 상품 공급자 혹은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가 사실과 다를 경우, 혹은 기재된 주소로 공급자를 찾을 수 없거나 거짓 송장일 경우 - 송장에 기재된 상품 가격이 동일 혹은 비슷한 상품의 실제 가격보다 50% 미만으로 낮게 책정된 경우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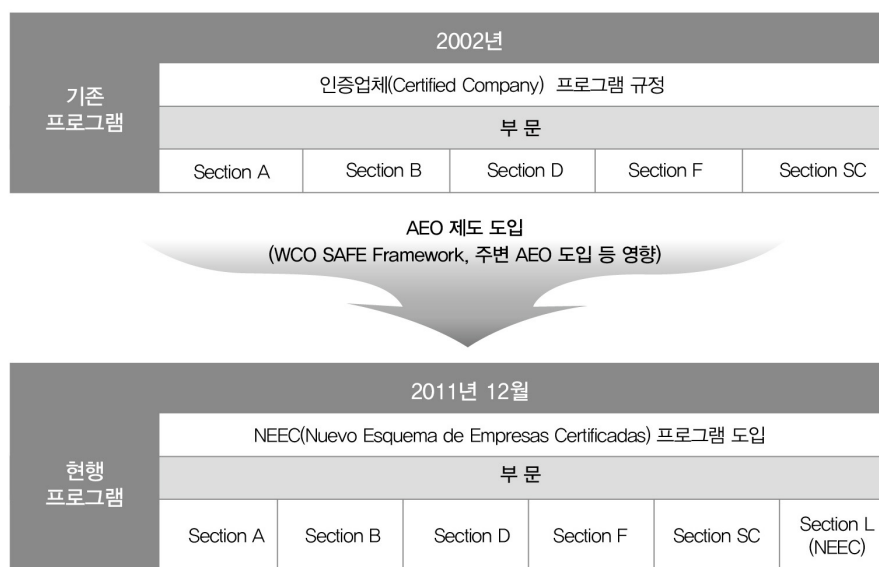
AEO 제도

(1) AEO 제도의 도입

가. 도입 경과

멕시코의 AEO 제도는 C-TPAT과 동등하게 NEEC(Nuevo Esquema de Empresas Certificadas)를 운영하고 있다. 멕시코 세관이 민간 부문과의 조화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구현을 통해 대외 무역 공급망의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NEEC는 멕시코의 인증업체 프로그램(Certified Company program)을 토대로 도입되었으며, 그 경과를 살펴보면 <그림 65>와 같다.

<그림 65> 멕시코의 NEEC 도입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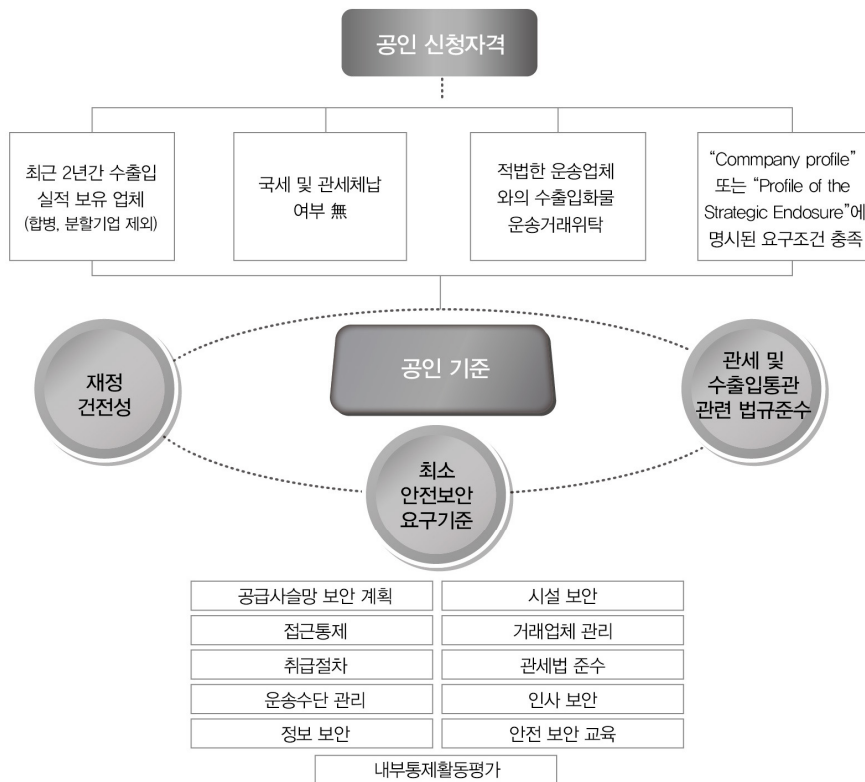
멕시코는 2002년부터 인증업체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는데, 기업이 3억 페소 이상 수입하는 경우(Section A), IMMEX 프로그램 보유 기업이 2억 페소 이상 수입하는 경우(Section B)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2년 WCO SAFE Framework의 물류안전 보안강화 흐름에 대응하고자 기존의 Section별 물류안전 및 보안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Section L

을 신규로 규정하여 대외적으로는 NEEC로 칭하였다. NEEC는 신발 제조와 관련된 업종을 제외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시작하였다. 2013년에는 위험성이 높은 육상 운송업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NEEC의 인증부문을 확대하였다. 2017년 1월 수출업자, 수입업자, 운송인 등을 비롯한 10개 인증부문에서 650여개의 인증업체 수를 보유하고 있다.

나. 운영 현황

멕시코의 AEO 공인 기준은 재정건전성(Fiscal), 관세 및 수출입 통관 법규준수(Customs), 최소 안전보안 요구(Security) 등 3가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이 AEO 공인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합병, 분할 기업을 제외하고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이 있고, 국세 및 관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적법한 운송업체에게 수출입 화물 운송 거래를 위탁해야하고, 세관에서 요구하는 대표자명, 회계정보, 사업장 수, 연락처 등 일반기업정보 목록(Company Profile 또는 Profile of the Strategic Enclosure)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그림 66〉 멕시코의 NEEC 공인기준 및 신청자격



멕시코의 최소보안 공인기준은 공급망 보안계획, 시설보안, 접근통제, 거래업체관리, 취급절차, 관세법 준수, 운송수단관리, 인사보안, 정보보안, 안전보안교육, 내부통제활동 평가 등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66>으로 표현할 수 있다.

첫째, 공급망 보안계획은 수출입 공급망 상 위험 및 취약점을 식별하고,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위험완화를 위한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기업의 사업장을 진입할 때, 비인가자의 식별과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접근통제구역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접근통제장치를 설치하는 등 메커니즘을 보유해야 한다.

셋째,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임직원, 방문자 등 통제 관련 메커니즘과 절차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접근통제는 모든 접근통제구역에 대하여 임직원, 방문자, 거래업체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기업이 거래업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운송업체, 제조업체, 원자재 및 조립품 공급업체, 서비스 공급업체 등 거래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체결을 하기 전에 거래업체 평가를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수출입 서류와 수출입 화물의 취급절차를 살펴보면, 수출입 서류의 수취, 신고, 운송, 보관 등 각 단계별 수출입신고 정보를 보유해야 한다. 수출입화물의 무결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도 보유해야 한다.

여섯째, 기업은 관세법 준수를 위해 관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보유해야 한다.

일곱째, 트럭, 컨테이너,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등 운송수단 관리가 필요하다. 운송수단은 비인가자의 침입과 테러물품의 은닉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수출용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에 ISO 17712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이 강화된 봉인(High Secret seal)이 요구된다.

여덟째, 인사보안은 채용예정자 및 임직원이 관세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보유해야 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절차도 보유해야 한다. 또한 법규준수 및 보안과 관련된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관련 내용의 교육절차를 보유해야 한다.

아홉째,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정보의 오남용, 부적절한 교환, 정보자산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보안 절차 및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열 번째, 관세법, 수출입신고 관련 취급절차, 비인가자 침입 등 이상상황이 발생할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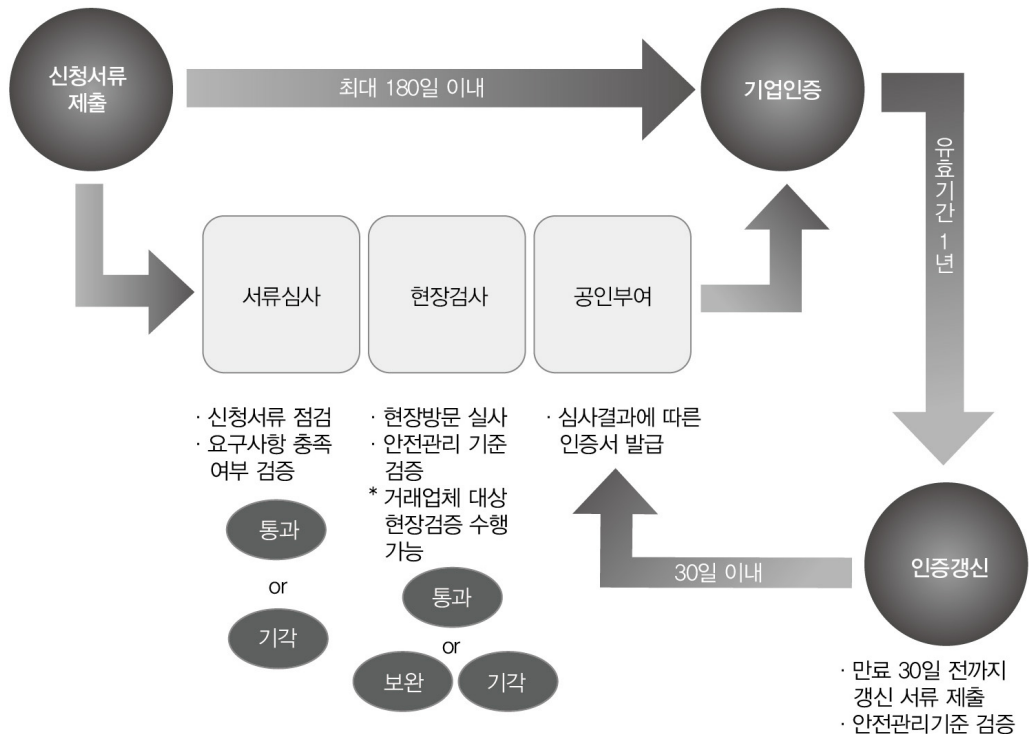
우 이를 처리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교육해야 하고, 물품을 취급하는 직원과 우편물을 취급하는 직원에 대한 추가 교육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내부통제활동의 평가는 취약한 통제활동에 대한 평가와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문서화된 절차 및 실행내역을 보유해야 한다.

(2) 공인 절차

멕시코의 AEO 공인절차는 <그림 67>과 같다. 멕시코의 AEO 제도는 공인유효기간이 1년으로 기업이 공인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대외무역심사팀(General Administration of Foreign Trade Audit)에 인증갱신 신청서(Notice of Renewal of Certified Company)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제출이 완료되면 세관 소속의 대외무역심사팀이 11가지 공인기준 항목을 중심으로 30일 동안 갱신심사를 수행한다.

<그림 67> 멕시코의 NEEC 공인절차



가. 공인 신청 및 서류심사

멕시코의 공인신청은 회사명, 거래관세사명 및 자격번호, 거래운송업체명, 회사 주요 활동, PROSECs 및 IMMEX 등록번호 등 기업 일반 정보를 기재한 신청서와 함께 인증 서류를 대외무역심사팀에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신청비용은 기업이 납부한다.

서류심사는 멕시코 관세청(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에서 서류심사 통과 또는 기각을 결정하고, 심시기한은 최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현장심사(검증)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현장검증을 수행하여 통과 또는 기각을 결정한다. 이때 거래업체에 대한 현장검증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보완이 발생할 경우 180일의 보완 수행기간을 부여한다. 현장검증이 완료되어 통과가 결정된 기업은 NEEC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NEEC 공인이 완료된다.

다. 갱신심사

모든 공인절차를 완료한 기업은 1년 간의 NEEC 유효기간을 부여받아 공인업체로서 다양한 혜택을 수혜받게 된다. 자체평가서 작성, 내부감사 보고서 작성 등 타 국가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안전관리기준을 검증하기 위한 갱신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서류를 접수받은 세관은 안전관리기준 검증 후 이상이 없을 시 인증을 갱신하며, 1년의 유효기간을 재부여한다.

(3) 주요 혜택

멕시코의 AEO 공인 기업들은 30개 이상의 운송 및 세관 절차에 대한 혜택이 주어진다. 멕시코의 AEO 공인의 주요 혜택을 살펴보면 통관상 혜택, 관세행정상 준수기한 완화 혜택, 간접비용상 혜택 기타 혜택 등이 있다. 멕시코의 NEEC 혜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52>과 같다.

〈표 52〉 멕시코의 NEEC 제도 혜택

주요 혜택	내 용
통관	·수출산업진흥제도(IMMEX) 참여업체 중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 항공산업군에 속하는 업체 대상 항공수출 시 신속통관 혜택 부여 ·터미널 자동화 및 자동차 부품 산업군에 속하는 물품 판매 시 거래명세 기록절차 간소화 ·수입통관 시 "Express" lane 이용 ·전자식 감지기를 활용한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검사대상 선정 시 검사 생략 ·사전 등록한 전기, 전자기기 수입통관 시 점수 체계에 따른 물품검사 대상 제외 ·신고 정정 최대 3회 가능 ·무과세의 경우 원산지 정정 허용 ·무과세의 경우 항목 및 수량 증가에 따른 정정 허용
관세행정상 준수기한 완화	·최대 60일까지 관세행정절차 준수기한 연장 ·최대 60개월까지 가공재 수출품 수입기한 연장 ·수출산업진흥제도 구역 안에서의 가공재 수출품 수입기간 연장 ·재고관리 정정 시 최대 60일까지 정정기간 연장 ·최대 36개월까지 가공재 수출품 수입에 대한 반환 연장
간접비용	·수출산업진흥지역에서의 원자재 이동 시 운송비용 면제 ·숙박, 항공 산업군의 경우 수출산업진흥지역에서의 일련번호 등록 면제
기타	·수입업체의 미변동 신고 및 사업자 소재지가 적절한 경우에도 자격 미정지 ·산업진흥 프로그램(PROSECs) 신청 가능 ·혼재화물 관련 비용 20일 이내 납부 가능 ·자회사의 경우 부과세 면제(생산, 가공재 수출품 수입 시 수리만 해당) ·모회사에 대한 혜택 수혜 ·과세가격 관련 추가 증빙자료 미요청

먼저 AEO 공인의 통관상 혜택을 살펴보면, 수출산업진흥제도(Manufacturing, Maquiladora and Export Services, IMMEX)²⁹⁾ 참여업체 중 전기·전자산업, 자동차 부품산업, 항공 산업에 포함되는 업체는 항공으로 수출할 경우 신속한 통관의 혜택을 부여한다. 터미널 자동화 및 자동차 부품 산업에 포함되는 물품을 판매할 경우 거래명세 기록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수입통관 시 "Express" lane 이용이 가능하고, 전자식 감지기를 이용하여 수출입 통관절차가 간소화된다. 검사대상 선정 시 검사를 생략하고, 사전 등록한 전기 및 전자기기 수입통관의 경우 점수 체계에 따라 물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9) 수출산업진흥제도는 제조, 보세임가공, 수출서비스산업 진흥프로그램으로 수출용 상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기계, 장비, 부품, 소재 등을 임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시기를 일정 기간 동안 연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한 신고 정정 최대 3회 가능, 무과세의 경우 원산지 정정 허용, 무과세의 경우 항목 및 수량 증가에 따른 정정 허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둘째, 관세행정상 준수기한 완화는 관세행정절차상 준수기한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공재 수출품 수입에 대한 반환기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 수출산업진흥제도 구역 안에서 가공재 수출품 수입기간 연장, 재고관리 정정 시 최대 60일까지 정정기간 연장, 가공재 수출품 수입기간 최대 60개월까지 연장 등이 있다.

셋째, 간접비용상 혜택은 수출산업진흥지역에서의 원자재를 이동할 경우 운송비용을 면제하고, 동지역에서 숙박 및 항공 산업군의 경우 일련번호 등록을 면제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넷째, 기타 혜택은 수입업체의 미변동 신고 및 사업자 소재지가 부적절의 경우에도 자격 정지를 하지 않는다. PROSECs(Program of Sectoral Promotion)³⁰⁾ 신청이 가능하고, 혼재화물 관련 비용을 20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회사의 경우 0% 부과세 납부(생산, 가공재 수출품 수입 시 수리만 해당)하고, 모회사에 대한 혜택 수혜, 과세가가격 관련 추가 증빙자료 요청을 하지 않는다.

30) 멕시코의 산업진흥 프로그램으로 특정 재화를 생산하는 회사가 생산 공정에 투입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 장비, 부품 및 소재 등에 대해서 0~5%의 증가(ad valorem)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산출물이 내수용 이든 수출용이든 관계없음

4

MRA활용 방법

- ① 멕시코의 AEO제도 명칭: NEEC(Nuevo Esquema de Empresas Certificadas / New Program of Certified Companies)
- ② <한국 관세청>은 한국 AEO 수출기업 공인정보 송부 (한국 관세청 → 멕시코 관세청)
- ③ <한국 AEO 수출기업>은 자사의 AEO 공인번호와 TAX ID(사업자번호)를 멕시코 수입자에게 통보해야함
- ④ <멕시코 수입자>는 통보받은 정보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수입신고서에 기재해야 함

수입신고 항목	신고해야 할 정보
UPPLIER/ BUYER INFORMATION	수출자 TAX ID
KEY/IDENTIFIER COMPLEMENT	OE
COMPLEMENT 1	한국 수출자 AEO ID
COMPLEMENT 2	K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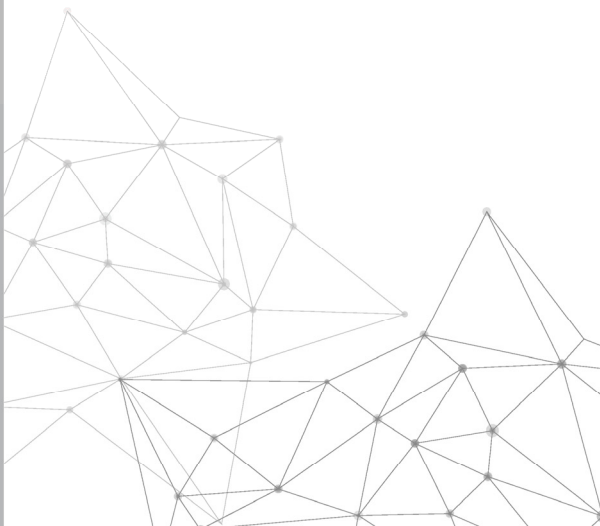
< 한-멕시코 AEO MRA 혜택 >

수입검사율 축소	• 상대국 AEO화물이 수입되는 경우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조치	• AEO기업 화물의 경우 우선 검사 및 서류심사 실시
세관연락관 지정	• AEO 화물 애로발생 시 소통창구 지정
비상시 우선 조치	• 천재지변, 테러, 물류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AEO화물 우선 조치

중·남미(Middle & South America)

도미니카공화국

(Dominican Republic)



1

국가 개요

일반 사항	국 명	도미니카공화국 (Dominican Republic)
	면 적	4만 8,442km ² (한반도의 1/4)
	수 도	산토도밍고(Santo Domingo)
	인 구	약 1,073만 명(2017년)
	주 요 도 시	산토도밍고(294만 명), 산티아고(110만 명)
	민 족	물라토 73%, 백인 16%, 흑인 11%, 기타 0.4%
	언 어	스페인어
정치	건 국 일	1844년 2월 27일(아이티공화국으로부터 독립)
	정 치 체 계	민주공화국
	국 가 원 수	대통령, 다닐로 메디나 산체스(Danilo Medina Sanchez)
경제	화 폐 단 위	도미니카 페소(RD\$)
	1인당 GDP	7,477달러(2017년)
	교 역 량 (2017년 기준)	수출: 22억 2,800만 US\$
		수입: 46억 8,400만 US\$
	주요 교역품	금, 농산물, 의료/수술장비, 전자제품, 섬유봉제품, 담배, 신발 등

자료원: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 IMF, KITA, 도미니카공화국 통계청(ONE)

한 / 도미니카공화국 관계	
교역 규모	대 도미니카공화국 수출(2019년) : 252,420 US\$ Thousands 대 도미니카공화국 수입(2019년) : 88,516 US\$ Thousands 무역수지(2019년): 163,905 US\$ Thousands
교역 품	- 수출품목 : 고철, 합금철(페로니켈), 알루미늄 - 수입품목 : 자동차, 건설중장비, 의약품, 편직물 등
투자 교류	한국의 투자금액: 661만 달러(2017년 기준)
교민	약 667명(2017년)

자료원: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관세청

2

통관절차

(1)

수출입 통관절차

개인, 법인 등이 직접 통관을 하거나 통관사가 대행할 수 있으며, 관세청 소정 세관신고서(Formulario 1131)와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통관신고서는 수출입 통관 기준 양식(수입 Form 3480, 수출 Form 3256)을 하나로 통합 개선한 “단일통관신고”(DUA/ Declaracion Unica Aduanera) 라는 새로운 양식(Form No. 003-2007) 으로 2007년 6월부터 변경됐는데, 인터넷(www.dga.gov.do)을 통해서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제출을 위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통관 시 제출되는 서류는 상업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와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다. 상기 통관 부대서류들도 스캔 파일로 DUA(단일 통관 신고서)에 첨부해 인터넷 제출이 가능하다.

통관은 물품명세, 물품가격, 중량, 세번분류 등에 관한 서류심사, 선적물품에 대한 실제 검사, 과표 설정 및 제세 부과, 세금 납부, 항만 창고로 납부 등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식료품(음료포함)의 경우 주재국 시장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도미니카 공화국 보건복지부에 제품을 필히 등록해야 한다.

도미니카 공화국 통관시스템이 크게 변모하고 있다. 2008년 3월 27일부터 선택적 통관제도 (Sistema de Riesgo y Despacho Selectivo/ Sistema Selectivo de Despacho de Mercancia)를 시범 도입했는데, 시범 대상이 도미니카 수출입 통관 물동량의 75%를 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상품이 주로 들어오는 항구인 Caucedo 항과 동 Haina 항 중 하나인 Caucedo 항구를 우선 지정해 실시하게 됨에 따라 우리 업계의 관심이 요망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선택적 통관제도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DR-CAFTA(미국-중미-도미니카 간 자유무역협정)와 EU-카리브 EPA(EU와 카리브국 간 경제 파트너십 협정) 협정 발효에 대비해 미국이나 EU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국내 법적 체계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2006년 6월 19일 “법률 226-06”이 공포됐는데, 동 법률 제14조 3항에 수입물품 도착 시 “ 24시간

내 물품통관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 충족을 위해 선택적 통관제도가 개발돼 그 간 물동량이 매우 적은 보카치카 항에서 테스트를 해오다가 본격적으로 대규모 항구인 까우세도항을 통해 시범 실시를 공식화하게 된 것이다.

〈표 53〉 선택적 통관제도의 개요

구분	내용
3색 통관채널(서킷) 시스템 도입	- 녹색 채널(Canal/Circuito Color Verde): 고속통관(Despacho Expreso) - 서류심사(Aforo Documental)없이 바로 제세(관세 및 부가세, 특별소비세 등) 및 통관료 납부 후 신속 통관 - 오렌지색 채널(Canal/Circuito Color Naranja): 서류심사(Despacho Documental)
선적서류 제출, 서류심사 후 제세 및 통관료 납부	- 적색 채널(Canal/Circuito Color Rojo): 실물검사(Reconocimiento / Verificación Física) - 실물검사까지 받아야 통관이 가능한 가장 까다로운 채널
채널 배정 및 서류 제출	- 수입 신고 시 관세청 웹사이트 (www.dga.gov.do)를 접속해 소정의 수입신고서(보통 “DUA”-Declaración Única Aduanera 로 명명)를 온라인상 작성(상품 금액, 수량, 원산지, 물품구성 원자재, 관세분류 세 번 등)제출해서 접수가 되면(접수메시지가 뜬) 신고번호 및 일자와 함께 채널(서킷)이 배정된다. - 수입신고서상 하자가 있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고 반려되는데(반려사유를 적시한 에러 메시지가 뜬), 이 경우 미비점을 보완해 재작성 제출하면 된다. 웹사이트 접속을 통한 수입신고는 요일이나 시간 제한 없이 아무 때나 가능하다. - 채널이 일단 배정되면 온라인상 서류 접수시점으로부터 선적서류를 48 시간(근무일 기준) 이내에 해당 세관 서류심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녹색 채널은 동 절차가 생략되나 통관을 위한 여타 절차(선사 및 항만당국 등) 완료 후 선적서류 원본을 화주 자격 증빙으로 제출해야 물품을 인도해갈 수 있다.

도미니카 관세청의 변모는 여러 각도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그 중 두드러진 것이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의 도미니카 버전화(MS 닷넷 기반) 도입 추진으로써 약 2,000만 달러(1,998만 달러) 규모의 EDCF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 프로젝트는 2008년 시작돼 2010년 11월 가동이 시작됐다. 도미니카 관세청의 부패 척결을 위한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 미국국제개발원(USAID) 과 추진 중인 관세행정 투명화 플랜 (Plan de Transparencia)으로, 절차상 부패위험지도(Mapa de Riesgo de Corrupcion)를 만들어 부패유발원인을 분석하고 시정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Caucedo 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한편 2006년 말 관세청 전자포탈사이트(www.dga.gov.do) 개통 이래 인터넷을 통한 전자결제시스템이 가동돼 현재 총 관세청 수입의 8%가 전자납부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하루 납부액 2~4억 페소 중 2,500만 페소 수준).

e-뱅킹 시스템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은행은 Banco Popular이며, Banco de Reserva 은행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전자결제 덕에 납부절차가 1주일 이상 걸리던 것이 불과 2~3시간으로 단축됐다.

3

AEO 제도

(1)

제도의 도입

가. 운영현황

AEO 인증의 당사자는 국제 공급망에 참여하는 운영자로서 <표 54>과 같이 각각의 책임이 다르게 나타난다.

<표 54> 도미니카공화국의 AEO 인증 당사자

구분	책임
제조업자	- 제품의 제조 공정에서 안전과 보호를 보장 -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할 때 보안 및 보호를 보장
수출업자	- 수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제출에 대한 책임 - 수출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종료 신고서 데이터 포함 - 무역정책 조치 및 수출관세 지불 등 세관 규정에 따라 상품을 수출하기 위한 법적 절차 수행 - 운송인, 화물운송업자 또는 세관직원에게 물품을 공급할 때 보안 및 보호 보장
화물운송업자	- 운송절차에 관한 규칙 적용 - 상품 운송시 보안 및 보호 보장 - 법률에 따라 간소화된 통관에 대한 규칙 적용
운영인	- 물품이 세관창고 또는 임시창고에 있는 동안 물품을 세관 통제하에 유지 - 세관 예치 제도 또는 임시 예치 규칙이 적용되는 상품의 보관으로 발생하는 의무 준수 - 세관 창고 또는 임시 창고와 관련하여 부여된 허가에 명시된 특정 조건을 충족 - 보관 영역을 침입으로부터 적절히 보호 - 제품에 대한 무단 접근, 교체 또는 취급에 대해 적절히 보호
통관 대리인	- 물품을 특정 관세 체제하에 두기 위해 각 유형에 해당하는 특정 관세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항을 적용 - 세관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정확하고 적시에 제출
운송인	- 물품운송시 안전 및 보호(특히, 운송수단에 무단접근 및 부적절한 취급 방지) - 운송서류 제공 - 세관 규정에 따라 필요한 법적 절차 수행
수입자	- 수입신고서 제출과 그 정확성에 대한 책임과 적시에 제출 - 물품수입에 관한 세관규정에 따라 필요한 법적 절차 수행 - 제품 수령시 보안 및 보호를 보장, 무단 접근 또는 제품 취급 부적절 방지

(2) 주요혜택

AEO 인증 기업은 관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저위험 업체로 구분되어 위험관리 및 통관 시스템에 AEO 업체로서 일반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세관검사시 우선순위 처리되어 선적시 Non-AEO 업체보다 AEO 업체의 선적 검사가 먼저 수행된다.

AEO 업체는 관세청과 합의한 이후에 세관검사를 다른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 AEO 업체가 원하는 장소에서 세관검사를 수행할 경우 시간 및 비용이 감소한다. 또한 AEO 자격부여에 대한 재검토 없이 단순화된 통관절차를 사용한다.

AEO 인증업체가 가지는 간접적인 혜택은 도난 및 손실 감소, 선적지연 감소, 고객충성도 향상, 보안 및 보안사고 감소, 공급자 검사 비용 절감 및 세관 협력 강화, 범죄 행위 및 기물 파손 감소, 공급망 파트너 간의 보안 강화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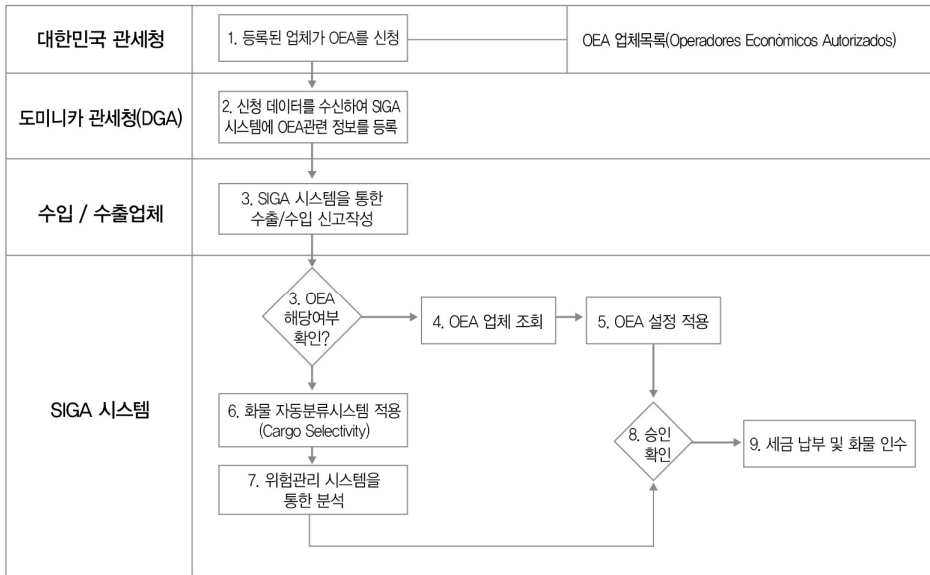
세관당국은 AEO 업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세관당국이 서비스 센터 또는 질의응답 담당자와의 접근을 권장한다. 이는 보호 및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AEO 업체가 공급망의 보안 및 보호를 보장하는 파트너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켜 신규 거래처 발굴이 용이하다.

AEO MRA 체결을 통해 AEO의 동일한 혜택을 제3국에 AEO 신청 없이 얻을 수 있어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향상된다.

4

MRA활용 방법

- ① <한국 관세청>은 한국 AEO 수출기업 공인정보 송부 (한국 관세청 →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
- ②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은 관세청 시스템(SIGA)에 등록
- ③ 도미니카공화국에서 SIGA시스템을 통해 수출입신고시 OEA업체 (우리나라의 AEO업체) 여부확인 후 혜택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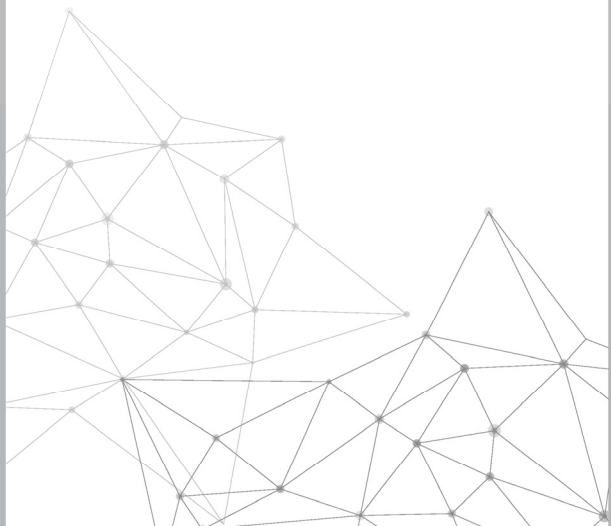
< 한-도미니카공화국 AEO MRA 혜택 >

수입검사율 축소	• 상대국 AEO화물이 수입되는 경우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조치	• AEO기업 화물의 경우 우선 검사 및 서류심사 실시
세관연락관 지정	• AEO 화물 애로발생 시 소통창구 지정
비상시 우선 조치	• 천재지변, 테러, 물류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AEO화물 우선 조치

중·남미(Middle & South America)

페 루

(Peru)



1

국가 개요

일반 사항	국 명	페루(영문명: Republic of Peru)
	면 적	128만 5,000km ² (산림지대 53.2%, 목초지 21.2%, 경작지 2.7%)
	수 도	리마 (Lima)
	인 구	총 3,220만 명(2018년)
	주 요 도 시	Lima(1,181만 명), Arequipa(131만 명), Trujillo(95만 명), Cusco(133만 명) 등
	민 족	인디오 45%, 메스티조 37%, 백인 15%, 흑인, 일본 및 중국계 3%
	언 어	스페인어
정치	건 국 일	1821년 7월 28일
	정 치 체 계	대통령 중심제
	국 가 원 수	마르틴 비스까라 (Martin Vizcarra) - 취임일: 2018년 3월 23일 - 임기 5년(재임은 가능하나 연임은 불가)
경제	화 폐 단 위	누에보 솔(Nuevo Sol) * 약자: S/., 국제통화표시: PEN
	1인당 GDP	6,506(2017년)
	교 역 량 (2018년 기준)	수출: 743,728 US\$ Mil 수입: 2,317,814 US\$ Mil
	주요 교역품	주요 수출품: 광물자원, 농수산물, 섬유, 원유 및 천연가스 주요 수입품: 소비재, 원자재/중간재, 자본재, 건설자재, 자동차, 가전제품 등

자료원: EIU, 페루 중앙은행(BCRP), 페루 통계청(INEI), 국제통화기금(IMF), WITS(wits.worldbank.org)

한 / 페루 관계	
교역 규모	대 페루 수출(2019년) : 10,927,016 US\$ Thousands 대 페루 수입(2019년) : 6,159,866 US\$ Thousands 무역수지(2019년): -1,574,086 US\$ Thousands
교역 품	우리 수출: 승용차, 합성수지, 화물자동차, 무선전화기, 의약품 등 우리 수입: 기타 금속광물, 동광, 아연광, 나프타, 기타수산물가공품 등
투자 규모	한국의 對페루 투자: 신고건수 208건, 신고금액 45억 달러, 투자금액 25억 달러 페루의 對한국 투자: 신고건수 26건, 신고금액 132만 달러
교민	약 1,115명(2017년 기준, 추정치) (외교부)

자료원: 주페루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무역협회 통계(KOTIS), 페루 통계청, 페루 중앙은행, 외교부, 관세청

2

통관절차

(1)

수입통관절차

페루의 수입통관은 도착한 수입물품이 하역 뒤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수입신고, 수입신고 및 세금납부, 물품심사, 물품반출의 순서로 진행된다. 수입통관시 통관사 및 화주, 수취인 등이 통관권자가 될 수 있다.

수입신고 이후부터 물품반출까지 수입물품의 세관 통관에 약 1주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 물품 도착 후 수입신고서 제출 이후 세금고지서를 처리하기까지 24시간이 소요되고 관련 과세는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수입 검사 대상 품목은 1~2일 간의 검사기간이 추가 소요되며, 수속 완료 후 물품 반출에 1~2일의 시일이 소요된다. 전체 수입신고의 57%는 5일, 16%는 5.6일, 13%는 7.2일, 나머지 9일 이상의 통관 소요시간이 걸린다.

수입신고서는 페루 현지에서 DUA(Declaracion Unica de Aduana)라고 불리며, SUNAT 홈페이지에서 전산으로 신고하거나 혹은 세관에 직접 서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SUNAT 웹사이트 접속을 통한 수입신고는 업무 요일 혹은 시간제한 없이 신고 가능하다.

수입신고서가 접수되면 통관자동관리시스템(SIGAD)에 전자 전송되고, 이때 수입신고서에 고유 번호가 생성된다. SIGAD 시스템의 정보 기입란 중 '목적지(Destinacion)'라고 표시된 네모에 10자리 수입신고 코드를 입력하면 화물도착 유형별(Anticipado, Urgente, Excepcional)로 기입된다.

수입신고서가 제출되면 세관은 접수서류가 제출서류지침서(Guia de Entrega de Documentos, GED)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류접수증명 BED(Boleta de Entrega de Documentos)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SUNAT의 SIGAD상에 적하목록 번호를 입력하면, 선하증권(B/L)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적하목록 번호를 입력한 후 'consultar' 버튼을 클릭하면 선하증권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다.

수입통관 시 요구되는 필수 서류는 ① 수입신고서(DUA), ② 상업송장, ③ 선적증명서,

④ 선적 전 검사증명서, ⑤ 보험증권, ⑥ 세금납부 영수증, ⑦ 성실신고 확인서(제서류 기재 사항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류) 총 7개이다. 그 외 수입물품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원산지 증명서(안데안 회원국 및 LAIA 회원국으로부터 특혜관세 수입의 경우), 품질증명서(의약품 등의 경우), 검역증명서(동식물의 경우) 등 사전 확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수입신고서에는 상품 금액, 수량, 원산지, 물품구성 원자재, 관세분류 세번 등을 기입한다. 페루는 HS코드 10단위를 사용하지만 안데안 국가와의 무역은 8단위까지만 표시한다.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수출국 관계당국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확인하는 방법인 기관증명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의료기기, 의료용품, 의약품 수입 시 의약사국(Dirección General de Medicamentos, Insumos y Drogas, DIGEMID)에 사전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허가를 받는데 약 한달 정도 소요된다. 한번 등록된 의료제품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5년 뒤 재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수입신고가 완료되면 SUNAT은 SIGAD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에게 납세고유번호(RUC)를 부여하는데 이 번호에 따라 금융기관 및 세관에 관세 및 제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세금 납부 현황은 RUC번호 혹은 DUA 번호를 입력하면 SUNAT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관세 외에도 반덤핑 관세, 품목별로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특별소비세 역시 자동적으로 표기된다. 수입신고서의 전산처리 이후, 서류접수 24시간 이내에 세금고지서를 발행하며 검사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동 사실을 세금고지서에 표기하여 통보한다.

일반적으로 Lima의 경우 18%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된다. 관세 및 제세금, 과징금 등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관세와 벌금은 현금, 은행에서 승인한 수표 혹은 전자결제로 지불할 수 있다.

페루 SUNAT 웹에 연결된 인터넷서비스로 수입 품목에 해당하는 관세율, 부가가치세율, 특별소비세율, 특별법 및 반덤핑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그 외 관련협정 및 수입제한 여부 등의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정보열람 방법은 SUNAT상의 Aduanet에 접속 → 'Codigo'에 HS코드 6단위 입력 → 'Consultar' 버튼 클릭 → 해당 관세율 및 기타 수입제한 등의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전격 서류만을 대상으로 처리순서인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동시에 부과대상 관세 산정, 수입검사 대상물품을 표본 추출한 후 각 서류를 중앙은행, 관세 수납처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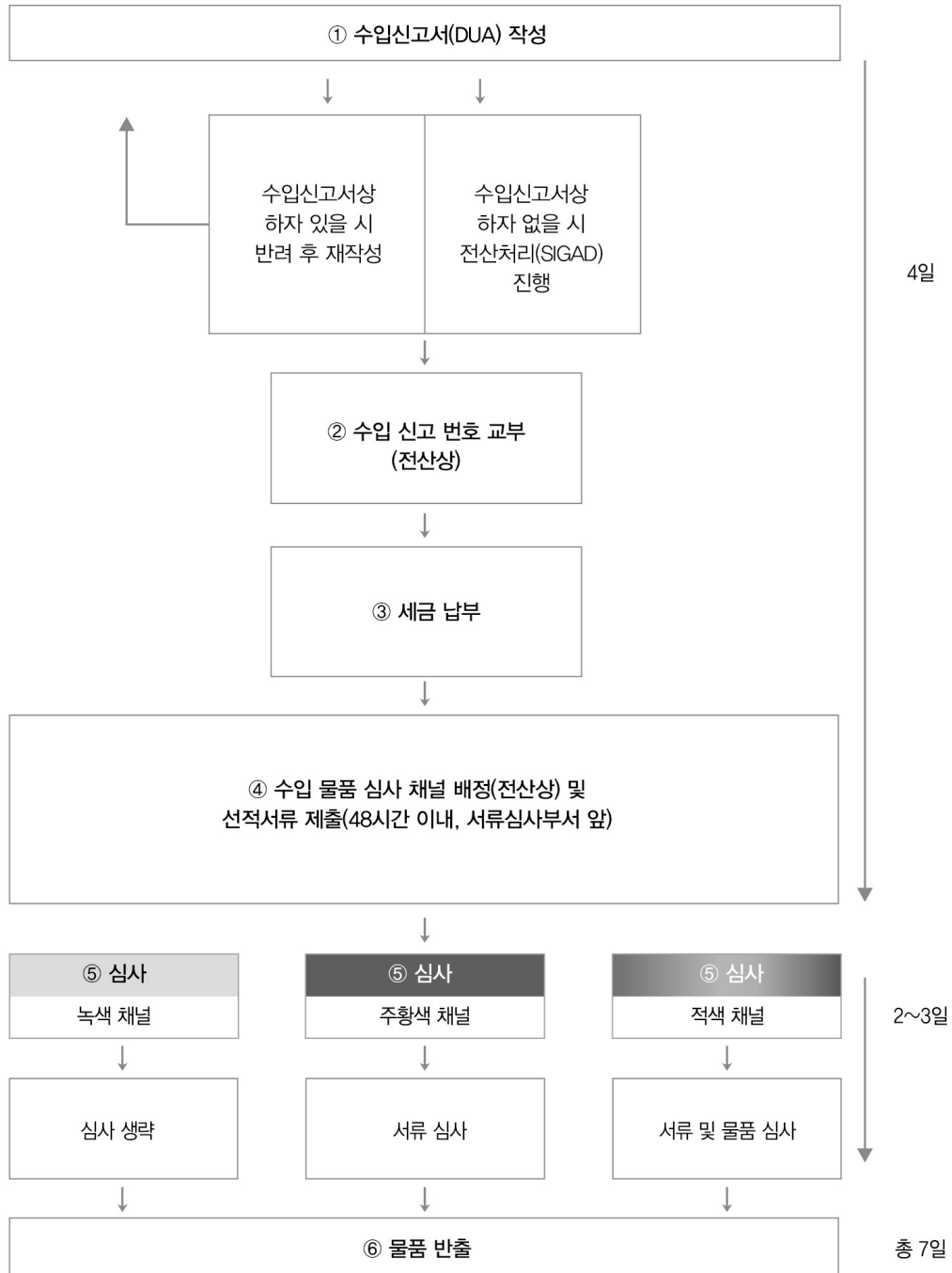
통관 신고를 위한 심사 유형이 시스템 상에서 결정되며 통관 검사 채널(3색 채널)이 배정된다. 녹색채널(Canal verde)은 심사과정이 없으며, 관세 및 제세금 납부 후 고속 통관

된다. 검사는 생략되나 선적 서류 원본을 화주 자격 증빙으로 제출해야 물품을 인도해갈 수 있다. 주황색 채널(Canal naranja)은 선적서류 등 서류심사(Revision documentaria)를 거쳐 제세 및 통관료를 납부하며 서류심사에 2~4시간 정도 소요된다. 적색 채널(Canal rojo)은 서류 및 물품 검사, 실물 검사(Reconocimiento fisico)까지 받아야 하는 가장 까다로운 채널로 화물 심사에 이상이 없으면 2.2일, 이상이 발생하면 4.7일이 소요된다.

수입검사 대상 물품은 신청인이 검사관과 함께 세관 물품창고에서 실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호물품, 원호 물품, 관세 구역에 일시 예치 품목 등은 수입검사를 하지 않는다. 검사관은 서류하자 및 관세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물품을 검사확인서와 비교하여 측정된 관세와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검사확인서가 없어 과세 결정이 어려운 경우 세관이 자체 보유한 관세 평가 금액을 통해 물품을 검사한다. 수입검사가 종료되면 검사관은 모든 수입서류에 검사확인 날인을 하여 수입물품 출고처로 이송하며, 이후 통관신청자는 관세납부 필증을 지참하여 출고처에서 물품을 인수할 수 있다. 수입검사 제외 물품은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출고처로 이송한다. 가능한 48시간 이내 반출되며 수입 전 사전신고, 부두 직통관 및 세액 결정 전에 화물 반출을 승인한다.

〈그림 68〉 페루의 수입절차



3

AEO 제도

(1) 제도의 도입

가. 도입 경과

2001년 미국, 2004년 스페인, 2005년 영국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은 AEO의 도입을 촉진하였다. 2001년 9월 이후, 보안위험에 대한 인식과 국제무역 공급망의 원활화를 위해 WCO 평의회는 2005년 국제무역에서 상품의 흐름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SAFE Framework를 채택하였다.

AEO는 WCO 물류체인의 안전표준 또는 이와 유사한 품질 표준을 준수하는 세관 당국의 승인을 받은 국제물품 운송에 관여하는 당사자인 제조업체, 수입업체, 수출업체, 중개인, 운송업체, 화물통합업체, 중개업체, 항구, 공항, 창고, 유통업체 등을 포함한다. 페루는 2012년 AEO가 공식 출범하였고, AEO 인증 업체가 2013년 10개에서 2018년에는 101개로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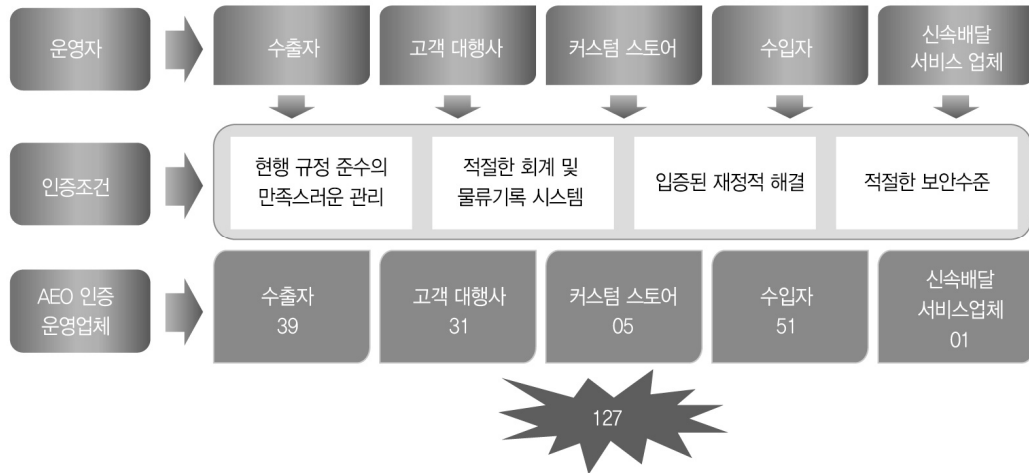
나. 운영 현황

페루의 AEO 제도는 2012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페루 대통령(H.E. Ollanta Humala), 페루 관세청장(Rafael Garcia) 등 페루 정부 인사 및 WCO 관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3일 양일 동안 AEO 런칭 행사를 치렀다.

페루의 AEO 제도는 안보와 위험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페루 관세법 Customs General Law, Legislative Decree 1053의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다. AEO 제도는 수입과 수출에 적용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AEO 제도의 대상은 물류공급망 당사자로 수출업자, 수입업자, 보세창고 운영인, 수출입화물 운송업자, 관세사, 항만터미널 운영인, 선박회사, 항공사 등이다.

AEO 등록 정보에는 RUT(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회사명, 2~4명의 긴급 연락처, 화물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입해야 한다. 이러한 페루의 AEO 인증의 일반 체계를 살펴보면 <그림 69>와 같다.

〈그림 69〉 페루의 AEO 일반 체계



페루의 AEO 인증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55>와 같다. 적절한 보안 수준은 보안관리 프로그램, 거래업체 보안, 시설의 물리적 보안, 시설접근보안, 공정안전, 컨테이너 및 기타 화물단위 안전, 운송과정의 보안, 직원보안, 정보보안 및 컴퓨터 시스템, 위협에 대한 보안 및 인식 교육 등 10가지 영역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거래업체 보안은 거래업체 선택을 위한 작성 및 검증 가능한 절차, 정기적인 시설 방문, 재무평가·지분·운영능력,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목록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의 물리적 보안은 적절한 물리적 구조를 갖추고 감시 서비스, 시설 경계의 울타리, 출입구 부스 설치, 현장 비디오 감시, 잠금장치 제어, 적절한 조명, 경보 시스템 등을 구비해야 한다.

시설 접근 보안은 직원, 방문객, 경차 및 화물차량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를 행사하기 위해 CCTV, 접근제어절차, 잠금장치 통제 정책 등의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직원 및 방문객을 통제하고 회사 자산을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시설에 대한 무단 출입을 방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공정 안전은 공급망내 화물의 운송, 취급, 생산 및 보관과 관련된 프로세스의 무결성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는 화물취급 프로세스, 화물운송 및 보관과 관련된 문서처리, 이상상황 발생시 조치 정책을 기준으로 한다.

컨테이너 및 기타화물단위의 안전은 ISO 17712 표준에 부합하는 보안 씰을 사용을 권

장한다. 이는 7가지 지점 및 17가지 지점의 컨테이너 검사의 방법론, ISO 17712 인증에 따라 사용되는 쉘의 제어 및 관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운송과정의 보안은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 경로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창고에 들어가기 전에 차량을 모니터링하고, 화물운송서비스를 실행하는 장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운송을 수행하는 장치에는 GPS를 설치해야 한다.

〈표 55〉 페루 AEO 인증조건

구분	내용
현행 규정 준수의 만족스러운 관리	- 고유 납세자 기록에 등록 - 세금신고서 발표(연간/월간) - 세관 신고서의 정규화 - 강제적인 수집 전 예방 조치 - 유효한 허가 및 라이선스 보유 - 관세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는 것 - 상품의 FOB 가격의 2% 미만의 조정
적절한 회계 및 물류기록 시스템	-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 조직 및 기능의 규제 - 물류 및 회계 운영의 등록 및 통제를 위한 컴퓨터 시스템(추적성) - 세관 규정에 따른 장부 및 기록
입증된 재정적 해결	- EEFF는 국가 법률에 따라 의무이행 능력과 재정적 능력 반영 - 4년 동안 3번의 연속 손실 방지 - 파산 또는 청산 절차에 포함되지 않음 - 4년 동안 3가지 지연의 손실이 없음 - 인증서 제출일에 강제 채무가 없는 경우 - 지난 2년간 수출입 실적
적절한 보안 수준	- 물류체인 보안계획 - 거래업체 보안 - 시설의 물리적 보안 - 시설접근 보안 - 공정 보안 - 컨테이너 및 화물유닛 안전 - 운송과정에서의 안전 - 적재 보안 - 정보 및 정보시스템 보안 - 보안 및 위협 인식 교육

직원보안은 국제무역물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직원 선정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직원안전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근로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통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근로자의 통제, 근로자 식별관리, 중요한 직책을 맡은 은퇴자가 근로자의 사업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정보보안 및 컴퓨터 시스템은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의 추적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비밀번호 보호, 자료 백업, USB, 외장하드드라이브 등의 잠금장치, 가상정보의 보안 등을 요구한다.

위협에 대한 보안 및 인식 교육은 보안교육 및 위협인식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AEO 교육 등 이를 인식 및 행동하기 위한 훈련을 수행한다.

(2) AEO의 주요 혜택

AEO에 부여되는 주요 혜택은 원활화(15), 기간 축소(4), 훈련(1), 통제감소(6), 운영자의 재무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활화(5) 등이 AEO 행정절차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부문할당, 사무실에 대한 명목 보증, 통제감소, 국제인정, 처리시간의 감소 등을 나타내고, 기타 관리 대리인의 통합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 중에 있다.

상업분야에서의 혜택은 AEO가 가지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새로운 고객 및 공급업체의 신규 거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기업의 운영범위에서 혜택은 프로세스의 시간, 비용 및 보안 시스템에 대한 운영성의 향상을 가져오고, AEO 인증을 통해 다른 국제인증의 접근이 용이해지며 수출상품을 국내에서 직접 배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안분야에서의 혜택은 페루 및 기타 기업과의 신뢰성 향상, 기업의 이미지 보호, 프로세스의 추적성 확보, 상품 도난 및 손실의 감소 등이 있다. 금융분야에서의 혜택은 통관시간을 절약하여 운영비용 초과를 경제적으로 절감하고, 인증취득과정이 완전 무료이다.

4

MRA활용 방법

- ① <한국 관세청>은 한국 AEO 수출기업 공인정보 송부 (한국 관세청 → 페루 관세청)
- ② <한국 AEO 수출기업>은 수출 시 AEO공인번호를 페루 수입자에게 통보
- ③ <페루 수입자>는 AEO 공인번호를 수입신고시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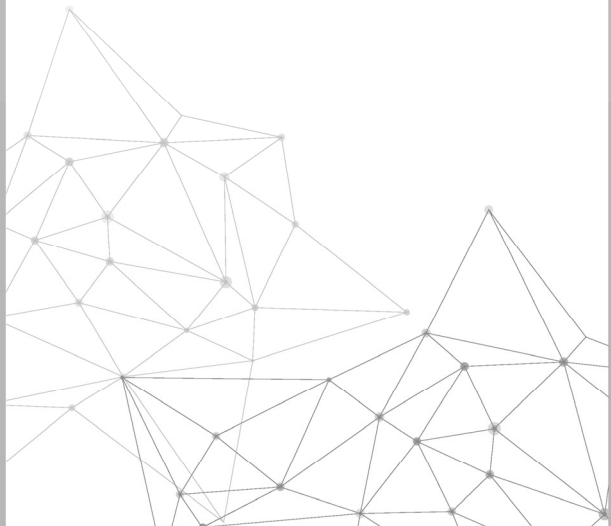
〈한-페루 AEO MRA 혜택〉

수입검사율 축소	• AEO 화물이 수입되는 경우 검사율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 AEO 화물에 대한 수입신고시 서류심사 비율 축소
우선 통관 조치	• AEO기업 화물의 경우 우선 검사 및 서류심사 실시
세관연락관 지정	• 통관애로 발생 시 즉시 연락할 수 있는 창구 지정
비상시 우선 조치	• 천재지변, 테러, 물류장애 등 비상 발생 시 AEO 화물 우선 조치

중·남미(Middle & South America)

우루과이

(Uruguay)



1

국가 개요

일반 사항	국 명	우루과이(Uruguay)
	면 적	176,220km ² (한반도의 0.8배)
	수 도	몬테비데오
	인 구	348만 2,156명(2019 통계청, UN통계 기준)
	주 요 도 시	알마티(Almaty), 카라간다(Karaganda), 침켄트(Chimkent) 등
	민 족	백인 88%(스페인, 이태리계), 메스티소 8%, 흑인 4% 등
	언 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정치	건 국 일	1825.08.25. (브라질로부터 독립)
	정 치 체 계	대통령 중심제
	국 가 원 수	Jose Pepe Mujica Cordano 대통령
경제	화 폐 단 위	페소 (UYU)
	1인당 GDP	8,484달러(2017년)
	교 역 량 (2018년 기준)	수출: 7,498 US\$ Mil
		수입: 8,893 US\$ Mil
	주요 교역품	농축산물, 천연가스 등

출처 : 무역협회 통계, WITS(wits.worldbank.org)

한 / 우루과이 관계	
교역 규모	대 우루과이 수출(2019년) : 121,278 US\$ Thousands 대 우루과이 수입(2019년) : 134,323 US\$ Thousands 무역수지(2019년): -13,044 US\$ Thousands

자료원: 관세청

2

통관절차

(1)

수입통관절차

우루과이는 개방적인 통상 및 투자 체제를 가지고 있고, 전략상 다자 및 지역의 틀에서 지속적으로 통상과 투자의 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우루과이 경제규모가 작고 개방적이므로 통상의 제약이나 왜곡을 받지 않고 외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경제블록의 하나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회원국이다. 남미공동시장은 회원국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및 공동 경제정책의 시행 등 재화, 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향하는 시장통합을 통해 회원국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창설되었다.

남미공동시장 규정에 따라 우루과이는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외공동관세(CET)를 부과한다. 고부가가치 수입품에 대해서는 높은 CET를 부과하는데, 보통 0~20%대이고 평균적으로 10.3%이다. CET에 산업별 및 국별 예외가 존재한다. 산업별 예외는 자본재, 정보기술, 통신에 관련된 물자가 해당되며, 국별 예외는 각 회원국들이 특정 물자들을 예외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대부분의 물자는 관세를 면제하지만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자재, 중간재, 소비재는 각각 2~6%, 8~9%, 10~20%의 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자동차와 농업 및 호텔 공급재는 특혜 관세를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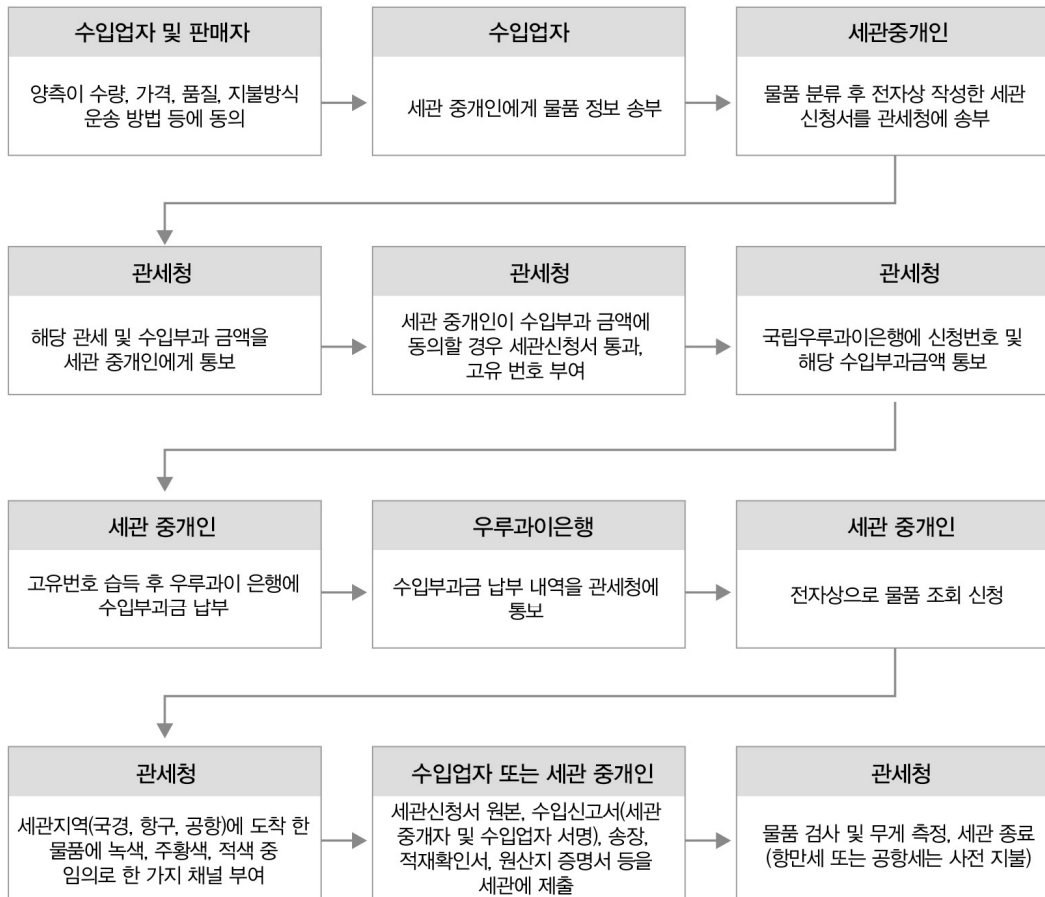
우루과이는 관세 이외에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사확인 수수료, 세관특혜용역비, 특별세를 부과하는데 이러한 수입부과금의 합계가 관세보다 높아지기도 한다. 영사확인 수수료는 수차례 국내법 개정으로 폐지를 추진하였으나 유지되고 있으며 세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인상되었다. 반면 공화국은행(BROU)이 징수하던 수수료(CIF의 3%)는 폐지되었다.

우루과이는 국세청(Dirección General Impositiva), 사회보장공단(Banco de Previsión Social), 우루과이보험공단(Banco de Seguros del Estado)에 등록되어 있는 수입업자에 한해 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업자가 직접 통관 절차를 취하지 못하고 반드시 세관중개인을 이용해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보건, 환경, 국방 등 특별한 사유로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의 경우 수입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22일이며, 2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 기준으로 관세를 제외한 소요 비용은 약 1,330달러이다.

통관시 석유, 식용유, 산업용 정제 설탕, 남미공동시장 비회원국산 섬유 제품, 신발 등은 반드시 적색 채널을 통과해야 하고, 위스키 및 담배 등은 특별 문서 제출 및 예치금 공탁의 추가 절차가 적용된다. 방송용 음반 및 개인적 용도로 국제우편을 통해 도착한 음반(50달러 이하 음반을 제외)은 저작권 규정에 일치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휴대전화는 세관신청서에 명시된 일련번호 코드가 필요하다.

〈그림 70〉 우루과이의 일반적인 통관 절차



3

AEO 제도

(1)

제도의 도입

가. 도입 경과

우루과이 세관은 2014년 3월 18일 OEC(Qualified Economic Operator)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11월 25일 처음으로 업체가 OEC 인증을 받았고, 2015년 5월 7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OEC 프로그램은 WCO의 SAFE Framework를 기반으로 하는 AEO 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또한 WTO 무역 원활화 협정 조항에 부합하고, 공급망에서 보안 수준이 높은 프로그램이다. 동 프로그램은 수출업자, 수입업자, 세관 중개인, 운송업자, 창고, 자유지역 사용자 등 모든 유형의 운영자를 포함하여 설계되었다. OEC 프로그램을 인증한 업체는 3년간 유효한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OEC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는 2013년 법 19149 제148조에 OEC(Qualified Economic Operator)가 정의되고, 우루과이 동양공화국 관세법(Customs Code of the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CAROU)과 OEC의 법령 51/2014 규제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나. 운영 현황

OEC 인증서 획득과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은 합법적인 기업, 재정적 지급 능력, 양호한 법규준수, 행정관리 응용 프로그램, 안전관리 시스템 등이 있다. 첫째, 합법적인 기업은 DGI(General Directorate of Taxation)에 등록되어 있고, 최소 3년 이상 무역관련 운영자로 종사해야 한다. 둘째, 기업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업의 역량을 입증하기 위해 재정적 지급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세금 및 법적 준수의 이력이 만족스러워야 한다. OEC 프로그램을 공인하기 위해서는 직전 3년간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넷째, 기업이 대외 무역거래에 대한 통제수단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화되고 검증 가능한 행정 관리 응용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다섯째, 기업의 사업운영 특징 및 규모에 따라 현장의 물리적 보안, 시설에 대한 안전한 인력 접근, 물품 보안, 안전 운송 프로세스, 안전한 유닛화물, 비즈니스 파트너와 관련된 안전성, 안전 직원 모

집, 보안 정보 등 노출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 문서화된 검증 가능한 이행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OEC 프로그램은 기업이 공급망 활동에 노출된 위험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위험 매트릭스를 개발함으로써 보안 계획은 기업이 인증을 구현하도록 요구하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기업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고, 실패의 식별과 책임을 결정하기 위한 기업 운영의 추적성을 보장하며, 비상 계획을 수립하여 공급망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발생을 감소시킨다.

(2) 주요 혜택

우루과이 OEC 프로그램의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 혜택
모든 운영자	- 공식적인 OEC - 우선순위 처리 기록 - 우루과이의 국민 세관 웹사이트에 있는 OEC 기업의 성명 및 지위교육
수출입 기업	- 사전 통관 - 물리적 및 문서 통제 수준 감소 - 수출입 국경선의 선택적 통제 - 물리적 통제 운영에 지역 수입을 위한 선택적 선적 컨테이너
운송업	- 단순화된 절차를 통한 통관 원활화 - 트럭 운전사의 공식적인 문자 메시지 전송 - 통합 화물

4

MRA활용 방법

- ① <한국 관세청>은 한국 AEO 수출기업 공인정보 송부 (한국 관세청 → 우루과이 관세청)
- ② <한국 AEO 수출기업>은 수출 시 AEO 공인번호를 우루과이 수입자에게 통보
- ③ <우루과이 수입자>는 AEO 공인번호를 수입신고시 기재

〈한-우루과이 AEO MRA 혜택〉

수입검사율 축소	• AEO 화물이 수입되는 경우 검사율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 AEO 화물에 대한 수입신고시 서류심사 비율 축소
우선 통관 조치	• AEO기업 화물의 경우 우선 검사 및 서류심사 실시
세관연락관 지정	• 통관애로 발생 시 즉시 연락할 수 있는 창구 지정
비상시 우선 조치	• 천재지변, 테러, 물류장애 등 비상 발생 시 AEO 화물 우선 조치

부록

현지언어 MRA 혜택적용 안내



USA (signed on June 25, 2010, effective from October 1, 2010)

① USA Program Title

- C-TPAT, acronym of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② Korean AEO exporters check MIDs assigned to their respective premises.

MID

- MID(Manufacturer ID) is an identifier assigned to each premises of manufacturers for CBP risk management on cargoes bound for USA.
- MID Issuers : US importers or customs brokers
- MID Confirmation: Korean AEO exporters check their MID from US importers or customs brokers.

③ A Korean AEO exporter informs KCS of its MID number .

④ KCS sends to CBP* the list of AEO exporters that contains AEO code and MID.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⑤ CBP uploads the received list on C-TPAT Portal. Automated Targeting System recognizes that MID sent from KCS is the same as the one declared on entry summary. And then MRA benefits are automatically conferred.

※ Please make sure that US importers declare onto entry summary the same MID as the one notified to Korea.

〈Mutually Agreed Benefits under KOR–US AEO MRA〉

Reduced Inspection Rate	• Lower physical inspection rate, equivalent to that of Tier 1 C-TPAT members.
Priority Examination	• Priority treatment when selected for examination
Miscellaneous	• Waived from CBP on-site validation on Korea-based business partners of US C-TPAT members, to check physical access, security management, etc

Reference 1: Description of MID number

- MID issuer: US importers or customs brokers
- MID structure: 15 digits—or—under alphanumeric set
e.g. CC NAM NAM 1234 CIT

National Code	First three letters of first Name	First three letters of second Name	Four numbers of Street	Three letters of City Name
2 digits	3 digits	3 digits	4 digits	3 digits

e.g.) Bando Sangsa Ltd 84 Grays Inn Rd London, WWC1, UK
→ GBBANSAN84LON

- Note: In case a Korean exporter has multiple importers in US, they may use different MID numbers for a single exporter, because of their recognition gap on name, address, etc.

e.g.) Samsung Electronics Co. Ltd, 250, 2-Ka, Taepyung-ro,
Chung-Ku, Seoul, Korea
→ ① KRSAMELE2502SEO ② KRSAMELE250SEO

- Actions Recommended: Korean exporters confirm first their MID number and ask a new or another trading partner to declare the existing MID number. Or in case when there are different MID numbers in use assigned by respective US importers, all respective MID number must be communicated to KCS.

Reference 2: US Entry Summary

- In order to receive MRA benefits in USA, a US importer must declare Manufacturer ID in data field(No. 13) of the entry summary. This MID must be the same as the one that a Korean exporter has informed KCS of.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Form Approved OMB No. 1851-0022 EXP. 08-31-2014		
ENTRY SUMMARY				1. Filer Code/Entry No.	2. Entry Type	3. Summary Date
				4. Surety No.	5. Bond Type	6. Port Code
				7. Entry Date		
8. Importing Carrier		9. Mode of Transport		10. Country of Origin		11. Import Date
12. B/L or AWB No.		13. Manufacturer ID		14. Exporting Country		15. Export Date
16. I.T. No.	17. I.T. Date	18. Missing Docs		19. Foreign Port of Lading		20. U.S. Port of Unlading
21. Location of Goods/G.O. No.		22. Consignee No.		23. Importer No.		24. Reference No.
25. Ultimate Consignee Name and Address				26. Importer of Record Name and Address		
City State Zip				City State Zip		
27. Line No.	28. Description of Merchandise			32. A. Entered Value B. CHGS C. Relationship	33. A. HTSUS Rate B. ADA/CVD Rate C. IRC Rate D. Visa No.	34. Duty and I.R. Tax Dollars Cents
	29. A. HTSUS No. B. ADA/CVD No.	30. A. Grossweight B. Manifest Qty.	31. Net Quantity in HTSUS Units			
Other Fee Summary for Block 39				35. Total Entered Value		
				\$		
Total Other Fees				\$		
36. DECLARATION OF IMPORTER OF RECORD (OWNER OR PURCHASER) OR AUTHORIZED AGENT				CBP USE ONLY		TOTALS
I declare that I am the ☐ Importer of record and that the actual owner, purchaser, or consignee for CBP purposes is as shown above, OR ☐ owner or purchaser or agent thereof. I further declare that the merchandise ☐ was obtained pursuant to a purchase or agreement to purchase and that the prices set forth in the invoices are true, OR ☐ was not obtained pursuant to a purchase or agreement to purchase and the statements in the invoices as to value or price are tru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 also declare that the statements in the documents herein filed fully disclos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e true prices, values, quantities, rebates, drawbacks, fees, commissions, and royalties and are true and correct, and that all goods or services provided to the seller of the merchandise either free or at reduced cost are fully disclosed. I will immediately furnish to the appropriate CBP officer any information showing a different statement of facts.				A. LIQ CODE		B. Ascertained Duty
				REASON CODE		C. Ascertained Tax
				D. Ascertained Other		37. Duty
				E. Ascertained Total		38. Tax
						39. Other
						40. Total
41. DECLARANT NAME		TITLE		SIGNATURE		DATE
42. Broker/Filer Information (Name, address, phone number)				43. Broker/Importer File No.		
				Paperwork Reduction Act Notice CBP Form 7501 (06/09)		



Canada (signed on Jun 25, 2010, effective from Nov 1, 2015)

- ① Canada's Program Title: PIP (Partners In Protection Program)
- ② KCS sends the list of Korean AEO exporters to CBSA*.
 - *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 ③ A Canadian importer enters the name of Korean AEO exporter in the data field 'Shipper' of Freight/Cargo Manifest.
- ④ CBSA identifies the declared AEO name and applies preferential inspection rate to the Korean AEO under its System.

〈Mutually Agreed Benefits under KOR–CA AEO MRA〉

Reduced Inspection Rate	○ Less physical inspection on Korean AEO cargo whose risk score is assessed as low as that of PIP members * Please note that random inspection is not exempted.	Applicable under System
-------------------------	--	-------------------------

※ Benefits for PIP membership

- Access to dedicated FAST* lanes for consignment moving between USA and Canada
 - * FAST (Free and Secure Trade) vehicle lanes expedites cargo at land border ports of entry.
- A reduced risk score, resulting in a lower examination rate at the border
- Access to CBSA security assessments, awareness sessions, and CBSA expertise
- Marketing PIP member as a secure, low-risk Trusted Trader



Singapore(signed on Jun 25, 2010, effective from Nov 1, 2011)

- ① Singapore's Program Title: STP (Secure Trade Partnership)
 - ② KCS sends the list of Korean AEO exporters to Singapore Customs.
 - ③ A Korean exporter informs a Singapore importer of its 12-digit AEO Code (KRAEO*****), which is recommended to be typed onto invoice or packing list.
 - ④ The Singapore importer must enter the informed AEO code in the data field 'CA Licence' on 'TradeNet' system, Singapore's National Single Window for trade declaration as follows.
- ※ Mostly in Singapore, customs agents declare imports on importer's behalf. So please make sure to communicate with the importer that AEO code must be declared.

Declaration Item	Information to be declared
Customs Procedure Code (CPC)	AEO
Processing Code1(PC 1)	KR
Processing Code2(PC 2)	1234567 (KOREA AEO ID)

- ⑤ Singapore Customs compares AEO code received from KCS and the one declared by the importer. If those two are matched, MRA benefits are accorded.

〈Mutually Agreed Benefits under KOR–SG AEO MRA〉

Reduced Inspection Rate	• Less physical inspection on AEO cargo
Simplified verification of import-related documents	• Less documentary check on AEO cargo
Priority Clearance	• Priority treatment is given to AEO cargo when selected for physical or document exam
Expedited clearance	• Expedited clearance in the event of disruption in trade flow, like natural disaster, terrors and other emergencies

Reference 1: Declaration on TRADENET System

The screenshot shows the 'Header' section of the TRADENET System Declaration form. The form includes tabs for 'Header', 'Detail', 'Invoice', 'Item', and 'Summary'. The 'Header' tab is active, and the form contains the following fields:

- Declaration Type:** * IPT-GST - GST (including duty exemption) (dropdown)
- In Transport Mode:** (dropdown)
- Cargo Packing Type:** * OTHER NON-CONTAINERIZED (dropdown)
- BG Indicator:** (dropdown)
- Supply Indicator:** (dropdown)
- Previous Permit No.:** (text field)
- Additional Recipient 1:** (text field)
- Additional Recipient 2:** (text field)
- Additional Recipient 3:** (text field)
- Remarks:** (text area)
- Number Of Customs Procedure Codes To Add:** (text field)
- Customs Procedure Code 1:** (text field) **AEO** (dropdown)
- Additional Procedure Code Reference:** (text field) **AEO** (dropdown)
- Processing Code 1:** (text field) **KR**
- Processing Code 2:** (text field) **3XXXXXX**
- Number Of Processing Codes To Add:** (text field)

The 'Processing Code 1' and 'Processing Code 2' fields are highlighted with red boxes, indicating the specific codes entered by the declarer.

- As shown above, at Cargo Clearance Permit(CCP), a declarer selects 'AEO' in Customs Procedure Code(CPC), 'KR' in Processing Code 1, and finally enters 7-digit number without letters 'KRAEO' in Processing Code 2.

Reference 2: Cargo Clearance Permit (CCP)

CARGO CLEARANCE PERMIT		PG : 1 OF 2
MESSAGE TYPE : IN-PAYMENT PERMIT		
DECLARATION TYPE : GST (INCLUDING DUTY EXEMPTION)		
IMPORTER:	VALIDITY PERIOD :	03/11/2016 - 04/11/2016
ACME		
20110901FF	TOTAL GROSS WT/UNIT :	1.000/TNE
EXPORTER:	TOTAL OUTER PACK/UNIT:	1/LOT
	TOT EXCISE DUT PAYABLE : S\$	0.00
	TOT CUSTOMS DUT PAYABLE: S\$	0.00
HANDLING AGENT:	TOT OTHER TAX PAYABLE : S\$	0.00
	TOTAL GST AMT :	S\$ 10010.00
	TOTAL AMOUNT PAYABLE :	S\$ 10010.00
	CARGO PACKING TYPE:	CONTAINERIZED
	IN TRANSPORT IDENTIFIER:	
PORT OF LOADING/NEXT PORT OF CALL:	CONVEYANCE REFERENCE NO:	342342
BUSAN	OBL/MAWB NO:	526
PORT OF DISCHARGE/FINAL PORT OF CALL	ARRIVAL DATE :	03/11/201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OU TRANSPORT IDENTIFIER :	
SINGAPORE	CONVEYANCE REFERENCE NO:	
INWARD CARRIER AGENT:	OBL/MAWB/UCR NO:	
OUTWARD CARRIER AGENT:	DEPARTURE DATE :	
PLACE OF RELEASE:	CERTIFICATE NO:	
LICENCE NO:	PLACE OF RECEIPT:	
	OTHERS	
	CUSTOMS PROCEDURE CODE (CPC):	
	AEO	

Copyright © 2016 Singapore Customs

– AEO code is indicated in red upon approval of CCP.

〈Singapore〉 To check AEO status, go to the website

- <http://www.customs.gov.sg/leftNav/trad/sup/Our+Trusted+Partners.htm>

Japan (Signed on May 20, 2011 , effective from Nov 1, 2011)

- ① KCS sends the list of Korean AEO exporters to Japanese Customs.
- ② A Korean AEO exporter informs a Japanese importer of its AEO Code.
- ③ The Japanese importer converts the informed AEO Code and enters it in the data field 'Shipper/Exporter' on NACCS* screen for import declaration in the following manner.

*NACCS, acronym of Nippon Automated Cargo Clearance System

- AEO Code received from Korea : AEOKR1234567
- How to input the Code in Shipper/Exporter field :
number "00" must follow "KR", like A1234567KR00

- ④ Japanese Customs checks the declared Code against the data sent from KCS, and grants MRA benefits.

〈Mutually Agreed Benefits under KOR–JP AEO MRA〉

Reduced inspection rate	• Lower physical inspection rate
Simplified verification of import–related documents	• Less documentary check and fewer documentary requirements
Priority Clearance	• Priority treatment is given to AEO cargo when selected for physical or document exam

〈Japan〉 To check AEO status, go to the website

- <http://www.customs.go.jp/kyotsu/aeo/export/exporter.pdf>

Reference 1: NACCS screen of Japanese Customs

- For MRA benefits in Japan, Japanese importers input 'A+7-digit number+KR00' in the data field of Shipper/Exporter on NACCS.

IDA A/D 輸入申告事項登録(輸入申告)

ファイル(F) 表示(V)

共通部 繰返部

大額/少額* ☐ 申告等種別* ☐ 申告先種別 ☐ 貨物識別 ☐ 申告番号

あて先官署 あて先部門 識別符号 申告等予定年月日

輸入者

住所

蔵置場所* 申告等予定者

輸入取引

仕出人

住所

AWB* MAWB

貨物個数 個 貨物重量(グロス)

積載機名 入港年月日

取卸港 積出地 貿易形態別符号

戻税申告 ☐ 貿易管理令 ☐ 輸入承認証 ☐ 内容点検結果 ☐ 調査用符号

他法令 ☐ 共通管理番号 食品 ☐ 植防 ☐ 動検 ☐

輸入承認証等1 2 3

4 5

仕入書識別* ☐ 電子仕入書受付番号 仕入書番号

仕入書価格

運賃 保険

評価 包括評価番号 補正

BPR係数合計 搬入予定

納期限延長 ☐ BPR申請事由 ☐ 納付方法 ☐ 口座番号 担保番号

記事(税関)

記事(通関)

記事(荷主)

社内整理番号

日本(2011年5月20日に署名、2011年11月1日から有効)

- ① KCSは韓国のAEO輸出業者のリストを日本の税関に送信します。
- ② 韓国のAEO輸出業者は、日本の輸入業者にAEOコードを通知します。
- ③ 日本の輸入業者は、通知されたAEOコードを変換し、次の方法で輸入申告のためにNACCS*画面の「Shipper / Exporter」データフィールドに入力します。
*NACCS, acronym of Nippon Automated Cargo Clearance System
－ 韓国から受け取ったAEOコード：AEOKR1234567
－ Shipper / Exporterフィールドにコードを入力する方法：
A1234567KR00のように、番号「00」は「KR」の後に続く必要があります
- ④ 日本の税関は、宣言されたコードをKCSから送信されたデータと照合し、MRAの特典を付与します。

<KOR-JP AEO MRAに基づく相互に合意された特典>

検査率の低下	• 低い身体検査率
輸入関連書類の簡易検証	• ドキュメンタリーチェックの減少とドキュメンタリー要件の減少
優先クリアランス	• 身体検査または書類検査のために選択された場合、 AEO貨物に優先的な治療が与えられます

<日本> AEOステータスを確認するには、ウェブサイトにごアクセスしてください

- <http://www.customs.go.jp/kyotsu/aeo/export/exporter.pdf>

参考 1: 日本の税関のNACCS画面

- 日本でのMRAのメリットのために、日本の輸入業者はNACCSの荷主/輸出業者のデータフィールドに「A + 7桁の番号+ KR00」を入力します。

The screenshot shows the 'IDA AID 輸入申告事項登録(輸入申告)' window. The '共通部' (Common Section) is active. Key fields include:

- 申告番号** (Declaration Number)
- 識別符号** (Identification Code)
- 申告等予定年月日** (Declaration Date)
- 輸入者** (Importer) and **住所** (Address)
- 輸出者** (Exporter) and **住所** (Address) - This field is circled in red with the annotation "Shipper/Exporter".
- 仕出人** (Shipper) and **住所** (Address) - This field is circled in red with the annotation "Input exporters' code for MRA (A+ 7 digits + KR + 00)".
- AWB** (Air Waybill) and **MAWB** (Master Air Waybill) numbers
- 貨物個数** (Quantity of Goods) and **貨物重量(グロス)** (Gross Weight)
- 積載機名** (Cargo Name) and **入港年月日** (Arrival Date)
- 取卸港** (Port of Discharge) and **積出地** (Place of Origin)
- 貿易形態別符号** (Trade Form Code)
- 戻税申告** (Refund Declaration) and **貿易管理令** (Trade Management Order)
- 輸入承認証** (Import License) and **内容点検結果** (Inspection Results)
- 調査用符号** (Investigation Code)
- 他法令** (Other Laws) and **共通管理番号** (Common Management Number)
- 食品** (Food) and **植防** (Plant Protection)
- 動検** (Movement Check)
- 輸入承認証等1** (Import License etc. 1) and **2**
- 仕入書識別** (Purchase Order Identification) and **電子仕入書受付番号** (Electronic Purchase Order Receipt Number)
- 仕入書番号** (Purchase Order Number)
- 仕入書価格** (Purchase Order Price)
- 運賃** (Freight) and **保険** (Insurance)
- 評価** (Evaluation) and **包括評価番号** (Inclusive Evaluation Number)
- 補正** (Correction) and **搬入予定** (Loading Plan)
- BPR係数合計** (BPR Coefficient Total)
- 納期限延長** (Extension of Payment Period) and **BPR申請事由** (BPR Application Reason)
- 納付方法** (Payment Method) and **口座番号** (Account Number)
- 担保番号** (Collateral Number)
- 記事(税関)** (Remarks (Customs))
- 記事(通関)** (Remarks (Broker))
- 記事(荷主)** (Remarks (Shipper))
- 社内整理番号** (Internal Management Number)



China (signed on June 27 2013 , effective from April 1, 2014)

① China's Program Title

: IMECM, acronym of Interim Measures for Enterprise Credit Management, is a new standard of business assessment by GACC*, officially launched on Dec 1, 2014.

* GACC: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② KCS sends the list of Korean AEO exporters to GACC.

③ A Korean AEO exporter informs a Chinese importer of its own AEO code.

④ The Chinese importer alters the received AEO code in a following manner, and enters it onto import declaration form, for AEO status recognition and the realization of MRA benefits.

– AEO code : KRAEO1234567

– Altered AEO code for declaration: AEO<KR1234567>

<Mutually Agreed Benefits under KOR–CN AEO MRA >

Reduced Inspection rates	• Lower physical inspection rate
Simplified Verification for import	• Less import documentary check
Priority Clearance	• Dedicated lane for AEO cargo, and priority treatment when selected for physical inspection.
Designated Liaison Officer	• A Customs official dedicated to immediately resolving clearance difficulties
Prioritized Measures	• Preferential treatment is given even in the case of disruption in trade flow, like natural disaster, terrors and other emergencies.

<China>

- Please go to the site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9408/> to check AEO status (AA class) under Chinese AEO program.

Reference 1: Chinese Import Declaration

- For MRA benefits in China, AEO <KR+7-digit sequence number> must be declared in the data field of import declaration as below.

海关进口货物报关单								付汇证明联	
预录入编号: 080001880				海关编号:					
进口口岸		备案号		进口日期		申报日期			
经营单位		运输方式 航空运输		运输工具名称 CZ3103		提运单号 999-00000881			
收货单位		贸易方式 一般贸易(0110)		征免性质 一般征税(101)		征税比例			
许可证号		起运国(地区) 中国(142)		装货港 上海(1111)		境内目的地			
批准文号		成交方式 C&F		运费 / /		保费 116/7603.9/3		杂费 / /	
合同协议号		件数 20		包装种类 盒		毛重(公斤) 6		净重(公斤) 4.4	
集装箱号		随附单据						用途	
标记唛码及备注									
项号	商品编号	商品名称、规格型号	数量及单位	原产国(地区)	单价	总价	币制	征免	
1	7116200000	黛碧茶壶 A货翡翠,尺寸: 3.88CM X 2.90CM X 3.00CM	件	中国(142)			日本元 (116)	照章征税	
税费征收情况									
录入员 录入单位		兹声明以上申报无讹并承担法律责任			海关审单批注及放行日期(签章)				
报关员		申报单位(签章)			审单				
单位地址		填制日期			征税 统计				
邮编		电话			查验 放行				



中国 (2013年6月27日签署, 自2014年4月1日起生效)

① 中国节目名称

: IMECM是企业信用管理暂行措施的缩写, 是GACC* 制定的一项新的业务评估标准, 于2014年12月1日正式启动。

* GACC: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② KCS 将韩国AEO出口商的清单发送给 GACC。

③ 韩国AEO出口商将其自己的AEO代码通知中国进口商。

④ 中国进口商以下方式更改收到的AEO代码, 并将其输入到进口报关单中, 以识别AEO身份并实现MRA利益。

— AEO 码: KRAEO1234567

— 更改了声明的AEO代码: AEO<KR1234567>

〈KOR-CN AEO MRA下的共同商定利益〉

降低检查率	• 降低物理检查率
简化的进口验证	• 减少进口单证检查
优先清关	• 用于AEO货物的专用通道, 并在选择进行物理检查时进行优先处理。
指定联络官	• 海关官员致力于立即解决通关困难
优先措施	• 即使在贸易流量中断的情况下, 例如自然灾害, 恐怖和其他紧急情况, 也将给予优惠待遇。

〈China〉

- 请访问网站<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9408/>以检查中国AEO计划下的AEO状态(AA级)。

参考文献1 中国进口报关单

- 为了在中国获得MRA利益, 必须在进口声明的数据字段中声明AEO 〈KR + 7位序列号〉, 如下所示。

海关进口货物报关单								付汇证明联	
预录入编号: 080001880				海关编号:					
进口口岸		备案号		进口日期		申报日期			
经营单位		运输方式 航空运输		运输工具名称 CZ3103		提运单号 999-00000881			
收货单位		贸易方式 一般贸易(0110)		征免性质 一般征税(101)		征税比例			
许可证号		起运国(地区) 中国(142)		装货港 上海(1111)		境内目的地			
批准文号		成交方式 C&F		运费 / /		保费 116/7603.5/3		杂费 / /	
合同协议号		件数 20		包装种类 盒		毛重(公斤) 6		净重(公斤) 4.4	
集装箱号		随附单据						用途	
标记唛码及备注									
项号	商品编号	商品名称、规格型号	数量及单位	原产国(地区)	单价	总价	币制	征免	
1	7116200000	紫砂茶壶 A货翡翠,尺寸: 3.88CM X 2.90CM X 3.00CM	件	中国(142)			日本元 (116)	照章征税	
税费征收情况									
录入员 录入单位		兹声明以上申报无讹并承担法律责任				海关审单批注及放行日期(签章)			
报关员		 申报单位(签章)				 审单 征税 查验 放行			
 地址 邮编 电话		填制日期							



Hong Kong (signed on Feb 13, 2014 , effective from Aug 29, 2014)

- ① KCS sends the list of Korean AEO exporters to Hong Kong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 ② A sea carrier, forwarder or cargo handler in Hong Kong declares the name of Korean AEO exporter and its premises address in the data field 'Shipper' of Manifest.
 - ③ The Department finds identical data between AEO's name and address received from KCS and those declared in Manifest. This enables MRA benefits to be accorded.
- * Please be kindly advised that Korean AEO exporters, for exportation to Hong Kong, ensures to use the same name and premises address declared with KCS.

〈 Mutually Agreed Benefits under KOR–HK AEO MRA〉

Reduced Inspection Rate	• Lower physical inspection rate
Faster clearance	• Priority treatment when selected for physical inspection
Designated Liaison Officer	• A Customs official dedicated to immediately resolving clearance difficulties
Prioritized Measure	• Preferential treatment is given even in the case of disruption in trade flow, like natural disaster, terrors and other emergencies

Reference: HONG KONG Manifest

- To receive MRA benefits, a sea carrier or forwarder in Hong Kong is required to type the name and address of Korean AEO exporter in the data field 'Shipper' of Manifest as below.

Paper Manifest

**SEA IMPORT CARGO
MANIFEST**

1. Name of Carrier NAMSUNG SHIPPING CO., LTD		5. Name of Ship PRIGASUS TERA		6. Voyage No. 1497S		7. Call Sign VTCM		8. Nationality of ship MARSHALL ISLAND	
9. Port of Loading SEHON, KOREA		10. Port of Arrival HONGKONG, HONG KONG		11. Date of Arrival 2014-06-03		12. Name of Carrier Agent NAMSUNG SHIPPING CO., LTD			

13. B/L No. S) Shipper C) Consignee N) Notify	14. Container No. / Seal No.	15. Marks and Number	16. Description of Goods	17. 1) No. of PKGS 2) Gross Weight 3) Measurement 4) Service Term
SSSLCHOC1401729 20 X 1 HEKORCHINA LOGISTICS (KORBA) CO., LTD. OIB OF -AS PER ATTACHED RIDER- SEOUL, KOREA	TCRU11673493 (20DC) / NSL/21223		SHIPPER'S LOAD & COUNT SAID TO BE: RICE -AS PER ATTACHED RIDER- PLACE OF DELIVERY : HONGKONG CY	419 BOXES 8,888.00KGS 15.0000CBM (CY/CY)



Carrier types the name and address of the Korean shipper in the box for "Shipper".



India (signed on Oct 8, 2015 , effective from Apr 1, 2017)

- ① KCS sends the list of Korean AEO exporters to CBEC*.

*CBEC: 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 of India

- ② A Korean AEO exporter fills out an OBIN* Generation Form and sends it to an Indian importer.

*OBIN, acronym of Overseas 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 an identifier issued by CBEC

- ③ The Indian importer submits the form to CBEC, which in turn, will generate OBIN for the Korean AEO exporter. For its exporter's AEO status to be recognized, the Indian importer enters the OBIN onto bill of entry.

- ④ CBEC confirms that OBIN declared by the Indian importer and AEO Code sent from KCS are matched, and finally confers MRA benefits.

〈Mutually Agreed Benefits under KOR-IND AEO MRA〉

Reduced Inspection rate	• Lower physical inspection rate
Simplified verification of import-related documents	• Less documentary check
Faster clearance	• Priority treatment when selected for inspection
Designated Liaison Officer	• A Customs official dedicated to immediately resolving clearance difficulties
Prioritized Measure	• Preferential treatment is given even in the case of disruption in trade flow, like natural disaster, terrors and other emergencies

Reference: Indian OBIN Generation Form

OBIN GENERATION FORM
1. Sending country (MRA PARTNER COUNTRY) :
2. Details of exporter in the MRA Partner Country
AEO NAME :
AEO E-MAIL ID :
AEO TRADER IDENTIFICATION NUMBER
• Country code : • AEO Identification Number :
AEO ADDRESS
• Street and Number : • Postcode : • City : • Country Code :
AEO LIFECYCLE
• Start date : • End date :
AEO STATUS
• AEO Certificate Status :
3. Details of importer in India
• Name : • E – mail id : • Address : • IEC code : • Contact Number/Person :

India (signed on Oct 8, 2015 , effective from Apr 1, 2017)

भारत (8 अक्टूबर 2015 कोहसत्कारित, अप्रैल 1, 2017 सेप्रभावी)

① KCS करेयिई AEO नरियत्तकोकीसन्नोCBEC * कोभजेताहै

*CBEC: 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 of India

② एक करेयिई AEO नरियत्तक एक OBIN * जनरेशन फॉर्स भरताहैऔर एक भारतीय आयत्तक कोभजेताहै

*OBIN, ओवरसी बजिनसे आइडेंटिफिकेशन नंबर कापरजिय, सीईसीद्वाराजारीएक पहचानकरता

③ भारतीय आयत्तक सीईसीकोपरपतर् सैतेहै जोबदलेमेकरेयिई AEO नरियत्तक केलिए OBIN उतपन्न करेया अपनेनरियत्तक कीAEO सधितिकोमत्ततादनेकेलिए, भारतीय आयत्तक OBIN मेप्रवेश केबलि मेप्रवेश करताहै

④ CBEC पष्ठिकरताहैकिभारतीय आयत्तक द्वाराघोषित OBIN और KCS सेभजेए AEO क ठे कामलिा कयाजाताहै और अंत मेसीआए लभोकोसर्वेकर करताहै

<KOR-IND AEO MRA केतहत परसपरकि रप् सेसहमत लाभ>

नरिीक्षण दर मेकमीी	• कम शरीकि नरिीक्षण दर
आयत्त-सबंधति दसत्तजेोंका सरलीकृत सतयान	• कम दसत्तजेी जॉ
तजेी सेनकिासी	• नरिीक्षण केलिए चयनति होमेपर पराममकिताउपचर
नामति सघंरक अधिकारी	• एक सीाशलुक अधिकारी तशुतं नकिासी कठनिइयोको हल करनेकेलिए समरपति
पराममकिता वता उपाम	• परकृति आपदा कषतेर और अनय आपत्त सधितियिोंजसे वयार परवह मेवयवधता केमालेमेभी अधमिास उपचर दयाजाताहै

Reference: Indian OBIN Generation Form

OBIN GENERATION FORM
1. Sending country (MRA PARTNER COUNTRY) :
2. Details of exporter in the MRA Partner Country
AEO NAME :
AEO E-MAIL ID :
AEO TRADER IDENTIFICATION NUMBER
• Country code : • AEO Identification Number :
AEO ADDRESS
• Street and Number : • Postcode : • City : • Country Code :
AEO LIFECYCLE
• Start date : • End date :
AEO STATUS
• AEO Certificate Status :
3. Details of importer in India
• Name : • E – mail id : • Address : • IEC code : • Contact Number/Person :



Taiwan (signed on Dec 22, 2015, effective from Oct 1, 2016)

- ① KCS sends the list of Korean AEO exporters to Taiwan Customs.
- ② A Taiwanese importer enters AEO code in import declaration.
 - For XML users, please enter AEO code in No.30 field 'AEO Code of seller'
 - For EDI users, please enter AEO code in No.14 field 'Business Administration Number of seller'
- ③ Taiwan Customs applies reduced inspection rate on cargo whose AEO code has been declared with Customs.

〈Mutually Agreed Benefits under KOR–TW AEO MRA〉

Reduced Inspection Rate	• Lower physical inspection rate
Priority Clearance	• Priority treatment is given to AEO cargo when selected for physical or document exam
Designated Liaison Officer	• A Customs official dedicated to immediately resolving clearance difficulties
Prioritized Measure	• Preferential treatment is given in the case of disruption in trade flow, like natural disaster, terrors and other emergencies

※ 〈Taiwan〉 To check AEO status, go to the website below.

- http://aeo.customs.gov.tw/aeo/PTL_AEO_601.aspx

Reference: Import Declaration

Import Declaration		Categories of Transport (1)	Type of Declaration (2)	Ordinal No.	Page No.	Page No. / Total No. of Page :				
		Declaration No. (3)				Vessel Registration No. (4)				
Name of Vessel / Transport ID (5)	Master Airway Bill / Bill of Lading No. (8)		Exchange Rate (16)							
Code of Vessel (6)	Voyage No. / Flight No. (7)	House Airway Bill / Bill of Lading No. (9)	FOB Value (17)		Currency	Amount				
Name/Code of Port of Loading (10)	Exportation Date (13)		Date of Importation (14)	Freight (18)						
Code of Storage Location (11)	Code of Import / Transport Mode (12)	Date of Declaration (15)		Insurance Fee (19)						
Duty Payer (24)	BAN (23)	Customs Supervision Code (25)	Related to Seller (26)	Mode of Duty Payment (27)	Expense to be added (20)					
	Chinese Name	AEO Code			Expense to be deducted (21)					
	English Name				CIF Value (22)					
	Chinese/English Address	Licensing Note (28)	Customs Approval No. (29)							
Foreign Seller (30)	Chinese Name	AEO Code								
	English Name									
	Chinese/English Address									
	Country Code (31)	Business Administration No. (32)	Customs Supervision Code (33)							
Item No. (34)	Country of Origin (36)		Import Permit No.-Item No. (37)		Term of Trade / Currency	Net Weight (KG) (40)	Duty-paying Value / Dutiable Quantity (36) (TWD)	Duty Rate (44)	Code of Duty Payment (45)	
	CCC Code (38)		Tariff No.	Statistic Code						Unit Price (39)
	(Competent Authority Designated Code)									
Description of Goods (Brand, Specification, etc.) (35)				Amount	Quantity (Unit) (41) (Statistics Quantity and Unit) (42)					



台湾 (2015年12月22日签署, 自2016年10月1日起生效)

- ① KCS将韩国AEO出口商清单发送给台湾海关。
- ② 台湾进口商在进口报关单中输入AEO代码。
 - 对于XML用户, 请在第30号“卖方的AEO代码”字段中输入AEO代码
 - 对于EDI用户, 请在第14号“卖方的业务管理编号”字段中输入AEO代码
- ③ 台湾海关对已向海关申报AEO代码的货物实行降低的检查率。

<根据KOR-TW AEO MRA达成的共同商定利益>

减少了检验率	降低物理检查率
优先清关	选择进行体检或单证检查时, 将优先处理AEO货物
指定的联络官	海关官员致力于立即解决通关困难
优先措施	在贸易流量中断的情况下, 如自然灾害, 恐怖和其他紧急情况, 给予优惠待遇

※ <台湾>要检查AEO的状态, 请访问下面的网站。

- http://aeo.customs.gov.tw/aeo/PTL_AEO_601.aspx

Reference : <Import Declaration>

Import Declaration		Categories of Transport (1)	Type of Declaration (2)	Ordinal No.	Page No.	Page No. / Total No. of Page :				
		Declaration No. (3)				Vessel Registration No. (4)				
Name of Vessel/Transport ID (5)		Master Airway Bill / Bill of Lading No. (8)			Exchange Rate (16)					
Code of Vessel (6)	Voyage No./ Flight No. (7)	House Airway Bill / Bill of Lading No. (9)			FOB Value (17)	Currency	Amount			
Name/Code of Port of Loading (10)	Exportation Date (13)		Date of Importation (14)		Freight (18)					
Code of Storage Location (11)	Code of Import Transport Mode (12)	Date of Declaration (15)		Insurance Fee (19)						
Duty Payer (24)	BAN (23)	Customs Supervision Code (25)		Related to Seller (26)	Mode of Duty Payment (27)	Expense to be added (20) Expense to be deducted (21)				
	Chinese Name	AEO Code				CIF Value (22)				
	English Name									
	Chinese/English Address					Licensing Note (28)	Customs Approval No. (29)			
Foreign Seller (30)	Chinese Name	AEO Code								
	English Name									
	Chinese/English Address									
Country Code (31)	Business Administration No. (32)	Customs Supervision Code (33)								
Item No. (34)	Country of Origin (36)		Import Permit No.-Item No. (37)		Term of Trade/ Currency	Net Weight (KG) (40)	Duty-paying Value / Dutiable Quantity (36) (TWD)	Duty Rate (44)	Rate of Duty Payment (45) Rate of Commodity Tax (46)	
	CCC Code (38)		Tariff No.	Statistic Code						Unit Price (39)
	(Competent Authority Designated Code)									
Description of Goods (Brand, Specification, etc.) (35)				Amount	Quantity (Unit) (41) (Statistics Quantity and Unit)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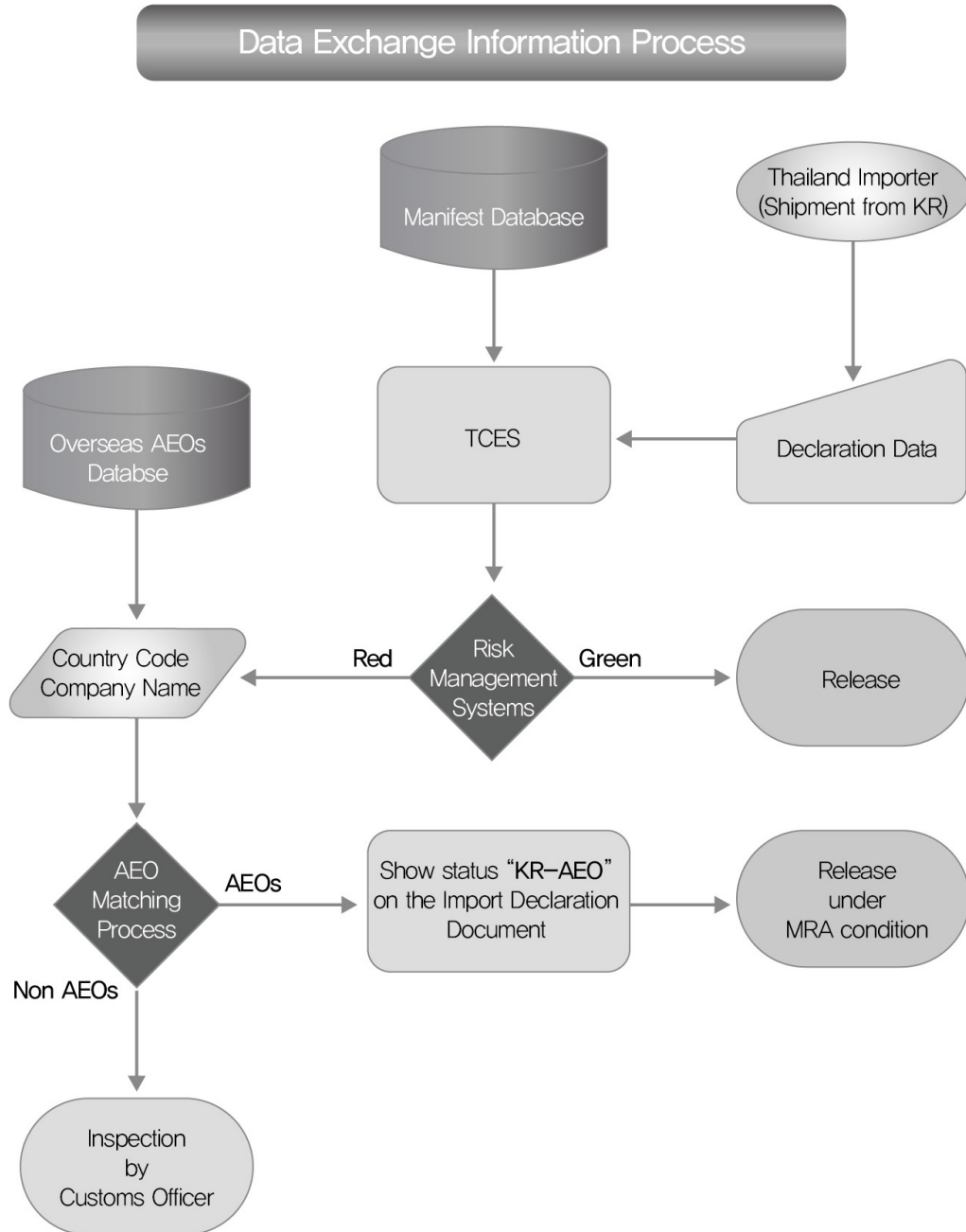
Thailand (signed on Dec 27, 2016, set to take effect in the second half of 2018)

- ① KCS sends the list of Korean AEO exporters to Thai Customs Department.
- ② Thai Customs Department enters the received information of AEO exporters onto its overseas AEO database.
- ③ A Korean AEO exporter informs an Thai importer of its AEO Code.
- ④ When the importer makes import declaration, Thai System automatically identifies AEO cargoes, offering MRA benefits.

〈Mutually agreed benefits under KOR–TH AEO MRA〉

Reduced Inspection Rate	• Lower rate of physical inspection on AEO cargo
Faster clearance	• Priority treatment is given to AEO cargo when selected for physical or document exam
Prioritized measure	• Priority given in the event of disruption to trade flows, like national disasters, terror, or hazardous emergencies

〈Flow Chart of AEO cargo ident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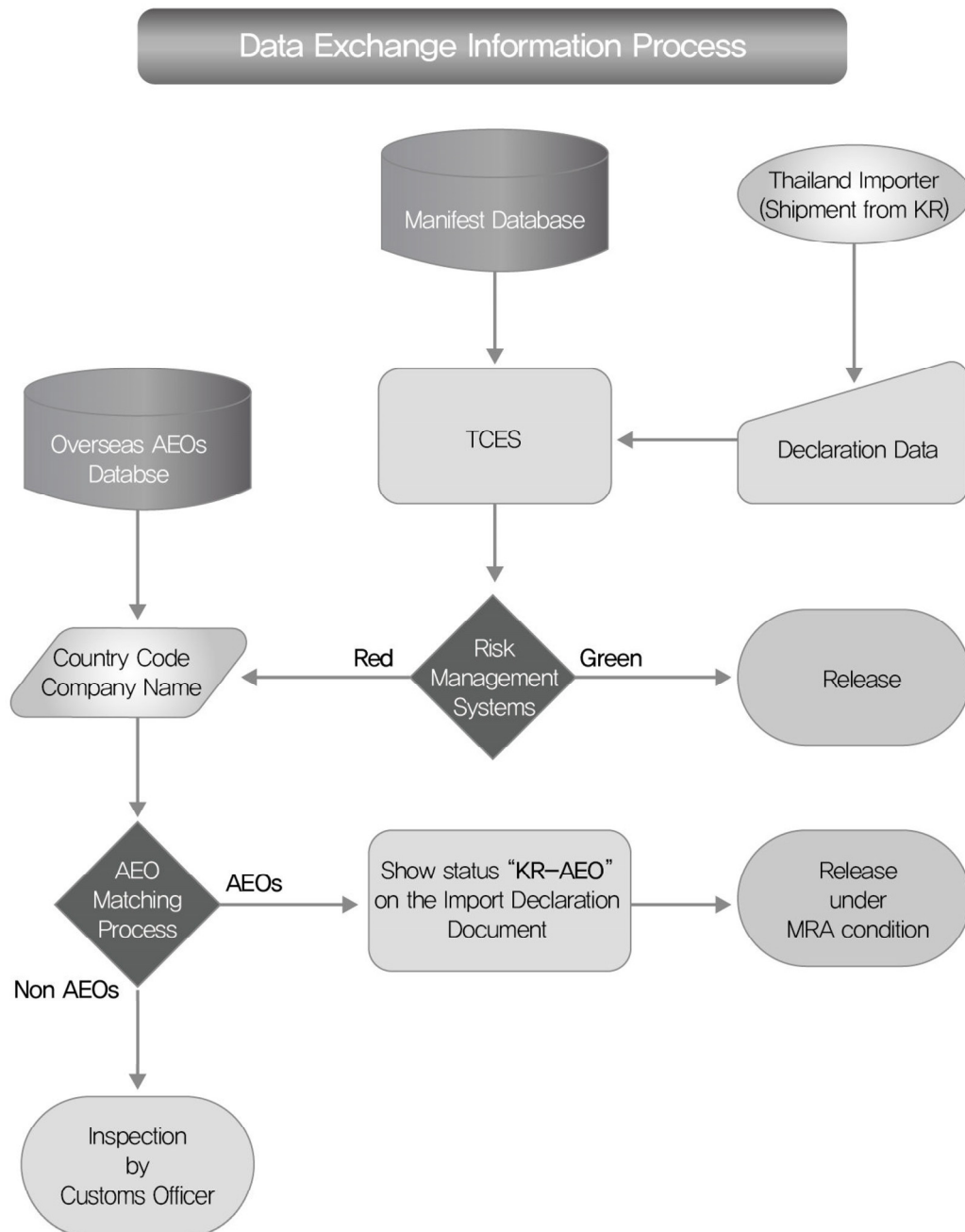
ประเทศไทย (ลงนามเมื่อวันที่ 27 ธันวาคม 2559 กำหนดให้มีผลบังคับใช้ในช่วงครึ่งหลังของปี 2561)

- ① KCS ส่งรายชื่อผู้ส่งออก AEO เกาหลีไปยังกรมศุลกากร
- ② กรมศุลกากรไทยป้อนข้อมูลที่ได้รับของผู้ส่งออก AEO ไปยังฐานข้อมูล AEO ใ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
- ③ ผู้ส่งออก AEO เกาหลีแจ้งให้ผู้นำเข้าไทยทราบถึงรหัส AEO ของตน
- ④ เมื่อผู้นำเข้าทำการประกาศการนำเข้าระบบไทยจะรับสินค้า AEO โดยอัตโนมัติโดยเสนอผลประโยชน์ MRA

<ผลประโยชน์ที่ตกลงร่วมกันภายใต้ KOR-TH AEO MRA>

ลดอัตรา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	อัตราการตรวจร่างกายที่ต่ำกว่าในดูสินค้า AEO
กวาดล้างได้เร็วขึ้น	การรักษาลำดับความสำคัญมอบให้กับสินค้า AEO เมื่อเลือกสำหรับการตรวจร่างกายหรือเอกสาร
มาตรการจัดลำดับความสำคัญ	ลำดับความสำคัญได้รับในกรณีที่มีการหยุดชะงักเพื่อการคาไหลเวียนภัยพิบัติแห่งชาติหาวาดกลัวหรืออันตรายในยามฉุกเฉิน

<แผนภูมิการไหลของการจำแนกสินค้า AEO>



United Arab Emirates

(signed on Jul 6, 2017, set to take effect in the second half of 2018)

- ① KCS sends the list of Korean AEO exporters to UAE Customs.
- ② A Korean AEO exporter informs its UAE importer of its AEO code when exporting cargoes.
- ③ The UAE importer enters the AEO code onto import declaration form.
- ④ The UAE Customs compares AEO data given from KCS and the data declared by the importer, and provides MRA benefits if those two are matched.

〈Mutually agreed benefits under KOR-UAE AEO MRA〉

Reduced Inspection Rate	Lower rate of physical inspection on AEO cargo
Simplified verification of import-related documents	Reduced rate of documentary inspection on AEO cargo
Faster clearance	Priority treatment is given to AEO cargo when selected for physical or document exam
Appointment of Liaison officer	A Customs official dedicated to immediately resolving clearance difficulties
Prioritized measure	Priority given in the event of disruption to trade flows, like national disasters, terror, or hazardous emergencies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2018 من المقرر أن يدخل حيز التنفيذ في النصف الثاني من عام ، 2017 ، يوليو 6 تم التوقيع عليه في)

- ① إلى جمارك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AEO قائمة المصدرين الكوريين KCS ترسل شركة
- ② الخاص به عند تصدير البضائع AEO بإبلاغ مستورده الإماراتي برمز AEO يقوم مصدر كوري
- ③ في نموذج إعلان الاستيراد AEO يقوم المستورد الإماراتي بإدخال كود
- ④ والبيانات التي أعلنها المستورد ، وتقدم KCS المقدمة من AEO تقوم جمارك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بمقارنة بيانات في حالة مطابقة هذين النوعين MRA مزاي

<KOR-UAE AEO MRA الفوائد المتفق عليها بشكل متبادل بموجب>

انخفاض معدل التفتيش	• AEO انخفاض معدل الفحص البدني على البضائع
التحقق المبسط للوثائق المتعلقة بالاستيراد	• AEO انخفاض معدل التفتيش الوثائقي على البضائع
أسرع التخليص	• البضائع عند اختياره للامتحان البدني أو وثيقة AEO تعطى الأولوية للعلاج
تعيين ضابط اتصال	• مسؤول جمركي مكرس لحل مشاكل التخليص على الفور
التدبير حسب الأولوية	• الأولوية الممنوحة في حالة تعطل التدفقات التجارية ، مثل الكوارث الوطنية أو الإرهاب أو حالات الطوارئ الخطرة

Malaysia (signed on Oct 16, 2017, set to take effect in the second half of 2018)

- ① KCS sends the list of Korean AEO exporters to RMCD*.
- *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 ② A Korean AEO exporter informs its Malaysian importer of its AEO code when exporting cargoes.
- ③ The Malaysian importer declares 14-digit MRA ID (2-digit national code and 12-digit AEO code) with RMCD.
- ④ The RMCD compares AEO data given from KCS and the data declared by the importer, and provides MRA benefits if those two are matched.

〈Mutually agreed benefits under KOR-MY AEO MRA〉

Reduced Inspection Rate	• Lower rate of physical inspection on AEO cargo
Simplified verification of import-related documents	• Reduced rate of documentary inspection on AEO cargo
Faster clearance	• Priority treatment is given to AEO cargo when selected for physical or document exam
Appointment of Liaison officer	• A Customs official dedicated to immediately resolving clearance difficulties

<Import Declaration>

K1 REGISTRATION

Form Reg. No: 1- - / #10 Transaction Type: Duty Status: IBU PEJABAT - H10

Form Header	Participant	Item	Cargo	DGA / Remark	Vehicle	K1A	PE
Importer Code: GST No: Name: Reg.Name: Address: Agent Code: GST No: Name: Address: EDI Ref.: Exporter Name: Address: MRA ID: Declarant Name: IC: Status:							

↑

KR

↑

KRAEO0111203

Malaysia (ditandatangani pada 16 Okt, 2017, yang akan berkuat kuasa pada separuh kedua 2018)

- ① KCS menghantar senarai pengeksport AEO Korea kepada RMCD *.
- *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 ② Pengeksport AEO Korea memberitahu pengimport Malaysia tentang kod AEOnya ketika mengeksport kargo.
- ③ Pengimport Malaysia mengisytiharkan ID MRA 14 digit (kod negara 2 digit dan kod AEO 12 digit) dengan RMCD.
- ④ RMCD membandingkan data AEO yang diberikan dari KCS dan data yang diisytiharkan oleh pengimport, dan menyediakan manfaat MRA jika kedua-dua mereka dipadankan.

〈Faedah yang dipersetujui bersama di bawah KOR–MY AEO MRA〉

Kadar Pemeriksaan Dikurangkan	Kadar pemeriksaan fizikal yang lebih rendah pada kargo AEO
Pengesahan ringkas dokumen berkaitan import	Mengurangkan kadar pemeriksaan dokumentari terhadap kargo AEO
Pelepasan lebih cepat	Rawatan keutamaan diberikan kepada kargo AEO apabila dipilih untuk pemeriksaan fizikal atau dokumen
Pelantikan Pegawai Perhubungan	Seorang pegawai Kastam berdedikasi untuk segera menyelesaikan kesulitan pembersihan

〈Pengisytiharan Import〉

K1 REGISTRATION

IBU PEJABAT - H10

Form Reg. No: 1- - / H10 Transaction Type: Duty Status:

Form Header	Participant	Item	Cargo	QGA / Remark	Vehicle	K1A	PE
Importer Code: GST No: Name: Reg Name: Address: Agent Code: GST No: Name: Address: EDI Ref.: Exporter Name: Address: MRA ID: KR KRAEO01112O3 Declarant Name: IC: Status:							

↑
KR

↑
KRAEO01112O3



New Zealand (Signed on Jun 25, 2011, effective on Jan 1, 2012)

- ① New Zealand's program title: SES (Secure Exports Scheme)
- ② KCS sends the list of Korean AEO exporters to New Zealand Customs Service.
- ③ New Zealand Customs registers Unique Supplier Code with its System, reflecting data of the AEO list from KCS.
- ④ A Korean AEO exporter informs its importer of AEO Code.
- ⑤ The New Zealand importer, based on the information from NZ customs system, declares the name of Supplier and its Unique Supplier Code. With AEO status being recognized, MRA benefits are granted.

〈Mutually Agreed Benefits under KOR–NZ AEO MRA〉

Less physical, documentary exam	Expedited clearance through reduced document checks and/or physical examination
Priority Clearance	Priority treatment is given to AEO cargo when selected for physical exam
Appointment of Liaison officer	A Customs official dedicated to immediately resolving clearance difficulties
Prioritized measure	Priority is given to AEO cargo in the event of disruption in trade flow, like natural disaster, terrors and other emergencies

- 〈New Zealand〉 Visit the following website to search for Unique Supplier Code . by typing 'name of Nation' and ' name of AEO'.
- <http://www.customs.govt.nz/news/utilities/Pages/Supplier-Codes.aspx>

〈Import Declaration〉

>
Delivery Destination

v
Delivery Destination

☐ Same As Importer

Delivery Destination Name

Street and Number/P.O. Box

Town/City

Country Region

Postcode

Country

>
Delivery Notification

v
Delivery Notification

Delivery Notification Details

☐

☐ Party Code

Party Name

Email Address

Get Details

>
Supplier

v
Supplier

Supplier Details

☐
☐ Supplier Code

Supplier Name

Street and Number/P.O. Box

Town/City

Country Region

Postcode

Country

Contact Person

Method(s) of Communication

Type

Number / Email

Australia (signed on Jul 6, 2017, set to take effect in the second half of 2018)

- ① KCS sends the list of Korean AEO exporters to Australian Department of Home Affairs.
- ② A Korean AEO exporter informs its Australian importer of 11-digit Supplier ID assigned by the Australian Department.
- ③ The Australian importer enters this Supplier ID onto Integrated Control System(ICS), when making import declaration.
- ④ The Australian Department compares the AEO list from KCS and the declared information by the importer, and provides MRA benefits if those two are matched.

〈Mutually agreed benefits under KOR-AU AEO MRA〉

Reduced Inspection Rate	• Lower rate of physical inspection on AEO cargo
Simplified verification of import-related documents	• Reduced rate of documentary inspection on AEO cargo
Faster clearance	• Priority treatment is given to AEO cargo when selected for physical or document exam
Appointment of Liaison officer	• A Customs official dedicated to immediately resolving clearance difficulties
Prioritized measure	• Priority given in the event of disruption to trade flows, like national disasters, terror, or hazardous emergencies

〈Import Declaration〉

Line No 1

Supplier ID 12093584822 find Supplier TIN

Vendor ID

Tariff Information

Tariff Classification No 63021000 Statistical Code 10 Related Transaction Ind ☐

Valuation Basis Type TV Treatment Code GST Exemption Code

Goods Description DUTY TAXES AND CHARGES AUTOMATION Quantity Unit

Quantity 1000.0 NO Add

Type	Amount	Currency
Valuation Elements		
Price	5000.00	AUD find

Origin/Preference

Origin Country Code ID Preference Origin Country Code find Preference Scheme Type GEN Preference Rule Type



Turkey (signed on June 9, 2014, set to take effect in the second half of 2018)

- ① KCS sends the list of Korean AEO exporters to MCT* of Turkey.
*MCT: Ministry of Customs and Trade
- ② The MCT assigns to Korean AEO exporters AEO IDs of its own, which consist of 'national code+alphabets+serial number' (e.g. KR/AEOF 000000001). Afterwards, these assigned IDs are communicated to KCS.
- ③ KCS informs each AEO exporter of its corresponding AEO ID.
- ④ A Korean AEO exporter informs its Turkish importer of AEO ID assigned by the MCT.
- ⑤ The Turkish importer enters the received AEO ID in the data field 'Consignor' in import declaration form.
- ⑥ The MCT checks the data declared onto System and provides MRA benefits.

〈Mutually Agreed Benefits under KOR-TR AEO MRA〉

Reduced Inspection Rate	• Lower rate of physical inspection on AEO cargo
Priority clearance	• Priority treatment is given to AEO cargo when selected for physical or document exam
Appointment of Liaison officer	• A Customs official dedicated to immediately resolving clearance difficulties
Prioritized measure	• Priority is given to AEO cargo in the event of disruption in trade flow, like natural disaster, terrors and other emergencies



Türkiye (9 Haziran 2014'te imzalandı, 2018'in ikinci yarısında yürürlüğe girdi)

- ① KCS, Koreli AEO ihracatçılarının listesini Türkiye'nin MCT * sine göndermektedir.
*MCT: Ministry of Customs and Trade
- ② MCT, Kore AEO ihracatçılarına “ulusal kod + alfabe + seri numarası” ndan oluşan AEO ID'lerini (örneğin KR / AEOF 00000001) vermektedir. Daha sonra, bu atanmış kimlikler KCS'ye iletilir.
- ③ KCS, her AEO ihracatçısını, karşılık gelen AEO Kimliğini bildirir.
- ④ Bir Koreli AEO ihracatçısı, Türkiye'ye ithal ettiği AEO ID'yi MCT'nin görevlendirdiği ülkeye bildirir.
- ⑤ Türk ithalatçı alınan AEO kimliğini ithalat beyan formunda 'Consignor' veri alanına girer.
- ⑥ MCT, Sistem'e bildirilen verileri kontrol eder ve MRA faydaları sağlar.

<KOR-TR AEO MRA Kapsamında Karşılıklı Anlaşılan Faydalar>

Düşük Muayene Oranı	• AEO kargolarında daha düşük fiziksel muayene oranı
Öncelik temizleme	• Fiziksel veya doküman muayenesi için seçildiğinde AEO kargoya öncelikli muamele uygulanır
İrtibat memurunun atanması	• Gümrükleme zorluklarını derhal gidermeye adanmış bir Gümrük görevlisi
Öncelikli ölçü	• Doğal afet, terör ve diğer acil durumlar gibi ticaret akışında aksama durumunda AEO kargolarına öncelik verilir.

Israel (signed on Mar 22, 2015, effective on Mar 1, 2016)

- ① KCS sends the list of Korean AEO exporters to the Customs Directorate of the Israel Tax Authority.
- ② A customs broker in Israel, before import declaration, registers Supplier information with Israeli Customs system, and assigns itself 'Supplier Code'.
 - * Korean AEO exporters must send to their importer the information, exactly same with what they have submitted to Korea Customs, like AEO Code, the name of AEO, address, authorization date, zip code, email address, phone number.
- ③ The Israeli Customs checks the assigned Supplier Code against the import declaration.
- ④ The Israeli Customs deletes Supplier Codes, if assigned in duplicate, and leaves a single Code in place.
 - *Registered Supplier information and its Code are made public and available to other customs brokers.
- ⑤ The Israeli Customs recognizes AEO status of declared goods, and hence grants clearance benefits, like reduced import inspection rate.

〈Mutually Agreed Benefits under KOR-IL AEO MRA〉

Reduced Inspection	Reduced inspection rate on AEO cargo
Priority clearance	- Fewer data field for import declaration (e.g. 'Relations to Supplier', etc) - Priority documentary check on AEO cargo (identified by color or highlight in documents) - Mitigated audit on security/bond if requested
Prioritized measure	Top priority is given in the event of disruption in trade flow, like natural disaster, terrors and other emergencies

(2016 קרמב 1 דיראתב לחה, 2015 קרמב 22 דיראתב מתחנ) **לארשי**

- ① מיסמה תושר לש סכמה להנמל AEO לש מיינאירוקה מינאוציה תמישר תא תחלוש KCS.
- ② צעל הצקמו תילארשיה סכמה תכרעמב קפסה יטרפ תא ששור, אובי תזרכה ינפל, לארשיב סכמ דוותמ 'קפס דוק' ומ.
- ק ומכ, האירוק סכמל ושיגהש ומכ קוידב, עדימה תא נאוביל חולשל תובייח תוינאירוק AEO תוינאוצי *
ןופלט רפסמ, ינורטקלא ראוד תבותכ, דוקימ, רושיא דיראת, תבותכ, AEO, מש AEO, דו.
- ③ אוביה תרהצה דגנכ הצקוהש קפסה דוק תא קרוב ילארשיה סכמה.
- ④ מוקמב דיחי דוק ריתומו, לופכשב וצקוה מא, מיקפסה ידוק תא קחומ ילארשיה סכמה.
- מירחא סכמ יכוותמל מינימזו מימסרפתמ ודוקו מימושר קפס יטרפ *.
- ⑤ חוקיפ רועיש ומכ, רושיא תובטה קינעמ נאכמו, וזרכוהש יבוט לש AEO דמעמב ריכמ ילארשיה סכמה.
- תחפומ אובי.

〈KRA-IL AEO MRA תחת תידדה מימכסומ תונורת〉

הקידבב התחפה	AEO נעטמ לע תחפומ חוקיפה רועיש
תופידע רושיא	- אובי תרהצהל מינותנ הדש תוחפ (' וכו 'קפסל מיסחי' לשמל) (מיכמסמב השגדה וא עבצ ידי לע ההונמ) AEO נעטמ לע תופידע דועית תקידב - שקבתת מא בוח תורגיא / החטבא לע הלקמ תרוקיב
יידע דדמ	- ימיא, עבט נוסא ומכ, רחסה תמירזב שוביש לש הרקמב תנתינ הנוילעה תופידעה - מירחא מוריח יבצמו ם



Mexico (signed on Mar 11, 2014, effective from Feb 16, 2015)

- ① Mexican Program Title: NEEC (Nuevo Esquema de Empresas Certificadas / New Program of Certified Companies)
- ② KCS sends the list of Korean AEO exporters to 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 ③ A Korean exporter informs a Mexican importer of its AEO Code and TAX ID(business registration number).
- ④ The Mexican importer enters the received information onto import declaration in the following manner.

Declaration Item	Information to be declared
SUPPLIER/ BUYER INFORMATION	Exporter's TAX ID
KEY/IDENTIFIER COMPLEMENT	OE
COMPLEMENT 1	Korean Exporter's AEO ID
COMPLEMENT 2	KOR

〈Mutually Agreed Benefits under KOR–MX AEO MRA〉

Reduced Inspection	• Less physical inspection on AEO cargo
Priority Clearance	• Priority treatment is given to AEO cargo when selected for physical or document exam
Appointment of Liaison officer	• A Customs official dedicated to immediately resolving clearance difficulties
Prioritized measure	• Priority is given in the event of disruption in trade flow, like natural disaster, terrors and other emergencies

México (firmado el 11 de marzo de 2014, efectivo desde el 16 de febrero de 2015)

- ① Título del programa mexicano: NEEC (Nuevo Esquema de Empresas Certificadas / Nuevo Programa de Empresas Certificadas)
- ② KCS envía la lista de exportadores de AEO coreanos a la Administración General de Aduanas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 ③ Un exportador coreano informa a un importador mexicano de su código AEO y su ID de impuesto (número de registro comercial).
- ④ El importador mexicano ingresa la información recibida en la declaración de importación de la siguiente mane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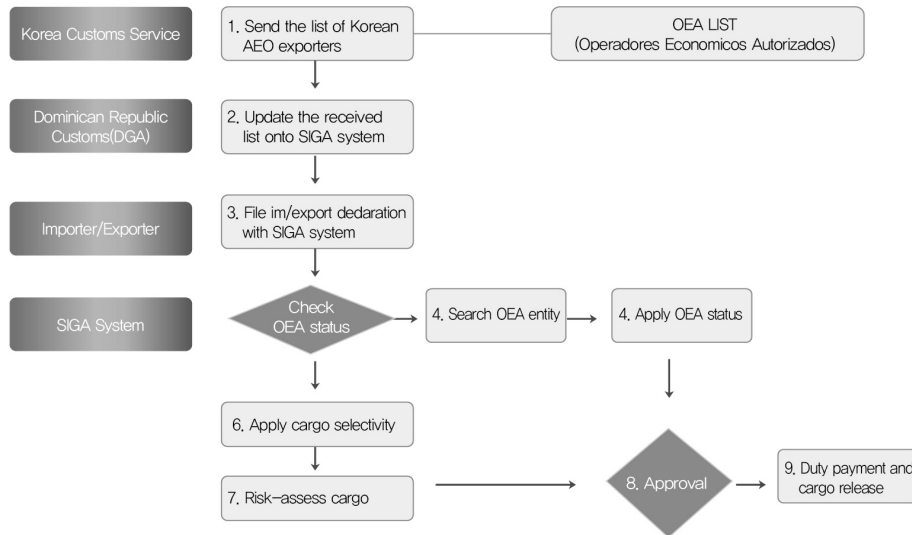
Artículo de declaración	Información a declarar
INFORMACIÓN DEL PROVEEDOR / COMPRADOR	Identificación fiscal del exportador
COMPLEMENTO CLAVE / IDENTIFICADOR	OE
COMPLEMENTO 1	Identificación AEO del exportador coreano
COMPLEMENTO 2	KOR

〈Beneficios mutuamente acordados bajo KOR–MX AEO MRA〉

Inspección reducida	• Menos inspección física en carga AEO
Liquidación Prioritaria	• Se da tratamiento prioritario a la carga AEO cuando se selecciona para examen físico o de documentos
Cita de Oficial de enlace	• Un funcionario de aduanas dedicado a resolver de inmediato las dificultades de despacho
Medida priorizada	• Se da prioridad en caso de interrupción en el flujo comercial, como desastres naturales, terrores y otras emergencias.

Dominican Republic (signed on April 23, 2015, Effective from Nov 18, 2015)

- ① KCS sends the list of Korean AEO exporters to the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of Dominican Republic.
- ② The DR Customs uploads the received list onto SIGA(Sistema de Gestion Aduanera), its Automated Customs System.
- ③ The SIGA system checks OEA(AEO) membership at the point of im/export declaration, giving MRA benefits to AEO car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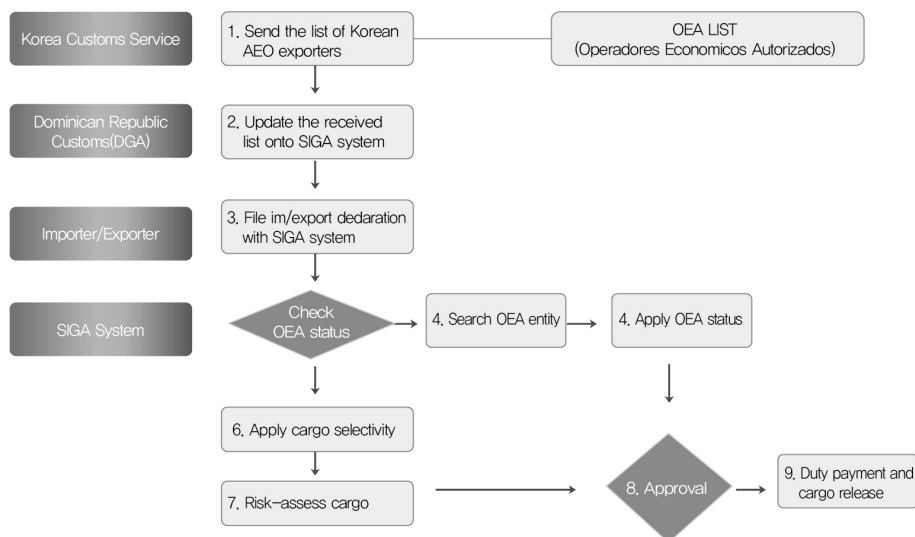


〈Mutually agreed benefits under KOR-DR AEO MRA〉

Reduced Inspection Rate	Lower rate of physical inspection on AEO cargo
Priority clearance	Priority treatment is given to AEO cargo when selected for physical or document exam
Appointment of Liaison officer	A Customs official dedicated to immediately resolving clearance difficulties
Prioritized measure	Priority given in the event of disruption to trade flows, like national disasters, terror, or hazardous emergencies

República Dominicana (firmado el 23 de abril de 2015, vigente desde el 18 de noviembre de 2015)

- ① KCS envía la lista de exportadores de AEO coreanos a la Dirección General de Aduanas de República Dominicana.
- ② DR Customs carga la lista recibida en SIGA (Sistema de Gestión Aduanera), su Sistema Aduanero Automatizado.
- ③ El sistema SIGA verifica la membresía de OEA (AEO) en el punto de declaración de importación / exportación, dando beneficios de MRA a la carga de AEO.



〈Beneficios mutuamente acordados bajo KOR-DR AEO MRA〉

Tasa de inspección reducida	Menor tasa de inspección física en carga AEO
Autorización prioritaria	Se da tratamiento prioritario a la carga AEO cuando se selecciona para examen físico o de documentos
Nombramiento de oficial de enlace	Un funcionario de aduanas dedicado a resolver de inmediato las dificultades de despacho
Medida priorizada	Prioridad dada en caso de interrupción de los flujos comerciales, como desastres nacionales, terror o emergencias peligrosas



Peru (signed on Dec 14, 2017, set to take effect in the second half of 2018)

- ① KCS sends the list of Korean AEO exporters to SUNAT, Peruvian Customs.
- ② A Korean AEO exporter informs its Peruvian importer of its AEO code when exporting cargoes.
- ③ The Peruvian importer enters the AEO code onto import declaration form.

〈Mutually agreed benefits under KOR-PE AEO MRA〉

Reduced Inspection Rate	• Lower rate of physical inspection on AEO cargo
Simplified verification of import-related documents	• Reduced rate of documentary inspection on AEO cargo
Faster clearance	• Priority treatment is given to AEO cargo when selected for physical or document exam
Appointment of Liaison officer	• A Customs official dedicated to immediately resolving clearance difficulties
Prioritized measure	• Priority given in the event of disruption to trade flows, like national disasters, terror, or hazardous emergencies



Perú (firmado el 14 de diciembre de 2017, que entrará en vigencia en la segunda mitad de 2018)

- ① KCS envía la lista de exportadores de AEO coreanos a SUNAT, Aduanas peruanas.
- ② Un exportador coreano de AEO informa a su importador peruano de su código AEO al exportar cargas.
- ③ El importador peruano ingresa el código AEO en el formulario de declaración de importación.

〈Beneficios mutuamente acordados bajo KOR–PE AEO MRA〉

Tasa de inspección reducida	Menor tasa de inspección física en carga AEO
Verificación simplificada de documentos relacionados con la importación	Tasa reducida de inspección documental en carga AEO
Despacho más rápido	Se da tratamiento prioritario a la carga AEO cuando se selecciona para examen físico o de documentos
Nombramiento de oficial de enlace	Un funcionario de aduanas dedicado a resolver de inmediato las dificultades de despacho
Medida priorizada	Prioridad dada en caso de interrupción de los flujos comerciales, como desastres nacionales, terror o emergencias peligrosas

Uruguay (signed on Dec 14, 2017, set to take effect in the second half of 2018)

- ① KCS sends the list of Korean AEO exporters to ADUNAS, Uruguayan Customs.
- ② A Korean AEO exporter informs its Uruguayan importer of its AEO code when exporting cargoes.
- ③ The Uruguayan importer enters the AEO code onto import declaration form.

〈Mutually agreed benefits under KOR-UY AEO MRA〉

Reduced Inspection Rate	• Lower rate of physical inspection on AEO cargo
Simplified verification of import-related documents	• Reduced rate of documentary inspection on AEO cargo
Faster clearance	• Priority treatment is given to AEO cargo when selected for physical or document exam
Appointment of Liaison officer	• A Customs official dedicated to immediately resolving clearance difficulties
Prioritized measure	• Priority given in the event of disruption to trade flows, like national disasters, terror, or hazardous emergencies

Uruguay (firmado el 14 de diciembre de 2017, que entrará en vigencia en la segunda mitad de 2018)

- ① KCS envía la lista de exportadores de AEO coreanos a ADUNAS, Aduana uruguaya.
- ② Un exportador coreano de AEO informa a su importador uruguayo de su código AEO al exportar cargas.
- ③ El importador uruguayo ingresa el código AEO en el formulario de declaración de importación.

〈Beneficios mutuamente acordados bajo KOR-UY AEO MRA〉

Tasa de inspección reducida	Menor tasa de inspección física en carga AEO
Verificación simplificada de documentos relacionados con la importación	Tasa reducida de inspección documental en carga AEO
Despacho más rápido	Se da tratamiento prioritario a la carga AEO cuando se selecciona para examen físico o de documentos
Nombramiento de oficial de enlace	Un funcionario de aduanas dedicado a resolver de inmediato las dificultades de despacho
Medida priorizada	Prioridad dada en caso de interrupción de los flujos comerciales, como desastres nacionales, terror o emergencias peligrosas

글로벌 AEO 총서

발 행 일	2020년 5월
발 행 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편 집 처	(사)한국AEO진흥협회
인 쇄	디자인아람

이 책자는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고자 한국과 AEO MRA를 체결한 국가의 AEO 제도와 통관절차 그리고 MRA 활용방법 등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각국과의 협의 또는 제도 변경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